

최종보고서

공공조달 진입규제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16. 10.



행정자치부



한국조달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rocurement

제 출 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에서 발주한 『공공조달 진입규제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2016년 10월

한국조달연구원장 이태원

책임연구자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상 훈
공동연구자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오 세 옥
공동연구자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이 미 정
공동연구자	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	임 현 일
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권 정 인
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김 나 경
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김 주 원
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이 미 영
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이 정 환
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백 용 선
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김 정 옥
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임 효 영
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 승 예

- 목 차 -

1.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1.2 연구의 수행절차 및 방법.....	5
2.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자체조달사업 분석.....	8
2.1 계약현황 분석 개요.....	8
2.2 자료수집 결과.....	10
2.3 조달단계별 규제유발요인 도출.....	12
3. 2015년 공공기관 자체조달사업 규제유발 요인별 현황분석.....	14
3.1 중앙공공기관 기초통계량 분석.....	14
3.2 지방공공기관 기초통계량 분석.....	26
4. 규제유발요인 식별 및 규제유발 관리지수 개발.....	39
4.1 5대 분야 13개 규제유발 가능 요인 식별.....	41
4.2 규제유발 관리지수 개발 및 적용.....	44
5.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상·하위 규정 분석.....	47
5.1 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	47
5.2 대상 규정식별 및 주요 분석 내용.....	52
5.3. 계약현황 및 규정/기준 비교분석을 통한 규제요인 식별 및 개선방안 검토(종합).....	53
5.4 계약(사업)현황 자료분석 기반의 규제요인 식별 및 개선방안.....	61
5.5 상·하위계약규정 및 기준 비교분석 기반 규제요인 식별 및 개선방안.....	80
5.6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비교분석 기반의 규제적 요인 식별 및 개선방안.....	194
5.7 중소기업 공공조달 관련 애로사항 및 관련 규정 분석.....	202
5.8 공공조달 및 계약 관련 질의회신 및 관련 규정 비교분석.....	256
6. 종합적 공공조달 단계별 규제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278
6.1 통합적 개선방안 수립 개요.....	278
6.2 통합적 개선방안과 규제유발 유형과의 연계성.....	279
6.3 공공조달 단계별 개선방안.....	282

7. 기대효과 분석.....	308
7.1 국가·지방·공공계약 법령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311
7.2 자체조달사업과제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316
7.3 중소기업 조달건의 과제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331
7.4 공공조달 단계별 기대효과.....	340
8. 결 론.....	353
참고문헌.....	357
첨부 1. 해소 가능한 규제유발 요인(사업 및 규정별 식별 문제점).....	359
별첨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신인도평가항목.....	421
별첨 2.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11조.....	424
별첨 3.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24조.....	425
별첨 4. 2015년 공공(자체)조달 전수조사 13개 유형 개선관련 법·규정.....	426
별첨 5. 공공기관대상 정부조달 규제개선 제도개선과제(15개 과제).....	449
별첨 6. 기업대상 간담회 결과 제도개선 방안(20개 과제).....	451

- 그림 목차 -

[그림 1] 연구수행배경.....	4
[그림 2] 연구수행 절차.....	5
[그림 3] 공공조달 규제요인 식별 및 개선.....	6
[그림 4] 연구수행 세부절차.....	8
[그림 5] 공공기관 계약현황 비교분석 수행절차.....	9
[그림 6] 공공조달 규제개선의 킬체인(Kill-Chain) 시스템 개념도.....	10
[그림 7] 계약현황 취합자료 현황.....	10
[그림 8]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의 조달단계별 규제유발요인.....	12
[그림 9] 중앙공공기관 공고종류 기초통계량.....	14
[그림 10] 중앙공공기관 경쟁방법 기초통계량.....	15
[그림 11] 중앙공공기관 조달대상 기초통계량.....	16
[그림 12] 중앙공공기관 공고일수 기초통계량.....	16
[그림 13] 중앙공공기관 가격편차율 기초통계량.....	17
[그림 14] 중앙공공기관 조달방법 기초통계량.....	18
[그림 15] 중앙공공기관 사전규격 공개여부 기초통계량.....	19
[그림 16] 중앙공공기관 낙찰방법 기초통계량.....	19
[그림 17] 중앙공공기관 공동도급/수급 허용 여부 기초통계량.....	20
[그림 18] 중앙공공기관 낙찰율 기초통계량.....	21
[그림 19] 중앙공공기관 선금지급 여부 기초통계량.....	21
[그림 20] 중앙공공기관 100% 이상 실적 요구 기초통계량.....	22
[그림 21] 중앙공공기관 실적 평가방법 설명 기초통계량.....	23
[그림 22] 중앙공공기관 차등적 실적평가 여부 기초통계량.....	23
[그림 23] 중앙공공기관 과업변경/조정 여부 기초통계량.....	24
[그림 24] 중앙공공기관 계약금액 조정여부 기초통계량.....	25
[그림 25] 중앙공공기관 대금지급 기한 기초통계량.....	25
[그림 26] 지방공공기관 공고종류 기초통계량.....	26
[그림 27] 지방공공기관 경쟁방법 기초통계량.....	27
[그림 28] 지방공공기관 조달대상 기초통계량.....	28
[그림 29] 지방공공기관 공고일수 기초통계량.....	29
[그림 30] 지방공공기관 예정 가격편차율 기초통계량.....	29

[그림 31] 지방공공기관 조달방법 기초통계량.....	30
[그림 32] 지방공공기관 사전규격 공개여부 기초통계량.....	30
[그림 33] 지방공공기관 낙찰방법 기초통계량.....	31
[그림 34] 지방공공기관 공동도급/수급 허용 여부 기초통계량.....	32
[그림 35] 지방공공기관 낙찰율 기초통계량.....	33
[그림 36] 지방공공기관 선금지급 여부 기초통계량.....	33
[그림 37] 지방공공기관 100% 이상 실적 요구 기초통계량.....	34
[그림 38] 지방공공기관 실적 평가방법 설명 기초통계량.....	35
[그림 39] 지방공공기관 차등적 실적평가 여부 기초통계량.....	35
[그림 40] 지방공공기관 과업변경/조정 여부 기초통계량.....	36
[그림 41] 지방공공기관 계약금액 조정여부 기초통계량.....	37
[그림 42] 지방공공기관 대금지급 기한 기초통계량.....	37
[그림 43] 규제유발요인 식별 및 규제유발 관리지수 개발.....	39

- 표 목차 -

[표1] 우리나라 공공조달 연혁 및 역사.....	2
[표2] 공공조달 규제식별을 위한 자료원별 분석중점.....	7
[표3] 기본계약현황 비교분석(실적현황 차별점 비교).....	11
[표4] 규제유발 가능지수 평가 및 조사대상 기관 선정기준.....	39
[표5] 규제유발 가능지수 평가기준.....	40
[표6] 5대 분야 13개 규제유발 가능 요인.....	42
[표7] 중앙공공기관의 규제유발 가능요인 건수 및 비율.....	43
[표8] 지방공공기관의 규제유발 가능요인 건수 및 비율.....	43
[표9] 규제유발 관리지수 평가 항목.....	44
[표10] 규제유발지수 D, E 등급에 해당하는 기관 리스트.....	45
[표11] 규제유발지수 D, E 등급에 해당하는 기관 리스트 2.....	48
[표12] 중앙 공공기관 계약관련 규정 보유 현황.....	49
[표13] 중앙 공공기관 규제유발 가능지수 평가등급 D, E 해당 기관 43개 계약관련 규정 보유 현황.....	49
[표14] 지방 공공기관 규제유발 가능지수 평가등급 D, E 해당 기관 47개 계약관련 규정 보유 현황.....	49
[표15] 중앙공공기관 분석대상기관현황.....	50
[표16] 조달단계별 행태적 문제를 유발하는 규제적 요인 분석.....	51
[표17]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계약 관련 규정 및 기준 분석결과 종합.....	51
[표18] 계약규정 문서별 비교기준 및 분석중점.....	52
[표19] 규제식별 분석자료원별 중점식별 규제유형.....	53
[표20] 조달단계별 규제요인 식별 및 문제점, 관리규정 개선방안.....	54
[표21] 2015년 공공기관 자체조달 계약(사업)현황 분석결과와 문제 유형화.....	61
[표22] 2015년 공공기관 자체조달 계약(사업)현황 분석결과와 계약규정 및 기준 연계성.....	63
[표23] 2015년 자체조달 사업현황 문제유형 식별 사례(기관).....	67
[표24] 2015 중앙공공기관 계약(사업)현황 문제유형별 사례(기관별 대상 사업).....	69
[표25] 2015 지방공공기관 계약(사업)현황 문제유형별 사례(기관별 대상 사업).....	73
[표26] 업무처리형태표(85개 항목) 기반 규제유발요인 분석: 미시행 응답률 70% 이상.....	77
[표27] 2015년 공공기관 계약(사업)현황 조사 분석 결과(처리형태별).....	79
[표28] 자체조달 사업현황 분석결과와 처리 유형별 사례.....	79
[표29] 계약사무규칙.....	80
[표30] 적격심사.....	80

[표31] 계약일반조건.....	80
[표32] 협상에 의한 계약.....	81
[표33] 계약사무규칙	81
[표34] 적격심사.....	81
[표35] 계약일반조건.....	81
[표36] 협상에 의한 계약.....	81
[표37] 공공기관별 계약규정 및 평가기준 조달단계별 분석결과(종합).....	82
[표38] 계약사무규칙과 계약총칙 비교분석 결과.....	88
[표39] 조달대상별 적격심사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 일반용역.....	94
[표40] 조달대상별 적격심사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 물품구매.....	99
[표41] 조달대상별 적격심사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 기술용역.....	109
[표42] 조달대상별 적격심사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 시설공사.....	111
[표43]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비교분석 종합(지방 공공기관).....	113
[표44]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자체별 비교분석 (지방 공공기관).....	115
[표45]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 일반용역.....	120
[표46]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 물품구매.....	123
[표47]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 시설공사.....	125
[표48]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	131
[표49] 계약특수조건 세부기준 비교분석(지방공공기관).....	137
[표50] 계약규정 및 기준 운영 사례 기반의 규제적 요인 식별.....	139
[표51] 공공조달 단계별 기초통계량.....	141
[표52]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2.....	142
[표53] 계약사무규칙 제7조의2.....	142
[표54] 계약사무규칙 제5조.....	143
[표55] 계약사무규칙 제8조.....	144
[표56] 계약사무규칙 제 13조, 14조.....	145
[표5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147
[표58]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148
[표59]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148
[표6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49
[표61] 기술등급평가.....	150
[표62]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51
[표63]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상 신인도 가감점 평가항목.....	151

[표64]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152
[표6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3항.....	153
[표66]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기준.....	154
[표67] 대한석탄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기준.....	154
[표6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5조 1항 제 2호.....	155
[표69]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56
[표70] 대한석탄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56
[표7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7조 3항.....	157
[표72]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57
[표73]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158
[표74]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58
[표7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159
[표76]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60
[표7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제 7조 3항 관련].....	160
[표7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9조.....	161
[표79] 대한석탄공사 적격심사항목(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	162
[표80]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	163
[표81]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기술용역 <별표1>.....	163
[표82] 대한석탄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64
[표83]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	165
[표84] 국립공원관리공단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 <별표1>.....	165
[표85]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심사기준).....	166
[표86] 한국석유공사 제 5조(평가기준).....	167
[표87]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3조.....	167
[표88] 국립공원관리공단 제 3조.....	167
[표8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168
[표9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7].....	169
[표91]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 11조.....	169
[표92]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 22조.....	170
[표93]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 24조.....	170
[표9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171
[표95] 조달청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172
[표96] 우체국 물류지원단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172

[표9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 1항, 제6항	173
[표98] 조달청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제 16조	173
[표99] 우체국물류지원단 제 16조	174
[표100]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제 19조 1항, 7항	175
[표101] 우체국물류지원단 제 19조	176
[표10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58조	177
[표103]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제27조	177
[표104] 우체국물류지원단 계약일반조건 제 27조	178
[표105]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2	178
[표106] 조달청 공사계약 계약일반 세부기준 제 22조	179
[표107] 조달청 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 7조	180
[표108] 조달청 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 19조의 5	180
[표109] 조달청 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 43조의 2	181
[표110] 조달청 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 20조	182
[표111] 조달청 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 20조	183
[표112] 조달청 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 46조	183
[표113] 공공기관별 상·하위 계약규정/평가기준 및 계약조건 분석 결과(개선분야별)	184
[표114] 공공기관별 상·하위 계약규정/평가기준 및 계약조건 분석 결과(처리형태/개선분야별)	184
[표115] 공공기관 자체조달 사업현황 및 상·하위 계약규정 조사 통합분석 결과(처리형태별)	185
[표116] 130건의 중소기업 건의과제 검토결과 요약	202
[표117] 중소기업 공공조달 관련 애로사항 기반 분석결과(처리 형태별)	251
[표118] 중소기업 공공조달 관련 애로사항 기반 분석결과(조달 단계별)	251
[표119] 중소기업 공공조달 관련 애로사항 및 관련 규정 분석	252
[표120] 공공조달 및 계약관련 질의회신/유권해석 사례 기반 분석결과(처리 형태별)	257
[표121] 공공조달 및 계약관련 질의회신/유권해석 사례 기반 분석결과(조달 단계별)	257
[표122] 공공조달 및 계약관련 질의회신 및 관련규정 비교분석과 개선점	258
[표123] 규제유형 및 요인에 대한 조달단계별 규제속성별 유사성을 고려한 개선방안	279
[표124] 통합적 개선방안의 5대 분야 13개 규제유발 유형과 연계성	279
[표125] A-a 문제유형	284
[표126] A-b 문제유형	285
[표127] B-a 문제유형	287
[표128] B-b 문제유형	289
[표129] B-c 문제유형	290

[표130] 낙찰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기준의 평가 모듈.....	293
[표131] C-a 문제유형.....	293
[표132] D-a 문제유형.....	295
[표133] D-b 문제유형.....	297
[표134] D-c 문제유형.....	299
[표135] D-d 문제유형.....	300
[표136] E-a 문제유형.....	302
[표137] E-b 문제유형.....	304
[표138] E-c 문제유형.....	306
[표139] 5대 분야 13개 규제유발 가능 요인.....	307
[표140] 공공조달 규제식별 자료원별 진입규제 개선 기대효과.....	308
[표141] 공공조달 규제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차원.....	310
[표142] 2015년 공공기관 자체조달사업의 5대 분야 13개 규제유형 개선 기대효과 세부분석	316

요 약 문

1.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조달 규모는 국가 GDP의 약 7.3% 수준인 110조 원 규모로 분석되고 있음. 이러한 공공조달 시장에는 수요자로서 50,366개의 수요기관과 공급자로서 330,983개의 조달업체가 참여하여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다양한 물품, 용역 및 시설공사를 공급하고 있음. 특히, 약 33만 여개의 조달업체 중 전체의 97.2%에 해당하는 31만 여개는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음.
- 국내 공공조달 및 계약의 역사는 발전 단계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당시의 국내·외적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달 및 계약 관련 법제도가 시행, 보완 및 개선되어 왔고, 특히 2002년 이후에는 현재와 같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대표되는 전자조달시스템 환경으로 이행하였음.
- 일반적으로 중앙조달은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청이 계약과정 전반에서의 법규 준수, 입·낙찰 과정에서의 쟁점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집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조달 및 계약집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음. 그러나 개별 수요기관의 경우 복잡한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 담당자의 잦은 보직이동에 따른 업무 숙련도 부족 등으로 조달 및 계약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쟁점과 현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조달업체의 입장에서는 규제로 인식될 가능성도 많음.
- 이와 같은 융·복합적인 공공조달 규제로 인해 규제유발 유인의 상호작용과 문제의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복합·구조적 연결 관계를 고려한 규제 유발 요인의 식별 및 개선방안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공공조달 전반의 규제 개선을 조달 및 계약 관련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둘째 다양한 공공기관의 공공조달 및 계약체계의 정합성, 신뢰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고 셋째, 판로지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유효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공조달 환경 구축을 위한 규제의 식별과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함.

■ 연구의 수행절차 및 방법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 및 공공기관별 계약(사업)현황 및 업무처리 실태조사, 규제식별, 규제개선 및 이행력 제고 방안 마련으로 4단계에 걸쳐 수행예정임.
- 먼저 운영실태조사 단계에서는 2015년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의 자체 조달을 위한 공공계약 운영 및 업무처리형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유발 요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 규제식별단계에서는 전 단계를 통해 식별된 규제유발 요인을 규제의 형식과 내용을 고려하여 제도적, 행태적 차원에서 4대 유형으로 분류하여 공공조달 규제 식별 및 구체화함. 세 번째 단계에서는 4대 유형으로 식별된 공공조달 규제의 행태와 속성을 고려하여 규정 및 기준의 폐지, 완화, 합리화와 서비스 개선 관점에서 규제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법·제도적 지원기반 구축방안과 개선방안 실행의 타당성을 확보를 위한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함.

2.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자체조달사업 분석

■ 공공조달 진입규제 현황 조사 주요 절차

- (1단계) 자료수집 : 공공조달 계약현황 조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구해 자료수집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약 1개월 간 중앙공공기관 120개 기관, 지방공공기관 145개 기관으로부터 2015년 자체조달 계약(사업)실적 약 55,336건의 자료를 수집하였음.
- (2단계) 기초 통계량 분석 : 수집된 자료의 정제과정을 거쳐 전반적인 운영 특성 파악을 위해 실행하였음.
- (3단계) 규제식별(단일차원) : 계약(사업)현황자료를 기반으로 24개의 항목과 계약업무처리형태 85개 항목을 통해 규제유발 요인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규정의 합치성을 분석함.
- (4단계) 규제식별(다차원) : 계약현황 및 업무처리형태와 계약규정 및 기준 규제요인 식별 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함.
- (5단계) 규제분류 및 유형화 : 2015년 자체조달 실적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제유발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6단계) 관리지수개발 : 관리수단으로 “규제유발 가능지수”를 개발하여, 규제유발 가능 수준을 5등급(A~E)으로 평가하고, 규제유발 가능성이 높은 D, E등급 기관을 선정함.
- (7단계) 대상기관 선정/조사 : 계약규정 및 평가기준 비교분석 대상기관별 계약총칙,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에 대한 분석.
- (8단계) 개선방안 도출 : 계약현황/업무처리실태, 계약규정/기준, 중소기업 건의 사항 및 계약규정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식별된 규제유발 요인별 개선방안을 도출.
- (9단계) 기대효과 분석 : 공공조달 규제식별 자료원(법령, 중소기업 건의사항, 자체 조달사업)별 진입규제 개선과 조달단계별 핵심 규제적 요인을 제거할 경우 기대되는 고용 및 경제적 측면의 기대효과 분석.

3. 2015년 공공기관 자체조달사업 규제유발 요인별 현황분석

■ 중앙공공기관 기초통계량 분석

- 공고종류 기초통계량
 - 총 48,688건의 입찰 건수 중 일반공고가 38,082건으로 80%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긴급 공고의 경우 3,955건(8.12%)건의 수준으로 평균 10건 중 1건이 긴급사유 공고를 내고 있음.
- 경쟁방법 기초통계량
 - 중앙공공기관의 경우 제한경쟁이 22,007건(45.2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수의계약 방법이 20,469건(42.04%)로 비슷한 수준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반면에 일반경쟁은 5,464건(11.22%)로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에 1/4 수준이며, 지명경쟁의 경우 511(1.05%)로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의 1/40 수준임.
- 조달대상 기초통계량
 - 중앙공공기관들의 조달대상 비중을 살펴보면, 물품구매가 18,432건(37.86%)로 가장 많았으며, 용역이 16,766건(34.44%), 시설공사가 12,746건(26.18%)으로 비율이 특정 조달대상에 크게 치우쳐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공고일수 기초통계량
 - 중앙공공기관의 공고일수 현황을 보면, 5일 미만인 경우가 2,589건(5.32%)이었고, 5일 이상 10일 미만인 경우가 26,236건(53.89%), 10일 이상인 경우가 11,754건(24.14%)로 분석됨. 대

다수의 기관에서는 최소 공고기간인 5일을 지키고 있지만 5.32%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

○ 가격편차율 기초통계량

- 예정가격 편차율의 경우 119개 기관 중 87%(42,823건)가 넘는 계약집행 사례에서 예정가격 편차가 -2%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미만의 경우 1,193건으로 전체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이 없는 경우는 -2%미만의 약 4배인 4,672건으로 9.60%를 차지하고 있음.

○ 조달방법 기초통계량

- 119개의 중앙공공기관 중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하고 있는 기관은 13,176건(27.06%)에 불과했으며, 각자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체조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29,558건(60.71%)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남.

○ 사전규격 공개여부 기초통계량

- 사전규격 공개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면, 119개의 중앙공공기관의 사업건수 중 9,160건(18.81%)만이 공개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기관에서는 사전규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낙찰방법 기초통계량

- 찰방법의 경우 최저가입찰 또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이 17,153건(35.2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적격심사가 14,807건(30.4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공동도급/수급 허용 여부 기초통계량

- 공동도급 및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는 6,092건(12.51%)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기관과의 차이가 매우 큼.

○ 낙찰율 기초통계량

- 전체 입찰 건 중 76.77%가 낙찰률 85%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8%를 초과하는 경우는 45.7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음.
- 반면에, 전체입찰의 0.25%에 해당하는 계약 건에서는 50% 이하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데, 낮은 비율이지만 적정 대가보장측면과 안정적 계약이행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선금지급 기초통계량

- 선금지급은 의무가 아니지만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영세한 중소기업이 70%이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선금지급의 확대가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 100%이상 실적요구 기초통계량

- 수요기관인 중앙공공기관에서 업체에게 100%이상의 실적을 요구한 경우는 1,245건(2.56%)으로 나타났으며, 기본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20,919건(42.97%)으로 대부분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실적 평가방법 기초통계량

- 당해 입찰 건에 적용된 평가기준(적격심사, 협상계약 기준 등)에서 수행실적 평가 시 동등 및 유사실적 인정에 대한 구체적 평가방법 내용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2,803건(5.76%)에 불과함.

○ 차등적 실적평가 여부 기초통계량

- 창업초기 기업 및 소기업에 대한 차등적 실적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입찰 건은 전체의 3.09%에 해당하는 1,504건에 불과함

○ 과업변경/조정 여부 기초통계량

- 계약 이후 과업변경을 요구한 사례 중 3,062건(6.29%)은 발주기관의 요구로, 946건(1.94%)은 수주업체의 요구로 이루어져 발주자에 의한 요구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계약금액 조정 여부 기초통계량

-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발주자와 수주자 구분 없이 증액 조정된 경우가 2,330건(4.79%), 감액된 경우가 1349건(2.77%)로 증액되는 사례가 감액되는 사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비조정인 경우는 29,859건으로 전체 61.33%를 차지함.

○ 대금지급 기한 기초통계량

- 대금의 지급기한의 경우 계약이 완료된 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의 입금이 필요하지만 전체의 10.35%인 5,041건에서 5일을 초과하여 입금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공공기관 기초통계량 분석

○ 공고종류 기초통계량

- 총 6,648건의 입찰건수 중 일반공고가 5,622건으로 84.57%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긴급공고의 경우 686건(10.32%)의 수준으로 평균 10건 중 1건이 긴급사유 공고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경쟁방법 기초통계량

-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제한경쟁이 3,404건(51.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수의계약 방법이 2,315건(34.82%)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반면에, 일반경쟁은 795건(11.96%)로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에 비해 3분의 1이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앙조달(조달청)의 일반경쟁 비율이 32.07%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라 할 수 있음.

○ 조달대상 기초통계량

- 지방공공기관들의 조달대상 비중을 살펴보면, 물품구매가 2,592건(38.99%)로 가장 많았으며, 용역이 2,108건(31.71%), 시설공사가 1,849건(27.81%)으로 비율이 특정 조달대상에 크게 치우쳐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공고일수 기초통계량

- 방공공기관의 공고일수 현황을 보면, 5일미만인 경우가 668건(10.05%)이었고, 5일 이상 10일 미만인 경우가 4,361건(65.60%), 10일 이상인 경우가 592건(8.90%)로 나타남. 대다수의 기관에서 최소 공고기간인 5일을 지키고 있지만 10.05%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지키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가격편차율 기초통계량

- 예정가격 편차율의 경우 전체 6,634건의 계약집행 사례 중 6,261건(94.18%)의 사례에서 편차가 -3%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달방법 기초통계량

- 137개의 지방공공기관 중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하고 있는 기관은 5,900건(88.75%)으로 나타남.

○ 사전규격 공개여부 기초통계량

- 지방공공기관의 사전규격 공개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면, 137개의 계약이행 건수 중 1,326건(19.95%)만이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있었으며, 70%이상의 기관에서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음.

○ 낙찰방법 기초통계량

- 지방공공기관의 낙찰방법 경우, 최저가입찰 또는 제한적 최저가입찰이 3,315건(50.03%)으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적격심사가 14,807건(30.41%)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공동도급/수급 허용 여부 기초통계량

- 공동도급 및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는 709건(10.66%)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기관과의 차이가 매우 큰 실정임.

○ 낙찰율 기초통계량

- 전체 입찰 건 중 80.42%가 낙찰률 85%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8%를 초과하는 경우는 40.3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음. 반면에, 전체입찰의 0.30%에 해당하는 계약 건에서는 50% 이하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데, 낮은 비율이지만 적정 대가보장 측면과 안정적 계약이행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선금지급 기초통계량

- 전체 계약 건 중 선금이 지급된 경우는 603건(17%), 미지급하는 경우 4,993건(75%)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100%이상 실적요구 기초통계량

- 수요기관인 지방공공기관에서 업체에게 100%이상의 실적을 요구한 경우는 49건(0.74%)으로 나타났으며, 기본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1,744건(26.23%)으로 대부분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실적 평가방법 기초통계량

○ 차등적 실적평가 여부 기초통계량

- 창업초기 기업 및 소기업에 대한 차등적 실적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입찰 건은 전체의 5.40%에 해당하는 359건에 불과함.

○ 과업변경/조정 여부 기초통계량

- 계약 이후 과업변경을 요구한 사례 중 454건(6.83%)은 발주기관의 요구로, 124건(1.87%)은 수주업체의 요구로 이루어져 발주자에 의한 요구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계약금액 조정 여부 기초통계량

-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발주자와 수주자 구분 없이 증액 조정된 경우가 253건(3.81%), 감액된 경우가 558건(8.39%)로 증액되는 사례가 감액되는 사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금지급 기한 기초통계량

- 대금의 지급기한의 경우 계약이 완료된 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의 입금이 필요하지만 전체의 33.47%인 2,225건에서 5일을 초과하여 입금한 것으로 나타남.

4. 규제유발요인 식별 및 규제유발 관리 지수 개발

■ 규제유발 가능지수 평가 및 조사대상 기관 선정기준

- 앞서 분석한 기초통계량 조사를 통해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분석에 활용될 핵심적인 규제유발 가능요인을 식별.
- 규제유발 관리지수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평가되며, 규제유발 가능성이 높은 D, E등급의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세부 규정을 분석하는 데 활용함.
- 아래 표는 규제유발 요소 해소 관점에서 5대 분야 평가기준에 따라 규제유발 수준을 구하는데 평가 항목 수와 배점을 보여줌.
- 입찰참가기회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에는 평가항목 7개로, 항목 당 배점 10점 만점으로, 총 70점 만점을 부여하고, 와 같은 방식으로 공정한 평가/ 낙찰 저해 요인에는 20점, 적정대가 보장 저해 요인에는 60점, 안정적 계약이행 저해요인에는 50점과 신속한 사후관리 저해 요인에 40점으로 총 240점 만점으로 평가가 진행됨.

■ 5대 분야 13개 규제유발 가능 요인 식별

- 2015년 자체조달 실적현황에 대한 기초통계량 분석결과에 따라 기관유형별, 조달대상별 규제 유발 가능 항목의 상호작용 및 연관성을 분석함.
- 적정성 대가보장 저해요인, 입찰참가기회 확대 저해요인, 안정적 계약이행저해요인, 공정한 평가/낙찰저해 요인, 신속한 사후관리 저해요인 등 5대 규제 유발 차원이 도출됨.
- 세부 규제유발 가능요인으로써 13개 항목이 식별됨.
- 규제유발가능 요인을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고, 식별된 5대 분야 13개 규제유발 가능요인 중 문제가 되는 사업 건수가 많은 항목들을 살펴봄.
- 중앙공공기관의 경우 “사전규격공개 미실시 사례”의 경우가 120개 기관 중 110개 기관(91.67%)에서 발생하였으며, 개별 사업 건수로는 48,688건 중 29,062건(59.69%)이 발생하였음. 그 다음으로 많은 항목으로는 “선금지급 미실시 사례”, “예정가격 편차율 -2%, -3% 초과”등의 규제유발 요인 항목에서 높은 비율의 사업 건수를 보이고 있음.
- 지방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중앙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사전규격공개 미실시 사례”의 경우

가 137개 기관 중 74개 기관(54.41%), 개별 사업 건수로는 6,648건 중 4,841건(72.82%)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 많은 항목으로는 그 다음으로 많은 항목으로는 “선금지급 미실시 사례”, “예정가격 편차율 -2%, -3% 초과”등의 규제유발 요인 항목에서 높은 비율의 사업 건수를 보이고 있음.

- 문제유형(제정·설정·적용·해석의 오류)을 설정하여 향후 규정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활용함.

■ 규제유발 가능지수 평가 및 조사대상 기관 선정

- 규제유발 관리지수 평가를 통해 도출된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기관 리스트이다. 해당 기관들은 A~E 등급 중 D, E등급에 해당하는 기관들이며, 중앙공공기관 중 D등급을 받은 기관은 25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18개이며, 지방공공기관 중 D등급을 받은 기관은 25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19개임(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5.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상·하위 규정 분석

■ 공공기관의 계약관련 규정 보유 현황

- 비교대상이 되는 각 기관별 자료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규정 자료들이며, 해당 자료는 자료요청에 의한 직접제출,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자료를 구성함.
- 120개의 중앙공공기관은 계약규정총칙 82개, 적격심사 64개, 협상에 의한 계약 20개, 계약일반조건 37개, 계약특수조건에는 44개를 계약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음.
- 그 중, 규제유발 가능지수 평가등급을 D, E를 받은 중앙공공기관 43개에는 계약규정총칙 33개, 적격심사 30개, 협상에 의한 계약 7개, 계약일반조건 26개, 계약특수조건에는 28개를 계약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음.
- 지방 공공기관 137개의 경우는 행자부 예규 제 34호, 제35호에 따라 계약을 집행하고 있고 17개 광역지자체 중 13개 광역지자체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분석하였음.

■ 대상기관별 규정 식별 및 주요 분석

- 계약규정 및 평가기준 대상기관별 계약총칙,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에 대한 분석을 보여줌.
- 계약규정총칙의 경우 입찰참가제한, 평가기준, 대가보장과 관련한 조항 호 중심으로 비교함.

-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적용구간 구분 및 적격통과 점수 등의 적정성,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평가 여부, 적격심사 주요 평가항목, 배점비중, 평점기준의 차이점 식별, 낙찰 하한율의 차이점과 기재부/조달청/행정자치부 기준을 비교분석함.
- 계약일반조건의 경우, 비교 기준문서와 동일하지 않으면서 수주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식별 하고, 수주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조항이 추가 되었는지 식별함.
- 계약특수조건의 경우, 당해 입찰의 과업내용 및 계약 이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내용 및 항목 추가 여부와 수주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함.

■ 계약현황 및 규정/기준 비교분석을 통한 조달단계별 규제요인 식별(종합)

- 입찰이전단계에서의 규제적 요인으로는 ‘물품의 공급과 제조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부재’, ‘사전규격공개 이의제기 의견에 대한 처리방법 및 본 입찰공고와 연계성’, ‘사업예산 산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가 있음. ‘물품의 공급과 제조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부재’의 문제는 물품 구매(공급) 또는 제조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어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제조물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 증명 등을 받기 인력, 설비 등에 대한 투지비용부담이 증가함. ‘사전규격공개 이의제기 의견에 대한 처리방법 및 본 입찰공고와 연계성’ 문제는 현재 사전규격공개가 모든 입찰 건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한계점과 별개로 사전규격이 공개된 입찰 건에 대한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영여부 등도 회신하지 않고 본입찰 공고로 게시함. 또, 사전규격공개 과정에서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요소정정 목적과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음. ‘사업예산 산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 문제는 시설공사 등에서 최초 예산책정 및 기초금액 확정과 관련된 서류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증감요소가 있어도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함.
- 입찰단계에서의 규제적 요인으로는 ‘구체적인 계약조건 및 산출내역 조건 등 입찰공고문이 아닌 계약특수조건 등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포함’과 ‘계약법령 위임범위를 하회하는 수의 계약 금액 기준요건 운영 적정성’이 있음.
- 평가 및 낙찰 단계에는 ‘시설공사 등에서 거리, 무게, 면적 등에 따른 상세 실적 평가기준 부재’, ‘10억 원 이하 물품구매 입찰에서 실적평가’, ‘고시금액 미만 물품구매 입찰에 대한 별도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미운용 사례’,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실적평가 미시행 및 기본배점 및 가점 차등화 해소’, ‘신용평가등급 평점급간의 과도한 차등화 해소’, ‘적격통과 점수 수준의 과도함’, ‘신인도가점 평가항목 점수 편차 해소 필요’가 있음.
- 계약이행단계에는 ‘입찰건별 사전 검증 또는 공개되지 않는 계약특수조건 운영’, ‘법령에 없는 사업대가 감액 조건 설정 예방’, ‘발주자에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사업대가 감액 조건 설정 예방’, ‘낮은 선금 지급 실태 개선을 위한 선금지급 의무화’, ‘낮은 선금 지급 실태 개선을 위한 선금지급 의무화’와 같은 규제요인이 있음.
- 사후관리단계에는 ‘물품구매에 대한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기간 명시’, ‘대가지급 기한 연장’의 규제요인이 존재함.

■ 공공기관 자체조달 계약(사업)현황 조사 분석

○ 2015년 공공기관 자체조달 사업 전체 56,336건을 분석한 결과 중앙공공기관 120개, 지방공공기관 137개에서 총 13건의 유형의 규제적 요인이 식별됨. 아래 표는 2015년 공공기관 계약(사업)현황 조사 분석 결과를 처리형태별로 보여줌.

- 식별된 규제적 요인 중 약 77% 10개 유형은 제도개선 4건, 계약실무 과정의 재량을 통한 행태적 오류 6건으로 확인됨.
- 법령 위반 및 행태적 오류가 복합적으로 존재하여 중복된 경우는 1건이었으며, 순수한 법령위반으로 판단된 것은 2건임.
- 행정규칙 위반 및 행태적 오류가 복합적으로 존재하여 중복된 경우는 2건이었으며 순수 행정규칙을 위반한 것은 1건으로 확인됨.

○ 자체조달 계약(사업)현황 분석결과의 처리 유형별 사례 분석

- 법령/행정규칙 위반한 주요내용으로는 ‘예정가격 편차율 - 2%(중앙), -3%(지방) 초과하는 입찰 발생’, ‘최소 공고기간 5일 이전 미준수 입찰공고 시행’, ‘공공기관의 2015년 자체 조달 계약 건 중 중앙 공공기관 2.56%, 지방공공기관 0.74% 수준의 1배 이상 실적 요구’, 협상에 의한 계약 집행 시 세부평가기준 중 특정 평가항목의 배점과다 배점 사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중 설정 자의성’, 6)계약완료 후 대금지급이 5일 이상 초과된 경우가 중앙 공공기관 약 10.35%, 지방 공공기관 약 33.47%로 비교적 높은 수준’ 이 있음.
- 식별된 규제적 요인 중 제도개선에는 ‘예정가격 대비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투찰’, ‘중앙 공공기관 약 18.81%, 지방공공기관 약 19.95%로 20% 미만의 낮은 사전규격 공개 수준’, ‘공공기관의 2015년 자체조달 집행 계약 건 중 중앙 공공기관 약 14.7%, 지방 공공기관 약 9.1% 낮은 선금 지급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차등적 평가 미시행 자체조달 사업 건수가 중앙 공공기관 약 3.1%, 지방 공공기관 약 5.4% 수준’ 이 있음.
- 행태적 오류는 총 6건이 발생했으며,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과업변경 요구 시 계약금액 조정은 감액비율이 많고 특히 발주자에 의한 과업변경 요구 시 감액비율이 2배 이상 높음’, ‘발주자에 의한 빈번한 과업변경 요구’, ‘중앙 공공기관 약 8.66%, 지방 공공기관 약 10.44%에서만 사전 실적평가 방법 등 낙찰자 선정기준 명확히 제시함’이 있으며, 3건은 앞선 법령/행정규칙 위반과 중복됨.

■ 상·하위(공공기관 자체조달) 계약규정 및 기준 비교분석 기반 규제요인 식별

□ 공공기관별 계약규정 및 평가기준 조달단계별 비교분석

(1) 계약사무규칙과 계약총칙 비교분석

- 기준제정 문제유형의 입찰단계에는 입찰의 성립에 관한 내용이 일부기관에만 명시되어 있음.
- 기준설정 문제유형의 입찰단계는 중소기업자가 경쟁 제품의 구매 위탁의무에 대한 예외가 있고, 청렴원칙에 대한 설명방식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설명하는 방식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수의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이 상이함.
- 기준설정 문제유형의 평가 및 낙찰 단계에는 ‘낙찰자 결정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상이함.
- 기준설정 문제유형의 계약이행단계에는 계약방법이 기관별로 상이하며, 명시하지 않는 내용이 존재하며,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이 가능한 범위가 서로 다르다. 또, 선금지급의 지급 범위가 상이함.
- 기준설정의 사후관리단계에는 대가의 지급 기한이 상이하여, 계약이행 후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계약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검사 및 검수의 기준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음. 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제한 기관별로 범위가 상이함.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

① 조달대상별 적격심사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일반용역)

○ 일반용역에 대한 조달대상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비교분석 결과 8개의 차이점이 존재함

- 먼저 1)신인도 평가 항목이 단일차원 평가방식과 다차원 평가방식으로 구조적으로 2개가 있어 상이성이 존재함. 2)신인도 평가 시 주요 인증 및 조건의 배점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같은 내용의 항목이더라도 배점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음. 3)실적평가 인정기간이 조달청 기준보다 짧은 곳도 존재함. 4) 경영상태평가의 최고 등급 부여 폭이 달라 최고점 부여하는 등급의 차이를 보였고, 5)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곳도 있음. 또, 6)신용평가등급의 평점 차가 0.1점 나는 곳도 있으며, 7)결격사유 심사항목 중 폐기물 용역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곳도 있음. 마지막으로 8)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 부여가 없는 곳도 있음.

② 조달대상별 적격심사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물품구매)

○ 기준설정 문제유형의 평가 및 낙찰단계에서는 비교 결과 14건, 기준제정 문제유형의 평가 및 낙찰단계는 1건이 분석됨

- 기준설정 문제유형의 평가 및 낙찰단계에서는 먼저 1)기관별 물품구매 적용범위가 상이하고, 2)물품구매 적격심사 심사자료 제출기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3)적격심사 분야별 심사기준일의 차등이 적용되며, 4)납품실적 인정기간의 축소운영의 차이가 있음. 또, 5)낙찰자 결정 시 종합평점의 하양조정이 있으며, 6)납품실적 평가 시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 초기기업 등에 대한 실적평가 기본가점이 기관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의 사업에서는 7) 사업에서의 납품실적 평가 기준이 상이하며, 8)신인도 평가 항목 상이성, 9)신인도 평가 시 주요 인증 및 조건의 배점 차이 10)신인도 평가 시 과도한 계약이행 성실도 요구 등이 있음. 11)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신인도 평가를 하지 않는 기관도 있었으며, 12)경영상태 평가 방법 및 평점기준의 차이도 있었음. 또, 13)경영상태 평가 시 창업초기기업 신용평가 우대 여부에 대한 차이점도 존재함. 마지막으로 14) 납품실적 차등 평가 시 창업초기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창업기간을 축소하는 차이도 있음.
- 기준제정 문제유형의 평가 및 낙찰단계에서는 10억 원 이상의 사업에서 1)기술능력 평가 시 기술등급 평가 미실시.

③ 조달대상별 적격심사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기술용역)

○ 기술용역분야의 조달대상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비교한 결과 기준설정유형의 평가 및 낙찰 단계에서 6가지의 차이점이 분석됨.

- 1)적격심사항목 및 재범한도액 내의 감점항목이 없으나, 결격사유가 있을 시 감점하는 곳이 존재함. 2) 수행능력 평가 배점이 세분화되어 추정금액에 따라 상이한 곳이 있으며,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항목 중 특별 신인도에 대한 가점 차이가 존재함. 또, 4)심사 기준 일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곳도 있으며, 5)낙찰자 결정 시, 선순위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도 있음. 마지막으로, 6)결격 사유의 심사 항목이 일원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④ 조달대상별 적격심사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시설공사)

○ 시설공사분야의 조달대상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비교한 결과 기준설정유형의 평가 및 낙찰 단계에서 4가지의 차이점이 분석됨.

- 1) 기관별 공사 적용범위의 차이가 존재한다. 2)신인도 평가 시 신인도의 배점 구간을 최대 2배로 하는 곳도 있으며, 3)추정가격이 50억 미만인 공사에서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항목의 적용을 실시하지 않은 곳도 있음. 마지막으로 4)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평가 시 추가로 감점요소를 적용하는 곳도 있음.

(3)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

①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일반용역)

- 일반용역에 대한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을 비교한 결과, 기준설정문제유형에서 계약이행단계 2건, 사후처리단계 1건이 분석됐고, 기준제정문제유형에서 계약이행단계와 사후처리단계가 각각 1건 씩 분석됨.
- 먼저 기준설정유형의 계약이행단계에서는 1)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처리 받을 시 상계처리여부와 2)과업내용의 변경 시 대가지급 및 계약금액 청구 기한이 상이함. 사후처리단계에서는 3)대가의 지급기간을 4일을 초과하여 지정 운영하는 곳이 있음.
- 기준제정유형의 계약이행단계에서는 4)계약 연장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기간 종료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후 계약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없는 경우도 있음. 마지막 사후처리단계에서 5)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에 대한 조항이 없는 기관이 존재함.

②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물품구매)

-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을 비교한 결과, 기준제정문제유형에서 계약이행단계 1건이 분석됐고, 기준설정문제유형에서 계약이행단계 1건, 사후처리단계 2건이 분석됨.
- 기준제정문제유형의 계약이행단계에서는 1)단가 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단순한 차이가 존재함.
- 기준설정문제유형의 계약이행단계에서는 2)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이 가능한 조정가능일수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음. 사후관리단계에서는 3)계약이행 완료 후 검사를 해야 하는 기간이 서로 다르며, 4)대가의 지급기한이 상위 법령 보다 긴 경우도 존재함.

③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시설공사)

-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을 비교한 결과, 기준제정문제유형에서 계약이행단계 2건, 사후관리단계 1건이 분석됐고, 기준설정문제유형에서 계약이행단계와 사후처리단계에서 각각 5건 씩 분석됨.
- 기준제정문제유형의 계약이행단계에서는 1)채권 양도 시 추가조건을 요구하는 곳이 존재했고, 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불이행이 있음. 사후관리단계에서는 3) 발

주자가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 명시가 상이함.

- 기준설정문제유형의 계약이행단계에서는 4)공사 계약 시 계약문서의 과다요구, 5)계약보증금 납부의 차별, 6) 공사의 손해보험 관련 규정의 상이성, 7) 휴일 및 야간작업에 대한 허용 여부의 차이, 그리고 8)발주기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대상자의 부담이 있음. 사후 관리단계에서는 9)하도급 대가지급에 대한 투명성 문제, 10)계약금액조정 시 관련 용어의 통일성 부재, 11)설계변경 시 부당한 계약금액의 조정문제, 12) 기성대가의 지급 기간의 차이, 그리고 13)계약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잔금 지급 기일의 차이가 있음.

(4)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

○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 비교 결과 기전설정문제유형의 평가 및 낙찰 단계에서 12건이 분석됨.

- 먼저, 1)기관별 평가위원 선정 근거 규정이 상이하고, 2)평가위원 선정의 적절성 및 공정성 문제, 3)평가위원 구성 인원수의 상이성, 4)평가위원 자격의 부재가 있음. 또, 5)제안서평가 대상사업의 유무, 6)제안서의 평가 항목 및 평가방식이 기관마다 상이함. 또, 7)배점 비율의 차이가 존재하며, 8)평가점수 산출방법에도 차이가 나고, 9)평가 결과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도 부재, 10) 평가수당지급 기준의 차이가 존재함. 마지막으로 11)신용평가등급의 평점 표현 방식이 상이하며, 12)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이 명시되어있지 않는 곳도 존재함.

(5) 계약특수조건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지방공공기관)

○ 계약특수조건에 대한 세부기준을 비교한 결과 기준설정문제유형의 계약이행단계에서 부당한 계약이행 조건을 특약형태로 반영한 법령위반의 사례가 분석됨.

□ 상·하위 계약규정 분석결과

○ 공공기관별 상·하위 계약규정, 평가기준 및 계약조건 분석 결과 개선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영상태평가, 신인도, 실적평가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약 60%로 확인됨.

- 상·하위 규정 분석결과를 처리형태와 개선분야로 통합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법령위반이 대가 및 대금 지급과 관련한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낙찰자 선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는 경영상태평가, 신인도평가, 실적평가, 결격사유심사, 평가 및 배점한도와 관련하여 36.25% 정도의 문제점들이 식별되어 중점 개선 분야로 판단함.

○ 자체조달 사업현황과 상·하위 계약규정 현황 분석결과 식별된 규제요인을 처리 형

태별로 구분.

- 전체의 약 13.5%인 13건(중복 제외 시 9건)이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기재부 계약예규, 행자부 예규 제 34호, 제 35호와 상치되는 계약관행 또는 규정을 보유한 것으로 식별됨.
- 체의 약 60%는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위배하지 않았으나 계약실무 과정에서 규제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식별됨.
- 통합분석 결과 공공기관별 계약규정에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되거나 특별한 규제적 요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단순한 차이에 해당하는 사안은 19건으로 동일함.

6. 공공조달 규제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 국가·지방·공공계약 법령 진입규제 개선방안

(1) ‘용역계약 등에서 총액확정계약 후 사후정산 행위 금지’

- 현재 총액이 확정된 물품, 용역, 시설공사에서는 과업변경 요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 정산을 통해 감액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사후정산 필요성이 낮은 일반적인 용역에 대해서도 편의상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 조정 사유도 아닌 모든 용역이 완료된 이후 발주자 정산을 통해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당특약 또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총액확정계약방식에서의 사후정산 요건 설정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함.

(2) ‘국가계약법령 적용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 조달업체의 입장에서 동일한 물품을 공급하면서 동일한 적격심사를 받아 물품을 공급하면서 단순히 적용받는 계약법령에 따라 다른 대가가 지급된다는 점에 대한 수용력이 낮고 또한 국가의 공공조달 대가 산정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일이 필요함.
- 특히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국가계약법령 적용 물품구매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을 지방계약법령 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 조달업체에게 보다 안정적인 계약이행 환경 조성 가능함.

(3) ‘제조 및 공급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공공기관별 선금지급 채권확보 이자율 하향 조정하여 통일’

-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하게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지방계약법령도 선금지급 채

권확보 이자율을 산정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부담 완화 필요함.

(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적용 해제’

- 사실상 지역 내 농공단지에 속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품의 경우 단지 내 다른 기업들의 동일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지역제한 요건을 설정할 경우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해당 업체들이 입찰과정에서 기존 대비 과도한 입찰참가기회를 제약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자체조달사업 개선과제 진입규제 개선방안

(1)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율 -2%(중앙), -3%(지방) 준수 강화 및 중앙공공기관 산정 범위율 +-2% 단일화를 통한 실질 낙찰율 상향’

-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의 공통 또는 개별적으로 통일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율을 설정하여 적용이 필요하며,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행자부 예규 제34호’에서 $\pm 3\%$ 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 공공기관에서도 계약예규를 통하여 $\pm 2\%$ 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토록 의무화가 필요함.
- 특히,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기초금액은 사업예산과 동일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정대가 보장 관점에서 기초금액은 최초 사업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결정된 예정가격이 실제 소요 사업예산 대비 과도하게 감액되지 않는 수준에서 예정가격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계약이행 및 검사검수 후 대금지급 기한의 과도한 지연(30일 이상) 해소를 위한 지급절차 기한 규정의 간주화’

- 향후 검사검수 일정과 대금지급 일정은 간주조항으로 포함시켜, 14일 이내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4일 초과 시 자동으로 검사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동시에 검사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조달업체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5일 이내 대금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함.
- 또, 수요기관의 입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충분하고도 안정적인 검사검수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면, 현행과 같이 7일의 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공신력 있는 증빙수단을 통해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추가적인 검사검수 기간 부여 등도 검토하여 수요기관의 납품검사 권한 보장 강화 역시 함께 검토가 필요함.

(3) ‘입찰 공고 시 최소 입찰공고 기간 위반 (최소 5일) 예방 및 수의계약의 입찰공고

(업무일 기준 3일 이상) 의무화‘

- 산출내역서와 관련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입찰에 책정된 예산의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사전규격공개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책정 근거인 발주기관에 의한 산출내역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 검증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단, 모든 입찰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고시금액 이상 일반용역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별도의 대가산정기준 및 표준품셈 등이 있는 용역 등에 우선 적용하여 과업의 범위 및 수준에 따라 안정적 이행이 가능한 적정대가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함.

(4) ‘사업규모대비 과도한 실적요구 관행 금지(물품 및 용역분야 고시금액 미만 실적제한 폐지)‘

- 사전규격 공개 대상 금액의 하향조정 또는 전면적인 하향조정이 어려운 경우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입찰과 제조물품 입찰에 한해서만 전면적인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토록 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사전규격공개를 하더라도 조달업체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규격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하여 사전규격공개 내용에 대해 적법성,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의무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 제도를 병행해야 함.

(5) ‘선금 지급 신청/정산 서류 부담을 완화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 기본적으로 현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에 따른 선금지급 규정을 현재와 같이 업체의 신청에 의해 수요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선택적 조항에서 원칙적으로 지급하고, 조달업체가 지급 예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규정 개정이 필요함.
- 선금에 대한 최소한의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현재도 적용되고 있는 국가 및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과 농협(중앙회 포함), 수협(중앙회 포함), 임협(중앙회 포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실제 금전적 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각각의 조합 등에 속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각서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함.

(6) ‘사전규격공개 기준 확대(5천만 원 미만 포함) 및 검토의견 기재 의무화‘

- 사전규격 공개 대상 금액의 하향조정 또는 전면적인 하향조정이 어려운 경우,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입찰과 제조물품 입찰에 한해서만 전면적인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토록 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사전규격공개를 하더라도 조달업체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을 경우, 사

전규격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하여 사전규격공개 내용에 대해 적법성,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심사 후 의무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 제도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이와 유사한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경우 ICT 용역에 대한 분리발주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 준수여부 등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7)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한 기본가점 시행’

- 현재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실적 평가(5점 배점) 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2점, 창업초기기업(5년 이내) 3점의 기본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또, 실적평가 시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는 일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창업초기기업 인정을 2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사실상 실효성이 낮게 운영되고 있음.

(8) ‘부당한 감액계약 예방 위한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제작/활용’

-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 조달대상별 과업(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분쟁조정, 판례, 유권해석, 질의회신 사례 등을 조사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유사 속성을 보유한 과업변경 및 대가조정 현안에 대한 표준조정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함.
- 또,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계약일반 또는 특수조건에서 규정하는 과업(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항목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참조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화해야 함.

■ 중소기업 건의 개선과제 진입규제 개선방안

(1) ‘직접생산확인기준 제정 등 시장진입 통합지원을 통한 컨설팅 비용 절감’

- 공공조달 시장진입 단계에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물품의 등록과 공급을 위해서는 물품목록화,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이 필요하나 새로운 물품인 경우 해당 과정에서 별도의 물품목록화가 어렵거나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입찰참가자격 획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례가 있음.
- 따라서 물품목록화, 직접생산확인기준을 포함한 이후 소요되는 규격서 작성 및 가격결정과정 등에서 중소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진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2) ‘제조 및 공급 물품의 분류기준 확립 및 입찰 시 준수 의무화’

- 제조 및 공급물품 판단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사전 분류하고 수요기관은 발주 시 해당 기준에 따라 제조 및 공급물품을 준수하여 입찰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 검사 설비 및 고용 등의 투자비용 등을 보호함.
- 반대로 공급물품을 제조물품으로 전환하여 입찰을 진행할 경우 단기간 제조기준 충족이 어려운 다수의 공급업체들이 입찰 참가를 제한당하는 진입장벽 발생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후적 혼란과 문제점 예방을 위해 제조 및 공급 물품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

(3) ‘입찰 공고 시 기초금액 및 낙찰하한율 기재 및 배정예산 대비 기초금액 감액 시 감액 근거 및 기준 제시’

- 특히, 기초금액의 경우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율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준가격이나 계약실무에서 배정예산액에서 기초금액을 설정하는 경우 통상 2~5%의 감액을 통하여 입찰 및 평가소요 비용을 충당하거나 예산절감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단순히 기초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닌 배정예산, 기초금액 입력을 의무화하고 배정예산과 기초금액 간 감액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감액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밝히도록 함으로써 수요기관이 자의적으로 배정된 예산에서 대가를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 시행 필요함.

(4) ‘공공조달 제안 시 전자적 제안서 제출’

- 제안 내용의 산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입찰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적으로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의견도 존재하는 만큼 개별 입찰건별로 제안서 보상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은 예산상의 제약까지 고려할 경우 즉시 시행이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제안의 내용을 유형의 제안서로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는 경우 전자적 수단인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게 되면 인쇄 및 제본 비용 등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 제안서 제출이 필요한 입찰에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시행이 필요함.

(5) ‘고시금액 미만 물품공급 입찰에서 순수 최저가제도 폐지 후 제한적 최저가 도입’

- 순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물품구매적격심사의 금번 개선방안에 포함되는 낙찰하한율 82.245%를 적용할 경우 적정수준의 공급대가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제조 및 공급 공공조달 입찰 시 서류제출 간소화’

- 따라서 조달청에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에 업체별 관련 자료

를 저장하여 입찰 시 발주기관에서 전자적으로 확인토록 하여 서류제출 부담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

(7) ‘시설공사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률) 1/2 이하로 지체상금 부담 절감’

- 높은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계약 지연에 따른 예상 손실의 규모가 클수록 계약업체들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히 계약손실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 이외에 벌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도 함께 포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반대로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이 귀책사유로 인한 대가지급 지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시중은행 평균대출 금리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상대방인 조달업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공공조달 단계별 진입규제 개선방안

□ 입찰이전 단계

(1) ‘공공조달 시장진입 통합지원 체계 마련’

- 공공조달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기 위해 기존 제품의 기능, 성능, 품질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기술, 신제품 및 특허 등을 출원한 개선 제품, 연구개발을 통한 완전한 신상품 등의 경우 물품목록번호가 없어 등록이 지연 또는 등록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조달 물품 중 신상품 등을 사유로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최초 물품목록화 단계에서 이후 예상되는 직접생산확인기준 제정 → 표준 규격서의 작성 →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 등의 후속 과정에 대해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업체들이 단계별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조달청의 현행 물품목록화, 직접생산확인기준, 표준규격서 제정, 가격조사 및 원가검증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단일 체계로 통합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통합지원 센터” 운영이 필요함.

(2) ‘제조 및 공급물품 판단기준 명확화’

- 중소기업들이 자사 제품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해당제품이 제조물품인지 또는 공급물품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이며, 제조 물품인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급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 없이 등록이 가능함.

- 이로 인해 제조물품을 공급도 가능토록 할 경우 자격을 갖춘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반대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제조물품으로 한정할 경우 신생 중소기업체의 조달시장 참가기회를 제약할 수 있음.
- 상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조달을 통해 공급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세부분명번호 10자리 기준 제품에 대한 제조와 공급 기준 설정 후 상시 공개가 필요함.
- 조달청으로 중앙조달을 요청하는 수요기관의 경우 제조 및 공급물품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조달청은 제조 및 공급물품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입찰 건에 대해 수요기관에게 통보한 후 기준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조달을 요청해야 함.
- 즉, 제조 및 공급이 모두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와 공급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실제 입찰 과정에서 혼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입찰 단계

(1) ‘사전규격공개 실효성 강화’

- 입찰공고 이전 해당 입찰공고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사전규격공개제도가 국가계약법령 적용 대상 기관은 계약예규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지방계약법령 적용 대상 기관은 지방계약법이 개정되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1억 원 이상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만 사전규격 공개가 되고 있고 다수 입찰이 이루어지는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사전규격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전규격 공개 대상 금액의 하향조정 또는 전면적인 하향조정이 어려운 경우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입찰과 제조물품 입찰에 한해서만 전면적인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토록 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사전규격공개를 하더라도 조달업체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규격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하여 사전규격공개 내용에 대해 적법성,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심사 후 의무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 제도를 병행해야 함.
- 예를 들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경우 ICT 용역에 대한 분리발주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 준수여부 등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단, 면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고시금액 이상 제조물품 등으로 한정하여 의무 검토를 시행한 후 전면적인 확대 고려가 가능함.

(2) ‘입찰 공고 시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공고 의무화’

- 물품 및 용역 입찰 시 대가산정 기준인 산출내역서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 과업 내용 대비 책정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 문

제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거래실례 등을 통해 대가 수준의 확인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물품과 달리 요구 과업 내용과 수준에 따라 대가의 수준이 달라지는 용역의 경우 당해 과업의 요구 사항과 책정된 사업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산출내역서와 관련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입찰에 책정된 예산의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사전규격공개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책정 근거인 발주기관에 의한 산출내역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 검증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단, 모든 입찰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고시금액 이상 일반용역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별도의 대가 산정 기준 및 표준품셈 등이 있는 용역 등에 우선 적용하여 과업의 범위 및 수준에 따라 안정적 이행이 가능한 적정대가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함.
- 사업예산 이후 예정가격 결정단계에서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현재와 같이 총액기준 감액비율이 아닌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원가비목별로 감액비율을 제시하고 해당 비목이 감액된 경우 과업내용도 비례 조정이 필요함.

(3) ‘예정가격 편차율 기준 조정 및 준수 의무화’

- 현행 전자입찰에서는 사업예산과 연동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평균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있고, 복수예비가격 산정을 위해 물품 및 용역 입찰 시 대가산정 기준인 산출내역서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 과업 내용 대비 책정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에 어려움이 있음.
-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공통 또는 개별적으로 통일된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율을 설정하여 적용이 필요하며,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행자부 예규 제34호에서 $\pm 3\%$ 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 공공기관에서도 계약예규를 통하여 $\pm 2\%$ 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토록 의무화가 필요함.
- 특히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기초금액은 사업예산과 동일하거나 또는 감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정대가 보장 관점에서 기초금액은 최초 사업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결정된 예정가격이 실제 소요 사업예산 대비 과도하게 감액되지 않는 수준에서 예정가격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 실무과정에서 복수예비가격을 통해 설정된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기준 산정 범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최소 산정 범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입찰의 예정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함.

□ 평가 및 낙찰단계

(1) ‘낙찰자 선정 관련 세부 평가기준의 모듈화 기반 단일체계 마련’

- 물품, 용역을 중심으로 중앙 공공기관의 적격심사기준과 지방공공기관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의 배점기준, 평점기준 및 평점급간 설정 등의 방법과 기준이 서로 달라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업체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적격심사, 2단계경쟁입찰의 기술적격성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능력평가, 중기간경쟁제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MAS 2단계 경쟁의 종합 및 표준평가 등과 같이 모든 형태의 평가에서 실적평가는 동등 및 유사실적을 모두 인정하고 평가대상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으로 통일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과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실적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와 관련하여 실적평가에 대한 기본가점을 배점비중의 40% 이상(실적평가점수 5점일 경우 최소 기본점수 2점 이상 부여), 창업초기기업의 경우는 최대 60% 이상의 가점(기본점수)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또한 창업초기기업 인정기간 역시 창업이후 5년간으로 통일하여 실질적인 평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을 고려해야 함.
-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중소기업, 특히 창업초기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같이 재무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충분치 못한 업체들에게 불리한 평가항목으로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신용평가등급 수준을 고려하여 만점을 부여하는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 및 신용평가등급 간 평점급간을 최소화(조달청 기준 0.2점) 해야 함.
-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에서 기술능력평가는 인력 및 공장연수 등과 같이 양적인 지표가 아닌 공인된 기술평가등급 기관에서 발행한 “기술평가등급”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술평가등급에 의한 기술능력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와 같이 소기업·소상공인과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을 적용해야 함.
- 상기 수행실적, 경영상태평가, 기술능력평가 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모두 공통적인 평가모듈로 기관별 적격심사기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여 개정이 필요함.
- 신인도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여성고용촉진, 장애인고용촉진, 중앙 부처 주관의 우수기업 등에 대한 신인도 가점은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모두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공공기관별 업무적 특수성, 고유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가점항목에 대해서는 “수요기관 특수성 적합도”와 같은 신인도 평가모듈을 추가하여 별도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공통적인 신인도 항목 이외에 공공기관별

고유 신인도 항목 추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구성해야 함.

(2) ‘실질낙찰율 개선 입찰단계의 예정가격 편차율 조정을 통해 해소 가능’

□ 계약이행 단계

(1) ‘과업(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 다양한 유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과업(설계)변경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현장에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 분쟁발생 이전에 체계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인 조달업체가 부담을 감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 조달대상별 과업(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분쟁조정, 판례, 유권해석, 질의회신 사례 등을 조사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유사 속성을 보유한 과업변경 및 대가조정 현안에 대한 표준조정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함.
-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계약일반 또는 특수조건에서 규정하는 과업(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항목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참조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 화해야 함.

(2) ‘불공정 조달신고센터 운영 강화’

○ 낙찰자 선정이후 계약시점에서 조달업체가 수요기관으로 비공식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받은 추가적인 과업수행 요구 또는 과업수행과 본질적으로 관련성이 없거나 낮은 추가요구 조건 등을 낙찰업체에게 구두로 요구하는 경우 업체들이 이를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 그 이유는 계약단계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사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계약체결 거부로 부정당제재 처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임.

- 현행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계약시점에서 수요기관의 비명분화, 비공식적 추가요구 사항에 대하여 즉시적으로 조사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가 제기된 해당 공공기관의 입찰내용, 계약담당자, 조달업체 담당자의 조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필요함.
- 특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당해 입찰 및 계약을

긴급 정지시킴으로서 수요기관의 입장에서조차 지연 조달로 인해 발생할 현실적 부담 및 조달업체와의 문제적 소지가 있는 요구 의도를 보다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조달업체가 수요기관과 관계를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해당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 비공식적 요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실제 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문제점을 사후적으로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함.

(3) ‘선금지급 의무화’

- 2015년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의 자체조달 사업현황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선금을 지급한 입찰건의 비율이 전체 입찰건수의 약 20% 미만 수준임을 확인함.
- 이처럼 선금지급 비율이 낮은 이유는 계약예규 제34조 제9항의 각호와 제10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업체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어야하고 지급 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본적으로 현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에 따른 선금지급 규정을 현재와 같이 업체의 신청에 의해 수요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선택적 조항에서 원칙적으로 지급하고 조달업체가 지급 예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규정 개정이 필요함.
- 선금에 대한 최소한의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현재도 적용되고 있는 국가 및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과 농협(중앙회 포함), 수협(중앙회 포함), 임협(중앙회 포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실제 금전적 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각각의 조합 등에 속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각서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함.
- 상대적으로 현행 보증증권 형태의 채권 확보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기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재부 및 행자부 계약예규 상의 선금지급 최대 비율과 조달대상 및 금액별 의무지급비율을 현재보다 10~20% 포인트 하향 설정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함.

(4) ‘부당특약 검증강화’

- 일반적으로 현행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하에서 계약문서의 상·하위 체계는 국가 및 지방계약법 → 시행령(시행령 특례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시행규칙 → 기재부 및 행자부 예규(행정규칙) → 공공기관별 자체 계약규정 →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 대부분의 경우 공공기관별 계약규정까지는 완전히 공개적으로 제정, 개정 등

의 이력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사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개별 입찰건별로 분석이 어려우므로 공통·반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약특수조건을 기관별로 사전 제정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승인 받아 평소 이해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입찰 건에 계약 관련 핵심요건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 설정 시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함.
- 계약특수조건을 포함하여 조달업체가 계약상대방으로서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중요성, 예상되는 위험과 문제점을 사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규격공개 단계에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통합 게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 또, 사전규격공개단계에서 통합 게시된 문서 중 계약특수조건 등에 대해서는 해당 특수조건의 상위법령과의 합치성 및 규제적 요인 내포 여부 등을 사전 검증하여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검증체계 운영이 필요함.

□ 사후관리 단계

(1) ‘계약결과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공공조달 분야의 규제는 복합적 규제로서 계약규정과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더라도 계약실무과정에서 다양한 행태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결과가 계약현황 데이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공공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적 요인을 포함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후적으로 민원, 소송 등의 과정에서 인지 및 식별되고 있음.
- 조달청 온통조달 시스템을 통해 집계 관리되는 공공조달 정보를 활용하여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대상 계약현황을 관리하는 추가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계약관련 이상 징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공공조달 관련 규제유발 가능성이 큰 공공기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2) ‘통합적 계약규정 관리 시스템 구축’

- 현재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약 300여개에 대한 계약규정, 세부평가기준,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등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의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공공기관 통합 계약규정 관리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현행 중앙 공공기관 정보 공개 사이트인 알리오 및 지방공공기관 정보 공개 사이트인 클린아이 사이트에 별도의 관리기능을 추

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함.

- 이를 통해 공공기관별 제정부터 현재시점까지 개정과정에 대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형태의 문서에 대해서는 최신성을 검증한 계약문서를 공공기관에서 등록 및 관리토록 해야 함.
- 특히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핵심적 항목인 과업변경, 계약금액조정, 검사검수, 지체상금부과 및 대금지급과 관련한 조항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토록 하고 해당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함.

(3)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의 간주 규정화’

- 현재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검사검수는 계약완료 후 조달업체가 검사검수를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추가 7일) 완료하고 검사검수 영수증이 조달업체에게 전달되면 업체가 대금지급 요청을 한날로부터 5일 이내(협의하여 추가 5일 가능)에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검사검수가 14일 이내 또는 추가기간을 포함하여 21일 이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체상금의 부과 등 검사검수 지연에 따른 적법한 조치 없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향후 검사검수 일정과 대금지급 일정은 간주조항으로 하여 14일 이내 적정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4일 초과 시 자동으로 검사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동시에 검사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조달업체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5일 이내 대금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함.
- 수요기관의 입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충분하고도 안정적인 검사검수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면 현행과 같이 7일의 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공신력 있는 증빙수단을 통해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추가적인 검사검수 기간 부여 등도 검토하여 수요기관의 납품검사 권한 보장 강화 역시 함께 검토가 필요함.

7. 기대효과

■ 국가·지방·공공계약 법령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 4개의 국가·지방·공공계약 법령 개선을 통해 공정한 조달절차 및 서류간소화를 통한 기업부담 절감 효과는 약 408억 원, 중소기업(조달업체) 매출 증가 효과는 약 1,851억 원, 창업초기업 등의 경쟁 기회 확대 효과는 약 1,219억 원, 고용 창출 효과는 169명, 기존 고용의 유지 및 질적 향상 효과는 1,818명으로 분석됨.

(1) ‘용역계약 등에서 총액확정계약 후 사후정산 행위 금지’

- 정량적 기대효과 : 총액확정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실시할 수 있는 법령상 규정이 없음에도 일반용역 부문에서 부당한 사후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사후정산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전체 일반용역 계약건의 약 20%에서 3% 계약금액 조정율을 가정하여 사후정산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추가적으로 조달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대가 수준 향상 가능함.
- 총액확정계약 이행 이후 부당한 감액 예방액은 약 1,659억 원으로 추정됨
- 정성적 기대효과 : 수요기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사후정산을 통해 예산절감 등 총액확정계약의 제도적 예방할 수 있고, 조달업체에게 안정적인 용역수행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용역품질 향상 및 판로 지원 효과를 개선시킬 수 있음.

(2) ‘국가계약법령 적용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 정량적 기대효과 : 현재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 기관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80.5%이나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기관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84.245%로 동일한 물품일 경우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에 공급하는 조달업체가 약 3.745% 많은 대가를 보장 받을 수 있음.
- 2015년 조달청 중앙조달 기준 일반경쟁 물품 공고건(MAS 제외) 62,624건 중 적격심사 대상은 적격심사 대상 5,519건이며 이 중 낙찰률 84.245% 미만 2,062건 중 입력오류와 낙찰률 80.5% 미만 건을 제외한 1,848건의 입찰에서 낙찰율이 84.245%로 상향 시 증액되는 금액은 총 합계는 약 19,237,534,132원으로 예상되고,
- 정성적 기대효과 : 동일한 물품에 대한 계약 상대인 국가 및 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대가를 보장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음.

(3) ‘제조 및 공급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공공기관별 선금지급 채권확보 이자율 하향 조정하여 통일’

- 정량적 기대효과 : 선금지급 채권확보 이자율은 국가계약법의 경우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나 지방계약법의 경우 각 지자체의 주거래은행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선금 관련 이자부담이 증가한 상황임.
- 따라서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하게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평균 0.59%의 이자율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12월말 기준 신탁 4.61%, 새마을금고

3.95%, 은행신탁대출 3.61%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였음.

○ 선금지급 채권확보 이자율 조정을 통한 이자절감액은 **약 408억 원**으로 추정됨.

○ 정성적 기대효과 : 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이자율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음. 또한, 중소기업 등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에 대해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 적용하는 과잉금지원칙을 구현할 수 있음.

(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적용 해제’

○ 정량적 기대효과 : 지방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으나 지역제한입찰 등을 고려하면 수의계약까지 보장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방 농공단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요건을 제외하면 다수의 지역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수의계약 요건 제외를 통한 경쟁 확대 금액은 **약 1,219억 원**으로 예상됨.

○ 정성적 기대효과 : 최근 지방자치단체 계약 중 가장 많은 유착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농공단지 수의계약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특히,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제, 금융, 판로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이 있음.

- 지역제한경쟁 등을 통해 간접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다수 지역소재 기업의 입찰참가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의계약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자체조달사업 과제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 8개의 자체조달사업 과제 개선을 통해 공정한 조달절차 및 서류간소화를 통한 기업 부담 절감 효과는 약 2,112억 원, 중소기업(조달업체) 매출 증가 효과는 1,528억 원, 창업초기업 등의 경쟁기회 확대 효과는 13,116억 원, 고용 창출 효과는 10,880임.

(1)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2%(중앙), -3%(지방) 준수 강화 및 중앙공공기관 산정범위를 +-2% 단일화를 통한 실질 낙찰율 상향’

○ 정량적 기대효과 : 현행 조달청을 기준으로 중앙 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배정예산과 동일 추정)의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는 $\pm 2\%$ 이며,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행자부 기준 $\pm 3\%$ 수준임.

○ 예정가격 상승분에 따른 실질 낙찰금액 증액 분은 **약 1,018억 원**으로 추정되고, 예정가격 편차율 조정금액을 통한 실질 낙찰금액 상승에 따른 선제적 생산역량 확충

투자관점에서 고용유발 효과는 **약 896명**으로 예상됨.

- 정성적 기대효과 : 입찰공고 시 산출내역서 공개 의무화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통일/범위를 준수를 통하여 최초 산정된 사업예산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증감 및 기타 합리적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한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계약이행 및 검사검수 후 대금지급 기한의 과도한 지연(30일 이상) 해소를 위한 지급절차 기한 규정의 간주화’

- 정략적 기대효과 : 계약완료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기업의 금융(이자)비용 절감액은 **약 574억 원**으로 추정됨.
- 정성적 기대효과 : 계약완료 시점과 별개로 검사검수 14일 완료시점, 검사검수 후 조달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이내 5일 이라는 기한 규정과 별개로,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체상금부과 및 부정당제재 처분 없이 계약대금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점 해소가 가능.

(3) ‘입찰 공고 시 최소 입찰공고 기간 위반 (최소 5일) 예방 및 수의계약의 입찰공고 (업무일 기준 3일 이상) 의무화’

- 현재 안내공고 기준을 최소 3일(기재부 및 행자부 예규)에서 최대 5일(행자부 예규)까지 설정된 기간을 업무일 기준 3일로 통일하여 수의계약에 대한 입찰공고 의무화를 시행하면 실제로 휴일을 포함한 5일 이상의 공고기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수의계약 입찰공고 의무화를 통한 경쟁입찰 확대 금액은 **약 1,978억 원**으로 추정됨.
- 정석적 기대효과 : 본 입찰공고 이전 최소 5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에서 5일 정도의 여유기간 확보를 통해 입찰참가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사업규모대비 과도한 실적요구 관행 금지(물품 및 용역분야 고시금액 미만 실적제한 폐지)’

- 정량적 기대효과 : 물품 및 용역분야의 제한경쟁입찰 중 상당수가 실적제한 입찰로 평균 70% 내외 수준의 입찰이 고시금액 미만 입찰인 점을 감안할 경우 물품 및 용역업체로 신규 등록하는 업체들의 대부분이 실적 제한하는 수행실적 미보유시에도 입찰에 참가 가능할 것을 추정됨.
- 신규 등록업체의 공급 가능금액은 약 9,299억 원으로 추정되고, 신규 등록업체의 공급 가능금액 기반 고용유발 효과는 약 8,183명으로 예상됨.
- 정성적 기대효과 : 전체 입찰 건의 약 70% 정도로 추정되는 고시금액 미만 입찰 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창업초기기업과 신생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입찰참가 기회를 제약하는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5) ‘선금 지급 신청/정산 서류 부담을 완화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 정량적 기대효과 : 계약 이행을 초기, 준비자금 수준으로 판단되는 계약대금의 약 30% 정도의 선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정산내역서 제출 요건을 삭제한다면, 선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선금지급 의무화를 통한 중기 신용대출 이자 절감액은 약 1,538억 원으로 추정되고, 선금지급 의무화 통한 선제적 생산역량 확충 투자관점에서 고용유발 효과는 약 1,353명으로 예상됨.
- 정성적 기대효과 : 실제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가 없거나 담보가 있어도 신용도가 충분치 않을 경우 비교적 이자율이 낮은 시중 일반은행(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선금지급 의무화를 통해서 간접적 금융지원 효과 발현 예상됨.

(6) ‘사전규격공개 기준 확대(5천만 원 미만 포함) 및 검토의견 기재 의무화’

- 정략적 기대효과 : 공공계약을 하나의 계약 서비스로 보았을 때 공공계약 서비스의 품질비용을 절감시키는 선제적인 예방 및 평가비용 관점에서 사전규격공개제도 활용한다면 상하위 계약규정과 불합치로 인한 소송, 규격 “알박기”로 인한 경쟁제한, 국민의 건강, 보건, 환경, 위생 등과 관련한 민감한 조달대상 물자의 품질 및 안전 기준 적용 및 확인 미흡으로 인한 공공계약서비스 품질을 극적으로 절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사전규격공개 실효성 강화를 통해 제한경쟁 사유 등을 검토하여 일반경쟁 전환을 통한 시장 참가 기회 확대 효과는 **약 1,839억 원**으로 추정됨.
- 정성적 기대효과 : 대다수의 물품 및 용역 입찰이 이루어지는 1억 원 미만 구간과 지명 및 경쟁입찰 등에서 사전규격공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사전규격공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조달업체수가 전체 조달업체로 확대될 수 있음. 동시에 주요 입찰 건에 대하여 사전규격공개에 대한 검토 분야별 전문기관(전문가)을 통한 검토를 필수화함으로써 제도 시행 목적과 취지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음.

(7)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한 기본가점 시행’

-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소기업 등에 대한 실적평가 기본가점을 2~3점 부여할 경우, 대부분의 물품구매적격심사에서 적격통과점수 평균 미달율이 2점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소기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의 적격통과점수 미달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것으로 판단됨.
-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기업 실적평가 가점부여를 통한 낙찰금액 증가분은 **약 365억 원**으로 추정됨.
- 정성적 기대효과 : 창업초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납품실적 확보가 여의치 않아 사실상 납품실적 평가 여부가 결정적인 진입장벽적 요소로 작용했던 문제점 해소.
 - 적격심사 가격평가 체계상 1순위 심사대상자로 선정 가능성 높은 낙찰하한을 이상 최적 투찰 가능성 향상.

(8) ‘부당한 감액계약 예방 위한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제작/활용’

- 정량적 기대효과 : 대가조정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과업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불확실성 완화되고 설계단계에서 과업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면 현행 대비 최소 2% 포인트 이상의 감액율을 하향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과업(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 감액규모 조정 시(2% 이내) 계약금액의 증액 규모는 **약 145억 원**으로 판단됨.
- 과업(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특정 사안이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 과업변경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또는 질의회신이 계약이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많은 경우 유사한 속성 및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전체 공공기관이 판단기준과 절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 공유가 가능함.
- 또, 과업(설계)변경과 대가조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모두 계약이행 및 대가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소지 해소 가능함.

■ 중소기업 조달 건의 과제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 7개의 중소기업 조달 건의 과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시장 진입 비용 보호 및 절감 효과는 3,007억 원, 공정한 조달절차 및 서류간소화를 통한 기업부담 절감 효과는 약 2,704억 원, 중소기업(조달업체) 매출 증가 효과는 약 5,492억 원, 고용 창출 효과는 6,061명, 기존 고용의 유지 및 질적 향상 효과는 3,288명으로 분석됨.

(1) ‘직접생산확인기준 제정 등 시장진입 통합지원을 통한 컨설팅 비용 절감’

- 정량적 기대효과 : 공공조달 진입과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하게 된다면, 업체들이 지불하는 컨설팅 비용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한 MAS 및 우수제품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여 연간 약 576억 원의 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입비용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정성적 기대효과 : 공공조달 초기 진입단계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물품등록,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 물품 규격서 작성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조달업체의 시장진입을 위한 거래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음. 또, 한 번의 지원 요청으로 필요한 모든 절차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제조 및 공급 물품의 분류기준 확립 및 입찰 시 준수 의무화’

- 정량적 기대효과 : 제조 및 공급업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조역량을 갖춘 업체들에게 공급물품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면 연평균 약 2,431억 원의 설비투자 비용에 투자 효과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성적 기대효과 : 수요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충분한 경쟁이 가능한 공급물품이 제조물품으로, 반대로, 전문적인 기술과 생산기법이 요구되는 제조물품을 공급물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규격 알박기’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입찰 공고 시 기초금액 및 낙찰하한율 기재 및 배정예산 대비 기초금액 감액 시 감액 근거 및 기준 제시’

- 정량적 기대효과 : 전체 공공조달 실적에 적용하여 통상적인 기초금액 감액 수준을 1~3%(평균 1.5% 내외 추정) 정도로 평균 1% 정도만 감액율을 감소시키면 개별 입찰건의 대가보장 기준을 1% 정도 상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배정예산 대비 기초금액 설정 시 감액을 축설르 통한 낙찰금액 증가분은 **약 4,945억 원**으로 예상됨.
- 정성적 기대효과 : 적격심사 입찰 등에서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율을 명확히 인지한 상황에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낙찰하한율 미만에서 투차할 가능성을 낮춰 입찰참가기회를 보장하고, 복수예비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 상승에 따라 예정 가격 수준 역시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실질 낙차율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됨.

(4) ‘공공조달 제안 시 전자적 제안서 제출’

- 정량적 기대효과 :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은 수요기관에서 통상적으로 2~5%(평균 2.5% 내외 추정) 정도를 배정예산에서 전자매체 이용으로 전환하여 ICT 및 기술용역 입찰 건에서 제안서 작성 비용 절감이 가능함.
 - 별도의 제안서 보상 규정이 있는 시설공사 부문 이외에 물품 및 용역 분야 중 특히 일반 용역 중 ICT용역 및 기술용역 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분야 입찰에서 제안서 제출을 직접 제출방식이 아닌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 인쇄, 제본 등의 직접 준비 비용의 절감 예상됨.
 - 한편 제안서 작성비용과 별도로 해당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1명의 인원이 최소 만나절 이상 출장을 통해 발주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각종 출장비용도 마찬가지로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안서의 전자적 수단(디지털파일 형태) 제출 활성화로 제안서 제출 비용 절감액은 **약 1,252억 원**, 제안서의 전자적 수단 제출 활성화로 제안서 제출 여비 절감액은 **약 48억 원**으로 추정됨.
- 정성적 기대효과 : 전자입찰 환경이 가속화되는 것과 반대로 제안서 제출이 필요한 다수의 입찰에서는 수요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물리적인 제안서를 제출하는 직접 입찰의 비효율성을 해소시킬 수 있음. 특히, 동일한 증빙서류 등을 원본과 복사본으로 구분하여 7~10부 이상 인쇄하거나 제본하는 불필요한 노력을 예방할 수 있음. 또,

전자적 제안서 제출과 연계하여 온라인평가 시행이 연계되면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및 타당성 향상이 기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5) ‘고시금액 미만 물품공급 입찰에서 순수 최저가제도 폐지 후 제한적 최저가 도입’

- 정량적 기대효과 : 가격 이외에는 사실상 경쟁요소가 없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도 실적 확보 등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서 입찰에 참가하는 행태적 문제점도 있으므로 가격에 대한 무한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 폐지가 요구됨.
- 순수 최저가제도 폐지 후 제한적 최저가 도입 효과는 약 547억 원으로 추정됨.
- 정성적 기대효과 : 고시금액 미만 공급물품 입찰에서 최적가낙찰방법을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공공조달 영역 내에서 순수한 최저가제도 시행을 종료할 수 있음. 또, 과도한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품질, 계약불이행 가능성을 낮추어 양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 받을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6) ‘제조 및 공급 공공조달 입찰 시 서류제출 간소화’

- 정량적 기대효과 : 실적증빙 발급 시마다 발급비용이 요구되는 서류와 입찰 시점에서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과거 실적 증빙 등의 경우에는 최초 입찰 시, 등록한 서류를 연간 또는 일정기간 유효성을 부여하여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서류간소화와 함께 발급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음.
- 공공조달 입찰 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서류제출 비용 절감액은 약 1,397억 원으로 추정됨.
- 정성적 기대효과 : 중소기업이 연간 다수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동일한 서류를 단순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찰참가 준비를 가능하게 함. 또, 공공기관별로 자의적이고 필요성이 낮은 별도의 서류 제출요구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됨.

(7) ‘시설공사 지체상금율(지연배상금률) ½ 인하로 자체상금 부담 절감’

- 정량적 기대효과 : 시설공사에 계약 건에 대한 지체상금율 적용을 기존 1/1000 대비 0.5/1000으로 50% 인하하면, 시중 은행 연체이자율을 기준의 최대 18.25%로 실질적으로 계약을 지연한 업체들의 연체이자 부담을 절반 이상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2015년 전체 공공조달 계약실적 중 시설공사 계약은 49,079,257,730,088원으로 이중 지체상금 적용 대상 계약규모는 약 0.5% 수준으로 추정됨.
- 시설공사 지체상금을 1/2인하에 따른 지체상금 절감액은 **약 55억 원**으로 추정됨.
- 정성적 기대효과 : 시설공사의 지체상금률을 1/2인하하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인 계약대금과 지연이자와 조달업체의 귀책사유인 계약이행 지체 시 지연이자율의 부당한 차별을 발생시키는 이중잣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8. 결론

- 본 연구는 공공조달 및 계약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당면하는 다양한 규제적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통해 중소기업의 유효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국가 경제산업정책의 활력제고와 동시에 국가재정운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특히 공공조달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공공조달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부당한 특약 요구 등은 국가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을 통해 집행되는 중앙조달요청보다 공공기관별 자체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들이 경험한 규제적 요인을 식별함.
- 2015년 국가계약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계약을 집행하는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계약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등에 따라 계약을 집행하는 지방 공공기관의 자체조달 사업실적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음.
 - 분석을 위하여 2016년 3월 20일~4월 25일까지 약 35일간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에서 규제 식별을 위한 조사표를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음. 수집결과 중앙공공기관 120개 기관과 지방공공기관 137개 기관으로부터 각각 48,688건과 6,237건의 자체적으로 집행을 공공조달 계약실적 자료를 확보하였음.
 -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대 120개 기관 중 120개가 모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총 대상 145개 기관 중, 신설, 폐업, 흡수합병 등의 사유로 7개 기관이 자료 제출을 할 수 없음.
- 공공조달 및 계약관련 기본 두 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제적 요인 또는 두 계약법령 간 상이함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음.

- 첫 번째로, 계약법령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규제식별은 국무조정실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조달연구원으로 구성된 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규제를 식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 이를 통해 총 19건의 개선 의제가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17건의 조정, 통합 및 폐지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음.
- 두 번째,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현장에서 실제 경험하고 당면하는 공공조달 규제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130건의 개선 건의 과제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적 요인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다만 수집된 130여 건의 과제 중 개선을 건의한 중소기업 등에게 한정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요인으로 식별하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통해서 해당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함.
 - 그 결과 중소기업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분석결과 130개의 건의 과제 중 개선 소요에 해당하는 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소관부처와의 조정을 통하여 113건에 대한 조정 및 개선이 이루어짐.
- 세 번째, 상기 공공조달 및 계약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집행된 결과 중소기업들이 실제 경험하한 규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가 실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과정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체조달 사업실적을 분석함.
 - 이를 위해 257개의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의 2015년 자체조달 사업실적 55,633건을 수집 및 분석함.
 - 분석결과 공공조달 5단계별로 5대 분야의 13개 규제 유형이 식별되었고 3건의 상위 계약법령 위반 유형, 3건의 해석상의 오류 유형, 7건의 공공기관의 계약 또는 사업담당자의 행태적 오류로 확인됨.
- 상기 3개 차원에서 식별된 규제요인에 대하여 각 요인별 개선방안 또는 방향성과 관련된 규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규제적 요인의 개선을 통하여 공공조달 및 계약과정 전반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통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
- 공공조달 및 계약의 주요 5단계에 따라 식별된 문제점을 아우를 수 있는 14개의 방안을 통합적으로 제시함.
 - 각 단계별 주요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입찰이전단계에서는 공공조달 시장진입이 가능한 통

합지원 체계 마련, 제조 및 공급물품의 판단기준을 명확화 함.

- 입찰단계에서는 사전규격 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입찰 공고 시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공고를 의무화하며, 예정가격 편차율 기준조정 및 준수를 의무화 함.
- 평가 및 낙찰 단계에서는 낙찰자 선정관련 세부 평가기준의 모듈화 기반 단일체계를 마련하고, 실질낙찰율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음.
- 계약이행단계의 개선방안으로는 과업(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공정 조달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며, 선금지급 의무화와 부당특약 검증강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단계에는 계약결과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와 통합적 계약규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의 간주를 규정화함으로써 어떤 사유에 의해서라도 대금지급 기한이 준수되도록 해야 함.

□ 이러한 개선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 비용 및 인력 등의 투자가 수반되므로 이러한 개선 소요자원의 투입 정당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규제 개선의 효과를 가늠하고자 기대효과를 분석함.

○ 공공조달 규제식별 자료원(법령, 중기건의과제 및 자체조달사업)별 진입규제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를 추정함.

- 중소기업 시장 진입비용 보호 및 절감 효과 약 3,007억 원,
- 공정한 조달절차 및 서류간소화를 통한 기업 부담 절감 효과 약 5,224억 원,
- 중소기업(조달업체)의 매출 증대 효과가 약 8,871억 원,
- 창업초기업 등의 경쟁기회 확대 효과 약 14,335억 원 수준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추정하는 고용유발효과는 약 17,110명으로 추산되었으며, 특히 새로운 고용을 늘리지는 않으나 기존 고용인력의 고용안정성과 질이 향상되는 인력 규모도 약 5,106명 수준으로 파악됨.

○ 2015년 기준 국내 공공조달 시장 규모 약 110조 원 기준 약 2.81% 수준의 개선효과(3.1조 원)는 2015년도 기준 최근 3년 간 공공구매 실적규모 증감이 평균 2.79% 내외에서 증가된 것을 고려할 경우 창업초기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규제 개선의 가장 큰 수혜대상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효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용창출 효과를 통해 2015년 공공조달 시장 규모 약 110조 원을 기준으로 창출 가능한 고용효과(약 971,371명) 기준 고용율 개선효과는 1.76%P(17,110명) 수준으로, 2016년 1/4분기 중 OECD 평균 고용율 개선 수준인 0.3%P 수준대비 약 5.9배 수준이며, 동기간 국내 고용율 개선 수준인 0.5%P 대비 약 3.5배 높은 고용율 개선 효

과로 판단됨.

- 금번 규제식별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큰 틀에서 공공조달 및 계약절차의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로서 공공조달 및 계약의 품질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전체의 99% 이상을 중소기업이 공급을 담당하는 물품 및 용역 조달과 관련하여 “사전규격공개”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은 선제적인 품질 관리활동으로 공공조달 및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 16조 원의 실패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공조달 및 계약 관련 규제는 제도, 행태 및 제도와 행태가 결합된 복합적 규제로서 단순히 법제도 중심의 일회성 처방으로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움.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양한 유형의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조달 및 계약관련 규제를 식별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규제개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조달 규모는 국가 GDP의 약 7.3% 수준인 110조 원 규모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조달 시장에는 수요자로서 50,366개의 수요기관과 공급자로서 330,983개의 조달업체가 참여하여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다양한 물품, 용역 및 시설공사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약 33만 여개의 조달업체 중 전체의 97.2%에 해당하는 31만 여개는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중소기업 중 약 87%는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안정성이 낮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공공조달 시장의 약 71%에 해당하는 약 80조 원을 공급하고 있어, 대기업이 주도하는 민간시장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창업초기기업, 기술개발우수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기업 경쟁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민간시장에서도 기존 기업 등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고용의 창출과 기 고용인력의 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공공조달 및 계약의 역사는 발전 단계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당시의 국내·외적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달 및 계약 관련 법제도가 시행, 보완 및 개선되어 왔고, 특히 2002년 이후에는 현재와 같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대표되는 전자조달시스템 환경으로 이행하였다.

우리나라 공공조달의 발전단계는 1950년대 정부수립 및 한국전쟁 이후 해외 원조물자와 자금을 국내 경제부문에 효율적 분배하는 집행 기능에서, 1960~70년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물적자원의 조달, 1980년대~1990년대 조달수요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영 효율성을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후 1990년대 중반 WTO체제하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면서 공공조달시장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은 GPA가입국을 포함한 외국의 기업들에게 공개되었고,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가격보다는 공급업체의 적격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서는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소개되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도입과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공공조달 과정의 무결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등의 가치가 제고 되었다. 한편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발 재정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조달을 경기진작을 위한 효과적 재정운영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공공조달의 국가 경제 및 산업정책적 기여도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 공공조달 역시 공공조달의 본연의 전통적 기능인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가치이외에 정부의 경제, 산업 및 복지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한 정책적 효과성 제고라는 역할을 요구받아 다양한 우선구매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표1] 참조).

[표1] 우리나라 공공조달 연혁 및 역사

구분	국가계약/조달기관	국가계약 및 조달의 주요 역할	국가계약사무 주요 법률	주요 입·낙찰제도
건국 초기 (1948-1961) - 조달물자의 단순 관리	- 임시외자총국 - 임시외자관리청 - 외자청	- 외국의 원조물자관리 - 외자구매 업무	- 국가재정법 제정 (1951년) (국내 최초의 국가계약 사무 기본법)	-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 입찰, 수의계약 구분 - 총액계약 및 단가계약 입찰 규정화 - 최저가낙찰제
산업화 시기 (1961-1979) - 조달수요의 직접적 충족	- 경제기획원 - 조달청	- 내·외자구매 및 정부 시설공사계약 - 정부비축사업(1967년) - 중앙조달체계 확립 (1961년)	- 예산회계법 제정 (1961년) - 국가재정법의 역할 대체 - 정부조달관련 규정 확충(조달특별 회계법, 조달기금 법 등)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회계약 제도 시행 (수의계약 방식 적용) - 원가계산제도 도입(1961년) - 계약금액조정제도 도입 - 제한경쟁입찰제도 도입 (1977년) - 내역입찰제도 도입(1977년) - 장기계속공사제도 - 부찰제 (제한적최저가 유사)(1960) - 최저가낙찰제 재도입 (1961년)
민주화 시기 (1980-1992) - 조달수요의 체계적 관리	- 경제기획원 - 조달청	- 경제 사회적 정책의 장치로서 공공조달의 역할 강조 (정부의 각종 공사 조기발주, 집행함으로써 1980년대 경제위기 기간 동안 국가 경제 고무) - 공공조달 계약 규정 개정을 통해 대부분의 정부조달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 예산회계법 개정 (1988년) - 산업화시기 국가 계약/조달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	- 수의계약 관리 체계 강화(수의계약사유를 예산 회계법에서 직접 규율) - 제3자 단가계약제도 개선(1976년 도입 후 1988년 현행체계로 개선) - 정부원가계산제도 개선 (1988년) - 계약금액조정제도 개선 - (모든 비목 및 품목의 가격의 전부 조정 가능) - 부찰제 일시도입 (1981년) - 최저가제도(저가심의 병행)
세계화 및 지방화 시기(1993~ 현재) - 조달수요의 견인 및 경제·산업정책지	- 기획재정부(2008년)/(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 조달청	- 정부조달협정 가입 후 공공조달시장 개방으로 글로벌 공공 조달 환경 조성(국제 입찰 확대) - 공공조달의 정부 정	- 정부조달협정(GPA) 가입(1994년) - 국가계약법(1995년) - 조달사업법(1995년) - 지방계약법(2005년)	- 산업화 시기 도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단체수의회계약제도 폐지 (2007년) 후 현행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도입

원		책 지원 역할 (R&D, 고용 등) 확대 - 중소기업지원정책(중소기업공공구매제도)의 경쟁성 강화 - 사회·경제적 배려 대상(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도입(2006년) - 사전자격심사(PQ)도입(1994년) - 적격심사제도 도입(1995년) - 최저가낙찰제도 재도입(2002년) - 최저가 자기심사제도(2006년) - 종합심사제도 도입(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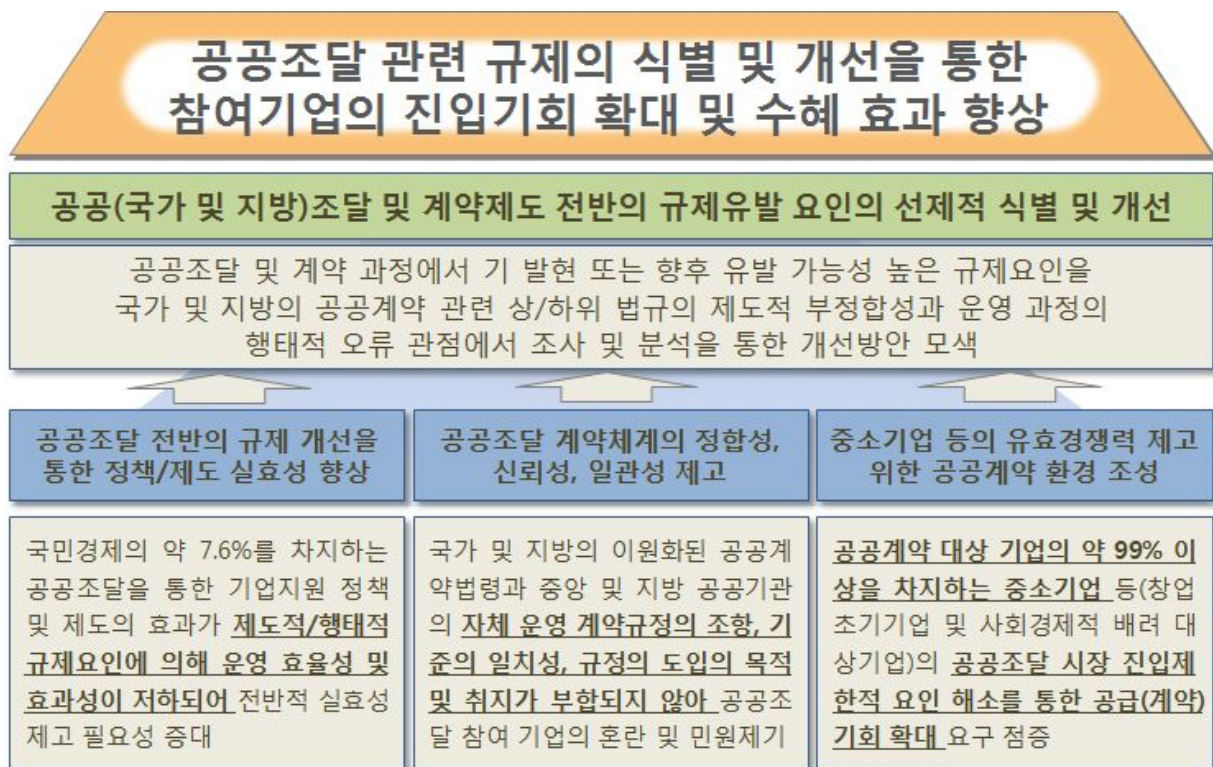
이러한 공공조달의 역할 변화 중의 하나는 1993년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2006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의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들은 별도의 계약법령과 절차로 조달을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공공조달 방식과 계약은 크게 중앙조달 방식과 자체조달 방식으로 구분된다. 중앙조달은 국가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에 조달 및 계약업무를 위탁하여 집행하는 형태이고, 자체조달은 개별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 및 계약을 실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조달은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청이 계약과정 전반에서의 법규 준수, 입·낙찰 과정에서의 쟁점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집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조달 및 계약집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개별 수요기관의 경우 복잡한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 담당자의 잦은 보직이동에 따른 업무 숙련도 부족 등으로 조달 및 계약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쟁점과 현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조달업체의 입장에서는 규제로 인식될 가능성도 많다.

이처럼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시장의 특성과 운영 중점 상 중소기업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충분치 않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주류를 이룸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들과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달 및 계약관련 법제도,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의 행태적 오류 등으로 인한 규제적 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공공조달 시장 진입단계에서 과도한 공급실적 등을 요구하는 원천적으로 창업초기기업 및 소기업 등의 시장 진입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규제적 요인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조달 관련 규제를 식별하고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조달 관련 규제는 복합적 규제가 주로 발생하는 부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로 진입규제, 거래규제, 품질규제와 가격규제가 있다. 진입규

제는 영업과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의 한 형태이다. 진입규제의 전형으로는 사업의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지정 승인 등이 있다. 거래규제는 거래대상, 물량 가격 등과 같은 거래조건 및 영업방법을 제한하는 것이고, 품질규제는 상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 성분이나 규격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규제는 상품의 가격이나 요금 등을 일정한 수준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규제는 환경오염, 산업재해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융·복합적인 공공조달 규제로 인해 규제유발 요인의 상호작용과 문제의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복합·구조적 연결 관계를 고려한 규제 유발 요인의 식별 및 개선방안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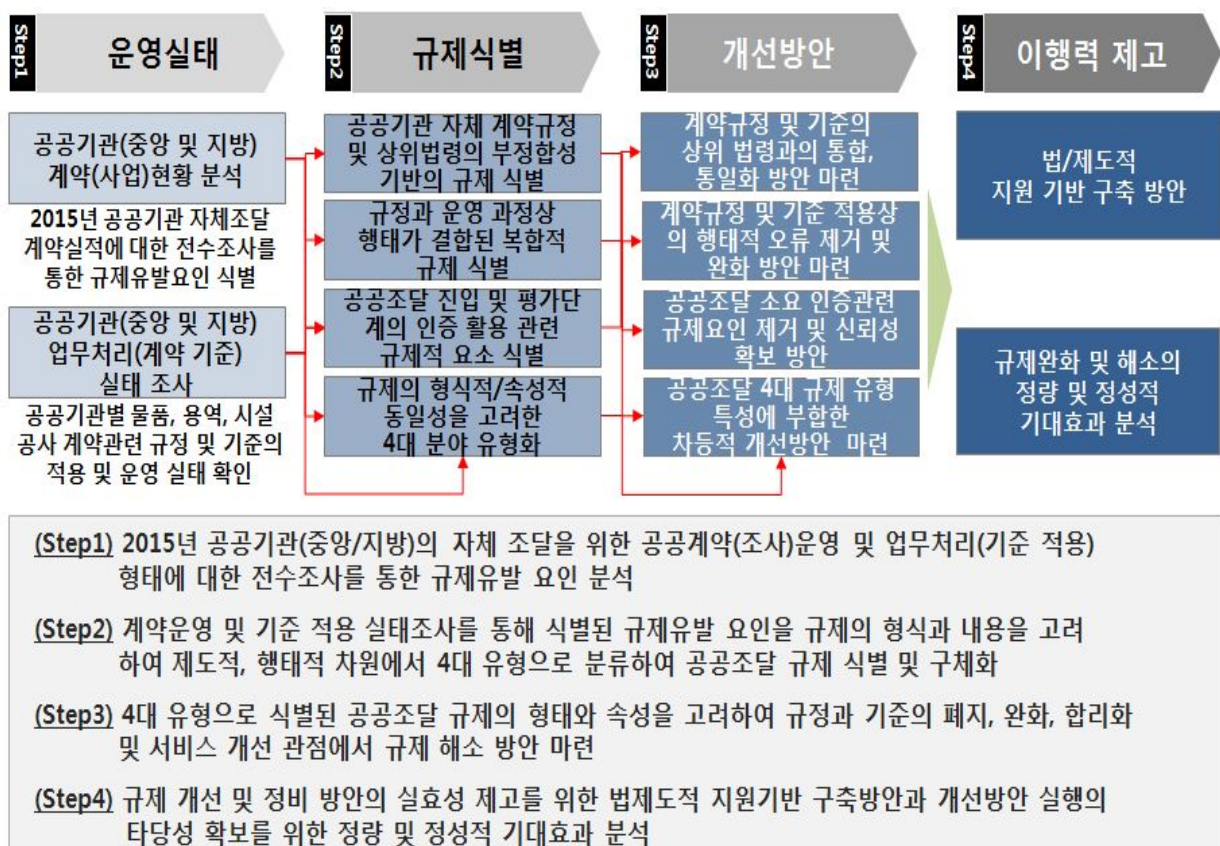
특히 대국민 서비스로서 공공조달 및 계약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근 발생한 전국 학교기관의 납 등 중금속을 함유한 불량 우레탄의 운동장 시공사례처럼 품질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추정되는 품질실패비용 규모는 약 16조 원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비용은 약 2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품질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 및 계약 프로세스 실행 이전에 선제적인 품질관리 활동으로 규제요인의 제거를 통한 정상적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고 동시에 조달 및 계약과정과 나아가 계약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림 1] 연구수행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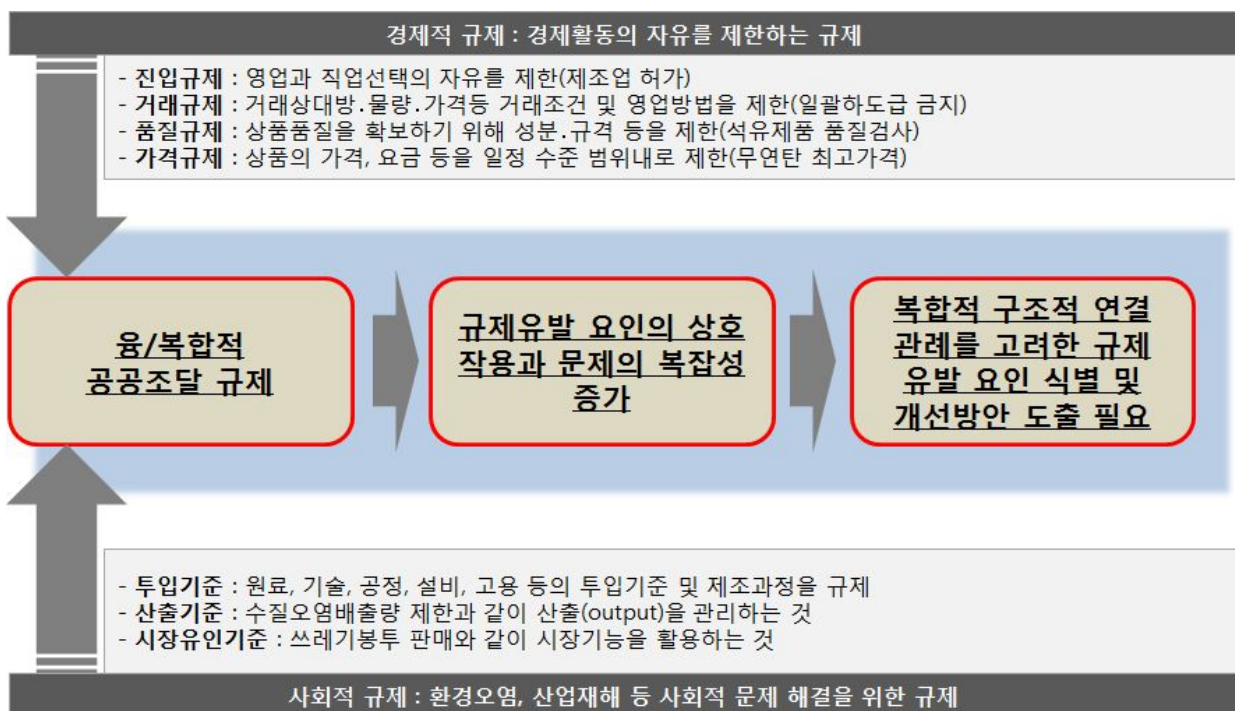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공공조달 전반의 규제 개선을 조달 및 계약 관련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둘째 다양한 공공기관의 공공조달 및 계약체계의 정합성, 신뢰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고 셋째, 판로지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유효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공조달 환경 구축을 위한 규제의 식별과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의 계약법령 체계의 정합성 및 일치성 분석, 실제 계약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따라 집행한 사업실적의 분석,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규제적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규제의 원인, 과정 및 결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국가 및 지방)조달 및 계약제도 전반의 규제유발 요인의 선제적 식별 개선체계를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등 공공조달 시장 참가자들의 진입기회 보장 및 실질적 수혜효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1] 참조).

1.2 연구의 수행절차 및 방법



[그림 2] 연구수행 절차

본 연구는 중앙 및 공공기관별 계약(사업)현황 및 업무처리 실태조사, 규제식별, 규제개선 및 이행력 제고 방안 마련으로 4단계에 걸쳐 수행된다. 먼저 운영실태조사 단계에서는 2015년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의 자체 조달을 위한 공공계약 운영 및 업무처리형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유발 요인을 분석한다. 그 다음 규제식별단계에서는 전 단계를 통해 식별된 규제유발 요인을 규제의 형식과 내용을 고려하여 제도적, 행태적 차원에서 4대 유형으로 분류하여 공공조달 규제 식별 및 구체화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4대 유형으로 식별된 공공조달 규제의 행태와 속성을 고려하여 규정 및 기준의 폐지, 완화, 합리화와 서비스 개선 관점에서 규제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법·제도적 지원기반 구축방안과 개선방안 실행의 타당성을 확보를 위한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한다([그림2] 참조).



[그림 3] 공공조달 규제요인 식별 및 개선

공공조달의 규제요인은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뉜다. 경제적 규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에 진입규제, 거래규제, 품질규제와 가격규제가 있다. 진입규제는 영업과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의 한 형태이다. 진입규제의 전형으로는 사업의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지정 승인 등이 있다. 거래규제는 거래대상, 물량 가격 등과 같은 거래조건 및 영업방법을 제한하는 것이고, 품질규제는 상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 성분이나 규격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규제는 상품의 가격이나 요금 등을 일정한 수준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규제는 환경오염, 산업재해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융·복합적인 공공조달 규제로 인해 규제유발 유인의 상호작용과 문제의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복합·구조적 연결 관계를 고려한 규제 유발 요인의 식별 및 개선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그림 3] 참조).

[표2] 공공조달 규제식별을 위한 자료원별 분석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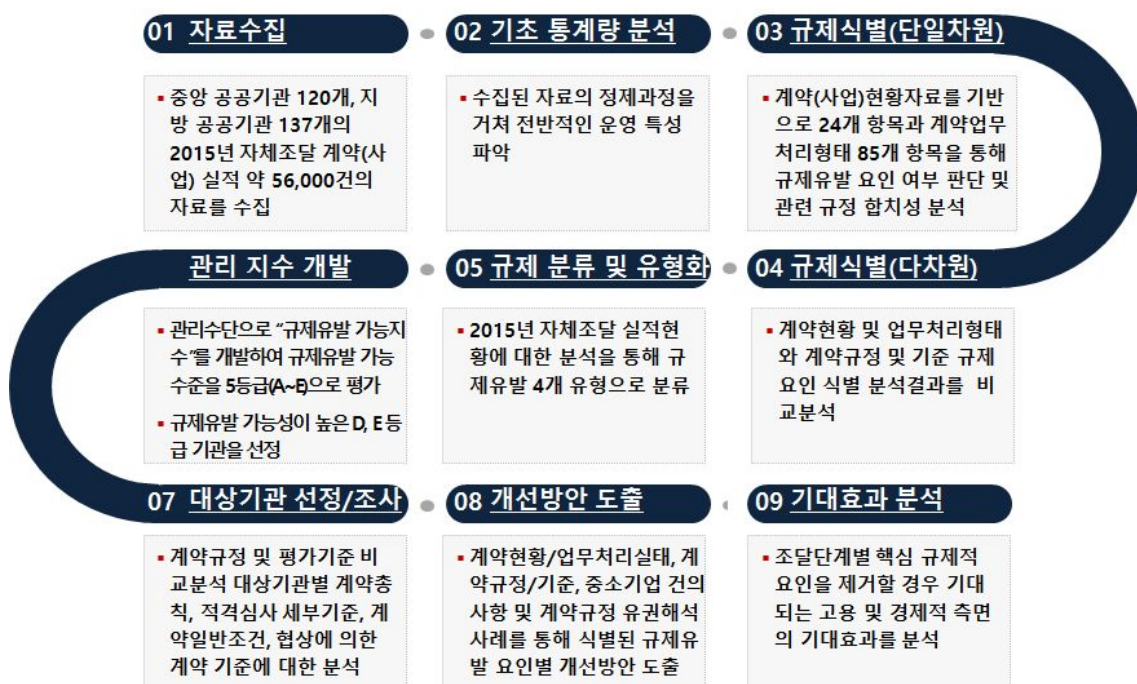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자료원	법령/규정집	→	자체조달 사업실적	→	중소기업 개선 건의과제
	질의회신사례		질의회신사례		질의회신사례
규제식별 중점	법제도적 차원의 규제요소		조달 및 계약집행 과정상의 법령위반, 해석 및 행태적 규제요소		법령 및 조달 및 계약집행 과정의 결과 드러난 결과적 규제요소

자료원을 중심으로 공공조달 규제식별을 위해 1단계에서는 국가법령 및 규정집을 분석하여 법·제도적 차원의 규제요소를 식별하고, 2단계에서는 자체조달 사업실적을 분석하여 조달 및 계약집행 과정상의 법령위반, 해석 및 행태적 규제요소를 식별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중소기업 개선 건의 과제를 분석하여 법령, 조달 및 계약집행 과정 결과 드러난 결과적 규제요소를 식별한다([표2] 참조).

2.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자체조달사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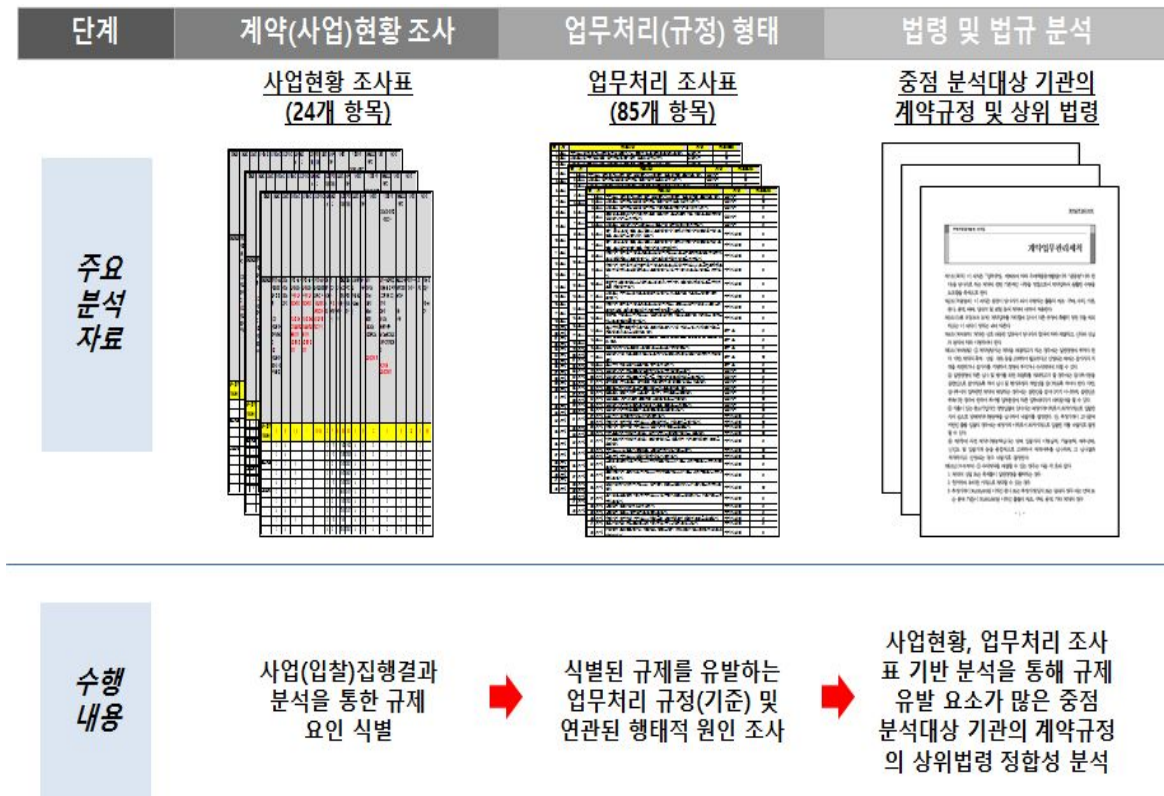
2.1 계약현황 분석 개요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의 계약 분석은 9단계에 걸쳐 연구수행이 이루어진다. 먼저 1단계에서는 120개의 중앙공공기관, 137개의 지방 공공에 대한 2015년 자체조달 계약(사업)실적 55,336건의 자료를 수집한다. 2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기초 통계량 분석을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계약(사업)현황자료를 기반으로 한 24개의 항목과 계약업무처리형태 85개의 항목을 통해 규제유발 요인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된 규정의 합치성 분석을 한다.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의 단일차원 규제식별을 다차원 화하여 분석한다. 5단계에서는 2015년 자체조달 실적현황을 분석하여 규제유발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다. 6단계에서는 규제유발 가능지수를 개발하여 규제유발 가능수준을 A에서 E등급까지 5단계로 나누고 규제유발 가능성이 높은 D, E등급 기관을 선정한다. 7단계에서는 대상기관을 상대로 계약충척,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에 대해 분석한다. 8단계에서는 계약현황 및 업무처리실태, 계약규정 및 기준, 중소기업 건의사항 및 계약규정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식별된 규제유발에 대해 요인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규제요인 제거 시 기대되는 고용 및 경제성에 관한 기대효과를 분석한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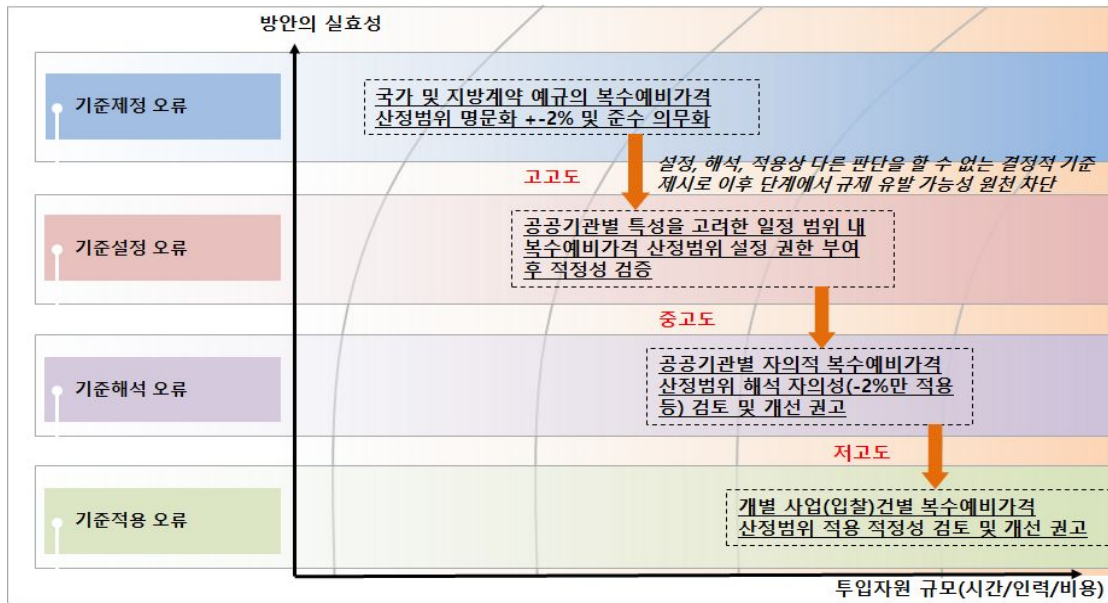
[그림 4] 연구수행 세부절차

공공기관 계약현황 비교분석에 대한 수행절차를 보여준다. 먼저, 사업(입찰)진행결과 분석을 통해 규제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24개의 계약(사업)현황을 조사한다. 그 다음 규제를 유발하는 업무처리 규정 및 연관된 행태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85개 항목의 업무처리 조사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사업현황과 업무처리 조사표 분석을 통해 규제 유발 요소를 많이 가진 기관의 계약규정의 상위법령을 분석한다([그림 5] 참조).



[그림 5] 공공기관 계약현황 비교분석 수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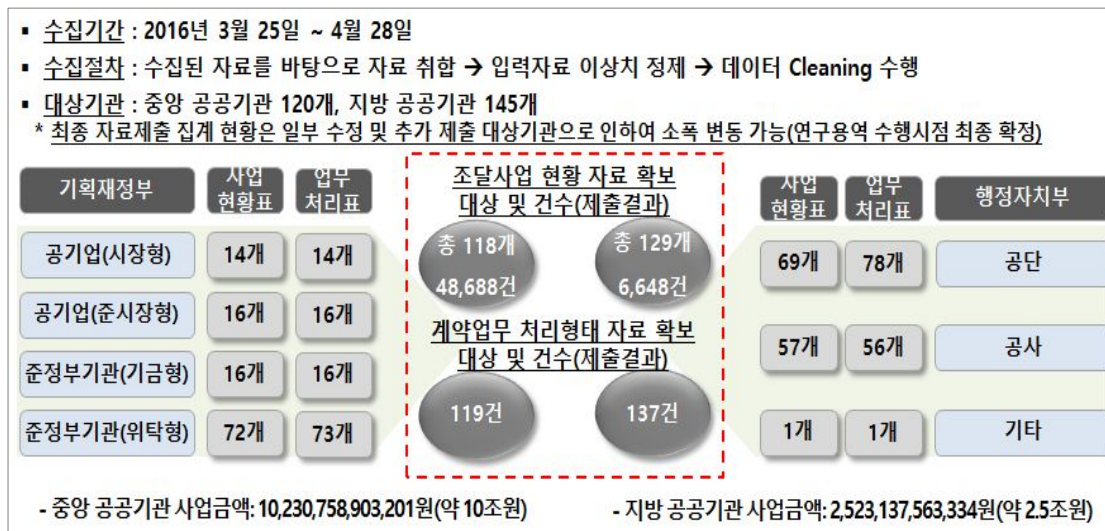
공공조달 규제개선은 단계별로 기준적용 오류, 기준해석 오류, 기준설정 오류, 기준제정 오류가 있을 시 권고한다. 먼저 기준적용 오류의 경우 개별 사업(입찰)건 당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를 적용하여 적정성 검토 및 개선을 권고한다. 기준해석 오류의 경우 공공기관별 자의적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2%만 적용 하는 등 자의성 검토 및 개선을 권고한다. 기준설정 오류 시 공공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일정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설정 권한을 부여한 후 적정성을 검증한다. 마지막 단계로 설정, 해석, 적용상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결정적 기준을 제시해 국가 및 지방계약 예규의 복수예비가격 산정을 $\pm 2\%$ 범위 내에서 명문화 하고 준수를 의무화하여 규제 유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그림 6] 참조).



[그림 6] 공공조달 규제개선의 킬체인(Kill-Chain) 시스템 개념도

2.2 자료수집 결과

공공조달 계약현황 조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구해 자료수집 대상기관을 선정하였고, 약 1개월 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결과 중앙공공기관 120개 기관, 지방공공기관 145개 기관으로부터 2015년 자체조달 계약(사업)실적 약 55,336건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림 7] 참조).



[그림 7] 계약현황 취합자료 현황

사업 건수를 기준으로 계약방법의 비중을 비교해보면, 조달청의 경우 수의계약이 42.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경쟁이 32.07%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한경쟁(17.13%)과 지명경쟁(0.13%)은 앞선 두 계약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중앙공공기관에서는 제한경쟁이 4개 세부기관유형 평균 44.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수의계약이 42.55%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지방공기업의 경우도 중앙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제한경쟁의 비율이 지방공사 및 공단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에서 일반경쟁의 비율이 낮게 채택되는 현상은 조달 진입단계의 공정성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고, 규제유발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표3] 참조).

사업 건수 기준으로 조달대상 비중을 비교해보면 조달청의 경우 물품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82.39%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용역(일반, 기술)과 시설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16%와 9.45%로 물품구매와 관련된 계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중앙공공기관의 경우 4개 세부기관유형 평균으로 보았을 때 용역과 관련된 사업비중이 40.8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품구매의 경우 34.10%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용역관련 사업 비중이 39.15%로 가장 많았으며, 물품은 33.65%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조달대상별 계약특성과 관련하여 중앙조달과 비교하여 공공기관별 자체조달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용역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며, 이는 규제식별 및 개선안 도출 시 용역분야를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3] 기본계약현황 비교분석(실적현황 차별점 비교)

구 분		조달청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금액	건수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형	위탁형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타
계약 방법별 비중	일반경쟁	30.80%	32.07%	12.32%	11.58%	12.57%	9.75%	12.56%	11.12%	-
	제한경쟁	53.50%	17.13%	55.08%	40.97%	46.28%	35.96%	51.74%	51.05%	22.00%
	지명경쟁	0.20%	0.13%	0.83%	3.17%	0.90%	0.23%	0.69%	0.36%	-
	수의계약	15.40%	42.41%	31.76%	44.28%	40.26%	53.91%	34.94%	33.80%	78.00%
	기타	-	8.26%	0.01%	-	-	0.14%	0.07%	3.68%	-
조달 대상 비중	물품	54.86%	82.39%	51.73%	31.72%	27.32%	25.57%	41.55%	35.40%	24.00%
	용역	13.24%	8.16%	22.69%	36.65%	57.96%	45.98%	32.14%	31.31%	54.00%
	공사	31.90%	9.45%	25.54%	26.51%	14.49%	27.96%	26.01%	32.41%	22.00%
	기타	-	-	0.04%	5.12%	0.23%	0.48%	0.30%	0.87%	-

2.3 조달단계별 규제유발요인 도출



[그림 8]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의 조달단계별 규제유발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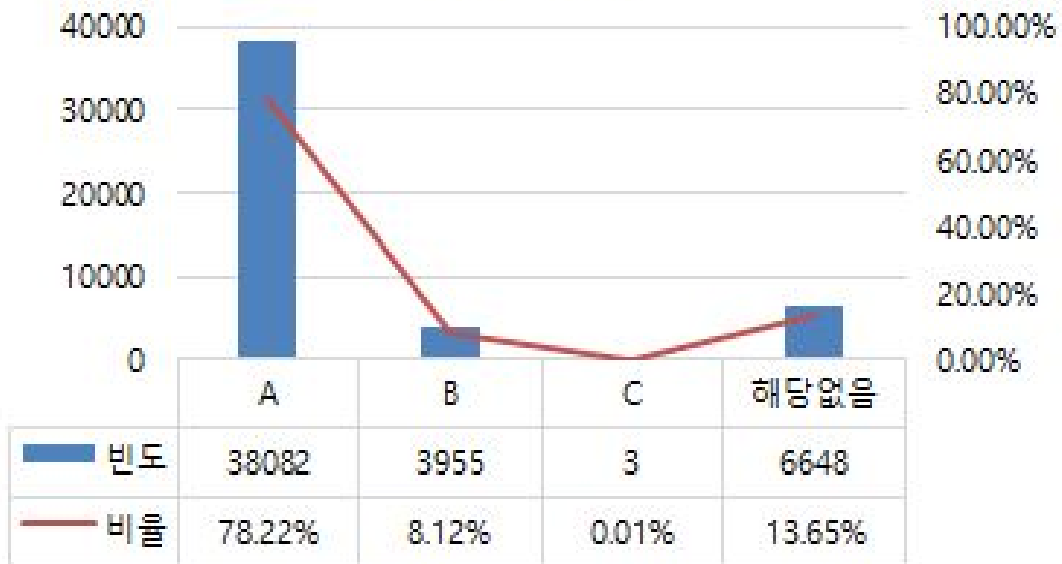
위 표는 기초적인 통계분석을 위해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의 조달사업 현황 자료와 계약업무 처리형태자료 조합하여 조달단계별로 규제유발 요인을 보여준다. 조달단계를 입찰참가 이전 단계, 입찰단계, 평가 및 낙찰단계, 계약이행단계, 사후관리 단계 등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규제유발 요인을 선별했다. 각 요인들은 규제유발 가능성 정도에 따라 상, 중, 하 그리고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요인들을 배치했다. 각 단계별 규제유발가능성이 높은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입찰참가 이전단계에서는 사전규격 공개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의 규격 및 사양들을 입찰대상자 모두에게 미리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두 번째로 입찰단계에서는 공고기간의 적정성과 경쟁방법의 적정성 등이 있다. 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최소 공고기간(5일)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는 공공기관의 경쟁방법(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의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공정성을 파악한다. 세 번째로 평가 및 낙찰 단계에서는 예정가격편차율 적정성과 중소기업 차등평가 여부 등이 있다. 예정가격의 경우

$\pm 2 \sim 3\%$ 를 초과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고 있는지, 평가 과정에서 창업 초기기업 및 소기업에게 차등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네 번째로 계약 이행단계에서는 선금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다섯 번째인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5일 이상 초과한 대금지급 여부 등을 살펴본다. 이는 단계에서는 계약 이행 및 정산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특수성을 이용해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각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은 ‘2장 규제유발 요인별 기초통계량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그림 8] 참조).

3. 2015년 공공기관 자체조달사업 규제유발 요인별 현황분석

3.1 중앙공공기관 기초통계량 분석

2. 공고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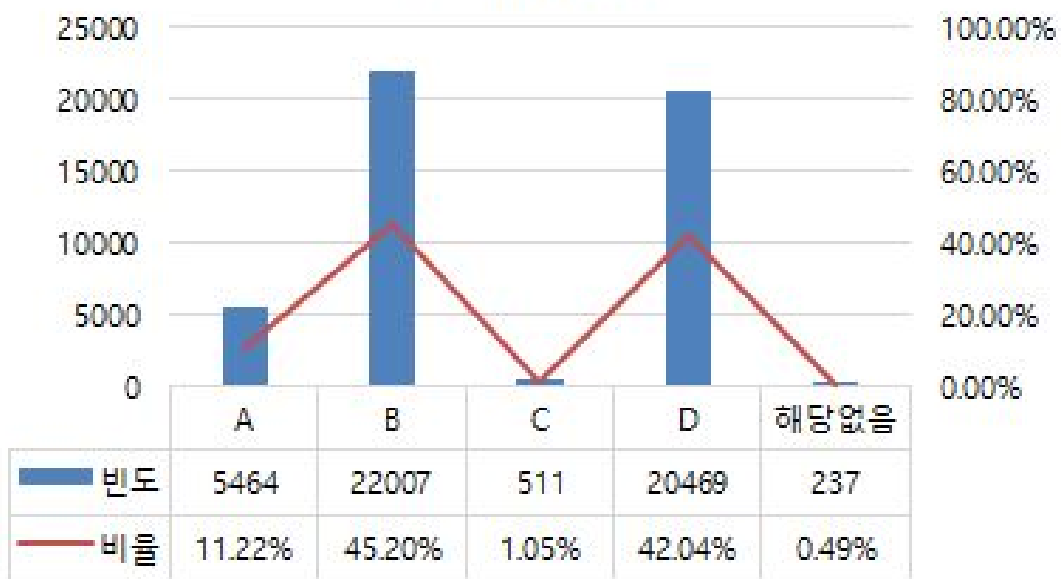
[그림 9] 중앙공공기관 공고종류 기초통계량

공공조달에서 공고의 종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A.일반공고(제35조의 제1항~제3항,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B.긴급공고(제35조의 제4항,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총 48,688건의 입찰 건수 중 일반공고가 38,082건으로 80%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입찰에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입찰기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긴급공고의 경우 3,955건(8.12%)건의 수준으로 평균 10건 중 1건이 긴급사유 공고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입찰참가 기회 확보 측면에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입찰 공고 방법의 결정 현황은 정상 범주에 속해있다고 판단되며, 현재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그림 9] 참조).

입찰 경쟁방법의 경우 크게 누구나 입찰이 가능한 A.일반경쟁, 특정지역이나 자격요건 등을 정한 경쟁인 B.제한경쟁, 지명된 업자만 입찰이 가능한 C.지명경쟁, 특정업자와 입찰하는 D.수의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공공기관의 경우 제한경쟁이 22,007건(45.2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수의계약 방법이 20,469건(42.04%)로 비슷한 수준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일반경쟁은 5,464건(11.22%)로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에 4분의 1수준이다. 중앙조달(조달청)의 일반경쟁 비율이 32.07%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 이는 입찰 참가 업체들이 대부분 2천만 원 이하 소액수의 계약이거나 특정지역, 자격요건을 갖춘 제한경쟁 입찰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조달 시장이 공정한 경쟁입찰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일반경쟁 입찰의 비율을 늘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 기업들 간 경쟁을 통하여 역량을 갖춘 새로운 기업들에게 입찰참가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 및 유사 조달대상물의 소액수의 계약 소요를 통합하여 발주함으로써 다수 기업들에게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그림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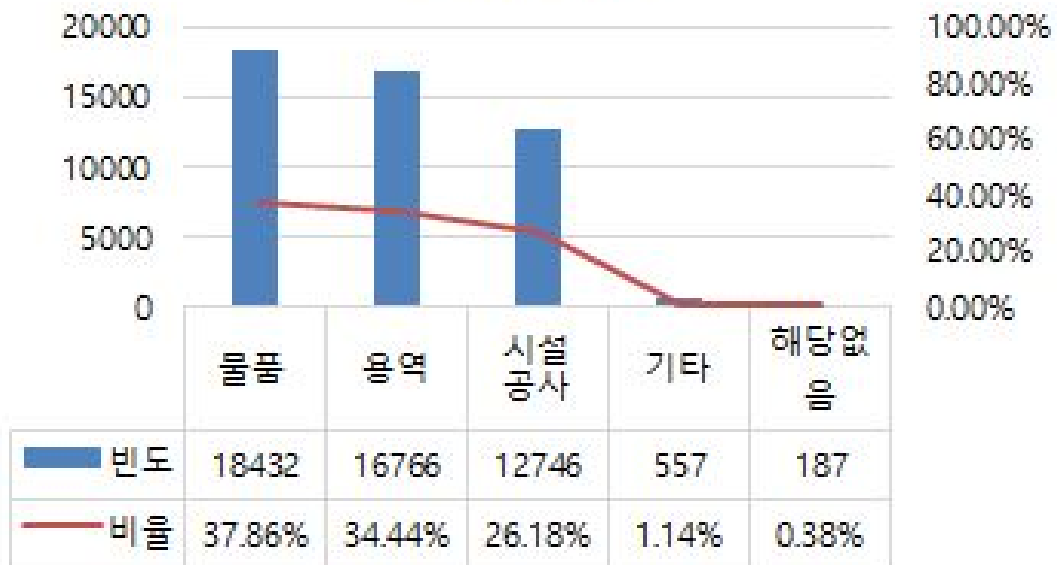
3. 경쟁방법



[그림 10] 중앙공공기관 경쟁방법 기초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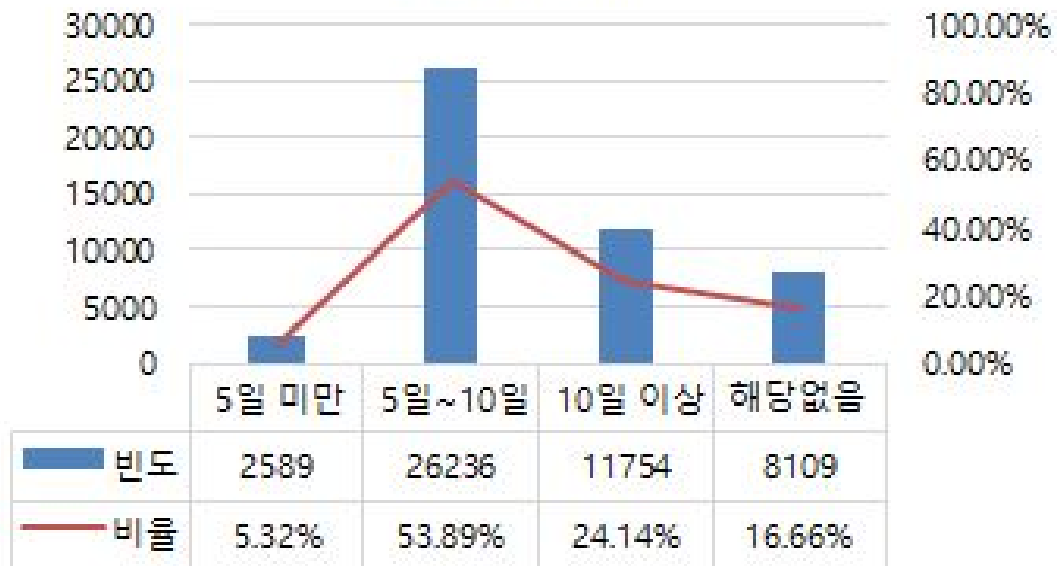
공공조달시장의 조달대상은 크게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로 나눌 수 있다. 각 조달대상의 특성에 따라 낙찰자선정 방식이나 계약체결 방식이 다양하다. 중앙공공기관들의 조달대상 비중을 살펴보면, 물품구매가 18,432건(37.86%)로 가장 많았으며, 용역이 16,766건(34.44%), 시설공사가 12,746건(26.18%)으로 비율이 특정 조달대상에 크게 치우쳐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앙조달(조달청)의 경우 물품이 82.39%, 용역이 8.16%인 것을 고려했을 때 조달청에 비해 용역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용역계약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그림 11] 참조).

4. 조달대상



[그림 11] 중앙공공기관 조달대상 기초통계량

5. 공고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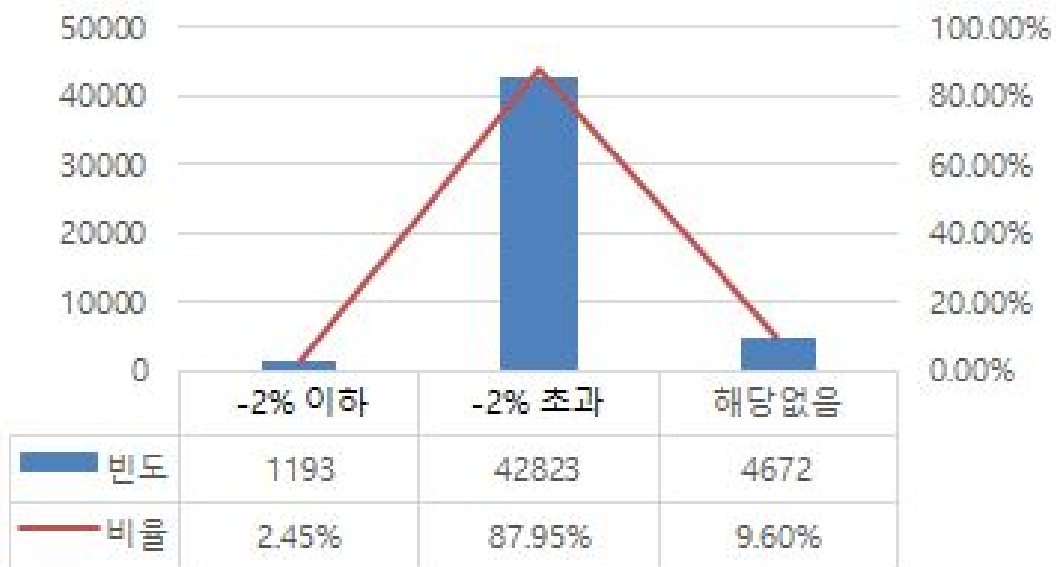


[그림 12] 중앙공공기관 공고일수 기초통계량

입찰방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들을 경쟁에 부치고자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보통 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하며, 재공고의 경우나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최소 5일 전까지 입찰공고를 내야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3조 및 35조에 명시하고 있다. 중앙공공기관의 공고일수 현황을 보면, 5일 미만인 경우가 2,589건(5.32%)이었고, 5일 이상 10일 미만인 경우가 26,236건(53.89%), 10일 이상인 경우가 11,754건(24.14%)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기관에서 최소 공고기간인 5일을 지키고 있지만 5.32%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지키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업체들이 충분한 입찰정보 및 준비기간 부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의계약 및 공고의 방법(일반, 긴급)에 상관없이 필수 공고기간은 준수되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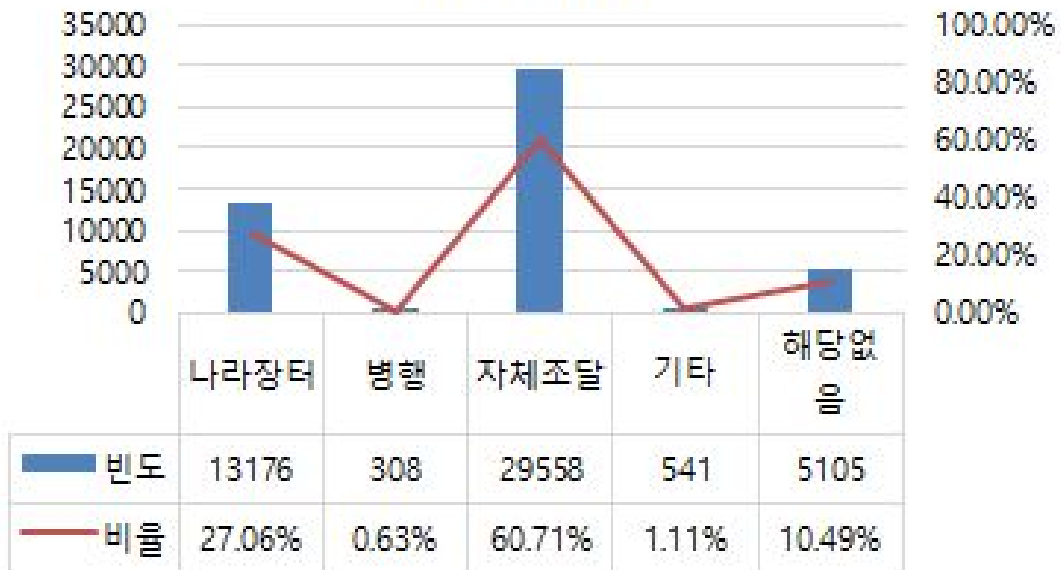
6-2. 가격편차율



[그림 13] 중앙공공기관 가격편차율 기초통계량

예정가격 편차율의 경우 119개 기관 중 87%가 넘는 계약집행 사례에서 예정가격 편차가 -2%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복수예비가격 산정 구간인 기초금액의 $\pm 2\%$ 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미만의 경우 1,193건으로 전체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2%초과의 경우 42,823건으로 전체의 87.95%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없는 사항은 4,672건으로 전체 9.60%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3] 참조).

7. 조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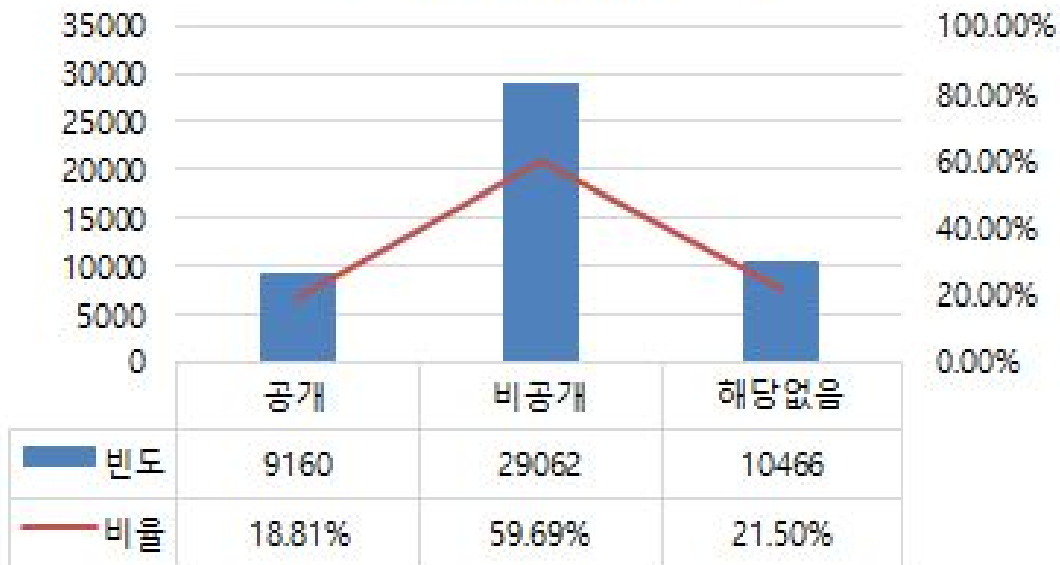


[그림 14] 중앙공공기관 조달방법 기초통계량

119개의 중앙공공기관 중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하고 있는 기관은 13,176건(27.06%)에 불과했으며, 각자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체조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29,558건(60.71%)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입찰참가자 입장에서는 단일경로에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찰참가자의 입찰 정보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입찰공고를 나라장터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그림 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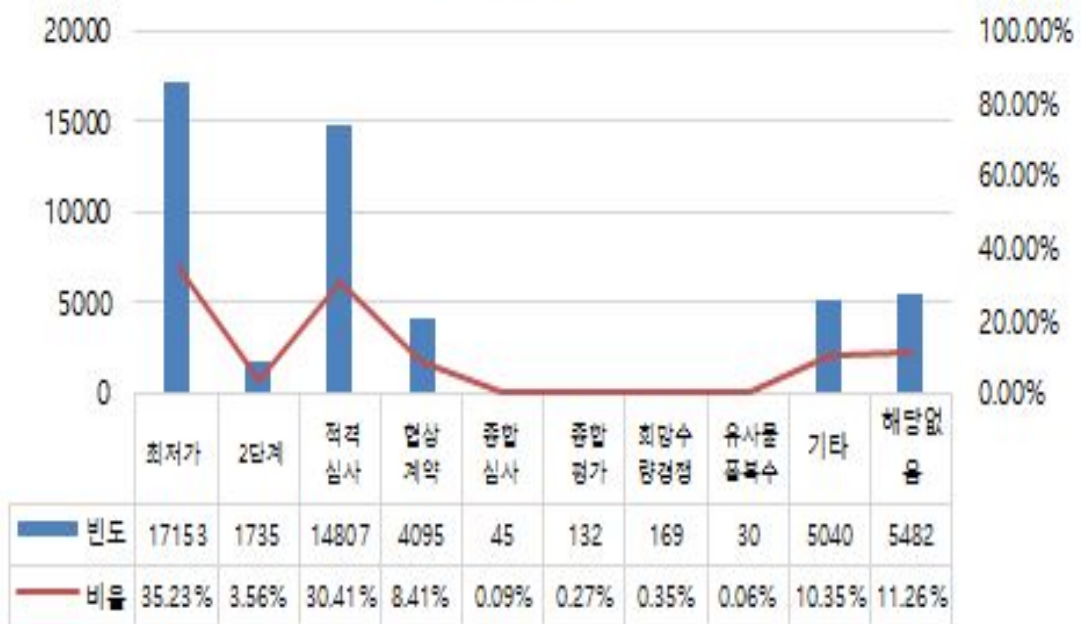
중앙조달(조달청)을 포함한 몇몇 기관에서는 입찰참여의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요기관에서 사전에 규격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사전규격 공개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면, 119개의 중앙공공기관의 사업건수 중 9,160건(18.81%)만이 공개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기관에서는 사전규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그동안 많은 기관 및 사업에서 입찰 참가자에게 균등한 입찰기회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일명 ‘규격 알박기 입찰’등의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조달(조달청)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정부기관으로 확대되어 나라장터에 의무적으로 사전규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참가업체에 홍보를 통해 사전규격공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그림 15] 참조).

8. 사전규격 공개여부



[그림 15] 중앙공공기관 사전규격 공개여부 기초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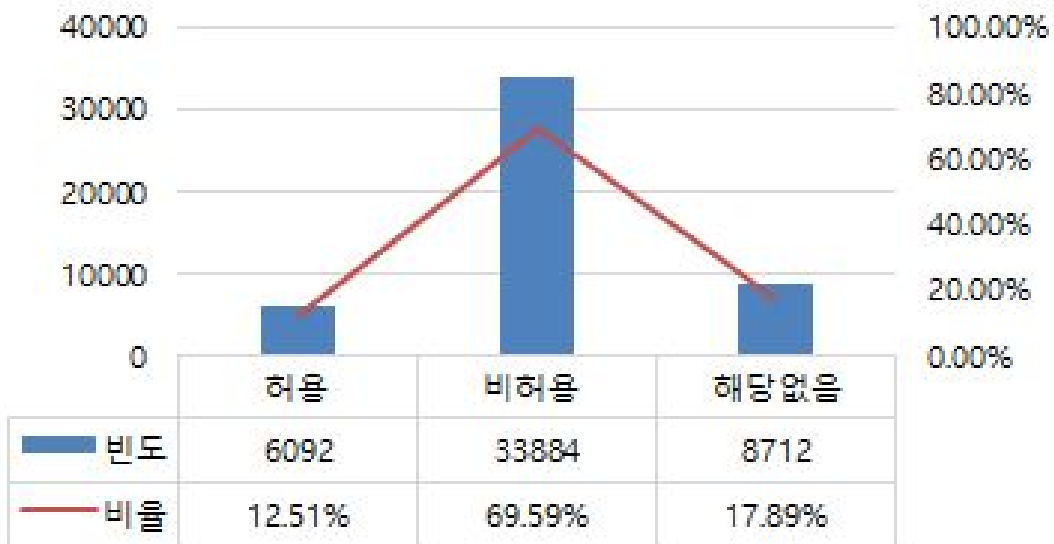
9. 낙찰방법



[그림 16] 중앙공공기관 낙찰방법 기초통계량

낙찰방법의 경우 최저가입찰 또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이 17,153건(35.2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적격심사가 14,807건(30.4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최저가 낙찰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대안적 낙찰방법의 도입과 선진 각국의 공공조달 과정에서 “최고가치 낙찰”과 관련한 제도의 도입 흐름과는 역행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순수한 의미에서 최저가는 물론 2단계 경쟁 등의 가격 입찰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최저가 낙찰 문제점 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그림 16] 참조).

11. 공동도급/수급 허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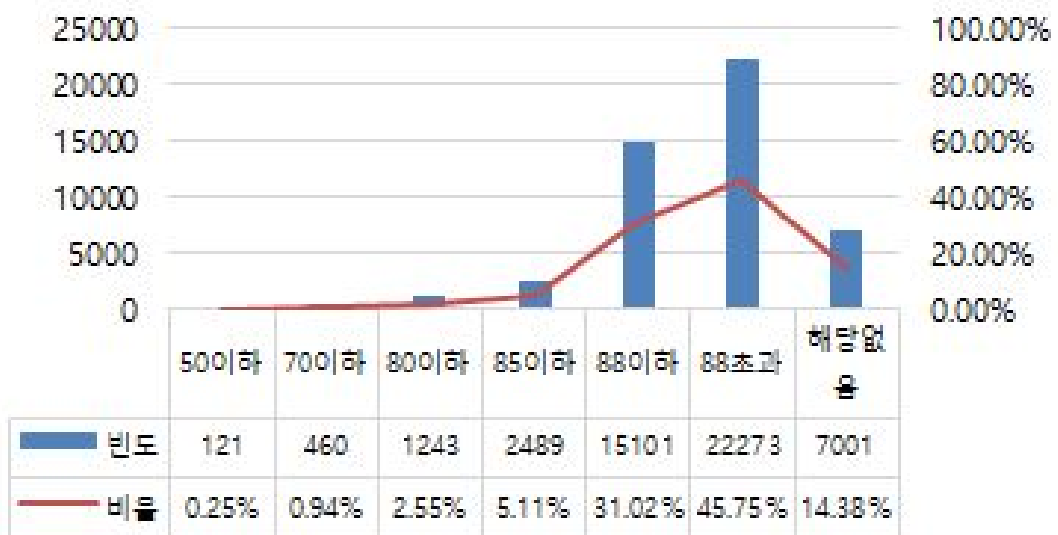
[그림 17] 중앙공공기관 공동도급/수급 허용 여부 기초통계량

공동도급 및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는 6,092건(12.51%)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기관과의 차이가 매우 큰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공동수급을 통해 다수의 업체가 공급기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입찰참가 기회 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입찰요선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도급을 의무화(시설공사의 공동도급 및 지역공동도급 의무화 사례 참조)하는 방향으로 우선적 검토가 필요하며, 적격심사 시 공동도급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그림 17] 참조).

전체 입찰 건 중 76.77%가 낙찰률 85%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8%를 초과하는 경우는 45.7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전체입찰의 0.25%에 해당하는 계약 건에서는 50% 이하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데, 낮은 비율이지만 적정 대가보장 측면과 안정적 계약이행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낙찰방법 이외에 모든 유형의 낙찰방법에서 80% 미만의 낙찰률인 경우 “최저가 적정성 심사”등을 통해서 무자격 및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실적확보 등의 목적으로 무리한 수주를 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여 계약이행의 부실화 및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그림 18] 참조).

12. 낙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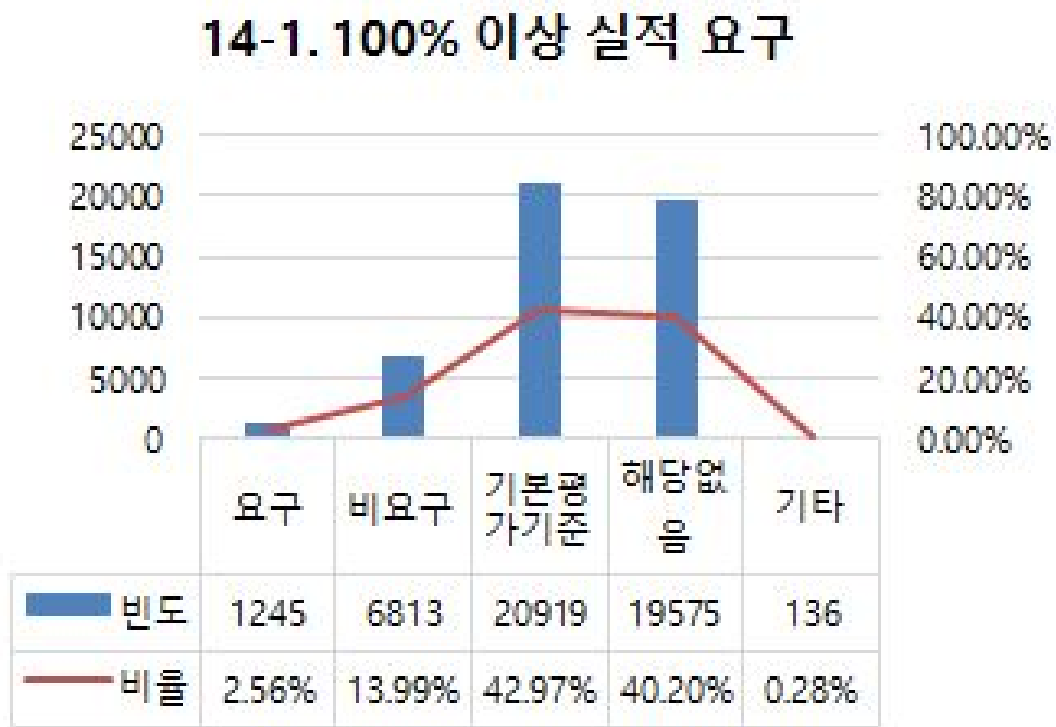
[그림 18] 중앙공공기관 낙찰율 기초통계량

13. 선금지급 여부



[그림 19] 중앙공공기관 선금지급 여부 기초통계량

전체 계약 건 중 선금이 지급된 경우는 7,158건(4.06%), 미지급하는 경우 29,073건(67.16%)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선금지급은 의무가 아니지만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영세한 중소기업이 70%이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선금지급의 확대가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기조는 현행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중 하나인 “네트워크론”의 운영취지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고려해볼만 하다. 계약시점에서 선금지급 확대를 통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확보에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선금지급 시 선금지급보증증권 등을 발급받기위한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그림 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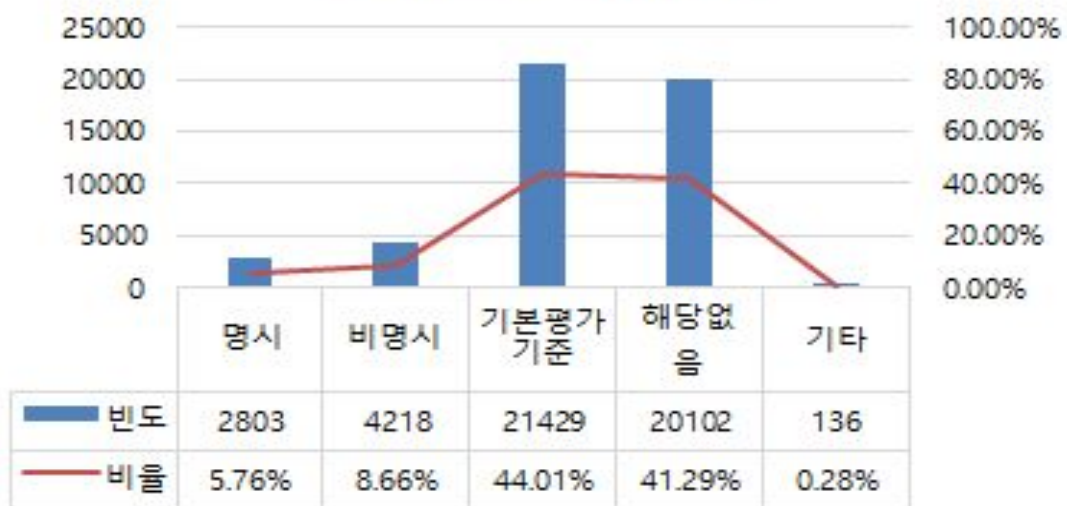
[그림 20] 중앙공공기관 100% 이상 실적 요구 기초통계량

수요기관인 중앙공공기관에서 업체에게 100%이상의 실적을 요구한 경우는 1,245건(2.56%)으로 나타났으며,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6,813건(13.99%)으로 분석됐다. 또, 기본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20,919건(42.97%)으로 대부분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0] 참조).

당해 입찰 건에 적용된 평가기준(적격심사, 협상계약 기준 등)에서 수행실적 평가 시 동등 및 유사실적 인정에 대한 구체적 평가방법 내용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2,803건(5.76%)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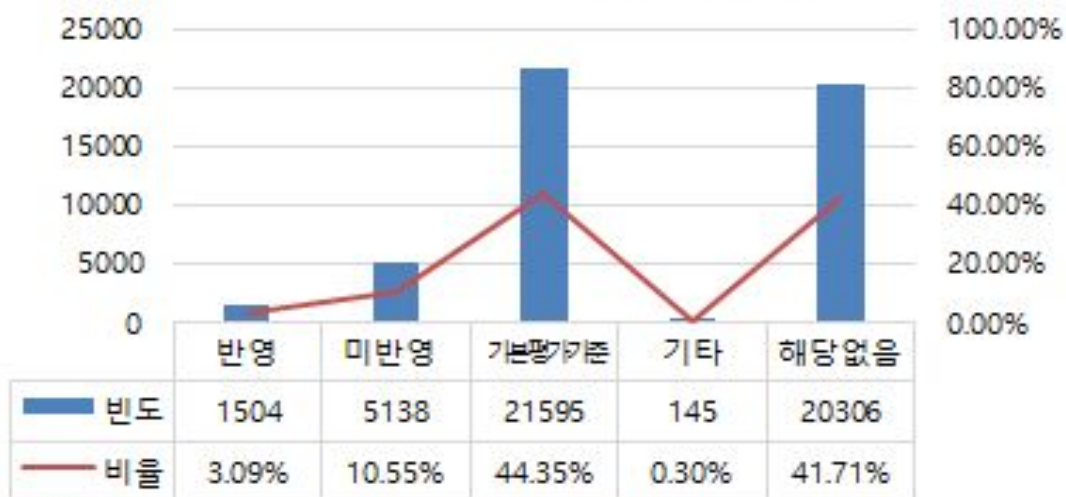
했다. 중요한 입찰에서 동등 및 유사실적 인정 방법에 따라 실적점수 획득 및 낙찰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적인정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적평가 시 동등 및 유사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기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그림 21] 참조).

14-2. 실적 평가방법 설명



[그림 21] 중앙공공기관 실적 평가방법 설명 기초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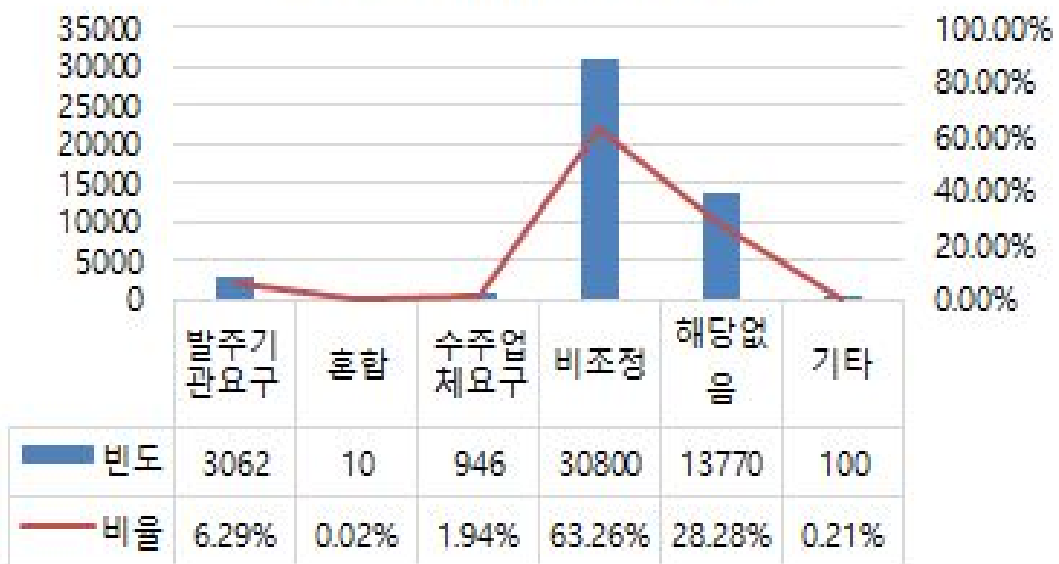
14-4. 차등적 실적평가 여부



[그림 22] 중앙공공기관 차등적 실적평가 여부 기초통계량

창업초기 기업 및 소기업에 대한 차등적 실적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입찰 건은 전체의 3.09%에 해당하는 1,504건에 불과했다. 실적평가 부분이 창업 초기기업 및 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인 만큼 입찰참가 기회 확대 측면에서 차등적 실적평가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조달청 적격심사 실적평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초기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실적 기본인정점수 및 실적 평가우대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그림 22] 참조).

17. 과업변경/조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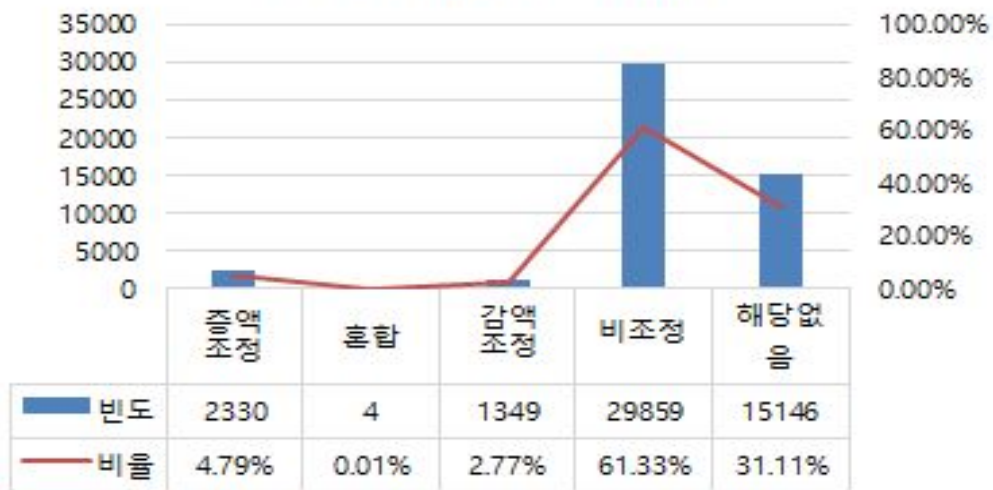


[그림 23] 중앙공공기관 과업변경/조정 여부 기초통계량

과업변경 및 조정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발주자에 의한 과도한 요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이후 과업변경을 요구한 사례 중 3,062건(6.29%)은 발주기관의 요구로 946건(1.94%)은 수주업체의 요구로 이루어져 발주자에 의한 요구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업 변경 및 조정과 관련한 내용은 상세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한 사안이며, 계약 시 예상되는 변경 내용 및 방법, 대가지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계약조건에 포함시켜야한다([그림 23] 참조).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발주자와 수주자 구분 없이 증액 조정된 경우가 2,330건(4.79%), 감액된 경우가 1,349건(2.77%)로 증액되는 사례가 감액되는 사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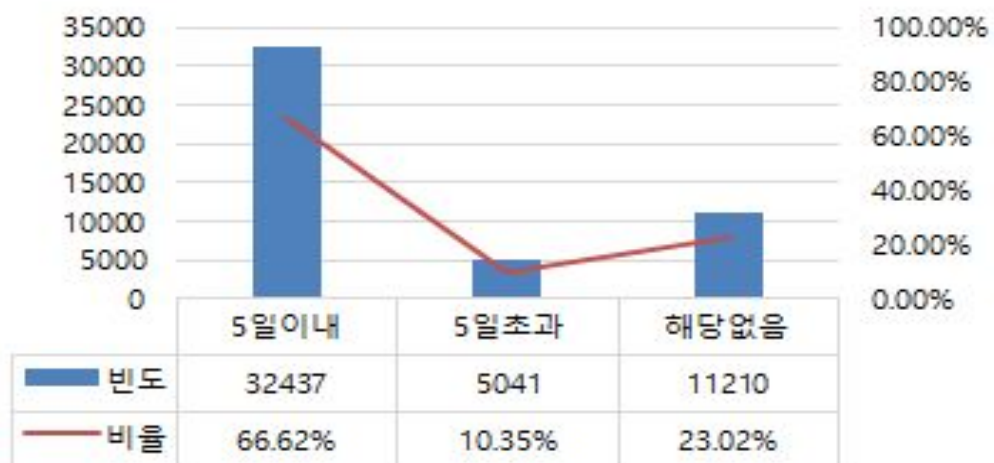
17-1. 계약금액 조정여부



[그림 24] 중앙공공기관 계약금액 조정여부 기초통계량

대금의 지급기한의 경우 계약이 완료된 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의 입금이 필요하지만 전체의 10.35%인 5,041건에서 5일을 초과하여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수주자의 계약이행 및 완료에 따른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가급적 신속히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검수 시 청구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대금 지급을 위한 요건인 수주자의 “요청”과 발주자의 “지급”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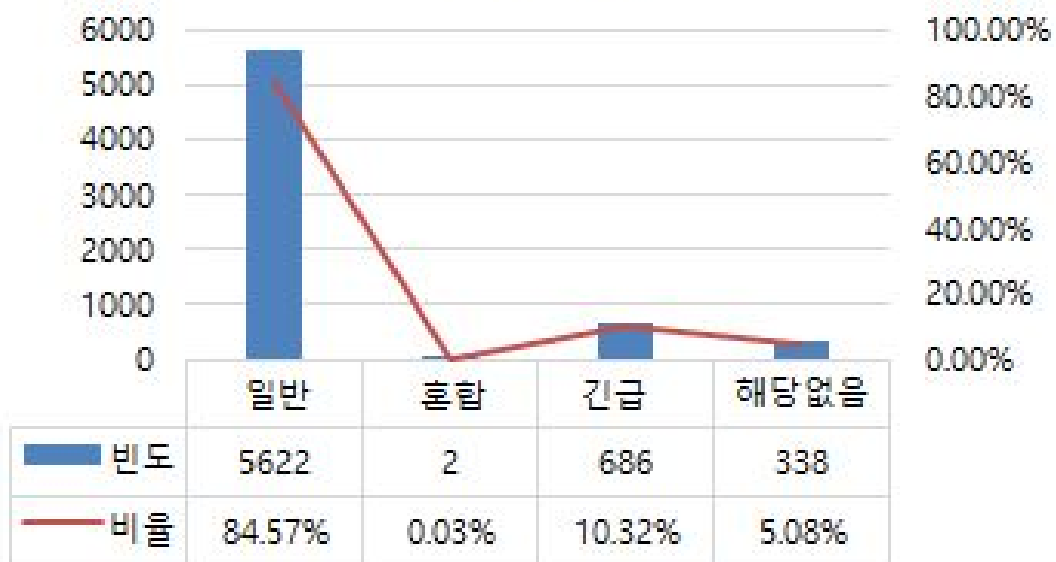
20. 대금지급 기한



[그림 25] 중앙공공기관 대금지급 기한 기초통계량

3.2 지방공공기관 기초통계량 분석

2. 공고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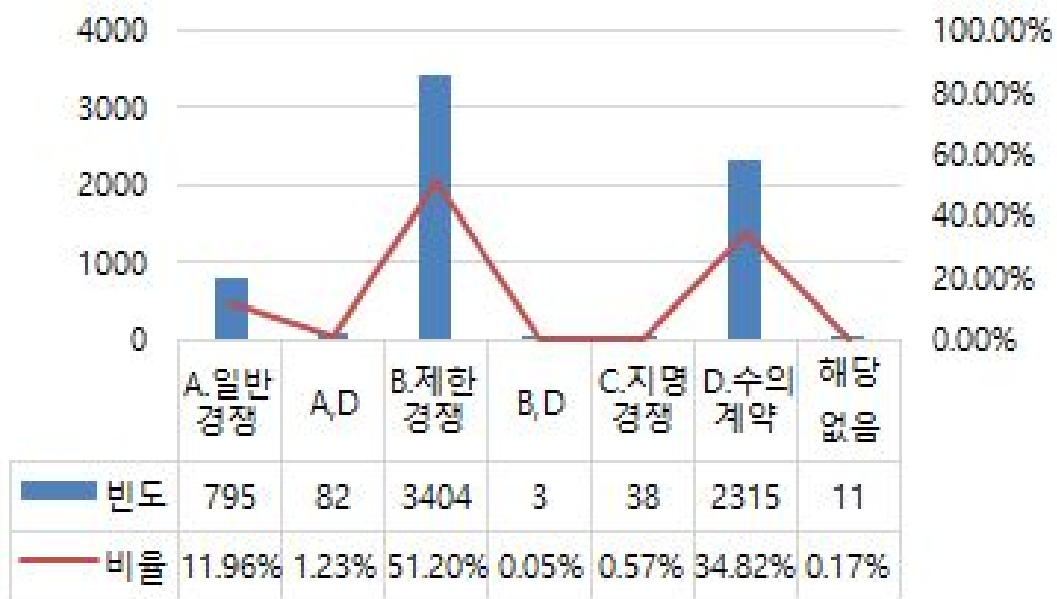
[그림 26] 지방공공기관 공고종류 기초통계량

공공조달에서 공고의 종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A.일반 공고(제35조의 제1항~제3항,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B.긴급공고(제35조의 제4항,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총 6,648건의 입찰건수 중 일반공고가 5,622건으로 84.5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입찰에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입찰기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긴급공고의 경우 686건(10.32%)의 수준으로 평균 10건 중 1건이 긴급사유 공고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입찰참가기회 확보 측면에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입찰 공고 방법의 결정 현황은 정상 범주에 속해있다고 판단되며, 현재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그림 26] 참조).

입찰 경쟁방법의 경우 크게 누구나 입찰이 가능한 A.일반경쟁, 특정지역이나 자격요건 등을 정한 경쟁인 B.제한경쟁, 지명된 업자만 입찰이 가능한 C.지명경쟁, 특정업자와 입찰하는 D.수의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제한경쟁이 3,404건(51.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수의계약 방법이 2,315건(34.82%)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일반경쟁은 795건(11.96%)로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에 비해 3분의 1이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앙조달(조달청)의 일반경쟁 비율이 32.07%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

라 할 수 있다. 이는 입찰 참가 업체들이 대부분 2천만 원 이하 소액수의 계약이거나 특정지역, 자격요건을 갖춘 제한경쟁 입찰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조달 시장이 공정한 경쟁 입찰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일반경쟁 입찰의 비율을 늘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 기업들 간 경쟁을 통하여 역량을 갖춘 새로운 기업들에게 입찰참가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 및 유사 조달대상물의 소액수의 계약 소요를 통합하여 발주함으로써 다수 기업들에게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그림 2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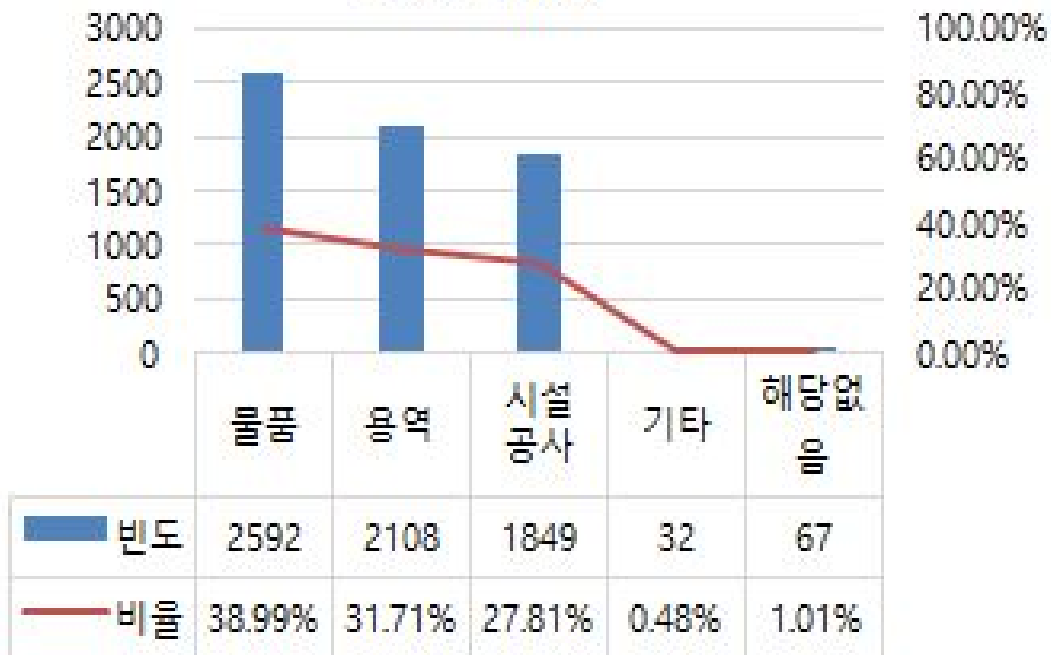
3. 경쟁방법



[그림 27] 지방공공기관 경쟁방법 기초통계량

공공조달시장의 조달대상은 크게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로 나뉠 수 있다. 각 조달대상의 특성에 따라 낙찰자선정 방식이나 계약체결 방식이 다양하다. 지방공공기관들의 조달대상 비중을 살펴보면, 물품구매가 2,592건(38.99%)로 가장 많았으며, 용역이 2,108건(31.71%), 시설공사가 1,849건(27.81%)으로 비율이 특정 조달대상에 크게 치우쳐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앙조달(조달청)의 경우 물품이 82.39%, 용역이 8.16%인 것을 고려했을 때 조달청에 비해 용역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용역계약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그림 28] 참조).

4. 조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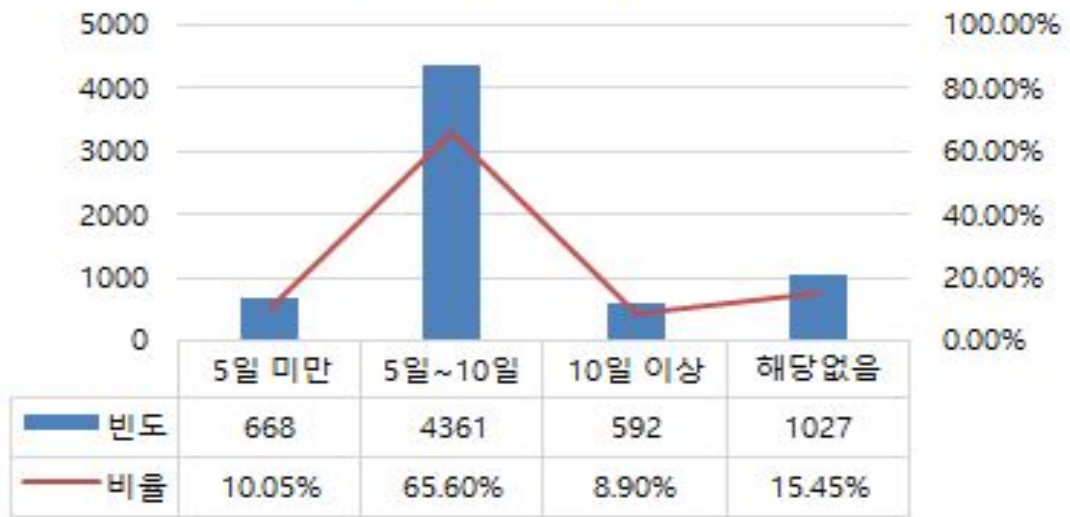


[그림 28] 지방공공기관 조달대상 기초통계량

입찰방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들을 경쟁에 부치고자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해야한다. 이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보통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하며, 재공고의 경우나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최소 5일 전까지 입찰공고를 내야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3조 및 35조에 명시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의 공고일수 현황을 보면, 5일미만인 경우가 668건(10.05%)이었고, 5일 이상 10일 미만인 경우가 4,361건(65.60%), 10일 이상인 경우가 592건(8.90%)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기관에서 최소 공고기간인 5일을 지키고 있지만 10.05%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지키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공공기관이 약 5% 정도인 것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업체들이 충분한 입찰정보 및 준비기간 부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그림 29] 참조).

따라서 수의계약 및 공고의 방법(일반, 긴급)에 상관없이 필수 공고기간은 준수되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공고일수



[그림 29] 지방공공기관 공고일수 기초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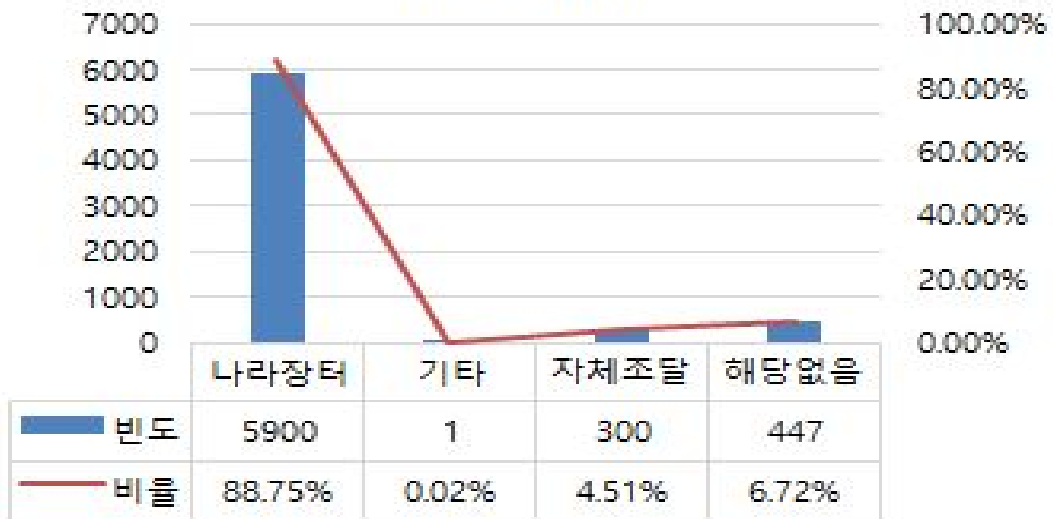
예정가격 편차율의 경우 전체 6,634건의 계약집행 사례 중 6,261건(94.18%)의 사례에서 편차가 -3%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복수예비가격 산정구간인 기초금액의 $\pm 3\%$ 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30] 참조).

6-2. 예정 가격편차율



[그림 30] 지방공공기관 예정 가격편차율 기초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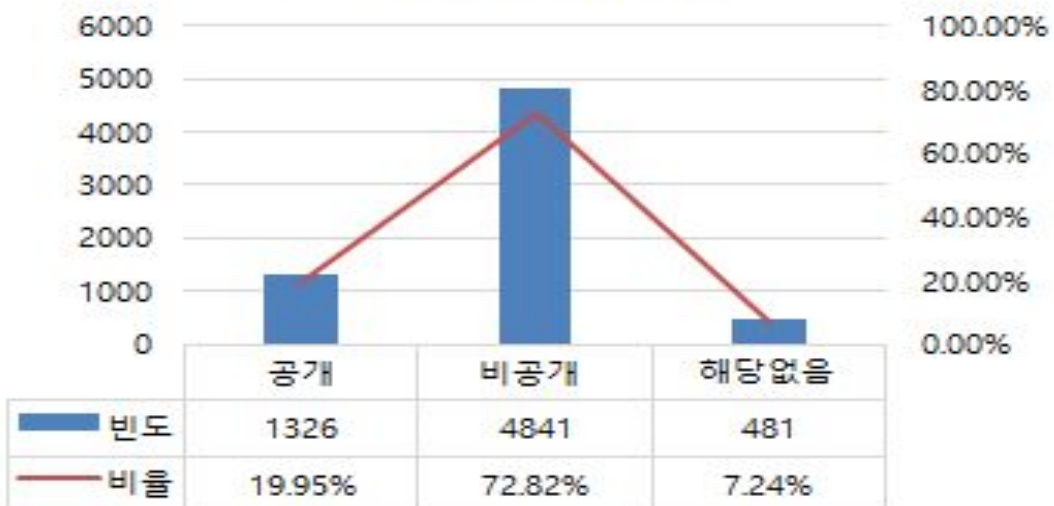
7. 조달방법



[그림 31] 지방공공기관 조달방법 기초통계량

137개의 지방공공기관 중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하고 있는 기관은 5,900건(88.75%)으로 나타났다. 중앙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이용률이 27.06%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기관 고유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경우는 4.51% 수준으로 전체의 5%미만이었으나 입찰정보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다소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의 입찰정보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입찰공고를 나라장터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그림 31] 참조).

8. 사전규격 공개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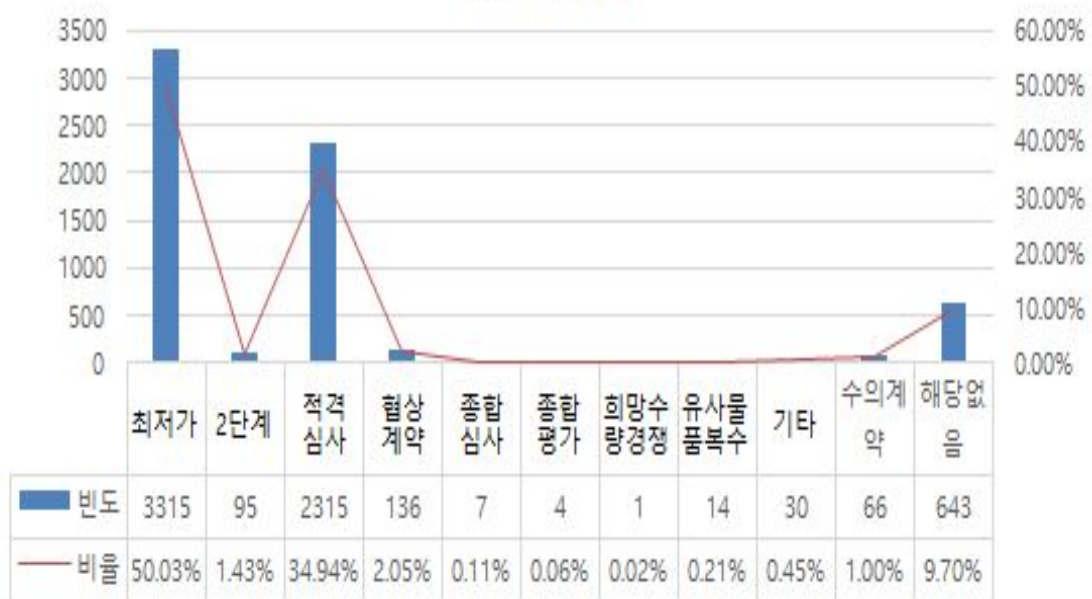


[그림 32] 지방공공기관 사전규격 공개여부 기초통계량

중앙조달(조달청)을 포함한 몇몇 기관에서는 입찰참여의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요기관에서 사전에 규격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의 사전규격 공개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면, 137개의 계약이행 건수 중 1,326건(19.95%)만이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있었으며, 70%이상의 기관에서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입찰 내용 및 형식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개진 기회에 대한 제약 및 준비기간 단축의 문제점 등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장려하여 사전규격공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조달(조달청)을 포함한 몇몇 기관에서는 입찰참여의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요기관에서 사전에 규격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사전규격 공개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면, 137개의 지방공공기관의 사업건수 중 1,326건(19.95%)만이 공개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기관에서는 사전규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그동안 많은 기관 및 사업에서 입찰 참가자에게 균등한 입찰기회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일명 ‘규격 알박기 입찰’등의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조달(조달청)의 경우 '16년 1월부터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정부기관으로 확대되어 나라장터에 의무적으로 사전규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참가업체에 홍보를 통해 사전규격공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그림 32] 참조).

9. 낙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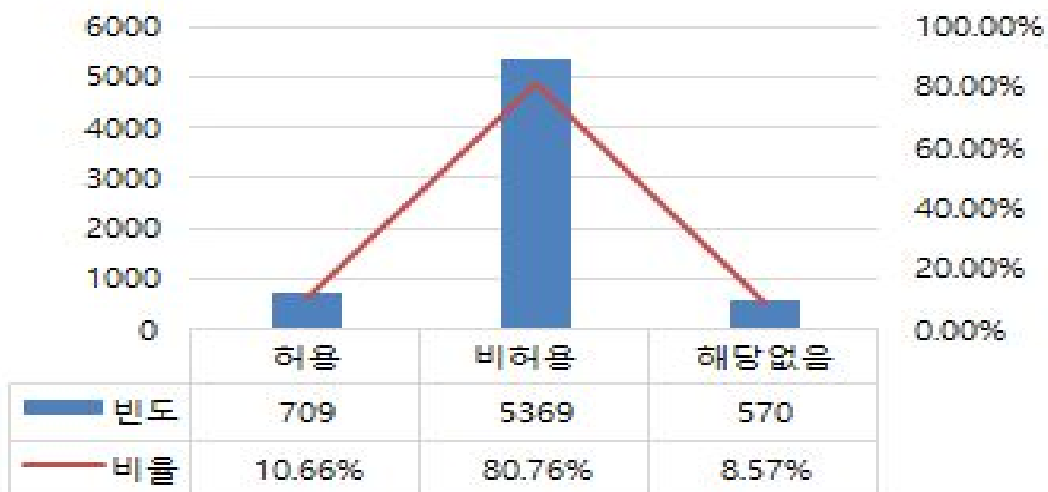


[그림 33] 지방공공기관 낙찰방법 기초통계량

낙찰방법의 경우 최저가입찰 또는 제한적 최저가입찰이 3,315건(50.03%)으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적격심사가 14,807건(30.41%)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최저가 낙찰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대안적 낙찰방법의 도입과 선진 각국의 공공조달 과정에서 “최고가치 낙찰”과 관련한 제도의 도입 흐름과는 역행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순수한 의미에서 최저가는 물론 2단계 경쟁 등의 가격 입찰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최저가 낙찰 문제점 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그림 33] 참조).

공동도급 및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는 709건(10.66%)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기관과의 차이가 매우 큰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공동수급을 통해 다수의 업체가 공급기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입찰참가 기회 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입찰요선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도급을 의무화(시설공사의 공동도급 및 지역공동도급 의무화 사례 참조)하는 방향으로 우선적 검토가 필요하며, 적격심사 시 공동도급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그림 3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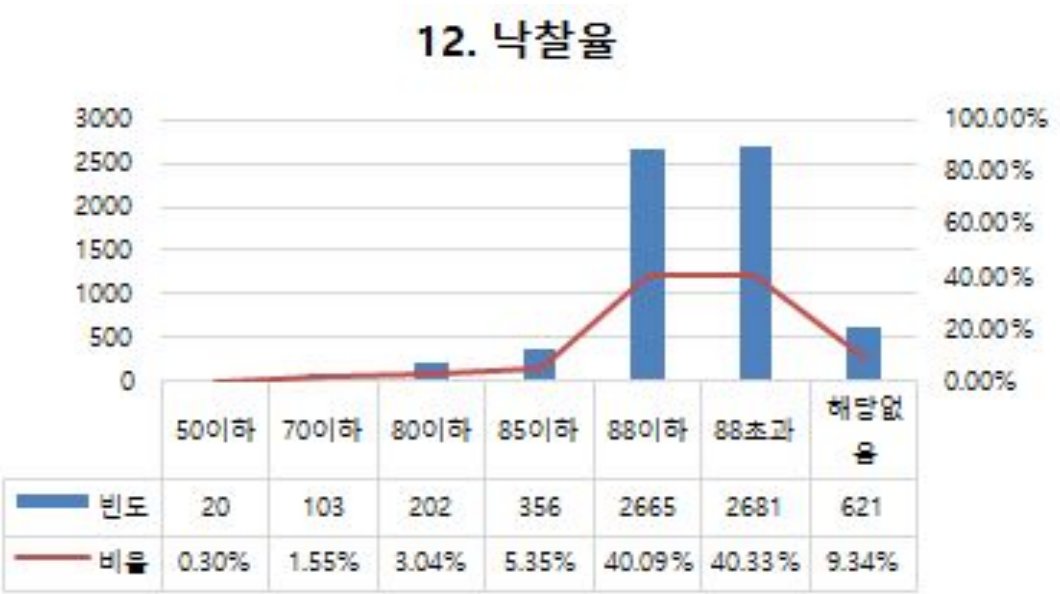
11. 공동도급/수급 허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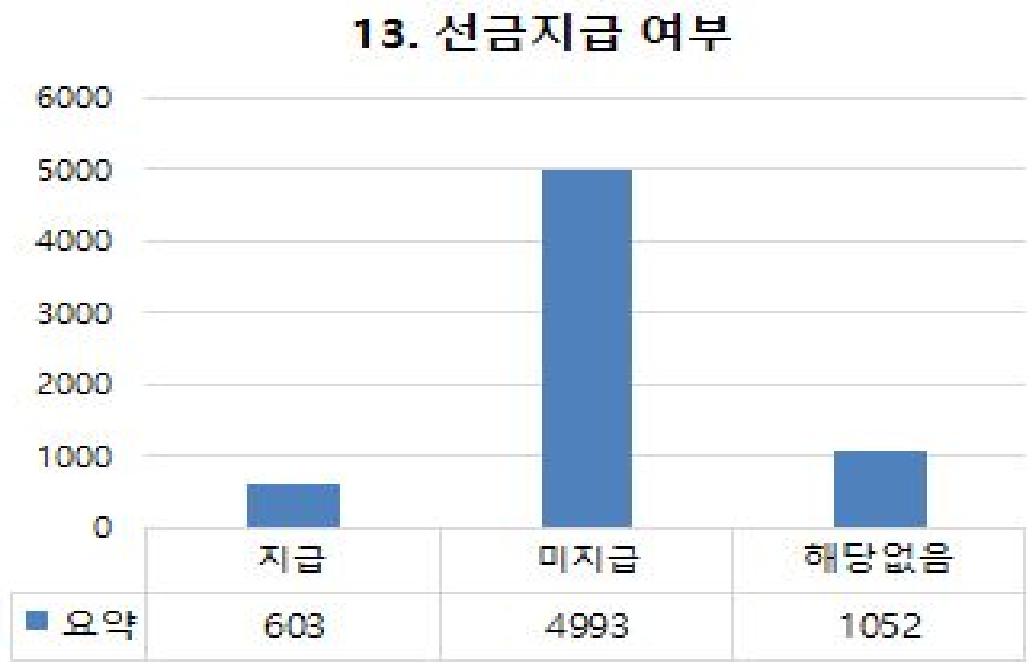
[그림 34] 지방공공기관 공동도급/수급 허용 여부 기초통계량

전체 입찰 건 중 80.42%가 낙찰률 85%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8%를 초과하는 경우는 40.3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전체입찰의 0.30%에 해당하는 계약 건에서는 50% 이하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데, 낮은 비율이지만 적정 대가보장 측면과 안정적 계약이행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낙찰 하한율이 적용되는 낙찰방법 이외에 모든 유형의 낙찰방법에서 80% 미만의 낙찰률인 경우 “최저가 적정성 심사”등을 통해서 무자격 및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실적확보 등의 목적

으로 무리한 수주를 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여 계약이행의 부실화 및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그림 35] 참조).



[그림 35] 지방공공기관 낙찰율 기초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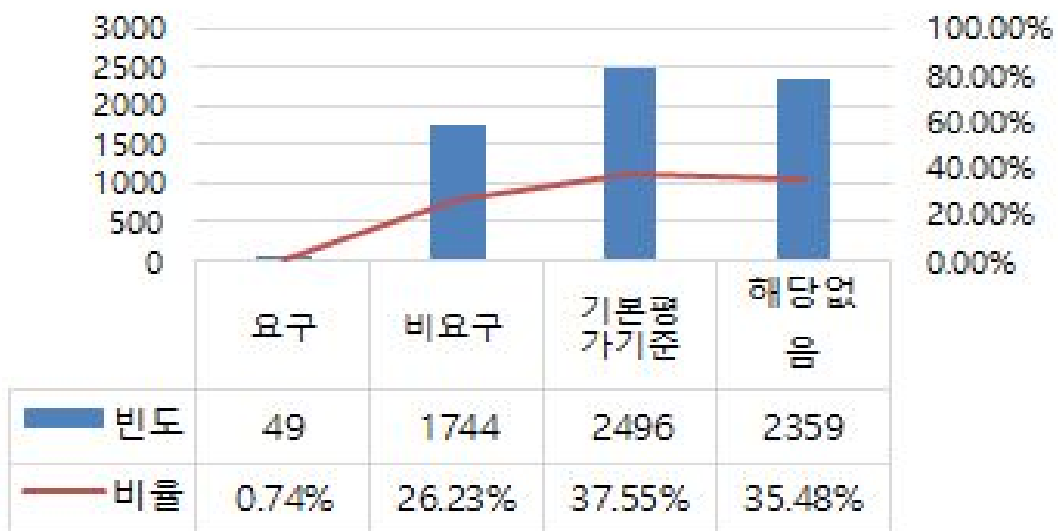


[그림 36] 지방공공기관 선금지급 여부 기초통계량

전체 계약 건 중 선금이 지급된 경우는 603건(17%), 미지급하는 경우 4,993건(75%)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선금지급은 의무가 아니지만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영세한 중소기업이 70%이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선금지급의 확대가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기조는 현행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중 하나인 “네트워크론”의 운영취지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고려해볼만하다. 계약시점에서 선금지급 확대를 통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확보에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선금지급 시 선금지급보증증권 등을 발급받기위한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그림 36] 참조).

14-1. 100% 이상 실적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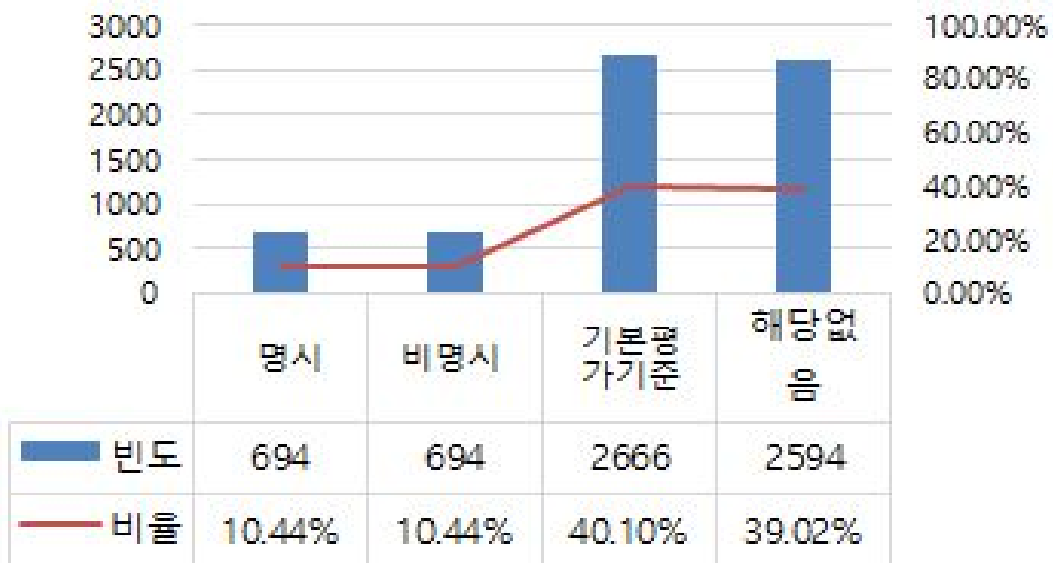


[그림 37] 지방공공기관 100% 이상 실적 요구 기초통계량

수요기관인 지방공공기관에서 업체에게 100%이상의 실적을 요구한 경우는 49건(0.74%)으로 나타났으며, 기본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1,744건(26.23%)으로 대부분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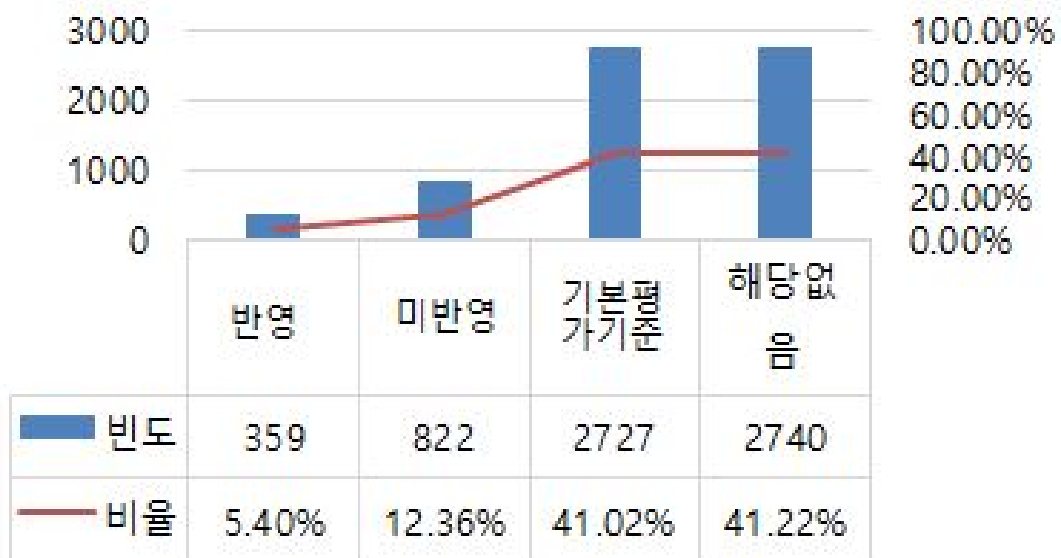
당해 입찰 건에 적용된 평가기준(적격심사, 협상계약 기준 등)에서 수행실적 평가 시 동등 및 유사 실적 인정에 대한 구체적 평가방법 내용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694건(10.44%)에 불과했다. 중요한 입찰에서 동등 및 유사 실적 인정 방법에 따라 실적점수 획득 및 낙찰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적인정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적평가 시 동등 및 유사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기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그림 38] 참조).

14-2. 실적 평가방법 설명



[그림 38] 지방공공기관 실적 평가방법 설명 기초통계량

14-4. 차등적 실적평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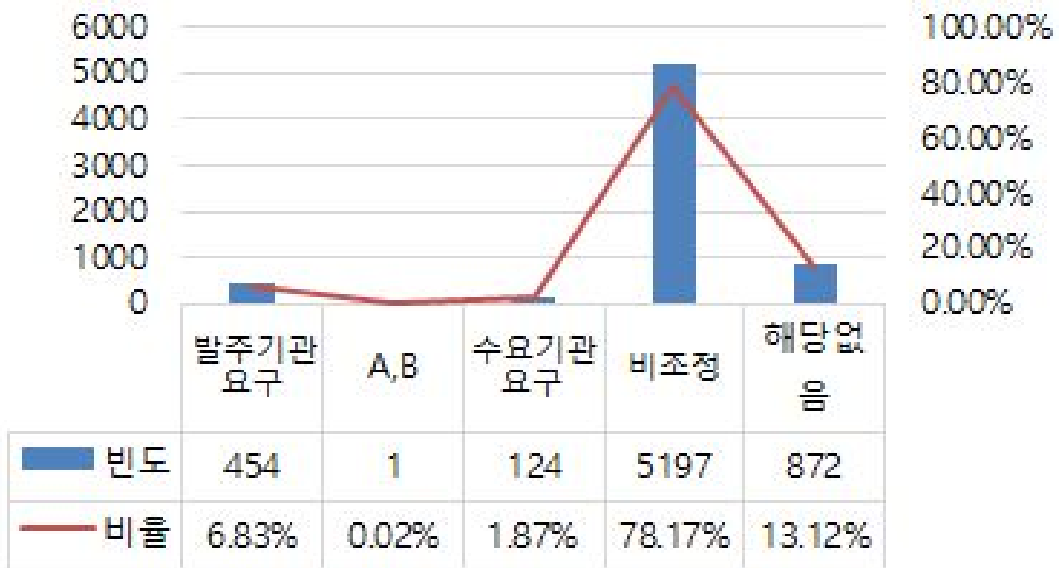


[그림 39] 지방공공기관 차등적 실적평가 여부 기초통계량

창업초기 기업 및 소기업에 대한 차등적 실적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입찰 건은 전체의 5.40%

에 해당하는 359건에 불과했다. 실적평가 부분이 창업 초기기업 및 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인 만큼 입찰참가 기회 확대 측면에서 차등적 실적평가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조달청 적격심사 실적평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초기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실적 기본인정점수 및 실적 평가우대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림 39] 참조).

17. 과업변경/조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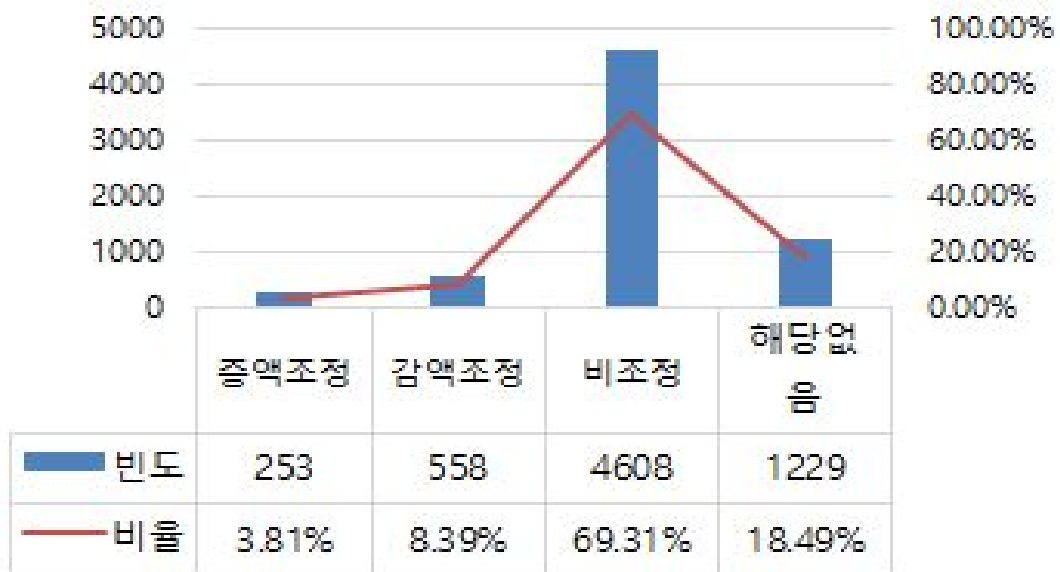


[그림 40] 지방공공기관 과업변경/조정 여부 기초통계량

과업변경 및 조정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발주자에 의한 과도한 요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이후 과업변경을 요구한 사례 중 454건(6.83%)은 발주기관의 요구로, 124건(1.87%)은 수주업체의 요구로 이루어져 발주자에 의한 요구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업 변경 및 조정과 관련한 내용은 상세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한 사안이며, 계약 시 예상되는 변경 내용 및 방법, 대가지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계약조건에 포함시켜야한다([그림 4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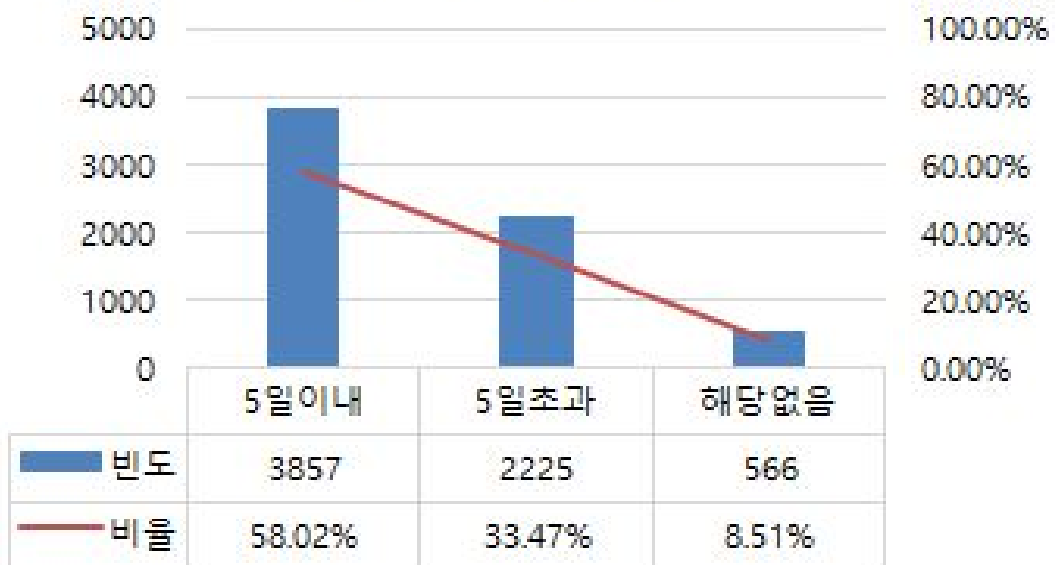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발주자와 수주자 구분 없이 증액 조정된 경우가 253건(3.81%), 감액된 경우가 558건(8.39%)로 증액되는 사례가 감액되는 사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참조)

17-1. 계약금액 조정여부



[그림 41] 지방공공기관 계약금액 조정여부 기초통계량

20. 대금지급 기한



[그림 42] 지방공공기관 대금지급 기한 기초통계량

대금의 지급기한의 경우 계약이 완료된 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의 입금이 필요하

지만 전체의 33.47%인 2,225건에서 5일을 초과하여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수주자의 계약이행 및 완료에 따른 부담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가급적 신속히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5일을 초과하는 것은 걱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검수 시 청구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대금 지급을 위한 요건인 수주자의 “요청”과 발주자의 “지급”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42] 참조).

4. 규제유발요인 식별 및 규제유발 관리지수 개발



[그림 43] 규제유발요인 식별 및 규제유발 관리지수 개발

앞서 3장에서는 2015년 자체조달 계약에 관련해서 중앙 공공기관 120개, 지방공공기관 137개의 계약실적 약 55,336건의 자료를 대상으로 20여개의 기초 항목에 대해 기초통계량 조사를 실시하여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특성을 파악하였다. 4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분석에 활용 될 핵심적인 규제유발 가능요인을 식별하고, 각 요인들을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규제유발 관리지수 개발에 활용한다. 규제유발 관리지수는 A등급부터 E등급 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평가되며, 규제유발 가능성이 높은 D, E등급의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세부 규정을 분석하는 데 활용한다([그림 43] 참조).

[표4] 규제유발 가능지수 평가 및 조사대상 기관 선정기준

규제유발(개선) 차원	평가 항목 수	배점	가중치	규제유발 가능지수 / 규제유발 등급
입찰참가기회 확대 저해 요인(진입의 자유화 / 경쟁의 활성화)	7개	70점	-	-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총점 기준으로 “규제유발 가능 지수” 산출
공정한 평가 / 낙찰 저해 요인(평가와	2개	20점	-	- 규제유발 가능지수 수준에 따라 규제

선택의 공정화)				유발 등급을 5개 등급으로 구분(대상 기관별 5분위 수 평가)
적정대가 보장 저해 요인 (수행의 안정화)	6개	60점	-	
안정적 계약이행 저해요인 (수행의 안정화)	5개	50점	-	
신속한 사후관리 저해 요인 (사후관리 신속화)	4개	40점	-	
합계	24개	240점	-	-

규제유발 요소 해소 관점에서 5대 분야 평가기준에 따라 규제유발 수준을 구하는데 평가 항목 수와 배점을 보여준다. 입찰참가 기회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에는 평가항목 7개로, 항목 당 배점 10점 만점으로, 총 70점 만점을 부여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정한 평가/ 낙찰 저해 요인에는 20점, 적정대가 보장 저해 요인에는 60점, 안정적 계약이행 저해요인에는 50점과 신속한 사후관리 저해 요인에 40점으로 총 240점 만점으로 평가가 진행된다([표4] 참조).

[표5] 규제유발 가능지수 평가기준

구분	경쟁성 강화						
평가항목	입찰공고방법 의 적정성	경쟁방법의 적정성A	경쟁방법의 적정성B	충분한 입찰 참가 기간 부여 수준 A	충분한 입찰 참가 기간 부여 수준 B	사전규격공개 적정성	제한경쟁의 적정성
배점	10	10	10	10	10	10	10
평점기준	일반 공고 비 중이 높을수 록 고평점	일반 경쟁 비 중이 높을수 록 고평점	수의 계약 비 중이 낮을수 록 고평점	7일 미만 입 찰 공고 건수	5일 미만 입찰 공고 건 수	사전규격공개 건수가 많을 수록 고평점	입찰참가제한 사유 및 건수 가 적을수록 고평가
구분	평가기준의 공정성 강화						
평가항목	공정한 평가기준 운영A			공정한 평가기준 운영B			
배점	10			10			
평점기준	100% 이상 실적 요구 입찰건 비중이 낮을수록 고평점			창업기업 등에 대한 차등적 평가기준 운영 비중이 높을수록 고평점			
구분	대가 보장 수준 향상						
평가항목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편차율 수준 A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편차율 수준 B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편차율 수준C	적정대가 보장수준A	적정대가 보장수준B	적정대가 보장수준C	

배점	10	10	10	10	10	10
평점기준	편차율2% (지방 계약법 - 3%) 초과 비중 낮을수록 고평점	편차율 5%초과 비중 낮을수록 고평점	편차율 - 10% 초과 비중 낮을수록 고평점	낙찰율 80%미만 계약건 비중이 작을수록 고평점	낙찰율 70%미만 계약건 비중이 작을수록 고평점	낙찰율 50%미만 계약건 비중이 작을수록 고평점
구분	계약이행안정성 개선					
평가항목	안정적 용역수행 환경 정도 A	안정적 용역수행 환경 정도 B	공정한 계약이행 환경 A	공정한 계약이행 환경 B	공정한 계약이행 환경 C	
배점	10	10	10	10	10	
평점기준	선금지급 계약건의 비중이 클수록 고평점	선금지급 비율이 클수록 고평점	계약특수조건 추가 비중이 낮을수록 고평점	과업변경 요구 비중이 낮을수록 고평점	과업금액 비조정 비중이 낮을수록 고평점	
구분	안정적 사후관리 개선입찰단계					
평가항목	신속한 사후관리 수준A	신속한 사후관리 수준B	공정한 사후관리수준A	공정한 평가기준 운영B		
배점	10	10	10	10		
평점기준	계약대금 지급이 5일 초과한 비중이 낮을수록 고평점	계약대금 지급이 14일 초과한 비중이 낮을수록 고평점	지체상금 부과 비중이 낮을수록 고평점	부정당제재, 소송발생 비중이 낮을수록 고평점		

[표4]에서 언급한 5대 분야 평가항목의 세부평가항목과 평점기준을 보여준다. 입찰참가의 기회 저해 요인에는 입찰공고방법의 적정성, 경쟁방법의 적정성A, B, 충분한 입찰 참가 기간 부여 수준A, B, 사전규격공개 적정성과 제한경쟁의 적정성 7가지 세부평가 항목에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공정한 평가 및 낙찰 저해 요인에는 공정한 평가기준 운영A, B로 2가지 세부평가 항목에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적정대가 보장 저해 요인에는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편차율 수준 A, B, C, 적정대가보장수준A, B, C 6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안정적 계약 이행 저해요인에는 안정적 용역수행 환경정도A, B, 공정한 계약이행 환경A, B, C 5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신속한 사후관리 저해 요인에는 신속한 사후관리 수준A, B, 공정한 사후관리A, 공정한 평가기준B 4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표5] 참조).

4.1 5대 분야 13개 규제유발 가능 요인 식별

2015년 자체조달 실적현황에 대한 기초 통계량 분석결과에 따라 규제유발 가능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기관유형별, 조달 대상별 규제 유발 가능 항목의 상호작용 및 연관성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정성 대가보장 저해요인, 입찰참가기회 확대 저해요인, 안정적 계약이행 저해요인, 공정한 평가/낙찰저해 요인, 신속한 사후관리 저해요인 등 5대 규제 유발 차원이 도출되

있고, 세부 규제유발 가능요인으로써 13개 항목이 식별되었다. 규제유발가능 요인을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문제유형(제정·설정·적용·해석의 오류)을 설정하여 향후 규정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활용한다([표6] 참조).

[표6] 5대 분야 13개 규제유발 가능 요인

규제 유발 차원	중앙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문제유형
적정대가 보장 저해 요인 (수행의 안정화)	예정가격 편차율 -2%초과로 대가보장 적정성 문제 발생 (25,780건, 52.95%)	예정가격 편차율 -3%초과로 대가보장 적정성 문제 발생 (824건, 12.39%)	기준제정/설정/적용 오류
	50% 미만의 과도한 자가 낙찰사례 존재 (121건, 0.25%)	50% 미만의 과도한 자가 낙찰사례 존재 (20건, 0.3%)	기준적용 오류
	과업변경 요구 시 계약금액 조정은 증액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감액 사례도 많음 (1,349건, 2.77%)	과업변경 시 감액 사례가 많고 특히 발주자에 의한 과업변경 요구 시 높은 감액 사례 발생 (558건, 8.39%)	기준적용 오류
입찰참가기회 확대 저해 요인 (진입의 자유화/ 경쟁의 활성화)	공고방법 및 최소 공고기간(5일) 미준수 (96건, 0.2%)	공고방법 및 최소 공고기간(5일) 미준수 (668건, 10.05%)	기준설정 오류
	낮은 사전규격공개 수준 (29,062건, 59.69%)	낮은 사전규격공개 수준 (4,841건, 72.82%)	기준해석 오류
	1배 이상 과도한 실적 요구 (1,245건, 2.56%)	1배 이상 과도한 실적 요구 (49건, 0.74%)	기준제정/설정/적용 오류
안정적 계약이행 저해요인 (수행의 안정화)	낮은 선금지급 수준 (29,073건, 59.71%)	낮은 선금지급 수준 (4,993건, 75.11%)	기준해석/적용 오류
	발주자에 의한 과업변경 요구 빈번 (수주자 대비 3배 이상) (3,062건, 6.29%)	발주자에 의한 과업변경 요구 빈번 (수주자 대비 3.6배 이상) (454건, 6.83%)	기준적용 오류
공정한 평가/낙찰 저해 요인 (평가와 선택의 공정화)	낮은 실적 평가방법 사전 공개 수준 (4,218건, 8.66%)	낮은 실적 평가방법 사전 공개 수준 (694건, 10.44%)	기준제정 오류
	협상계약 시 특정 평가항목 과다 배점 (90건, 0.18%)	협상계약 시 특정 평가항목 과다 배점 (1건, 0.02%)	기준제정, 설정 오류
	협상계약 시 평가비중 설정 자의성 (275건, 0.56%)	협상계약 시 평가비중 설정 자의성 (5건, 0.08%)	기준제정, 설정 오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차등적 평가 미시행 (5,138건, 10.55%)	중소기업 등에 대한 차등적 평가 미시행 (822건, 12.36%)	기준설정 오류
신속한 사후관리 저해 요인 (사후관리 신속화)	5일 이상 초과한 대금지급 (5,041건, 10.35%)	5일 이상 초과한 대금지급 (2,225건, 33.47%)	기준적용 오류

식별 된 5대 분야 13개 규제유발 가능요인 중 문제가 되는 사업건수가 많은 항목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공공기관의 경우 “사전규격공개 미 실시 사례”의 경우가 120개 기관 중 110개 기관(91.67%)에서 발생하였으며, 개별 사업 건수로는 48,688건 중 29,062건(59.69%)이 발

생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항목으로는 “선금지급 미 실시 사례”, “예정가격편차율 -2%, -3% 초과”등의 규제유발 요인 항목에서 높은 비율의 사업 건수를 보이고 있다([표7] 참조).

[표7] 중앙공공기관의 규제유발 가능요인 건수 및 비율

항목명	중앙공공기관			
	해당기관(개)	비율	건수	비율
1. 예정가격편차율 -2%, -3% 초과	85	70.83%	25,780	52.95%
2.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 낙찰사례	30	25.00%	121	0.25%
3. 과업변경 시 감액 사례	43	35.83%	1,349	2.77%
4. 공고기간 5일 미만 사례	11	9.17%	96	0.20%
5. 사전규격공개 미 실시 사례	110	91.67%	29,062	59.69%
6. 100%이상 실적 요구 사례	50	41.67%	1,245	2.56%
7. 선금지급 미 실시 사례	109	90.83%	29,073	59.71%
8. 발주자에 의한 과업 변경 사례	59	49.17%	3,062	6.29%
9. 실적평가 방법 사전공개 미 실시 사례	65	54.17%	4,218	8.66%
10. 협상계약 시 평가항목 과다배점 사례	16	13.33%	90	0.18%
11. 협상계약 시 평가비중 설정 자의성	20	16.67%	275	0.56%
1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차등적 평가 미 실시 사례	77	64.17%	5,138	10.55%
13. 5일 이상 초과한 대금지급 사례	74	61.67%	5,041	10.35%

지방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중앙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사전규격공개 미 실시 사례”의 경우가 137개 기관 중 74개 기관(54.41%)에서 발생하였으며, 개별 사업 건수로는 6,648건 중 4,841건 (72.82%)이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항목으로는 그 다음으로 많은 항목으로는 “선금지급 미 실시 사례”, “예정가격편차율 -2%, -3% 초과”등의 규제유발 요인 항목에서 높은 비율의 사업 건수를 보이고 있다([표8] 참조).

[표8] 지방공공기관의 규제유발 가능요인 건수 및 비율

항목명	지방공공기관			
	해당기관(개)	비율	건수	비율
1. 예정가격편차율-2%, -3% 초과	36	26.47%	824	12.39%
2.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 낙찰사례	7	5.15%	20	0.30%
3. 과업변경 시 감액 사례	45	33.09%	558	8.39%

4. 공고기간 5일 미만 사례	44	32.35%	668	10.05%
5. 사전규격공개 미실시 사례	74	54.41%	4,841	72.82%
6. 100%이상 실적 요구 사례	13	9.56%	49	0.74%
7. 선금지급 미실시 사례	121	88.97%	4,993	75.11%
8. 발주자에 의한 과업 변경 사례	40	29.41%	454	6.83%
9. 실적평가 방법 사전공개 미실시 사례	36	26.47%	694	10.44%
10. 협상계약 시 평가항목 과다배점 사례	1	0.74%	1	0.02%
11. 협상계약 시 평가비중 설정 자의성	2	1.47%	5	0.08%
1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차등적 평가 미실시 사례	41	30.15%	822	12.36%
13. 5일 이상 초과한 대금지급 사례	66	48.53%	2,225	33.47%

4.2 규제유발 관리지수 개발 및 적용

규제유발 관리지수는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의 계약현황 자료를 토대로 [표9]의 항목에 해당하는 21개의 규제유발 가능 점수를 산정하고, 합산된 점수를 토대로 등급화(A~E 등급)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리지수의 개발은 계약현황별로 규제를 유발할 수 있는 기관을 판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심층분석을 하기 위해 하위등급별 대상기관을 선별한다.

[표9] 규제유발 관리지수 평가 항목

문항	내 용
1	입찰공고명
2	경쟁방법(일반, 제한, 지명, 수의)
3	경쟁방법(제한경쟁, 수의계약, 지명경쟁 등)
4	공고일수(1차: / 2차:)
5	가격편차율(-2%, -5%, -10%)
6	사전규격공개 여부
7	입찰참가 제한 건수/전체사업
8	예정가격 대비 낙찰비율(80%, 70%, 50%)

9	선금지급비율
10	100%이상 실적을 요구했는지 여부
11	실적평가 시 창업초기, 소기업/소상공인, 대기업/중기업별 차등평가 반영여부
12	당해 입찰 건에 적용된 평가기준(적격심사, 협상계약 기준 등)에서 기술인력, 수행인력 등 인력 평가 시 만점을 부여하는 최대 인원 수
13	협상에 의한 약 평가기준 중 특정평가항목 배점비중 30점 초과 항목 여부
14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 시 평가비율
15	조달청 물품, 용역,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을 기준으로 기관 자체 운영하는 특수조건 운영 여부
16	계약특수조건 중 수주업체에게 업무적, 금전적 측면에서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항목 포함 여부
17	과업변경/조정 여부
18	계약금액 조정 여부
19	검사검수 완료 후 대금지급이 (실제 입금 기준)완료된 기간
20	지체상금 부과 여부
21	해당 입찰의 계약건과 관련하여 부정당제재, 소송 또는 민원 발생 여부

아래 표는 규제유발 관리지수 평가를 통해 도출된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기관 리스트이다. 해당 기관들은 A~E 등급 중 D, E등급에 해당하는 기관들이며, 중앙공공기관 중 D등급을 받은 기관은 25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18개이며, 지방공공기관 중 D등급을 받은 기관은 25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19개이다([표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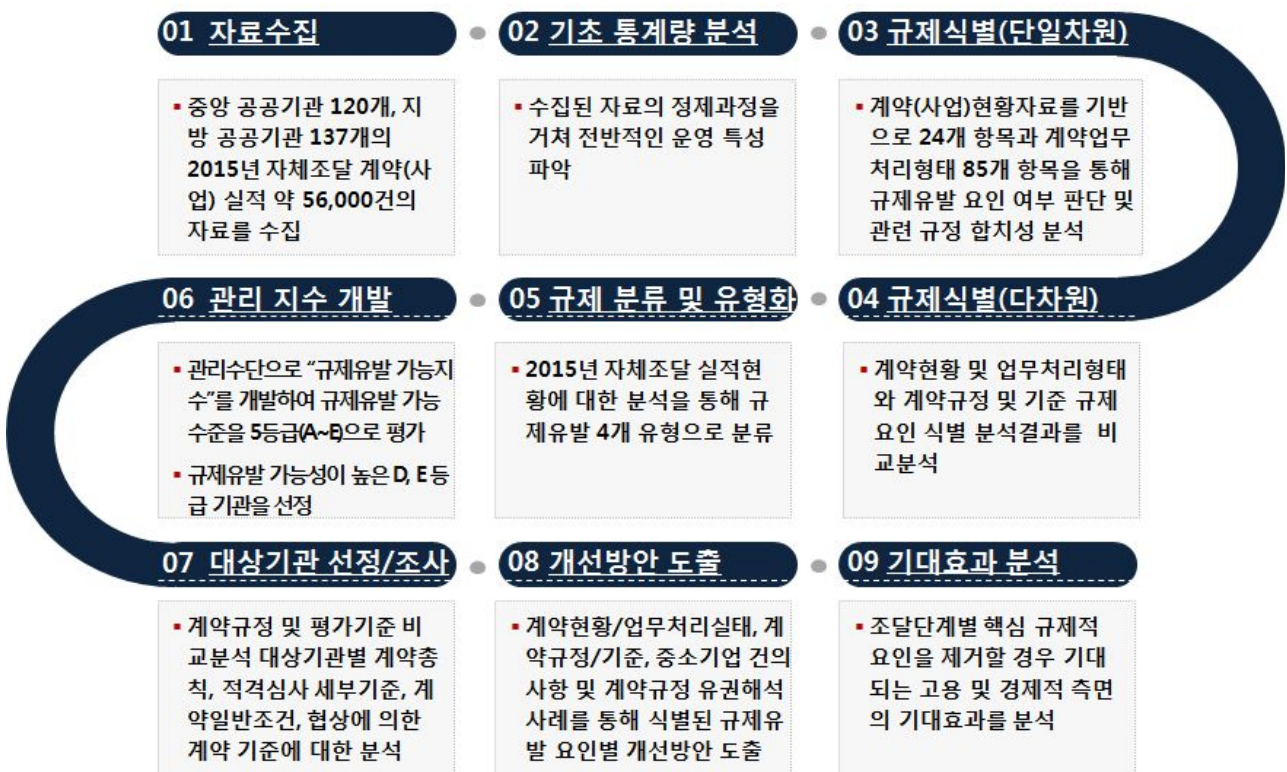
[표10] 규제유발지수 D, E 등급에 해당하는 기관 리스트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관명	등급	기관명	등급
한국관광공사	D	고양도시관리공사	D
선박안전기술공단	D	아산 시설관리공단	D
국립공원관리공단	D	강남구 시설관리공단	D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D	광주환경공단	D
공무원연금공단	D	김포도시공사	D
한국광해관리공단	D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D
국립생태원	D	구미 시설공단	D
(재)우체국물류지원단	D	부산 도시공사	D
교통안전공단	D	서울SH공사	D

한국원자력환경공단	D	인천교통공사	D
한국연구재단	D	창원 경륜공단	D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D	강릉관광개발공사	D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D	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	D
한국중부발전(주)	D	서울매트로	D
한국감정원	D	성동구 시설관리공단	D
한국동서발전(주)	D	화성도시공사	D
한국국제협력단	D	경북 관광공사	D
한국서부발전	D	대구환경공단	D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	함안 지방공사	D
한국국토정보공사	D	달성군시설관리공단	D
한국전력거래소	D	안동 시설관리공단	D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D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D
한국전력공사	D	양평공사	D
한국토지주택공사	D	울산도시공사	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D	인천강화군시설관리공단	D
예금보험공사	E	광주도로공사(광주광역시도시공사)	E
한국지역난방공사	E	남양주도시공사	E
한국남동발전(주)	E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E
인천국제공항공사	E	인천계약구시설관리공단	E
울산항만공사	E	김해 도시개발공사	E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	광주광산구 시설관리공단	E
한국전기안전공사	E	부산 환경공단	E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E	춘천도시공사	E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E	평택항만공사	E
대한석탄공사	E	수원시시설관리공단	E
한국석유공사	E	서울농수산식품공사	E
주택도시보증공사	E	부산 시설공단	E
인천항만공사	E	김대중컨벤션	E
한국디자인진흥원	E	대구도시철도공사	E
한국가스공사	E	파주시시설관리공단	E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E	의왕시도시공사	E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E
한국주택금융공사	E	인천부평구시설관리공단	E
		서울시설관리공단	E

5장에서 계약규정 및 평가기준 비교분석 대상기관별 계약총칙,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일반 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상위규정과 합치성을 분석한다.

5.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상·하위 규정 분석



[그림 41]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상·하위 규정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도출된 규제유발가능 지수에서 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중앙 43개, 지방 44개)을 대상으로 계약규정 및 평가기준 비교분석 대상기관별 계약총칙,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상위규정과 합치성을 분석한다. 더불어 계약현황 및 업무처리실태, 계약규정 및 기준, 중소기업건의사항 및 계약규정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식별된 규제유발 요인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되는 핵심 규제요인을 제거할 경우의 기대효과 및 고용·경제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그림 41] 참조).

5.1 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

비교대상이 되는 각 기관별 자료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규정 자료들이며, 해당 자료는 자료요청에 의한 직접제출,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는 자료 등을 토대로 자료를 구성

하였다. 규제유발 요인지수 D~E등급 리스트에는 있지만 자료 분석 대상 리스트에는 없는 기관은 자체규정이 없거나 상위규정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 기관들이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현황은 [표11]과 같다.

[표11] 규제유발지수 D, E 등급에 해당하는 기관 리스트 2

비교대상	구분	기관명
총칙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동서발전,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력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연구재단
적격심사	물품구매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일반용역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용역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일반용역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시설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협상계약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특수조건	물품구매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일반용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교통안전공단, 대한석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
	시설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5.1.1 공공기관의 계약관련 규정 보유 현황

[표12] 중앙 공공기관 계약관련 규정 보유 현황

구분	기관수 (전체)	총칙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기준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물품	일반 용역	기술 용역	시설 공사		물품	일반 용역	기술 용역	시설 공사	물품	일반 용역	기술 용역	시설 공사
준정부기관	120	82	19	18	9	18	20	12	11	3	11	9	21	4	10

[표13] 중앙 공공기관 중 규제유발 가능지수 평가등급 D, E 해당기관(43개) 계약관련 규정 보유 현황

구분	기관수(D,E 등급)	총칙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기준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물품	일반 용역	기술 용역	시설 공사		물품	일반 용역	기술 용역	시설 공사	물품	일반 용역	기술 용역	시설 공사
준정부기관	43	33	9	7	6	8	7	7	8	2	9	5	15	2	6

[표14] 지방 공공기관 중 규제유발 가능지수 평가등급 D, E 해당기관(44개) 계약관련 규정 보유 현황

구분	기관수(D,E등급)	총칙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기준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물품	일반 용역	기술 용역	시설 공사		물품	일반 용역	기술 용역	시설 공사	물품	일반 용역	기술 용역	시설 공사
준정부기관	4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 35호)										- 입찰 건별 필요시 추가 - 정형화된 문서형태의 고유기 준 아님			

중앙 공공기관 120개 중 규제유발 가능지수에 따라 규제유발 가능성이 높은 D, E등급에 해당하는 43개 기관 중 33개 기관을 대상(중복제외)으로 계약규정 총칙, 적격심사, 협상계약,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을 비교하였다([표13] 참조). 지방 공공기관 137개의 경우는 행자부 예규 제 34호, 제35호에 따라 계약을 집행하고 있고 17개 광역지자체 중 13개 광역지자체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분석하였다.

[표15] 중앙공공기관 분석대상기관현황

비교 대상	구분	기관명
총칙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동서발전,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력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연구재단
적격심사	물품구매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일반용역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용역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일반용역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시설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협상계약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특수조건	물품구매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일반용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교통안전공단, 대한석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
	시설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모두 계약특수조건에서 계약상대자로서 조달업체의 부담을 심화할 수 있는 조항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찰공고 건을 개별 분석하여 문제점 식별한다.

아래 표를 보면 공공조달 및 계약집행 5단계 관점에서 주로 입찰부터 계약이행 단계가 전체의 약 7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입찰과 평가 및 낙찰단계에서 업체에게 부담 또는 불합리한 행태적 문제를 유발하는 규제적 요인을 많이 포함한 규정 및 기준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16] 참조).

[표16] 조달단계별 행태적 문제를 유발하는 규제적 요인 분석

단계	입찰이전	입찰단계	평가 및 낙찰	계약이행	사후관리	합계
건수	0건	5건	46건	16건	13건	80건
비중	0%	6.25%	57.5%	20%	16.25%	100.00%

[표17]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계약 관련 규정 및 기준 분석결과 종합

단계		입찰이전	입찰단계	평가 및 낙찰	계약이행	사후관리	합계
규정 총칙	빈도	-	5건	1건	3건	3건	12건
일용적격	빈도	-	-	8건	-	-	8건
물품적격	빈도	-	-	15건	-	-	15건
기용적격	빈도	-	-	6건	-	-	6건
공사적격	빈도	-	-	4건	-	-	4건
용역일반조건	빈도	-	-	-	3건	2건	5건
물품일반조건	빈도	-	-	-	2건	2건	4건
공사일반조건	빈도	-	-	-	7건	6건	13건
협상계약	빈도	-	-	12건	-	-	12건
특수조건	빈도	-	-	-	1건	-	1건
종합	빈도	-	5건	46건	16건	13건	80건
	비중	0%	6.25%	57.5%	20%	16.25%	100.00%

5.2 대상 규정식별 및 주요 분석 내용

아래 표는 계약규정 및 평가기준 비교분석 대상기관별 계약총칙,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에 대한 분석을 보여준다([표18] 참조).

[표18] 계약규정 문서별 비교기준 및 분석중점

비교 기준문서	비교 대상문서 (기관별 보유 문서)	분석 중점
기재부 계약예규, 계약사무규칙	중앙 공공기관의 계약규정 총칙	- 입찰참가제한, 평가기준, 대가보장과 관련한 조항 호 중심 비교
행정자치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34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35호)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계약규정 총칙 없이 행정자치부 계약예규 공통 적용	
중앙 공공기관 :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물품, 일반/기술용역, 시설공사)	중앙 공공기관의 적격심사기준 (물품, 일반/기술용역, 시설공사)	- 적격심사 적용구간(추정금액) 구분 및 적격통과 점수 등의 적정성 -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평가 여부 - 적격심사 주요 평가항목, 배점비중, 평점기준의 차이점 식별(계약예규에 따른 평가체계 정합성 확보 여부) - 낙찰하한율 차이점 - 기재부 / 조달청과 행정자치부 기준 비교분석
지방 공공기관 : 기관이 소속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지방 공공기관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만 비교 (물품, 기술, 시설공사는 행정자치부 예규 공통 적용)	
중앙 공공기관 : 조달청 계약일반조건(물품, 일반/기술용역, 시설공사)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의 계약일반조건 (물품, 일반/기술용역, 시설공사)	- 비교 기준문서와 동일하지 않으면서 수주자에게 불리한 조항 식별 - 계약일반조건 포함 부적절 항목 식별 - 수주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요구하는 조항 추가 여부 (감액 조건 등) 식별 - 기재부/조달청과 행정자치부 기준 비교분석
지방 공공기관 : 행정자치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물품, 일반/기술용역, 시설공사)		
중앙 공공기관 : 조달청 계약특수조건(물품, 일반/기술용역, 시설공사)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의 계약특수조건 (물품, 일반/기술용역, 시설공사)	- 당해 입찰의 과업내용 및 계약 이행과 직접적 관련성 없는 내용 항목 추가 여부 - 수주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요구하는 조항 추가 여부 (감액 조건 등) - 기재부 / 조달청과 행정자치부 기준 비교분석
지방 공공기관 : 행정자치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물품, 일반/기술용역, 시설공사)		

아래 표는 계약현황/업무처리실태, 계약규정/기준, 중소기업 애로 건의사항 및 계약규정,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식별된 규제유발 요인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표19] 참조).

[표19] 규제식별 분석자료원별 중점식별 규제유형

분석 자료원	4대 규제유발 요인 유형	분석 중점	개선 방향성
계약현황/업무처리 (자체조달사업 운영실태)	기준적용 상 규제유발 요인 식별 중점	계약현황 및 업무처리형태가 규정 및 기준에 의한 것인지를 교차분석	규정 및 기준의 조항호의 제·개정 및 폐지
계약규정/기준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공공기관 자체 계약규정)	기준제정 및 설정상 규제유발 요인 식별 중점	계약규정과 기준의 규제유발 가능 요소가 실제 계약현황/ 업무처리 및 중소기업 애로사 항 연계 여부 교차 분석	규정 및 기준 중 조항에 서 과다 및 과소 설정된 기준치 조정
중소기업 애로사항 (중소기업 움부즈만)	기준적용 상 규제유발 요인 식별 중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계약 규정 및 기준과의 연계성 교 차 분석	애로사항 유발 요인 관련 규정의 강행, 금지 규정 추가(열거주의)
질의회신사례 (조달청 나라장터)	기준해석 상 규제유발 요인 식별 중점	규제유발 요소로 전환 가능성 높은 규정 및 기준의 유권해 석에 대한 교차분석	규정 및 기준 해석상 판 단오류 유발 가능 조항호 의 규제적 해석 가능요소 에 대한 단서 및 부연설 명 명기

5.3. 계약현황 및 규정/기준 비교분석을 통한 규제요인 식별 및 개선방안 검토 (종합)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계약규정 총칙,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 질의회신 사례,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을 종합하여 규정 관련 규제적 요인을 분석하여 조달단계별로 정리하였다.

입찰이전단계에서의 규제적 요인으로서는 ‘물품의 공급과 제조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부재’, ‘사전규격공개 이의제기 의견에 대한 처리방법 및 본 입찰공고와 연계성’, ‘사업예산 산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가 있다. ‘물품의 공급과 제조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부재’의 문제는 물품 구매(공급) 또는 제조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어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제조물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 증명 등을 받기 인력, 설비 등에 대한 투지비용부담이 증가한다. ‘사전규격공개 이의제기 의견에 대한 처리방법 및 본 입찰공고와 연계성’ 문제는 현재 사전규격공개가 모든 입찰 건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한계점과 별개로 사전규격이 공개된 입찰 건에 대한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영여부 등도 회신하지 않고 본입찰 공고로 게시한다는 것이다. 또, 사전규격공개 과정에서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요소정정 목적과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 ‘사업예산 산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 문제는 시설공사 등에서 최초 예산책정 및 기초금액 확정에 관련된 서류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증감요소가 있어도 계약금액

의 조정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입찰단계에서의 규제적 요인으로는 ‘구체적인 계약조건 및 산출내역 조건 등 입찰공고문이 아닌 계약특수조건 등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포함’과 ‘계약법령 위임범위를 하회하는 수의계약 금액 기준요건 운영 적정성’이 있다.

평가 및 낙찰 단계에는 ‘시설공사 등에서 거리, 무게, 면적 등에 따른 상세 실적 평가기준 부재’, ‘10억 원 이하 물품구매 입찰에서 실적평가’, ‘고시금액 미만 물품구매 입찰에 대한 별도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미운용 사례’,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실적평가 미시행 및 기본배점 및 가점 차등화 해소’, ‘신용평가등급 평점급간의 과도한 차등화 해소’, ‘적격통과점수 수준의 과도함’, ‘신인도가점 평가항목 점수 편차 해소 필요’가 있다.

계약이행단계에는 ‘입찰건별 사전 검증 또는 공개되지 않는 계약특수조건 운영’, ‘법령에 없는 사업대가 감액 조건 설정 예방’, ‘발주자에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사업대가 감액 조건 설정 예방’, ‘낮은 선금 지급 실태 개선을 위한 선금지급 의무화’, ‘낮은 선금 지급 실태 개선을 위한 선금지급 의무화’와 같은 규제요인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단계에는 ‘물품구매에 대한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기간 명시’, ‘대가 지급 기한 연장’의 규제요인이 존재한다.

[표20] 조달단계별 규제요인 식별 및 문제점, 관리규정 개선방안

단계	내용	문제점	관련규정	개선방안
입찰이전	물품의 공급과 제조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부재	- 물품 구매(공급) 또는 제조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어 동일 제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구매와 제조를 혼용하여 구매 가능하므로 제조업체들의 부담 증가 - 제조물품의 경우 직접 생산확인증명 등을 받기 위해 인력, 설비를 투자하여 비용 부담을 유발하나 공급으로 입찰이 이루어지면 비용투자 없는 유통업체도 참여 가능해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 3장 물품등록”의 제20조 내지 제23조의2	- 물품의 구매와 제조에 대한 정의를 등록단계에서 명확히 함. - 구매와 제조가 가능한 물품을 목록번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분류함. - 구매와 제조가 혼용되어야 하는 경우 제조물품을 구매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함. -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와 제조 모두 직접생산 확인조건을 갖춘 제조업체만 참여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 검토 가능함.

입찰이전	사전규격공개 이의 제기 의견에 대한 처리방법 및 본 입찰공고와 연계성	- 현재 사전규격공개가 모든 입찰 건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한계점과 별개로 사전규격 공개된 입찰 건에 대한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영여부 등도 회신하지 않고 본입찰 공고로 게시 - 사전규격공개 과정에서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 관련 불합리 요소 정정 목적과 취지 달성 한계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77조(구매규격사전공개)	- 사전규격공개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한 후 본입찰 공고토록 의무화 필요 - 필요한 경우 사전규격공개에 대한 낮은 관심도 등으로 실질적인 이의제기 및 검증 수단으로 실효성이 낮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와치도그” 제도 검토 필요
입찰이전	사업예산 산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	- 시설공사 등에서 최초 예산책정 및 기초금액 확정과 관련된 서류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증감소요가 있어도 계약금액 조정 불가	- 계약예규 예정가격산정 기준 및 대가산정 기준	- 계약첨부 서류가 아니나 실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원인 자료의 오류로 인한 사업예산 편성이 잘못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내역서 등이 작성되었다면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포함 필요 - 계약이후 쟁점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예산 및 기초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단계를 사전규격공개와 같이 시행하는 것을 검토 필요함.
입찰	구체적인 계약조건 및 산출내역 조건 등 입찰공고문이 아닌 계약특수조건 등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포함	특정한 업체에 근무한 경력자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 임금 보장 등을 명시한 산출내역서 작성 등 부당한 입찰 조건을 공고 내용에 포함	- 일반경쟁입찰 상황에서 특정 업체만 참여 가능한 입찰조건과 산출내역 작성 조건부과	- 최근 서울메트로의 승강장 안전문 유지관리 용역 입찰 등과 같이 입찰공고 문에 경쟁입찰 참가를 제약하거나 특정업체 및 특정 대가 지급 조건을 설정한 입찰공고 사항 제한 - 계약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입찰공고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하

				도록 규정화 필요
입찰	계약법령 위임범위를 하회하는 수의계약 금액 기준요건 운영 적정성	- 현행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계약 법령의 수의계약 가능 금액은 5천만 원 미만 이 실제 계약실무에서는 2천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만 수의계약 집행하고 있음. - 5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가능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금액 기준을 하향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여성기업 등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별도 보장하는 등 일반적인 수의계약 기준으로서 5천만 원 설정 실효성 없음.	- 계약법령상 수의계약 기준을 2천만 원으로 하향 설정 또는 계약 실무 과정에서 5천만 원으로 실제 계약집행 기준 상향 검토	- 수의계약 금액 기준의 상·하향 설정 시 다수 업체의 입찰참가기회 확대와 축소 문제가 연계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함. - 그러나 계약법령상 기준금액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금액이 하향 설정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실무적인 금액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평가 및 낙찰	시설공사 등에서 거리, 무게, 면적 등에 따른 상세 실적 평가기준 부재	- 거리, 무게를 중심으로 한 실적평가 기준설정 시 실적 인정기준이 사전 명확하지 않아 평가과정에서 분쟁발생 가능성 있음. (원도급사 전체 거리 및 무게의 70%를 수행하고 하도급사가 0%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경우 100% 인정 여부 등)	- 개별 적격심사 세부 기준	- 무게, 거리 양 등에 따라 실적 평가 만점 기준 제시할 경우 1/3배 이내 우선적용 * 현재 소기업/소강공인,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특례로서 1/3배 이상시 만점제도 운영 - 실적평가와 관련한 실적인정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계약예규 등)
평가 및 낙찰	10억 이하 물품구매 입찰에서 실적평가	- 10억 원 미만 물품구매(제조는 예외) 입찰에서 납품실적 평가를 제외하고 경영상태 및 가격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시행 중임. - 신생 및 중소기업의 실적 평가 부담완화를 위해서 10억 원 미만 입	-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 기준	- 10억 원 미만 물품구매 입찰에서 실적평가 미시행 권고

		찰에서 제외		
평가 및 낙찰	고시금액 미만 물품 구매 입찰에 대한 별도 적격심사 세부 기준 미운용 사례	-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거 고시금액 미만 물품구매 (제조 예외) 시 최저가낙찰 시행 가능함. - 현실적으로 물품구매의 대부분이 고시금액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별도 적격심사세부기준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신생, 중소기업체에 대한 대가보장 수준 저하	-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고시금액 미만 물품 구매시 적격심사세부기준 제정하여 운영토록 권고
평가 및 낙찰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실적평가 미시행 및 기본배점 및 가점 차등화 해소	- 조달청 및 행자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실적평가 시 배점 한도의 2~3점 수준의 가점을 부여하나 일부 기관에서는 가점부여하지 않거나 동일 기본점수 부여로 차등평가 미시행하고 있음.	- 물품구매,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소기업/소상공인,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실적평가 시 동일 배점 및 가점 부여 규정 제·개정 권고
평가 및 낙찰	신용평가등급 평점 급간의 과도한 차등화 해소	-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신용평가등급의 평점 등급별 인정기준이 기관별로 BBB까지 만점 배점하거나 등급별 0.2점~1점까지 차등평점하고 있음 - 중기간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시 배점한도 부여(만점) - 조달청 및 대다수 공공기관이 신용평가등급의 등급 간 평점 차는 0.2점 내외 설정이 일반적(신생 및 중소기업체의	- 중앙공공기관별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 경영상태 평가 시 배점한도, 만점 부여하는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 검토 - 신생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제 우량한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 BBB0 수준 등으로 만점 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 평점등급에 따라 평가로 차등화 검토 - 동일 신인도 평가항목에 대한 가·감점은 통일하고 최대 인정하는 가감점 수준을 조정 (예:

		평가 불 이익 완화)		신인도 평가결과 5점 획득하더라도 최대 3점만 인증 등)
평가 및 낙찰	적격통과점수 수준의 과도함	- 추정가격 규모가 클 수록 적격통과점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기술능력평가 비중이 늘어나고 이로 해 신생, 소규모업체들의 점수획득이 어려운 점을 보정하는 효과가 있음. - 일반적으로 최고 95점에서 최저 85점 사이에서 배점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든 구간에서 95점을 요구하고 있어 신생,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불이익 가능성 있음.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 (광역 지방자치단체)	- 추정가격 규모별 차등배점으로 일원화
평가 및 낙찰	신인도가점 평가항목 점수 편차 해소 필요	- 동일한 가점 및 감점 평가항목에 대하여 지자체별 배점비중이 2~3배 이상 차이 발생 - 동일한 가감점 평가항목이 가지는 정부 정책 및 사회경제적 가치가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평점 수준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평가체계의 안정성, 신뢰성 및 타당성 향상 제고 가능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 (광역 지방자치단체)	- 동일 신인도 평가항목에 대한 가감점은 동일하고 최대 인정하는 가감점 수준을 조정(예: 신인도 평가결과 5점 획득하더라도 최대 3점만 인증 등)
계약이행	입찰건별 사전 검증 또는 공개되지 않는 계약특수조건 운영	- 기재부 계약예규 및 행자부 예규(제34호)에 따라 조달대상별 계약일반조건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로 제정 또는 준용하고 있음. - 그러나 계약특수조건의 경우 기재부 계약예규에는 조달대상별 특수조건이 사전 제	- 기재부 계약예규 조달대상별 계약일반조건 - 기재부 계약예규 조달대상별 계약특수조건 - 행자부 예규(제34호) 조달대상별 계약일반조건	- 서울메트로, 부산교통사시는 승강장유지보수 용역입찰에서 계약특수조건에 용역이행 지연 등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 기준 1% 씩 감액조건 등을 설정하여 법령상 근거도 없이 대가를 임의적으로 감액하는 조항 설정

		정하여 공개되어 있으나 행자부 예규에서는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지방계약 법령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계약특수조건을 개별 입찰건에서 임의대로 작성하여 공고 및 계약문서로 활용하고 있음 - 계약특수조건에는 계약금액조정, 검사검수 조건, 대금지급 기일 등에 있어 계약법령 등과 다른 기준 또는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추가 하더라도 최종적 계약 단계에서 조달업체가 적극적인 이의제가 어려워 불이익 감수하는 경우 발생		- 해당 조항은 사전 계약조건으로서 적정성과 상위 규정 합치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 없이 개별 입찰건에서 사실상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조달업체가 부당하게 수용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감수 상황에 처하게 됨. - 따라서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에서 사전 기재부 및 행자부 등의 승인을 받지 않는 입찰건별 계약특수조건 운영을 금지하고 계약특수조건 운영하더라도 과업변경, 계약금액 조정,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과 관련해서는 별도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권고 필요(계약예규 금지 규정 신설)
계약이행	법령에 없는 사업대가 감액 조건 설정 예방	- 사후정산 대상이 아닌 비목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통해 기 지출된 사업대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문제점 해소 필요함.	- 입찰공고문, 사후정산,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계약법령에 근거 없는 사후정산 조치 금지규정 신설 - 사후원가검토를 통한 정산이 필요한 경우 현행과 같은 무분별한 총액확정계약방식이 아닌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또는 개산계약 방식으로 진행 되도록 권고 필요	- MICE 용역 등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후정산의 문제는 사업의 성격상 이행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단계에서 명확한 계획 수립이 곤란한 경우 사후적으로 비용정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총액확정계약 방식이 아닌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등의 계약법령에 따라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입·낙찰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계약이행	발주자에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사업대가 감액 조건 설정 예	- 계약체결 후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주자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에	- 입찰공고문, 사후정산,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계약법령에 근	- 예산운영상 등의 문제로 선금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방	따라 일정 등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계약특수조건 설정 - 조달업체는 용역이행을 완료하고도 대가를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문제점 발생	거 없는 사후정산 조치 금지규정 신설	선금보증증권 비용 발생 등으로 업체들이 신청 주저하는 경우 해소 필요 - 선금에 대한 보증증권은 각서로 대체하여 업체들이 비용부담 없이 선금신청 가능하도록 전환 검토
계약이행	낮은 선금 지급 실태 개선을 위한 선금지급 의무화	- 선금지급이 신청 시 지급으로 선택적 적용이나 선금지급을 의무화하고 예외 신청 시 미지급으로 규정 조정	- 계약예규 선금 규정 개선	- 예산운영상 등의 문제로 선금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선금보증증권비용 발생 등으로 업체들이 신청 주저하는 경우 해소 필요 - 선금에 대한 보증증권은 각서로 대체하여 업체들이 비용부담 없이 선금신청 가능하도록 전환 검토
사후관리	물품구매에 대한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보증기간 명시	시설공사와 달리 물품구매에 대한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기간 미제시로 특수조건 등에 따라 기간설정 시 업체에 부담(장기간 요구 등) 전가 가능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공통적인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기간설정
사후관리	대가지급 기한 연장	- 대가지급은 검사검수 후 업체 신청 시 5일 이내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기관의 경우 14일 이내로 과도한 기간 부여 - 계약완료 후 신속한 대가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공공기관별 대가지급 기한의 임의 설정으로 업체 경영상 부담 가중 가능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다른 대가지급 기준 통일

5.4 계약(사업)현황 자료분석 기반의 규제요인 식별 및 개선방안

[표21] 2015년 공공기관 자체조달 계약(사업)현황 분석결과의 문제 유형화

문제 유형	분석 주 자료원	문제점	내 용
기준 제정	- 2015년 공공기관 자체 조달 계약현황 자료 -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계약 규정 및 평가 기준	1.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조항 일부 누락 및 미반영	- 중앙 공공기관의 계약일반조건 중 과업(설계) 변경 시 대가조정 관련 기본 조항은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과 동일하나 1~2개 조항 제외한 공공기관 존재
기준 설정	- 2015년 공공기관 자체 조달 계약현황 자료 -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계약 규정 및 평가 기준	1.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에 대한 국가계약법령 통일 기준 없음(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에서는 $\pm 3\%$ 기준 제시).	- 중앙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별도의 범위 지정이 없었고,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계약 사무처리 규정 제15조에 의거 수요기관이 자율 설정 가능토록 되어 있어 중앙 공공기관별 다양한 설정 범위 존재
		2. 협상에 의한 계약 집행 시 세부평가 기준 중 특정 평가항목 과다 배점(30점 이상)	- 중앙 공공기관은 계약예규의 표준 평가기준을 입찰건별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정항목이 30점 이상 과다 배점하는 현상 발생 - 지방 공공기관은 행자부 예규 제34호 적용으로 예외 사례 1건만 발생함.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실적 평가 시 기본 가점 미부여하거나 중기업 이상에도 일괄적 기본점수 부여로 차등평가 실효성 저하	- 조달청 기준 소기업·소상공인과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실적 배점한도 5점 대비 2~3점의 기본 가점을 부여하나 일부 중앙 공공기관에서는 미적용 및 중기업 이상 기본가점 2점 이상 부여로 실효성 저하 - 지방 공공기관은 행자부 예규 제34호 동일 적용하나 개별 입찰 건에서 미적용 사례임
기준 해석	- 2015년 공공기관 자체 조달 계약현황 자료 - 국가 및 지방 계약법령 질의 회신 사례	1. 선금지급 조항이 있으나 선택규정으로 강행규정과 같은 실제 효력 미발생(전체적으로 15% 미만의 낮은 지급율)	- 선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의무 지급율 역시 조달업체가 신청하고 신청한 비율만큼 지급토록 되어 있어 실제 지급되는 비율이 매우 낮음.
		2. 협상에 의한 계약집행 시 기술 및 가격 평가 비중의 임의 설정(각각 10% 포인트 범위 내 조정 가능하나 조정범위를 벗어남)	- 중앙공공기관의 경우 계약예규에 따라 기술 및 가격평가 비중을 상·하위 10% 포인트 범위 내 조정 가능한 개별 입찰 건에서 이를 초과한 기술 및 가격 평가 비중 적용

			- 중앙 공공기관 별도의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에서 평가비중 임의 설정 사례는 없음 -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행자부 예규 제 34호 준용
기준 적용	- 2015년 공공기관 자체 조달 계약현황 자료 - 중소기업 옴부즈만 애로건의 사례	1. 순수 최저가낙찰 가능 고시금액 미만 물품구매 또는 2단계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과도하게 낮은 저가 낙찰	-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모두 고시금액 미만 물품구매와 2단계경쟁입찰에서 낙찰하한율 없는 순수 최저가낙찰제 시행 시 예정가격 대비 과도하게 낮은 낙찰율 형성 사례 발생 - 별도의 낙찰하한율이 설정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이 없으므로 적정 수준의 품질, 안정적 계약이행과 사후관리 가능한 수준의 대가 보장 검토 필요
		2. 실적제한 시 당해 입찰 대상의 양, 규모, 금액 기준 1배 이상 요구 사례 발생	-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시행규칙에서 양, 규모, 금액 1배 이내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과정에서 초과 요구한 사례임
		3. 발주자인 수요기관에 의한 빈번한 과업(설계) 변경 요구	-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상 과업 및 설계변경 요구가 가능하나 과도하게 설계변경은 사업계획 및 예산산정의 신뢰도 저하와 주주업체의 안정적 용역수행 환경 확보 저해
		4.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될 경우 증액 보다는 감액비율이 커서 조달업체 부담 증가 가능성 높음	-
		5. 입찰공고 시 포함 사항 중 낙찰자 선정 기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 상세한 실적평가방법의 낮은 공개율	-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 입찰공고 내용 중 낙찰자결정 기준에 대한 사항이 있으나 입찰참가 여부 및 서류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실적평가방법 상세 공개 수준은 낮은 판단됨 - 중앙 공공기관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운용하는 기관에서는 세부기준의 실적평가방법을 통해 확인 가능하나 조달청 기준 등을 준용하여 해당 입찰 건에 활용하는 경우는 평가기준 불확실로 사후적 무제 발생 가능성 있음
		6. 계약완료 후 대금지급이 5일 이상 지연되어 지급하는 비율 높음	-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 검사검수 후 5일 이내 대금지급이나 실제 계약완료 이전 또는 완료 후 검사검수 일정 지연 등을 적기 지급 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 - 5일을 초과한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중 특정 기관은 대금지급 일정을 14일로 2배 이상 지연시킨 경우도 있음

[표22] 2015년 공공기관 자체조달 계약(사업)현황 분석결과와 계약규정 및 기준 연계성

구분	2015년 계약(사업)현황 분석기반 규제요인	유관 계약 법령 및 기준	중앙/지방공공기관 규정 분석 연계성(사례 원인 규정 존재 여부)
입찰이전	A5 .중앙공공기관 약 18.81%, 지방공공기관 약 19.95%로 20% 미만의 낮은 사전규격 공개 수준 (제도개선) - 문제1. 사전규격공개 의무화가 아니므로 실제 공개율 저하 - 문제2. 낮은 사전규격공개율과 별개로 공개된 규격에 대한 의견 제시에 대한 처리절차 및 본 입찰 공고반영 의무화 미시행으로 공개 실효성 낮음. - 문제3. 현재 시행 ‘16.11월 예정인 지방계약법 제9조의2에서 지자체, 교육기관의 경우 사전규격 공개 의무화 대상 중 5천만 원 미만 물품, 용역 입찰 건이 공개 예외 대상으로 다수의 입찰 건에 대한 사전정보 확인 한계, 국가의 경우는 1억 원 미만 물품, 용역 대상에서 제외	- 「내자구매업무처리 규정(조달청 훈령)」 제9조(구매규격 사전공개) - 국가계약법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2016. 11.30 시행예정	-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계약규정상 별도의 사전규격 공개 조항 제정 및 설정 사항 없음. -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상 의무가 아닌 권고 조항으로 공개율 저하
입찰이전	A1. 예정가격 편차율 -2%, -3% 초과하는 입찰 발생(행정규칙 위반) - 문제1: 최저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하회하는 예정가격 설정(계약담당자 고의가 아닌 경우 그대로 인정, 사전 인지 시 다시 산정) - 문제2: 지방계약법령 적용대상 지방 공공기관과 달리 중앙 공공기관은 사실상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공통 기준 제시하지 않고 각 수요기관 별 임의 자율 설정 가능토록 하여 기준 설정의 자의성 높음.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제15조 - 자부예규 제35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중앙 공공기관별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계약규정총칙 포함)”	-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을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예) - 한국철도시설공단: $\pm 2.5\%$ - 한국전력공사: $\pm 4\%$(기초금액의 96% 기준으로 실제 -8% 가능) - 한국가스공사: -5% - LH공사: $\pm 2\%$(‘16이전 -6%) - 한국도로공사: $\pm 3\%$(‘16이전 -6%) - 조달청 계약사무 처리요령 제15조제1항에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총 예비가격 개수 및 추첨 예비가격 개수, 기초금액 기준 상·하위 분포 등은 각 기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의거 각 수요기관이 임의의 입찰력 기준 설정
입찰	A4. 최소 공고기간 5일 이전 미준수 입찰공고 시행 (법령위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계약규정상 별도의 입찰공

		시행령 제35조	고기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입찰 진행 당시 상황에 따른 적용 오류로 판단됨
입찰	A6. 공공기관의 2015년 자체 조달 계약 건 중 중앙 공공기관 2.56%, 지방공공기관 0.74% 수준의 1배 이상 실적 요구 실적제한 시 과업대상의 양, 규모, 금액 1배 이내, 지자체의 경우 50억 원 이상 공사는 0.7배 이내) (법령위반) - 문제1.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모두 별도 규정 또는 행자부(지방 공공기관) 기준 준용하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 중앙 공공기관 계약총칙상 1배 이상 실적 요구 조항 없음 - 다만 물품, 일반용역(국가 및 지방 모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실적인정기간을 3년으로 단축(일반적으로 5년)하는 사례 확인 - 일부 지방 공공기관에서 준용하는 광역지자체에서 제정한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유사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동등 실적만 인정하는 사례 확인 - 전체적으로 실적 관점에서 사실상 진입장벽을 높이는 규제적 요인을 판단됨
평가 및 낙찰	A9. 중앙 공공기관 약 8.66%, 지방 공공기관 약 10.44%에서만 사전 실적평가 방법 등 낙찰자 선정 기준 명확히 제시함 (단순행태) - 문제1. 입찰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상 19개 조항 중 낙찰자선정(세부평가방법 등) 기준 중 실적 평가방법 등 사전 업체의 평가 자료 확보 및 입찰참가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일부 기준 제시 미흡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제6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제6호	- 입찰공고 내용 중 낙찰자 선정 방법 등과 관련하여 중앙 공공기관이 계약총칙 상 별도의 기준을 제정 및 설정하지 않았으나 적용 과정에서 오류 발생
평가 및 낙찰	A10. 협상에 의한 계약 집행 시 세부평가기준 중 특정 평가항목의 배점과다 배점 사례 (행정규칙 위반/단순 행태) - 문제1.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시 계약예규의 표준 평가체계를 조정하여 입찰 건 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평가항목을 30점 이상 배점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문제2. 특정 평가항목의 과도한 배점 여부와 별개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선정, 외부위원 선정방법 및 비율 등에 대해 별도의 협상계약 기준을 보유한 중앙공공기관별 상이점 많음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제34호) 제5장	-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별도의 협상에 의한 계약 집행기준 또는 제안서 평가기준을 계약총칙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부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공통기준을 제정하지 않고 계약예규 상의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지방 공공기관은 행자부 예규 제34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선정 기준)

			의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공통적용으로 위반사례 없음.
평가 및 낙찰	A11.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중 설정 자의성 (행정규칙 위반/단순행태) - 문제1. 협상에 의한 계약 시 표준 평가 비율은 기 술 80%와 가격 20% 비중이며 각각 10% 포인트 범위 내 조정 가능하나 특정 입찰 건에서 해당 비 율을 초과한 입찰 건 집행	- 계약예규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 기준 - 지방자치단체 낙찰 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제34호) 제5장	-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모 두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운용하고 있어 별도의 기 술 및 가격 평가기준 비 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 나 개별 입찰 건에서 당 해 입찰의 목적에 따라 평가비율 조정한 것으로 판단됨
평가 및 낙찰	A1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차등적 평가 미시행 자체 조달 사업 건수가 중앙 공공기관 약 3.1%, 지방 공 공기관 약 5.4% 수준임 (단순행태) - 문제1.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에서 소기업/소상공 인, 창업초기기업의 실적확보 등의 어려움을 고려 하여 실적평가 기본가점 부여 등의 차등적 평가 미시행으로 실적에 의한 공공조달 참여 제한 가능 성 증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중앙 공공기관의 자체 물 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 준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 인에 대한 차등적 평가 미시행 또는 중기업 이상 에게 모두 기본가점 부여 하는 문제점 확인
계약이행	A2.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투찰 (단순행태) - 문제1.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 최저가낙찰 제 시행 대상 입찰 건에서 예정가격 대비 과도하 게 낮은 낙찰율로 인한 계약이행 부실 및 미이행 문제 발생 가능성 높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 항 - 별도의 낙찰하한율 이 제시되지 않은 고시금액미만 물품 구매에서의 순수 최저가낙찰제(시행 령 제42조 제2항) 또는 2단계경쟁입 찰(시행령 제 42조 제3항)에서 적용	-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의 계약규정상 별도 기준제 정 및 설정에 따른 문제 발생 요인 없음
계약이행	A7. 공공기관의 2015년 자체조달 집행 계약 건 중 중앙 공공기관 약 14.7%, 지방 공공기관 약 9.1% 낮 은 선금 지급율 (제도개선) - 문제1.선금지급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계약법시행 령 상 계약예규에 지급 근거가 있으나 실제 적용 이 활성화 되지 않음	- 계약예규 정부 입 찰·계약 집행 기준 제33조, 제34조 -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행자부 예규 제35 호) 제6장	-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선 금지급율을 최대 50/100으 로 임의 설정한(계약예규 상 70/100) 사례 - 기타 선금지급 관련한 별 도의 조항을 제정 또는 설정하지 않았으나 실제 집행율은 매우 낮음
계약이행	A8. 발주자에 의한 빈번한 과업변경 요구 (단순행 태) - 문제1. 과업변경 요구가 수주자인 조달업체 대비 발주자인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사례가 3배 이상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	- 과업변경과 관련한 중앙 공공기관이 계약일반조건 상 문제 조항 없음

	많음(중앙 공공기관: 약 3배, 지방 공공기관: 약 3.6배) - 사전 정확한 과업설계를 통한 변경 최소화로 사업 기간 및 예산의 확정 및 준수율 향상 필요 - 문제2.과업변경 요구가 빈번하고 대가조정 시 감액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달업체의 안정적 용역수행 환경 확보 곤란(사전 용역 수행을 위해 투자한 인력, 장비 대비 대가의 감액으로 손해 발생 가능성 높음.)		
계약이행	A3.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과업변경 요구 시 계약금액 조정은 감액비율이 많고 특히 발주자에 의한 과업변경 요구 시 감액비율이 2배 이상 높음 (단순행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물가변동, 제 65조(실계변경), 제 66조(기타내용) - 조달청 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물품, 용역, 공사 등에 따라 조항 상이)	- 중앙 공공기관의 계약일반조건에서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 일부 미반영 사례 확인(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조달청 계약일반조건에 포함된 조항 중 일부 누락)
사후관리	A13. 계약완료 후 대금지급이 5일 이상 초과된 경우가 중앙 공공기관 약 10.35%, 지방 공공기관 약 33.47%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 (법령위반/단순행태) - 문제1.계약완료 후 신속한 대금지급을 위해 5일 이내(협약 시 5일 이내 연장 가능) 지급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제 이해율이 낮아 영세한 조달업체의 경영안정성 저하 가능성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 중앙 공공기관 중 특정 공공기관은 대금지급 일수가 대금청구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설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대금 지급 실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으로 판단됨

[표23] 2015년 자체조달 사업현황 문제유형 식별 사례(기관)

문제유형	중앙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기관명	빈도	비율	기관명	빈도	비율
A1.예정가격 편차율 -2, -3% 초과 사례	인천항만공사	37	90.24%	인천교통공사	64	94.12%
	한국철도시설공단	537	68.49%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44	93.62%
	한국석유공사	61	67.78%	부산 지방공단스포원	20	76.92%
	한국서부발전	700	62.78%	경기관광공사	218	72.43%
	한국남동발전(주)	881	62.66%	제주에너지공사	11	68.75%
A2.낙찰율 50% 미만 계약집행 사례	사회보장정보원	1	20.00%	구미 시설공단	1	3.4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	8.33%	창원 시설관리공단	1	2.04%
	선박안전기술공단	1	5.88%	이천시시설관리공단	1	1.61%
	한국수력원자력(주)	27	4.33%	경기도시공사	1	1.45%
	한국주택금융공사	2	4.08%	서울도시철도공사	10	1.11%
A3.과업변경 시 전체 변경 계약 건 대비 감액을 높은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신병원)	13	92.86%	강원도개발공사	111	99.11%
	신용보증기금	12	15.79%	창영 개발공사	9	60.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14.71%	안양시시설관리공단	2	40.00%
	인천항만공사	6	14.63%	광주광산구 시설관리공단	1	33.33%
	한국시설안전공단	1	9.09%	대전마케팅공사	11	32.35%
A4.입찰공고기간 5일미만 적용 사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6	89.92%	울산시설공단	131	79.88%
	울산항만공사	30	88.24%	광주광산구 시설관리공단	2	66.67%
	인천항만공사	35	85.37%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4	50.00%
	예금보험공사	22	81.48%	의왕시도시공사	4	44.4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2	55.26%	김대중컨벤션	18	36.00%
A5.사전규격공개 미 실시 입찰집행 사례	한국석유공사	90	100.00%	서울시설관리공단	304	100.00%
	한국디자인진흥원	19	100.00%	울산시설공단	164	100.0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9	100.00%	광주환경공단	146	100.00%
	한국국토정보공사	130	100.00%	인천환경공단	112	100.00%
	한국관광공사	92	100.00%	대구시설관리공단	104	100.00%
A6.실적제한 시 100% 초과 제한 사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6	46.15%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6	100.00%
	교통안전공단	50	38.17%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1	50.00%
	한국국토정보공사	42	32.31%	여수 도시공사	2	40.0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2	30.77%	성남도시개발공사	9	33.3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14	29.08%	포항 시설관리공단	1	33.33%
A7.선금 미지급	한국언론진흥재단	1	100%	서울메트로	649	100.00%

계약집행 사례	한국전력거래소	3	83.0%	서울시설관리공단	249	100.00%
	한국과학창의재단	67	75.0%	울산시설공단	161	100.00%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159	70.0%	대구환경공단	115	100.00%
	한국정보화진흥원	96	70.0%	부산 시설공단	111	100.00%
A8.수요기관(발주자)에 의한 과업변경 요구 사례	아시아문화원	4	36.36%	연천군시설관리공단	1	100.00%
	한국철도공사	41	22.91%	성북구 시설관리공단	3	37.50%
	한국과학창의재단	13	17.57%	평택항만공사	5	35.71%
	국립공원관리공단	95	15.8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35	35.35%
	한국기상산업진흥원	2	15.38%	충북 개발공사	4	28.57%
A9.실적평가 방법 사전공개 미 실시 사례	예금보험공사	27	100.00%	장수한우공사	81	100.00%
	한국언론진흥재단	17	100.00%	통영 관광개발공사	58	100.00%
	한국산업인력공단	128	100.00%	파주시시설관리공단	25	100.00%
	한국정보화진흥원	121	100.00%	안동 시설관리공단	15	10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7	100.00%	창영 개발공사	15	100.00%
A10. 협상계약 시 특정 평가항목 과대 배점 사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4	30.36%	대구시설관리공단	1	0.9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10.53%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10.17%	-	-	-
	독립기념관	1	3.33%	-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6	2.48%	-	-	-
A11. 협상계약 시 기술 및 가격 평가비율 임의 설정 사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3	30.00%	단양 관광공단	4	100.00%
	한국콘텐츠진흥원	100	10.79%	제주관광공사	1	4.0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	8.47%	-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	8.33%	-	-	-
	한국소비자원	1	7.14%	-	-	-
A12.소기업·소상공인,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차등적 실적평가 미 실시 사례	예금보험공사	27	100.00%	인천교통공사	68	100.00%
	한국디자인진흥원	19	100.00%	통영 관광개발공사	58	100.00%
	한국관광공사	92	100.0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54	100.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8	100.00%	성남도시개발공사	27	100.00%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47	100.00%	파주시시설관리공단	25	100.00%
A13.계약완료 후 5일 이내 대금 미지급 사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8	100.00%	서울시설관리공단	304	100.00%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47	100.00%	광주광산구 시설관리공단	3	100.00%
	한국언론진흥재단	17	100.00%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47	100.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7	100.00%	경북 관광공사	26	100.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2	100.00%	화성도시공사	18	100.00%

[표24] 2015 중앙공공기관 계약(사업)현황 문제유형별 사례(기관별 대상 사업)

문제 유형	분석 주 자료원	내용	기관별 사례						
			사례명	기관명	빈도	비율	평가 등급	입찰 공고명	비고
기준 제정	- 2015년 공공기관 자체 조달 계약현황 자료 -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계약규정 및 평가기준	1.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조항 일부 누락 및 미반영	과업변경 시 감액 사례	한국전력공사	748	55.45%	D	GIS,362KV,6300A,63KA 6식(신제천S/S)	
				한국가스공사	41	3.04%	E	2015년 1분기 기계시설 유지관리용품 구매(재공고)	
				인천국제항공사	25	1.85%	E	2015년 1분기 기계시설 유지관리용품 구매(재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23	1.70%	D	2015년 1-3차 승강기 등 64대 제작, 설치	
				국립공원관리공단	20	1.48%	D	재난취약지구 정비공사	
기준 설정	- 2015년 공공기관 자체 조달 계약현황 자료 -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계약규정 및 평가기준	1.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에 대한 국가계약법령 통일 기준 없음(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에서는 ±3% 기준 제시).	예정가격 편차율 (-2%초과) 기관	한국전력공사	4204	31.96%	D	I형행거 (앵글형,AS-370) 4,691조(신부평-신경서)	-69.46%
				한국남동발전(주)	881	62.66%	E	2015년 발전소 수처리용 염산 연간단가계약 구매	-60.91%
				한국서부발전	700	62.78%	D	주제어시스템 6대등 12종	-24.48%
				한국가스공사	664	49.89%	E	동춘천 정압설비 1식	-55.44%
				한국동서발전(주)	588	49.92%	D	제2종합사무실 2단계 신축공사 공조설비 정밀진단(TAB) 용역	-69.85%
		2. 협상에 의한 계약 집행 시 세부평가기준 중 특정 평가항목 과다배점(30점 이상)	협상계약 시 평가항목 과다배점 사례	한국지역난방공사	9	1.38%	E	2015년 용인지사 열배관공사	
				한국전력공사	7	0.05%	D	'15년 전력기반조성사업(R&D사업) 사업비 위탁 정산용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10.53%	E	2016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획대상과제 경제성 분석 용역	

[illegible]

를 벗어남)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1

0.51%

E

본부 원주사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7	2.23%	E	2015년도 방
			1. 순수 최저가낙찰 가능 고시금액 미만 물품구매 또는 2단계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과도하게 낮은 저가 낙찰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 낙찰사례		한국전력공사	15	0.11%	D	15년 경기지역
기준 적용	- 2015년 공공기관 자체 조달 계약현황 자료 - 중소기업 옴부즈만 애로건의 사례	2. 실적제한 시 당해 입찰 대상의 양, 규모, 금액 기준 1배 이상 요구 사례 발생	100%이상 실적 요구 사례			한국가스공사	14	1.05%	E	부산제어시스템
						한국지역난방공사	4	0.61%	E	화성동탄2 집체츠, 구매
						대한석탄공사	2	0.48%	E	감속기(시방) 10
						한국동서발전(주)	270	22.92%	D	사회적 비용편익(협상에
						한국전력공사	249	1.89%	D	765KV 신태백
						한국토지주택공사	74	8.06%	D	LHI 콜센터 상
						교통안전공단	50	38.17%	D	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42	32.31%	D	국가공간정보
						한국전력공사	1427	10.85%	D	GIS, 362KV, 630
						한국남동발전(주)	141	10.03%	E	2015년 제3호
		3. 발주자인 수요기관에 의한 빈번한 과업(설계) 변경 요구	발주자에 의한 과업 변경 사례			한국가스공사	105	7.89%	E	공공관리소용
						국립공원관리공단	95	15.81%	D	2015 속리산국
						한국국제협력단	69	12.68%	D	월드프렌즈 양
										계약

						한국전력공사	748	55.45%	D	GIS,362KV,630
			4.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될 경우 증액 보다는 감액비율이 커서 조달업체 부담 증 가 가능성 높음.	과업변경 시 감액 사례		한국가스공사	41	3.04%	E	2015년 1분기
						인천국제항공사	25	1.85%	E	2015년 1분기
						한국토지주택공사	23	1.70%	D	2015년 1-3차
						국립공원관리공단	20	1.48%	D	제반취약지구
						한국전력공사	6589	50.09%	D	도서내연발전:간판가
			5. 입찰공고 서 포함 사항 중 낙 찰자선정 기준의 가장 핵심적인 대 용 중 하나인 상 세한 실적평가방 법의 낮은 공개율	사전규격공개 미 실시 사례		한국가스공사	1288	96.77%	E	2015년 11월 외 약
						한국토지주택공사	915	99.67%	D	국가식품클러스터
						한국서부발전	899	80.63%	D	2015년 발전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59	99.61%	E	공항만 방사선
						한국남동발전(주)	790	56.19%	E	삼천포화력 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64	47.77%	E	[용역] 2014-20
			6. 계약완료 후 대금지급이 5일 이상 지연되어 지 급하는 비율 높음	5일 이상 초과한 대금지급 사례		한국국제협력단	337	61.95%	D	솔로몬군도 신 자재 공급계약
						한국가스공사	213	16.00%	E	2015년 휴대용
						한국광해관리공단	148	29.66%	D	토양분석용 소

문제
유형

분석 주 자료원

[표25] 2015 지방공공기관 계약(사업)현황 문제유형별 사례(기관별 대상 사업)

기관별 사례

비율
평가
등급

문제 유형	분석 주 자료원	2015 지방공공기관 계약(사업)현황 문제유형별 사례(기관별 대상 사업)	기관별 사례				비율	평가 등급	2015년 자동차점
			서울시설관리공단	88	28.95%	E			
기준 제정	- 2015년 공공기관 자체 조달 계약현황 자료 -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계약규정 및 평가기준	1.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조항 일부 누락 및 미반영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24	24.24%	E	2015년 월드컵경기장		
			서울메트로	23	3.01%	D	2015년 전자설비		
기준 설정	- 2015년 공공기관 자체 조달 계약현황 자료 -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계약규정 및 평가기준	1.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에 대한 국가계약법령 통일 기준 없음(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에서 ±3% 기준 제시).	대구도시철도공사	17	19.77%	E	2015년도 1호선		
			광주환경공단	16	10.96%	D	광주 제1하수처리장		
		2. 협상에 의한 계약 집행 시 세부평가기준 중 특정 평가항목 과다 배점 (30점 이상)	서울메트로	145	18.95%	D	특수차(모타카, 용역)		
			인천교통공사	64	94.12%	D	인천호선 이동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44	93.62%	D	이피디 영과기		
			부산 도시공사	34	43.59%	D	부산 에코델타시티행 동 건설사업		
			광주환경공단	6	4.11%	D	광주 제1하수처리장		
			대구시설관리공단	1	0.96%	B	2015년 임직원		
				-	-	-			
				-	-	-			

연번 구분

체크사항

유형

[표 26] 어문처리형태표 (85개 항목) 기반 국제언어 0인 분석·미시행 응답률 70% 이상						
1	공사	적격심사 업체 결정사유에 있어 최종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업체를 포함하고 있다			입찰자격	- 대한석탄공사 외 5개 기관 모두 포함
3	공사	시설공사 실적제한입찰의 실적제한 기준규모는 추정가격의 1/2 이내이다			입찰자격	- 조달청을 비롯한 비교 6개 기관 모두
4	공사	건설업 등급별 유지격자명부제도를 활용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업체에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입찰자격	- 비교한 모든 기관 모두 해당항목에 해
5	공사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중소기업 참여 배점 4점 부여한다			입찰자격	- 비교기관중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인천국
8	공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입찰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는 시공경험 평가 시 실적			적격자 선정	-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보유 관계없이 만점을 부여 한다				
9	공사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입찰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는 시공경험 평가 시 실적기준 1/2 보유 시 만점을 부여한다.			적격자 선정	-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
11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시 하도급대금 직불비율 만점기준이 30%이다			적격자 선정	-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
12	공사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입찰 적격심사 경영사사회 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한다			적격자 선정	-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15	공사	공사 제안입찰 낙찰탈락자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비용을 연 1회 이상 보상한 바가 있다			검수 등	- 조사한 기관 중 해당하는 기관이 없음
18	공사	공사계약 이의신청 대상금액은 70억 원 이상이다			검수 등	- 조사한 기관 중 해당하는 기관이 없음
20	구매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0.5배 이상을 요구한다			입찰자격	- 조사한 기관 중 해당하는 기관이 없음
22	구매	특정품목에 대하여 공동수급방식만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입찰자격	- 조사 기관 중 광해관리공단에서만 특정

- 24 구매 입찰공고, 규격서 등에 특정제품 사양·모델 등을 지정한다 입찰자격 - 조사기관중에는 해당기관이 없음
- 25 구매 입찰참가자격에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요건 등을 규정한다 입찰자격 - 조사기관중에는 해당하는 기관이 없음

26	구매	입찰참가자격에 환경표지 등 특정인증 보유를 명시한다	입찰자격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9	구매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적격심사 시 입찰가격이 70점을 초과한다	적격자 선정	- 조달청기준은 70점이고 다른 기관 모두
30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최저가격제나 종합평가방식을 활용한다	적격자 선정	-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31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종합평가방식을 활용하며 가격 분야 배점이 50점을 초과한다	적격자 선정	- 조사 대상 기관 모두 50점을 초과하지
32	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형태로 납품실적에 대한 가점을 준다	적격자 선정	- 조달청 [별표 1] 신인도 평가 (한국광해
33	구매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창업기업에 대한 가점이 있다	적격자 선정	-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 - 특히 한국석유공사에는 중소기업해당
34	구매	물품의 특성에 따라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적격자 선정	- 대한석탄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35	구매	조달추정가격 등에 따라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적격자 선정	- 조달청 및 조사 대상기관 모두에 해당 원 이상,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 의 기준이나 발전회사 및 대한석탄공사
36	구매	창업기업에 대하여 적격심사 시 실적평가 배점을 완화하거나 기본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적격자 선정	-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 - 다만 인천국제공사 및 한국동서발전은 -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동발전 창업초기 짧아 불리하게 작용
37	구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적격심사 시 실적평가 배점을 완화하거나 기본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적격자 선정	-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 용 - 한국석유공사는 소상공인에게 기본가점
38	구매	납품실적 인정기간이 5년 이상이다	적격자 선정	- 대분의 기관이 5년 이내 - 조달청기준 적격심사대상자와 납품실적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 해야 하지 의 경우 납품이 완료된 시점이 최근 3
39	구매	납품실적 인정 시 민수실적도 인정하고 있다	적격자 선정	- 대부분의 기관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

[표27] 2015년 공공기관 계약(사업)현황 조사 분석 결과(처리형태별)

구분	법령/행정규칙 위반	제도개선	행태적 오류	합계
유형	3건* (2건)/ 3건(1건)**	4건	6건	16건(13건)***
비율	23.0%	30.8%	46.2%	100%

2015년 공공기관 자체조달 사업 전체 56,336건을 분석한 결과 중앙공공기관 120개, 지방공공기관 137개에서 총 13건의 유형의 규제적 요인이 식별되었다. 식별된 규제적 요인 중 약 77% 10개 유형은 제도개선 4건, 계약실무 과정의 재량을 통한 행태적 오류 6건으로 확인되었다. 법령 위반 및 행태적 오류가 복합적으로 존재하여 중복된 경우는 1건이었으며, 순수한 법령위반으로 판단된 것은 2건이었다. 행정규칙 위반 및 행태적 오류가 복합적으로 존재하여 중복된 경우는 2건이었으며 순수 행정규칙을 위반한 것은 1건으로 확인되었다([표27] 참조).

[표28] 자체조달 사업현황 분석결과의 처리 유형별 사례

구분	건수	주요내용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공통해당)	비고
법령/행정 규칙 위반	6(3)*	1. 예정가격 편차율 -2%(중앙), -3%(지방) 초과하는 입찰 발생	계약예규 위반
		4. 최소 공고기간 5일 이전 미준수 입찰공고 시행	시행령 위반
		6. 공공기관의 2015년 자체 조달 계약 건 중 중앙 공공기관 2.56%, 지방공공기관 0.74% 수준의 1배 이상 실적 요구	시행령/규칙 위반
		10. 협상에 의한 계약 집행 시 세부평가기준 중 특정 평가항목의 배점 과다 배점 사례	계약예규 위반/ 행태적 오류
		11.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중 설정 자의성	계약예규 위반/ 행태적 오류
		13. 계약완료 후 대금지급이 5일 이상 초과된 경우가 중앙 공공기관 약 10.35%, 지방 공공기관 약 33.47%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	시행령/ 행태적 오류 (입찰건별 심층 확인 필요)
제도개선	4	2. 예정가격 대비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투찰	'17년 이후 기재부 계약예규, 지방계약법 위반 사항
		5. 중앙공공기관 약 18.81%, 지방공공기관 약 19.95%로 20% 미만의 낮은 사전규격 공개 수준	제도개선 (조달청 기준 참조)
		7. 공공기관의 2015년 자체조달 집행 계약 건 중 중앙 공공기관 약 14.7%, 지방 공공기관 약 9.1% 낮은 선금 지급율	제도개선 (시행령 의무화)
		1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차등적 평가 미시행 자체조달 사업 건수가 중앙 공공기관 약 3.1%, 지방 공공기관 약 5.4% 수준임	제도개선 (최저가 적정성 검토)
행태적 오류	6	3.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과업변경 요구 시 계약금액 조정은 감액비율이 많고 특히 발주자에 의한 과업변경 요구 시 감액비율이 2배 이상 높음	계약규정 적용상 오류
		8. 발주자에 의한 빈번한 과업변경 요구	계약규정 적용상 오류
		9. 중앙 공공기관 약 8.66%, 지방 공공기관 약 10.44%에서만 사전 실적평가 방법 등 낙찰자 선정기준 명확히 제시함	계약규정 적용상 오류
		10, 11, 13번 내용과 중복	행태적 오류
합계	16(13)*		

위의 표는 2015년 공공기관 자체조달 사업 중 16건(중복 제거 시 13건)의 주요내용을 보여주고 있다([표28] 참조).

5.5 상·하위(공공기관 자체조달) 계약규정 및 기준 비교분석 기반 규제요인 식별 및 개선방안

5.5.1 규제유발 요인별 유형 구분에 따른 현황

아래 표들은 규제유발 요인별 유형 구분에 따른 현황을 기준제정, 기준설정, 기준해석, 기준적용 별 건수로 분석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기준설정에서 규제유발요인 건수가 많았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준설정이 12건으로 100%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사무규칙, 적격심사, 계약일반 조건의 경우 기준설정이 각각 11건, 32건과 16건으로 각각 전체 중 91.66%, 96.88%과 72.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사무규칙, 적격심사, 계약일반조건과 협상에 의한 계약 모두에서 기준해석과 기준적용에 대한 규제유발요인 건수는 발생하지 않았다([표29]~[표32] 참조).

[표29] 계약사무규칙

규제유발요인	기준제정	기준설정	기준해석	기준적용	합계
건수	1건	11건	0건	0건	12건
비중	8.34%	91.66%	0.00%	0.00%	100.00%

[표30] 적격심사

규제유발요인	기준제정	기준설정	기준해석	기준적용	합계
건수	1건	32건	0건	0건	33건
비중	3.13%	96.88%	0.00%	0.00%	100.00%

[표31] 계약일반조건

규제유발요인	기준제정	기준설정	기준해석	기준적용	합계
건수	6건	16건	0건	0건	22건
비중	27.27%	72.73%	0.00%	0.00%	100.00%

[표32] 협상에 의한 계약

규제유발요인	기준제정	기준설정	기준해석	기준적용	합계
건수	0건	12건	0건	0건	12건
비중	0.00%	100.00%	0.00%	0.00%	100.00%

5.5.2 조달단계별 규제유발 항목 현황

아래 표들은 계약사무규칙, 적격심사, 개발일반조건과 협상에 의한 계약 하에 조달 단계별 규제유발 항목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계약사무규칙의 경우 입찰단계에서 전체 12건 중 입찰단계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격심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은 평가 및 낙찰에서 33건과 12건으로 100%를 차지했으며, 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계약이행과 사후관리단계에서 12건과 10건으로 전체 54.55%와 45.45%를 차지하고 있다([표33] ~ [표36] 참조).

[표33] 계약사무규칙

단계	입찰이전	입찰단계	평가 및 낙찰	계약이행	사후관리	합계
건수	0건	5건	1건	3건	3건	12건
비중	0.00%	41.67%	8.33%	25.00%	25.00%	100.00%

[표34] 적격심사

단계	입찰이전	입찰단계	평가 및 낙찰	계약이행	사후관리	합계
건수	0건	0건	33건	0건	0건	33건
비중	0.00%	0.00%	100.00%	0.00%	0.00%	100.00%

[표35] 계약일반조건

단계	입찰이전	입찰단계	평가 및 낙찰	계약이행	사후관리	합계
건수	0건	0건	0건	12건	10건	22건
비중	0.00%	0.00%	0.00%	54.55%	45.45%	100.00%

[표36] 협상에 의한 계약

단계	입찰이전	입찰단계	평가 및 낙찰	계약이행	사후관리	합계
건수	0건	0건	12건	0건	0건	12건
비중	0.00%	0.00%	100.00%	0.00%	0.00%	100.00%

[표37] 공공기관별 계약규정 및 평가기준 조달단계별 분석결과(종합)

조달단계	공공기관별 계약규정 및 평가기준								
	총칙	적격심사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조건
		일반용역	물품구매	기술용역	시설공사	일반용역	물품구매	시설공사	
입찰이전	-	-	-	-	-	-	-	-	-
입찰	G1.입찰의 성립에 관한 내용이 일부 기관에 명시	-	-	-	-	-	-	-	-
	G2. 중소기업자가 경쟁 제품의 구매 위탁의무에 대한 예외 내용 없음	-	-	-	-	-	-	-	-
	G3. 청렴원칙에 대한 설명 방식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음	-	-	-	-	-	-	-	-
	G4.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설명하는 방식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음	-	-	-	-	-	-	-	-
	G5. 수의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상이	-	-	-	-	-	-	-	-
평가 및	G6. 낙찰자 결정	H-a1. 신인도 평	H-b1. 물품구매	H-c1. 적격심사항	H-d1. 기관별 공	-	-	-	J1. 평가위원 선

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서로 다름

가 항목 상이성

적용범위의 상이

목 및 배점한도액 내의 감점항목

사 적용범위의 차이가 존재

	-	H-a2.신인도 평가시 주요 인증 및 조건의 배점의 차이	H-b2. 물품구매 적격심사 심사자료 제출기간의 차이	H-c2.수행능력 평가 배점이 세분화 된 경우	H-d2 신인도 평가시 과다배점	-
	-	H-a3.실적평가기간이 조달청 기준보다 짧음.	H-b3. 적격심사 분야별 심사기준의 차등 적용	H-c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항목 중 특별 신인도 가점 차이	H-d3. 추정가격 50억 미만의 공사에서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항목의 적용 여부	-
낙찰	-	H-a4.경영상태 평가의 최고 등급 부여 폭	H-b4. 납품실적 평가기간의 축소	H-c4.심사 기준 명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H-d4.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평가 감점요소 적용	-
	-	H-a5.경영상태 평가의 평가방식상이	H-b5. 낙찰자 결정시 종합평점의 하향 평가	H-c5.낙찰자결정시 선순위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
	-	H-a6.신용평가 등급 평점 차	H-b6. 납품실적 평가시 기본가점이 상이한 기준을 적용	H-c6.결격 사유의 심사 항목이 일원화 되지 않음.	-	-

[추정가격이 10
억 원 이상]

H-a7.결격사유
의 심사항목 중
폐기물 용역에
대한 내용 누락

H-b7.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의
사업에서의 납품
실적 평가

	-				-	-	-
	-	H-a8.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 평가등급 점수 상의 배점한도 부여(만점)		H-b8. 기술능력 평가 시 기술등 급 평가의 미실 시 [추정가격이 10 억 원 이상]	-	-	-
	-	-		H-b9. 신인도 평 가 항목 상이성 [추정가격이 10 억 원 이상]	-	-	-
	-	-		H-b10. 신인도 평가 시 주요 인 증 및 조건의 배 점의 차이 [추정가격이 10 억 원 이상]	-	-	-
	-	-		H-b11. 신인도 평가 시 과도한 계약이행 성실도 요구 [추정가격이 10 억 원 이상]	-	-	-
	-	-		H-b12. 추정가격 이 고시금액 미 만일 경우 신인 도평가	-	-	-

H-b13. 경영상태
평가 방법 및 평
점기준의 차이

		-	-	H-b14. 경영상태 평가 시 창업초 기기업 신용평가 우대 여부	-	-	-
		-	-	H-b15. 납품실적 평가 시 소기업· 소상공인 및 창 업초기기업 등에 대한 실적평가 기본가점이 기관 마다 상이한 기 준을 적용 [추정가격이 10 억 원 이상]	-	-	-
계약이행	G7. 계약방법이 기관별로 상이 하며,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 있 음.	-	-	-	-	-	I-a1. 계약보증금 을 전부 또는 일 부 면제처리 받 을 시의 상계처 리 여부
	G8.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이 가능한 범위가 서로 다름	-	-	-	-	-	I-a2. 과업내용의 변경 시 대가지급 및 계 약금액 청구 기 한
	G9. 선금지급의 지급 범위가 상 이함.	-	-	-	-	-	I-a3. 계약 연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

		-	-		-	-	-	-	-
		-	-		-	-	-		-
		-	-		-	-	-		-
		G10.대가의 지급 기한이 상이하여, 계약이행 후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계약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		-	-	-	I-a4.대가의 지급 기간이 조달청 5일 보다 김	I-b3.계약료 후 검야 하는 서로 다 청 기준은 경우
사후관리		G11.검사 및 검수의 기준이 일원화 되지 않음.	-		-	-	-	I-a5.'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대한 조항이 없는 기관이 있음	I-b4.대가 기한이 령 보다
		G1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가격제한 기관 별로 범위 상이함	-		-	-	-		
		-	-		-	-	-		

		-	-		-	-	-		-
		-	-		-	-	-		-
(1) 계약사무규칙과 계약총칙 비교분석									
기준설정 문제유형의 입찰단계에는 입찰의 성립에 관한 내용이 일부기관에만 명시되어 있다. 기준설정 경쟁 제품의 구매 위탁위무에 대한 예외가 있고, 청렴원칙에 대한 설명방식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수									

식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수의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이 상이하다. 기준설정 문제유 결정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상이하다. 기준설정 문제유형의 계약이행단계에는 계약방법이 기관별로 하며,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이 가능한 범위가 서로 다르다. 또, 선금지급의 지급 범위가 상이하다. 기준 기한이 상이하여, 계약이행 후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계약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검사 및 다. 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제한 기관별로 범위가 상이하다([표38] 참조).

문제유형

단계

내용

문제점

관련규정

-

입찰이전

[표38] 계약사무규칙과 계약총칙 비교분석 결과

-

				-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요함.	
기준제정	입찰	G1.입찰의 성립에 관한 내용이 일부기관에만 명시 (제도개선)		- 한국원자력기술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연구재단에서만 해당 조항 있음.	각 기관의 총칙 제 6조의 2 (입찰의 성립) 관련
기준설정	입찰	G2.중소기업자가 경쟁 제품의 구매 위탁의무에 대한 예외 (제도개선)		- 타 공공기관의 경우 유효한 입찰 성립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단독입찰임에도 사실상 경쟁의 결과로 보고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계약 체결 가능하며, 이에 관한 질의 회신 사례 빈번 - 계약 총칙관점에서 유효한 입찰 성립 요건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조항 추가 필요 - 계약사무규칙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기관에서는 없는 내용	계약사무규칙 제 7조의 2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기준설정	입찰	G3.청렴원칙에 대한 설명 방식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제도개선)		- 계약사무규칙, 한국국토정보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따로 설명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
				-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및 발전기관에서는 청렴	- 각 기관 총칙 중 청렴원칙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제4항에 배치되는 것으로 과도한 제재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 대부분의 기관에서 계약사무규칙을 따름을 명시

-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설명

-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수의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기간을 정확히 명시, 추정가격 액수에 따라 관련 규칙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또한, 물품의 구매 용역에 따라 따라야할 지침을 명시.

기준설정

입찰

G4.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설명하는 방식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음(제도개선)

-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역시, 수의계약의 금액 규모에 기안하여 규칙을 설명 하였으며, 다른 기관과는 별도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를 명시.

- 또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발전기관들에서는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세부적용기준은 설비운영주관부서별로 따로 정하여 운영 가능함

-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조달계약"은 "공기업·준 정부기관 조달계약"으로 본다고 추가적 명시

계약사무규칙 제 8조 (수의계약)

기준설정	입찰	G5.수의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상이 (단순차이)	- 발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절차를 따름 - 타 기관들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를 따름 - 계약사무규칙에는 해당내용이 없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정량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가 80점 이상 이라고 정확히 명시해두고 있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우체국 물류지원단,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수입이 되는 경쟁 입찰과 경쟁 입찰로 나누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함을 명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 계약사무규칙 제 8조 (수의계약)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G6.낙찰자 결정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상이함 (단순차이)	-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 입찰 :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 -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 입찰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함을 명시. -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는 국가계약법 제 10조 따라, 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함을 명시 - 또한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결정 - 300억 원 이상의 공사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자 결정 조항	낙찰

최저가격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 대부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을 설명

기준설정	계약이행	G7.계약방법이 기관별로 상이하며,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 있음 (단순차이)	- 대부분 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대한 사전공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대부분 기관에서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및 요건 등을 사전에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발전 공공기관의 경우 계약사무규칙을 따르고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계약업무집행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계약사무규칙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광해관리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에만 설명됨. -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계약사무 위탁이 가능한 경우를 금액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음(소요예산액 1억 원 이상)	계약사무규칙 제 8조 (계약의 방법)
기준설정	계약이행	G8.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이 가능한 범위가 서로 다름 (제도개선)	- 해당 기관에서는, 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 - 해당기관장 및 담당자가 중징계로 기소될 경우, 조달청장에게 위탁해야함을 설명함. - 설명된 기관 이외의 기관들은 총칙 최상단에 계약사무	계약사무규칙 제 7조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 설명된 기관 이외의 기관들은 총칙 최상단에 계약사무	

규칙을 따르고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해당조항을 따로 두지 않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한정하고 있음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100분의 70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라고 한정.

기준설정	계약이행	G9.선금지급의 지급 범위가 상아함 (제도개선)	- 기재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 제34조에 따라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이 원칙이므로 이하 기준 설정 시 문제점 있음. - 의무지급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조항 제시가 불명확함	계약사무 규칙 제13조(대가의 전 지급)	검사
기준설정	사후관리	G10.대가의 지급 기한이 상이하여, 계약 이행 후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계약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법령 위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기성 또는 완료(준공)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대가지급기한 및 기간 설정 규칙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경우 검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14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이 가능하며, 청구내용에 부당함을 발견하며 서류를 반송할 수 있음을 명시함. -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우체국금융개발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5일 이내라고 명시 - 대가지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와 같이 5일 이내 협의 시 5일 범위내에서 지급이 원칙이므로 조정	- 국가계약법령 제58조 - 각 기관 대가지급 조항	시행 총칙의 관련

- 검사검수기간까지 고려할 경우 계약완료 후 대가지
급까지 1달 이상의 시간 소요

- 국가계약법령 제55조	시행
- 각 기관 감사 및 관련 조항	총칙의 감사 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각호	제1
-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조달대상별 적격심사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일반용역)

- 신인도 가
여 입찰
도 등을
- 최근 정부
적 기업
광범위하
- 그러나
인력을
최대 3배
- 예를 들
까지 차
에서는

			차. 불공정하도급거래 카. 부정당업자제재		
			- 두 번째로는 다차원 평가방식으로 2~3개 차원으로 나		

			누어 평가하며, 관련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이 있음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A/S) 마.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거래 3. 계약질서 준수정도(대한석탄공사만 해당) 가. 부정당업자 나. 담합행위자 - 신인도 평가 시 세부 항목의 차이로 인해 관련업체가 공공조달 시장 진출시 서로 다른 인증획득 소요 야기, 동일 가치를 보유한 인정의 과도한 차등 배점으로 상대적 불이익 받을 수 있음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신인도 평가 시 같은 내용의 항목이지만 배점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배점의 차이가 많게는 2배 이상 차이남. 이는 입찰참가 업체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H-a2 신인도 평가 시 주요 인증 및 조건의 배점 차이 (제도개선) <주요 항목> 1.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 해당기관 : 조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1.25점)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0.75점)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1.0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5조 3항 및 별지 7		

가점을

- 따라서 적으로 항목별 외 기관 개선 권.

- 신인도 공통적인 배점(동일 평가항목

			해당기관 :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1.0점)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0.5점)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0.5점)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조달청(1.5점)에 비해 2배~3배 적게 배점하는 기관이 3개 존재하며, 대한석탄공사는 해당항목이 존재하지 않음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a3. 실적 평가 기간이 조달청 기준보다 짧음. (제도개선)	- 조달청 및 대부분의 기관들의 경우 실적평가 대상 및 기간을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로 정함 - 대한석탄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전력거래소는 실적 평가 인정기간을 3년으로 설정함. - 수행실적 인정기간이 축소됨으로써 영세한 신생 및 중소기업체들의 실적평가 부담 가중 가능성 있음.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5조 1항 제 2호 관련	조달청의 실적평가 기준을 채택 신생 및 적인 기업에 대한 불이익 따라서 실적고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a4.경영상태평가의 최고 등급 부여 폭 (제도개선)	- 조달청 및 대부분의 기관은 경영상태평가의 기준인 신용등급 최저 AA-에서 AAA까지 최고점 부여 -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는AAA 등급 일 때만 최고점 부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제 7조 3항 관련	물품구매 등급이 상 일반용역으로 BB 설정 권

-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등급 폭이 작아 최고점 획득이 어려운 편

			<

- 중견기업으로 구분되는 차등

- 대부분의 평가등급에 따른

- 경영상태등급이 효과적이지 못한 측면

- 전체적으로 공인 및 자본비율 추가 권

- 조달청 및 타 기관의 평가를 반영

-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차가 (조정 필요)

- 신용평가등급은 경로 신생 및

- 따라서 조정하도록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a8.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부여(만점) (제도개선) H-a7.결격사유 심사항목 중 폐기물운역에 대한 내용 누락 (단순 차이)	- 조달청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 난방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 - 반면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중부발전의 기관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상의 혜택이 없음. - 조달청에는 제 9조 결격사유의 심사 3항에서 폐기물처리운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음 - 조달청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제 9조 3항 폐기물처리운역에 관한 내용이 없음	[별표 6] (제7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운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9조 결격사유의 심사	일반운역 다른 것
- 기준의 통일성을 위해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② 조달대상별 적격심사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물품구매)					
기준설정 문제유형의 평가 및 낙찰단계에서는 비교 결과 14건, 기준제정 문제유형의 평가 및 낙찰단계는 적용범위가 상이하고, 2)물품구매 적격심사 심사자료 제출기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3)적격심사 분야별 심사적 인정기간의 축소운영의 차이가 있다. 또, 5)낙찰자 결정 시 종합평점의 하양조정이 있으며, 6)납품실정 기 기업 등에 대한 실적평가 기본가점이 기관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한다.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의 사가 기준이 상이하며, 10억 원 이상의 사업에서는 8)기술능력 평가 시 기술등급 평가 미실시, 9)신인도 평가					

요 인 증 및 조 건 의 배 점 차 이 11)신인도 평가 시 과도한 계약이행 성실도 요구 등이 있다. 12)추정가격이
하 지 않 는 기 관 도 있 으 으 며, 13)경영상태 평가 방법 및 평점기준의 차이도 있었다. 또, 14)경영상태 평가
에 대 한 차 이 점 도 존 재 한 다. 마 지 막 으 로 15) 납품실적 차등 평가 시 창업초기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창
참 조).

[illegible]

			-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는 5일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업체에게 충분한 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의 심사 기준일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있음. -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경영상태의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낙찰자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어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에 따라 제출 기준일이 다름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b3.적격심사 분야 별 심사기준일의 차등 적용 (제도개선)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b4.납품실적 인정 기간의 축소운영 (제도개선)	- 조달청기준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의 실적까지 인정함.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 그러나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납품이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 하고 있음.

			- 최근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실적평가는 최대 5년까지 인정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체의 실적평가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실적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 필요성 있음 - 조달청 포함 대부분의 기관에서 최저가 입찰자중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음. - 그러다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어, 납품이행능력의 평가 변별력이 낮아 지고 결과적으로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과도한 가격경쟁 발생 가능성 높음.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b5. 낙찰자 결정시 종합평점의 하향조정 (제도개선)	- 또한, 대한석탄공사는 예정가격을 불비치 할 때 낙찰자 결정은 입찰가격(배점한도 50점)을 제외한 여타 심사항목과 신인도(±10점)점수를 감안한 심사종합평점이 배점한도 50점의 100분위 80이상인 40.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음 - 조달청의 기준과 같이 예정가격을 불비치할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b6. 납품실적 평가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한 실적평가 기	- 조달청과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5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 조달청과 동일

3. 대한석탄공사: 기본가점 없음	

본가점이 기관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제도개선)

H-b15.납품실적 차등 평가 시 창업초기기업 가점 부여위한 창업 기간 축소 평가 (제도개선)

-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정은 창업이후 5년 이내 이나 2년으로 단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가점 부여효과를 저감시키는 것임.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b7.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의 사업에서의 납품실적 평가 (제도개선)	-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조사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10억 원 미만의 사업에서 납품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배점한도 20점으로 평가하고 있어 납품실적평가 기준의 조정이 필요해 보임	물품구매가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H-b8.기술능력 평가 시 기술등급 평가의 미 실시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제도개선)	- 조달청의 경우 기술능력평가 시 '기술인력보유 및 생산 기술축적정도'와 '기술등급' 2개의 평가를 진행함(2016년 7월 이후 "기술평가등급"으로만 운영 예정) -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에서는 '기술인력보유 및 생산 기술축적정도'평가만 실시하고 있음.	
기준제정	평가 및 낙찰	H-b9.신인도 평가 항목 상이성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제도개선)	- 기술인력 및 생산기술축적정도(공장설립 연수 등)는 상대적으로 신생 및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평가항목 작용 가능성 있고 자의적 기준 상향 설정 가능성도 있음. - 제3자를 통해 객관적인 기술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과 동일한 개념)을 발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임. - 신인도 평가 항목의 구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단일자원 평가방식으로 조달청, 인천국제항공사, 한국동서발전이 있음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다. 여성기업 라. 장애인기업 마. 고용창출	물품구매가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조달청 물품구매가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바. 공동수급체 사. 중소(제조)기업 아. 정책지원 자. 납품지연 차. 불공정하도급거래 카. 부정당업자제재 - 두 번째로는 다차원 평가방식으로 2~3개 차원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관련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가 있음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A/S) 마.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거래 3. 계약질서 준수정도(대한석탄공사만 해당) 가. 부정당업자 나. 담합행위자 - 신인도 평가 시 세부 항목의 차이로 인해 관련업체가 공공사업 시장 진입 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평가항목의 통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b10.신인도 평가 시 주요 인증 및 조건의 배점의 차이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제도개선)	- 신인도 평가 시 같은 내용의 항목이지만 배점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배점의 차이가 많게는 2배 이상 차이남. 이는 입찰참가 업체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주요 항목>	조달청 물품구매가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1.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 - 해당기관 : 조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1.25점)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0.75점)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1.0점) - 해당기관 :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1.0점)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0.5점)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0.5점)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조달청(1.5점)에 비해 2배~3배 적게 배점하는 기관이 3개 존재하며, 대한석탄공사는 해당항목이 존재하지 않음 - 해당기관 : 조달청(1.5점), 한국석유공사(1.5점), 인천국제공항공사(1.5점), 대한석탄공사(해당내용 없음), 한국남동발전(1.5), 한국동서발전(1.5), 한국중부발전(1.5), 한국서부발전(1.0), 한국전력거래소(0.5), 한국전력공사(1.0)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조달청(0.5점)에 비해 2~3배 많은 배점을 하고 있는 기관이 다수 존재했으며, 대한석탄공사는 해당항목이 존재하

지않음

				- 해당기관: 조달청(0.5점), 한국석유공사(1.5점), 인천국제공항공사(0.5점), 대한석탄공사(해당내용 없음), 한국남동발전(1.5), 한국동서발전(0.5), 한국중부발전(1.5), 한국서부발전(1.5), 한국전력거래소(1.0), 한국전력공사(1.5) - 조달청포함 대부분의 기관에서 신인도 평가 시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항목에는 납품지연(-2.0), 불공정거래(-2.0), 부당업자제제(-2.0) 등 3개의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3개 항목[납품지연(-2.0), 불공정거래(-2.0), 부당업자제제(-2.0)] 이외에 하자발생(-2.0), 검수불합격(-2.0), 입찰담합 및 부정당업자제제(-5.0) 등 3개 항목이 추가 되어있으며, 특히 입찰담합 및 부정당업자제제 경우 패널티가 (-5)점으로 가장 큰 배점항목임 ※ 괄호()의 숫자는 최대 가점 또는 최대 감점 숫자	조달청물품구매계약심사 세부기준 [별표3]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b11.신인도 평가 시 과도한 계약이행 성실도 요구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제도개선)	H-b12.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신인도평가 (제도개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일 때 신인도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조달청,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뿐이었으며, 다른 기관은 신인도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규정의 통일이 필요함 - 평가항목은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의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몇 개의 항목이 제거된 간소화된 평가를 시행함	조달청물품구매계약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조달청] 가. 고도인증(1.5) 나. 녹색·일반인증(0.75) 다. 중소기업 등(3.0) 라. 납품지연(-2.0) 마. 불공정하도급거래(-2.0) 바. 부정당업자 제재(-2.0) [인천국제공항공사] 가. 고도인증(1.5) 나. 일반인증(0.7) 다. 녹색인증(0.7) 라. 중소기업 등(1.5) 마. 납품지연(-2.0) 바. 불공정하도급거래(-2.0) 사. 부정당업자 제재(-2.0) [한국석유공사]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1.2) 나. 품질보증(1.0) 다. 환경관리(1.5) 라. 중소기업 등(1.5)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2.0) 나. 불공정거래(-2.0) ※괄호()의 숫자는 최대 가점 또는 최대 감점 숫자 - 조달청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 상태를 평가하지만, 대한석탄공사는 재무제표상의 재무 비율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배점한도는 조달청과 동일하게 30점임 가. 부채비율(10점) 나. 유동비율(8점)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b13.경영상태 평가 방법 및 평점기준의 차이(제도개선)			조달 물품구매 세부기준

다. 매출액순이익률(10점)

라. 총자산회전율(6점)

- 등급 간 점수의 차이는 모든 기관이 조달청기준과 동일하게 0.2점으로 동일함(대한석탄공사 제외)
- 조달청 기준으로 최고점수(30점)의 등급은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준으로 'AAA'부터 'A-'등급 까지 인정되지만,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중소기업에게는 'BBB+' 등급까지 만점(30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달청 기준으로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제조 또는 구매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함.

- 인천국제항공사, 한국동서발전 또한 조달청 기준과 같음

- 그러나,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의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음

- 대한석탄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에는 창업초기기업에 신용평가 점수에 대한 우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 초기기업의 공공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규모가 큰 업체 위주의 입찰로 이어질 수 있음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b14.경영상태 평가 시 창업초기기업 신용평가 우대 여부 (제도개선)	조달청 물품구매가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③ 조달대상별 적격심사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기술용역)

기술용역분야의 조달대상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비교한 결과 기준설정유형의 평가 및 낙찰 단계에서 적격심사항목 및 재범한도액 내의 감점항목이 없으나, 결격사유가 있을 시 감점하는 곳이 존재한다. 2) 수 금액에 따라 상이한 곳이 있으며,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항목 중 1 항목 이상 감점한다. 또, 4)심사 기준 일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곳도 있으며, 5)낙찰자 결정 시, 선순위 낙찰자가 부로, 6)결격 사유의 심사 항목이 일원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표41] 참조).

문제유형 단계 내용 문제점 관련규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c1..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내의 감점항목 (단순차이) - 조달청 및 타 기관에서는 적격심사항목은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같은 배점으로 평가하고 있음(감점항목은 없음)
- 대한석탄공사에서는 결격사유가 있으면 감점하는 감점항목이 있음: 기술용역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기
<별표1>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c2. 수행능력 평가 배점이 세분화 된 경우 (단순차이)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 추정가격 10원 미만 5억 원 이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고	- 조달청 및 타 기관에서는 수행능력을 평점 식으로 평가함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수행능력을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 (사업수행능력+지역참여도) 또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미달일 경우 감점 처리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기 [별표1]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모두에 해당됨

- 해당업체의 편의를 위해 평가항목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음

		H-0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항목 중 특별 신인도 가점 차이 (단순차이)	-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서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당해능력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특별 신인도 가점을 2.5점을 줌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 대한석탄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석유공사는 +2점으로 가점이 조달청 기준보다 0.5점 적음.	
			- 가점이 상위규정보다 적은 것은 해당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04.심사 기준 일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 (단순차이)	- 조달청 및 타 기관에서 적격심사기준일은 입찰 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있음이라고 명시	
			- 한국석유공사는 해당내용 제 2조 심사기준에 해당 항이 없음	
			- 기준 일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함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05.낙찰자결정시 선순위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단순차이)	-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는 낙찰자결정시 선순위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없음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선순위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함을 설명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06.결격 사유의 심사 항목이 일원화 되지 않음 (단순차이)	- 조달청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총	

족여부”에 대한 결격사유 심사를 하고 있음

- 조달청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기관들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지 않음
- 조달청 및 타기관의 내용에는 없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경우 적격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였어도 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 될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함

수행능력 결

④ 조달대상별 적격심사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시설공사)

시설공사분야의 조달대상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비교한 결과 기준설정유형의 평가 및 낙찰 단계에서 기관별 공사 적용범위의 차이가 존재한다. 2)신인도 평가 시 신인도의 매점 구간을 최대 2배로 하는 곳도 사에서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항목의 적용을 실시하지 않은 곳도 있다. 마지막으로 4)가 시 추가로 감점요소를 적용하는 곳도 있다([표42] 참조).

문제유형

단계

내용

문제점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d1. 기관별 공사 적용범위의 차이가 존재 (단순차이)

- 조달청기준으로 공사규모별 적용범위는 7개로 구분되며,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조달청 기준과 동일함
- 1.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200억 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표42] 조달대상별 적격심사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 시설공사

				2.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 3.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 4.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 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공사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 6. 추정가격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 사 등은 3억 원 미만 8천만 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 원 미만 1억 원 이 상)인 공사 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 만 원 미만, 전문 공사는 1억 원 미만)인 공사 - 이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경우 '추정 가격 300억 원 미만 2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음 -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50억 원 미만부터의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모 두 제외하고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신인도의 배점 구간이 조달청보다 2배 넓게 적 용(조달청 ±1.2점, 한국토지주택공사 +2~ -4점)하고 있음[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신인도의 배점 구간이 조달청보다 다소 넓게 적용(조달청 ±0.9점, 한국토지주택공사 +1.5~ -3점)[추정가격 100억 원 미 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d2. 신인도 평가 시 과다배점 (조달청 ±1.2점, 한 국토지주택공사 +2~ -4점) (단순차이)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d3. 추정가격 50 억 미만의 공사에서 '기타 당해공사 수 행관련 결격여부 (-10점)' 항목의 적	- 조달청의 경우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 수행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만 실시하고 있지만, 이외의 모든 기관에서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 부'를 실시하고 있음			

용 여부 (단순차이)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H-d4.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평가 시 추가 감점요소 적용 (단순차이)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의 공사들부터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을 평가하는데, 보통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점)’으로 평가하지만 해당 기관은 ‘우리공사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업체(-0.9점)’, 고용노동부가 우리공사에 통보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우리공사 발주 도급공사 재해발생업체(-0.3점)’ 등 추가항목을 적용하고 있음	
⑤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비교분석 종합(지방 공공기관)	
구분		특징	

LS1. 일반용역 적용 범위

- 지자체별로 일반용역, 단순노무용역, 학술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등 일반용역의 적용범주를 매우 다양하게 운영

- 지자체별 위 통일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대부분 7일 이내 제출기간 부여하고 있음

- 적격심사 연장 등의 간 보장

LS2. 심사자료 제출기간

- 대전시의 경우 “재난복구사업 4일 이내, 단 불가피한 경우 3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등의 조항 추가로, 타 지자체 대비, 서류제출 기한 연장 조항으로 업체 대응력 향상 기대가능함
 [표43]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비교분석 종합(지방 공공기관)

LS3. 동점자처리

- 수행능력평가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최고득점자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선발
- 개선 특이

LS4. 실적평가 기준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운영 12개 기관 중 7개 기관 이상이 실적인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최근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5년간 실적 인정 추세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음.	- 실적인정평가부담
LS5. 경영상태 평가방법	- 동등 및 유사실적 평가방법 중 3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등 실적만 평가함으로서 신생 및 중소기업체들의 실적평가 제약 가능성 높음 -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일반적으로 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신용평가등급과 재무비율을 선택적 적용토록 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신용평가등급만을 적용하거나 재무비율을 평가방법으로 제시하더라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선택토록 함으로써 신생 및 중소기업체의 경영상태 평가에 있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있음.	- 동등 및 참가회 - 신용평가(등급) 중 무화
LS6. 신용평가등급의 평점방법	- 신용평가등급의 평점등급별 인정기준이 서울시, 광주시, 대전시, 전북, 전남의 경우 BBB-, 또는 A-까지 배점의 만점을 평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업체에게 유리한 평가 적용 - 경북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의 평점급간이 0.5점으로 조달청 및 타 지자체의 신용평가등급 평균 평점급간인 0.2점 대비 과도한 측면이 존재하며 이 경우 신생 및 중소기업체의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 가능성 있음 - 신인도 평가와 관련하여 지자체간 평가항목의 상이함, 동일 평가항목에 대해 평점기준의 상이함 등으로 통일성과 체계성이 현저히 낮음	- 신용평가 차이가 나용 검토 - 서울시, 평점하고 검토 - 동일 신인도를 적용 정책적 인
LS7. 신인도 평가방법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채용지원 등에 대해서 지자체별 입찰참가업체의 구성과 여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이 국가정책적인 지원목적의 신인도가점 평가항목임을 고려할 때 과도한 편차 발생은 평가체계로서의 통일성을 저해시킴	- - - -
		- - -

LS8. 기타 평가항목

- 지역업체 참여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의 평가항목을 기본 평가항목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음

- 지역업체 소속된 근로인 항목으

LS9. 낙찰하한율	- 지자체간 동일한 일반구역의 낙찰하한율이 상이하고 동시에 낙찰하한율 적용 기준인 추정가격 수준도 편차가 발생하여 통일성과 체계성이 낮음 - 각 지자체별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하여 낙찰하한율을 낮게 설정할 필요성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용역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대가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계약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수적임	동일한 용역 검토
LS10.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통과점수가 추정가격 규모별로 10억 원 미만 95점, 10억 이상 ~ 30억 미만 90점, 30억 이상 95점으로 차등화 되어 있음. - 대전시, 광주시 등의 경우는 모든 추정가격 구간에서 95점을 적격통과점수로 설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생 및 중소기업들의 낙찰기회 제약 가능성 있음	추정가격 이도 등이 이 과점수 설
⑥ 일반구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자체별 비교분석(지방 공공기관)		
구분	서울시	경기도
	- 공통 : 적용되는 일반구역의 범주가 지자체별로 상이함 - 심사자료 제출 : 7일 이내 - 동점자 처리 : 수행능력 최고득점자, 고득점 동일시 추천 - 실적평가 : 최근 3년간 100% 이상 만점 준수하나 최근 추세 5년 인정 대비 과소평가 경향, 동등한	- 공통 : 적용되는 일반구역의 범주가 지자체별로 상이함 - 심사자료 제출 : 7일 이내 - 동점자 처리 : 수행능력 최고득점자, 고득점 동일시 추천 - 실적평가 : 최근 3년간 100% 이상 만점 준수하나 이행실적 평가 기준금액이 기초금액(부가세포함)의

[표44] 일반구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자체별 비교분석 (지방 공공기관)

평가방법			

	실적만 평가하고 유사실적 미평가 -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 (재무+신용평가등급)의 3가지 중 업체가 택 1 가능 - 신인도평가는 수행능력 배점 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적용(수행능력 배점 초과 시 배점까지만 인정) - 신용평가등급 “BBB-”까지 동일배점(30점)이나 BB0(29.4점), BB-(28.8점), B-(28.2점)으로 한등급간 0.6점 급간 설정 - 신인도 : 중증장애인생산물(2),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0.5),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촉진(1), 사회적기업(1.5), 신규채용우수기업(0.3), 모범납세자(0.15)/노사문화우수/가족친화경영우수/하도급거래모범업체/소비자중심경영/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이상 0.5), 중소기업(0.5), 지역업체(0.5),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1), 당해 사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장애인 신규채용(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6)	로 추정가격(부가세미포함) 기준이 일반인 것과 차이가 발생함(실적평가 금액 상향으로 업체 부담), 최근 추세 5년 인정 대비 과소평가 경향, 동등한 실적만 평가하고 유사실적 미평가 - 경영상태평가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업체가 택1 가능 - 신인도평가는 수행능력 배점 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적용(수행능력 배점 초과 시 배점까지만 인정)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간 0.3점(최초), 0.2점(이후) 감점으로 일반적 수준이나 저물지 대비 동일급간 평가 점수차 1점 이상 과소 평가 경향 - 신인도 : 여성기업(1), 장애인기업(1), 사회적기업(1), 공동수급체구성(0.5), 용역근로자보호조치준수(예가노임*낙찰율 이상 임금보장(1), 근로기준법 등 준수(1)), 특별신인도(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시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이 당해용역 기준금액 이상(2)), 노동관련법 위반자(-3) - 평가항목 : 지역업체 참여비율(3)을 기본평가 항목화
	경상북도 - 공통 : 적용되는 일반용역의 범주가 지자체별로 상이함 - 심사자료 제출 : 7일 이내 - 동점자 처리 : 수행능력 최고득점자, 고득점 동일시 추첨 - 실적평가 : 최근 3년간 100% 이상 만점 준수하나 최근 추세 5년 인정 대비 과소평가 경향, 동등한 실적만 평가하고 유사실적 미평가 경영상태평가: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업체가 택 1 가능	광주광역시 - 공통 : 적용되는 일반용역의 범주가 지자체별로 상이함 - 심사자료 제출 : 7일 이내 - 동점자 처리 : 수행능력 최고득점자, 고득점 동일시 추첨 - 실적평가 : 최근 5년간 100% 이상 만점 준수, 최근 5년간 실적 인정으로 타 지자체 대비 실적 만점 획득 수월, 동등한 실적만 평가하고 유사실적 미평가 경영상태평가: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업체가 택 1 가능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간 0.5점편차로 일반적 편차(0.2) 대비 약 2.5배 크고 서울시 대비 동일급간 평가 점수차 3점 이상 과소 평가 경향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간 1점 편차이나 서울시와 유사하게 BBB-까지 26점 만점 부여하고, BB0(25점), BB-(24점) 등 최저 평점까지 1점차 감점, 만점구
평가방법		

	- 신인도 : 여성기업(1.0) 및 여성고용 촉진(1.5), 장애인기업(1.0) 및 장애인 고용촉진(1.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당해 사업 관련 신규채용시 2점), 사회적기업(1), 공동수급체(0.25), 노사문화우수기업(1), 품질경영 우수/서비스품질우수기업(1),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1), 모범납세자(1), 비상대비중점관리 대상업체(0.75), 지체상금부과자(-2),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위반업체(-5) - 평가항목 : 지역업체 참여비율(3)을 기본평가 항목화	간 이후 1점편차가 다소 과도함 - 신인도 : 여성기업(1), 장애인기업(1), 사회적기업(1), 공동수급체(0.5), 지체상금부과자(-1), 노동관련법상 최저임금 등 위반업체(-2) - 평가항목: 특별신인도(1)를 2억 원 미만 영역에서 기본평가 항목화, 지역업체 참여비율(4)을 기본평가 항목화	
	대전광역시 - 공통 : 적용되는 일반영역의 범주가 지자체별로 상이함 - 심사자료 제출 : 7일 이내, 재난복구사업 4일 이내, 단 불가피한 경우 3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타 지자체 대비 서류제출 기한 연장 조항으로 업체 대응력 향상 가능성	인천광역시 - 공통 : 적용되는 일반영역의 범주가 지자체별로 상이함 - 심사자료 제출 : 7일 이내 - 동점자 처리 : 수행능력 최고득점자, 고득점 동일시 추첨 - 실적평가: 최근 3년간 100% 이상 만점 준수하나 최근 추세 5년 인정 대비 과소평가 경향, 동등한 실적만 평가하고 유사실적 미평가(학술영역은 평가)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에서 실적평가 미실시로 업체 부담 완화 가능성 - 경영상태평가: 재무비율(일반 법인)과 신용평가등급 (비영리법인 경우) 적용, 타 지자체의 2~3개 세부평가기준 중 택 1기 가능한 것과 상이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간 0.2점~0.3점 편차로 일반적인 수준 - 신인도 : 여성기업(0.5), 장애인기업(0.5), 사회적기업(1), 공동수급체(0.25),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 영역, -3점), 지체상금부과자(-2), 노동관련법상 최저임금 등 위반업체(-2) - 평가항목 : 지역업체 참여비율(3)을 기본평가 항목화	
평가방법	- 동점자 처리 : 수행능력 최고득점자, 고득점 동일시 추첨 - 실적평가 : 최근 5년간 100% 이상 만점 준수, 동등 및 유사실적 모두 평가함 - 경영상태평가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업체가 택1 가능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이 BB0까지 20점 만점으로 동일하며 이B-까진 1점씩 감점, 만점구간을 가장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신생 및 중소기업에게 유리함 - 신인도: 평가 미시행, 정부정책 지원 측면에서 미흡하나 업체부담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다만 신생 및 중소기업 중 기본평가 점수가 부족할 경우 적격통과점수 95점 고려 시 진입장벽으로 존재할 가능성도 있음. - 평가항목 :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청소, 경비, 시설물관리영역)(2~3)을 기본평가 항목화, 지역업체	인천광역시 - 공통 : 적용되는 일반영역의 범주가 지자체별로 상이함 - 심사자료 제출 : 7일 이내 - 동점자 처리 : 수행능력 최고득점자, 고득점 동일시 추첨 - 실적평가: 최근 3년간 100% 이상 만점 준수하나 최근 추세 5년 인정 대비 과소평가 경향, 동등한 실적만 평가하고 유사실적 미평가(학술영역은 평가)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에서 실적평가 미실시로 업체 부담 완화 가능성 - 경영상태평가: 재무비율(일반 법인)과 신용평가등급 (비영리법인 경우) 적용, 타 지자체의 2~3개 세부평가기준 중 택 1기 가능한 것과 상이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간 0.2점~0.3점 편차로 일반적인 수준 - 신인도 : 여성기업(0.5), 장애인기업(0.5), 사회적기업(1), 공동수급체(0.25),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 영역, -3점), 지체상금부과자(-2), 노동관련법상 최저임금 등 위반업체(-2) - 평가항목 : 지역업체 참여비율(3)을 기본평가 항목화	- 공통 : 적용되는 일반영역의 범주가 지자체별로 상이함 - 심사자료 제출 : 7일 이내 - 동점자 처리 : 수행능력 최고득점자, 고득점 동일시 추첨 - 실적평가: 최근 3년간 100% 이상 만점 준수하나 최근 추세 5년 인정 대비 과소평가 경향, 동등한 실적만 평가하고 유사실적 미평가(학술영역은 평가)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에서 실적평가 미실시로 업체 부담 완화 가능성 - 경영상태평가: 재무비율(일반 법인)과 신용평가등급 (비영리법인 경우) 적용, 타 지자체의 2~3개 세부평가기준 중 택 1기 가능한 것과 상이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간 0.2점~0.3점 편차로 일반적인 수준 - 신인도 : 여성기업(0.5), 장애인기업(0.5), 사회적기업(1), 공동수급체(0.25),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 영역, -3점), 지체상금부과자(-2), 노동관련법상 최저임금 등 위반업체(-2) - 평가항목 : 지역업체 참여비율(3)을 기본평가 항목화

참여비율(4)을 기본평가 항목화

전라북도

충청남도

평가방법	- 공통 : 적용되는 일반용역의 범주가 지자체별로 상이함 - 심사자료 제출 : 7일 이내 - 동점자 처리 : 수행능력 최고득점자, 고득점 동일시 추천		- 공통 : 적용되는 일반용역의 범주가 지자체별로 상이함 - 심사자료 제출 : 7일 이내 - 동점자 처리 : 수행능력 최고득점자, 고득점 동일시 추천	
	- 실적평가 : 최근 5년간 100% 이상 만점 준수, 최근 5년간 실적 인정으로 타 지자체 대비 실적 만점 획득 수월하나 정보통신용역에 대해서는 3년만 인정하여 제한적, 동등한 실적만 평가하고 유사실적 미평가 -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등급만 평가하고 재무비율(정보통신용역은 모두 평가하여 택1 가능)은 미평가함으로써 신규 및 중소업체에게 다소 불리함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간 1점 편차이나 서울시와 유사하게 BBB-까지 30점 만점 부여하고, BB(29점), BB-(28점) 등 최저 평점까지 1점차 감점, 만점구간 이후 1점편차가 다소 과도함 - 산안도 : ~~산안도~~ 여성기업(0.5) 및 여성고용 촉진(1.0), 장애인기업(0.5) 및 장애인고용촉진(1.0), 신규채용우수기업(1.0), 공동수급체(0.25), 노사문화우수(0.5), 품질경영우수/서비스품질우수기업(0.5),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0.5), 모범납세자(0.5), 비상대비중점관리 대상업체(0.25), 전라북도조례상 수상실적(0.5), 국가유공자 단체(0.5), 사회적기업(1.0), 지체상금부과자(-2) - 평가항목 : 지역업체 참여비율(5)을 기본평가 항목화		- 실적평가 : 최근 3년간 100% 이상 만점 준수하나, 최근 추세 5년 인정 대비 과소평가가 경향, 동등 및 유사 실적 모두 평가는 긍정적 -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등급만 평가하고 재무비율은 미평가함으로써 신규 및 중소업체에게 다소 불리함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간 1점 편차이나 A-까지 30점 만점 부여하고, 이후 등급 간 0.1점 감소로 적정함, BB-이하는 0.3~4점 감점 - 신인도 : 여성기업(0.5) 및 여성고용 촉진(1.0), 가족친화인증기업(0.5), 장애인기업(1.5) 및 장애인고용촉진(2.0), 신규채용우수기업(3.0), 공동수급체(1.0), 노사문화우수(0.5), 품질경영우수/서비스품질우수기업(0.5),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0.5), 하도급거래 모범업체(0.5), 국가유공자 단체(0.5), 사회적기업(1.5), 지체상금부과자(-2),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 -3점), 최근 2년 이내 하도급법상습위반자/불공정거래위반행위자(-2), 최근 2년간 부정당제재기간(-2), 노동관련법 위반자(시설분야용역 한정 -2) - 평가항목 : 지역업체 참여비율(3)을 기본평가 항목화	
구분	서울시		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 단, 원가계산에 의하여 보통 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검침·시설물 관리 등의 용역으로서 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경상북도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로 결정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단,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광주광역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추정가격 등에 따른 실적 평가 만점 확보 어려움 등을 고려할 경우 단일 기준으로 95점은 다소 과도한 측면 존재
낙찰자 결정방법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낙찰자 결정방법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추정가격 등에 따른 실적 평가 만점 확보 어려움 등을 고려할 경우 단일 기준으로 95점은 다소 과도한 측면 존재 전라북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충청남도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간 경쟁 대상은 88점) 이상인 자. 상대적으로 적격통과점수 수준이 낮아 중소 및 신행 업체의 적격통과점수 획득 수월성 향상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점이 30
10억 원
역은 95

예정가격
여 종합
대상은
수준이
득 수월

예정가격
여 종합
상, 10억
추정가격
5억 미
한다.

종합평점
상, 30억
미만인
결정한
가격이
이상으로

(3)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

①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일반용역)

일반용역에 대한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을 비교한 결과, 기준설정문제유형에서 계약이행단계 2건, 사후처리유형에서 계약이행단계와 사후처리단계가 각각 1건 씩 분석됐다. 먼저 기준설정유형의 계약이행단계에서 1) 면제처리 받을 시 상계처리여부와 2)과업내용의 변경 시 대가지급 및 계약금액 청구 기한이 상이했다. 시·도청을 4일을 초과하여 지정 운영하는 곳이 있다. 기준제정유형의 계약이행단계에서는 4)계약 연장의 사유가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도 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없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사후처리단계에서 5) ‘하도급대금’이 존재했다([표45] 참조).

문제유형

단계

내용

문제점

관련규정

기준설정

계약이행

I-a1,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처리 받을 시의 상계처리 여부 (제도개선)

- 조달청 및 다른 기관들에서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데 있어서,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미지급액으로 상계처리가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음(시행령을 따름을 명시한 내용도 없음)

-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제 93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표45]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 일반용역

				-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서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을 준용함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령 제65조 내지 제6항
기준설정	계약이행	I-a2.과업내용의 변경 시 대가지급 및 계약금액 청구 기한 (제도개선)		-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생략함(시행령에 해당 내용은 없음) - '계약금액조정 청구' 완료 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해당 내용이 생략 -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과 달리, 제 19조 7항의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제 19조 계약기간의 연장 1항과 7항 -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계약 연장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기간 종료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후 계약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없음	- 일반용역반조건 (과업내용 변경) 7항
기준제정	계약이행	I-a3.계약 연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제도개선)		- 우체국물류지원단에는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고만 명시) - 조달청 및 타 기관들은 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 국가계약법령 제58조
기준설정	사후처리	I-a4.대가의 지급기간을 5일을 초과하여 지정 운영		- 조달청 및 타 기관들은 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 _____ - _____	- 국가계약법령 제58조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고 명시	- 일반용역 계약일 반조건 제27조 (대가의 지급) 제
				-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해 5일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 내 지급연장 특약 정함	2항
기준제정	사후처리	(법령위반) l-a5. '하도급대금 지급 확 인' 대한 조항이 없는 기 관이 있음(제도개선)	-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이내의 대가 지급, 14일 이내에 대가 지급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의를 통해 14일 이 내로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 - 지연지급을 통해 업체에 적기 대금지급 지연을 초래함과 동시에 업체에 경영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과 달리 우체국물류지원 단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음. - 이와 관련 하여 시행령 및 상위 법령을 따른 다 는 내용도 명시되지 않음.	- 일반조건 계약일 반조건 제27조의 2(하도급대금 지 급 확인)	
②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물품구매)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을 비교한 결과, 기준제정문제유형에서 계약이행단계 1건이 분 행단계 1건, 사후처리단계 2건이 분석됐다. 기준제정문제유형의 계약이행단계에서는 1)단가 계약에 의하 대해 단순한 차이가 존재한다. 기준설정문제유형의 계약이행단계에서는 2)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3)계약이행 완료 후 검사를 해야 하는 기간이 서로 다르며, 4)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건 제24조(지체상금)
아래 검사를 시행

		다름(조달청 기준보다 짧은 경우도 있음)(단순차이)	-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검사기간을 외관 및 수량검사 : 3일 시험검사 : 7일 총 10일로 설명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 통보 후 1일 이내 필요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연장가능 - 조달청 및 공공기관과 달리, 우체국물류지원단 대가지급기한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조달청 및 타 기관에 비해 김)	물품구매 계약일반조 건 제22조(대가의 지급)
기준설정	사후처리	I-b4.대가의 지급기한이 상위 법령 보다 긴 경우(법령 위반)	- 기성부분에 대한 지급일도 7일로 조달청보다 2일 김	
③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시설공사)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을 비교한 결과,	기준제정문제 유형에서 계약이행단계 2건, 사후		

제유형에서 계약이행단계와 사후처리단계에서 각각 5건 씩 분석됐다. 기준설정문제유형의 계약이행단계에 하는 곳이 존재했고, 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불이행이 있었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3)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 명시가 상이했다. 기준설정문제유형의 계약이행단계에서는 4)공사 계약 납부의 차별, 6) 공사의 손해보험 관련 규정의 상이성, 7) 휴일 및 야간작업에 대한 허용 여부의 차이, 그 계약대상자의 부담이 있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9)하도급 대가지급에 대한 투명성 문제, 10)계약금액조정 변경 시 부당한 계약금액의 조정문제, 12) 기성대가의 지급 기간의 차이, 그리고 13)계약해제 또는 해지하다([표47] 참조).

문제유형	단계	내용	문제점	관련규정
	입찰이전 입찰	- -	- -	- -
기준설정	계약이행	I-d1.공사 계약 시 「계약문서의 조항」에 계약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초과(제도개선)	-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발전 공공기관(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5부 작성 및 시공부서에 제출하는 등 계약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초과(제도개선) - 계약이후 착수계 등 제출 서류 및 행정절차가 복잡한 상황에서 산출내역서 5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최소 부수 제출 필요함.	- - (계약예규) 공 약일반조건 제 33
기준설정	계약이행	I-d2.채권양도 시 추가조건 요구 (제도개선)	-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조달청 및 이와 공공기관의 일반조건에 없는 내용인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음. - 관련 상위 계약법령 유관 조항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제 52조에서 삭제된 내용이므로 상하위	- - (계약예규) 공 약일반조건 제 63 - 「국가를 당사 하는 계약에 관한 령」 52조

- 계약 보증금과 관련해서 조달청과 타 기관에서는 부정당
자에 대한 보증금 납부에 관한 제제가 없음.
- 국가계약법 시
제50조(계약보증금)
- (계약예규) 공사
일반조건 제 7조
-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나라장터에 부정당

-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경우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계약예규) 공사계약 -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 대상 공사를 지칭하는 조 반조건 제 10조 - 항의 내용이 조달청과 차이가 있어 관련 규정의 통일이 필요함 · 조달청 :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 · 우체국물류지원단 :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		
- 조달청 포함 타 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예규) 공사계약 - 의 공기관촉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반조건 제 18조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기준설정		계약이행	개선) - 그러나,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추가 조항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발주기관 담당자가 승인하더라도 대가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도 함께 포함하고 있음. - 조달업체가 발주기관의 담당자의 승인에 따라 휴일 및 야간작업을 실시하였을 때 대가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승인을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야간 및 휴일 근로를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조달청 및 타 기관에서는 발주자에 의해 설계변경이 일어났을 때 이로 인한 공사 중지에 대한 재착수 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 발전 공공기관(서부발전, 전력거래소, 전력공사)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했을 때 “중지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착수하게 할 때에는 발주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착수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있음. l-d6.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제도개선)
			- 계약상대자인 조달업체가 자재수급 및 공사착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일방적 어려움 감수 가능성 있음.

(계약예규 공사계약
반조건 제 19조의 5

기준제정	계약이행	Id 7. 계약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불이행(제도개선)	- 조달청과 발전공공기관(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함. -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 있음. - 조달청 및 타 기관에서는 발주자가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았음. -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	(계약예규) 공사계반조건 제 26조
기준제정	사후관리	I-d8.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제도개선)	-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직접 지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어 표면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한국서부발전의 하도급대금직접 지급 관련 조항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협의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발주자의 역할과 합의 조건으로 “명백하게 합의”하여 라는 조항을 통해 실제 하도급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보다 강화된 조항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운영 과정에서 하도급법령을 준용하겠으나 계약일반조건에 포함할 경우 하도급법령의 조항호와 동일한 형태로	(계약예규) 공사계반조건 제 43조 제2항 제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2호

- (계약예규) 공사
일반조건 제 43.
2

- 「하도곰거래 공
에 관한 법률」
14조 제2항 제2호

-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직접 지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어 표면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재 한국서부발전의 하도급대금직접 지급 관련 조항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협의의 주도하는 주체로서 발주자의 역할과 합의의 조건으로 “명백하게 합의”하여 라는 조항을 통해 실제 하도급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보다 강화된 조항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운영 과정에서 하도급법령을 준용하겠으나 계약일반조
건에 포함할 경우 하도급법령의 조항호와 동일한 형태로

수정 검토 필요

				- 조달청 계약일반조건과 달리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전력거래소에서는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대한 대금지급 확인과 통보’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되어 있지 않음.	(계약예규) 반조건 제 43조의 2	공사계
기준설정	사후관리	I-d9.하도급 대가지급에 대한 투명성(제도개선)	- 하도급 대가지급과 관련한 나머지 조항은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대한 대금지급확인 인과 통보’ 조항만 제외되어 있음.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와 자재·장비업자, 수급사업자와 자재·장비업자 간 대금지급 관련 민원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조항 추가 필요 - 조달청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만, 이외의 모든 기관에서는 ‘실적공사비’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2015년 9월 기재부 계약예규 원가계산 작성기준 개정을 통 해 기존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대체하였으므로 상위 계약법령과 다른 용어 통일 필요	(계약예규) 반조건 제 20조	공사계	
기준설정	사후관리	I-d10.계약금액조 정 시 관련 용어 의 통일(제도개 선)	-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신기술 및 공법을 적용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감액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원용한 것으로 표면상 특별한 문제점 없으나 실제 조달업체 입장에서는 기술 및 공법 개 발 노력을 통해 공사품질을 향상시킨 결과가 최종적으로 감액의 형태로 보상된다면 동기저하 유발 가능성 높음.	(계약예규) 반조건 제 20조	공사계	
기준설정	사후관리	I-d11..설계변경 시 부당한 계약 금액의 조정(제 도개선)				

			-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서는 기성대가와 관련해서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계약예규) 공사계 반조건 제 39조
기준설정	사후관리	I-d12. 기성대가의 지급 기간의 차이(조달청 5일, 우체국물류지원단 7일(법령위반))	-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만 유일하게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음. - 전반적으로 공공조달 대가지급에 있어 신속성을 저하시키는 대가지급 기한 연장은 조달업체에게 부담 가중 가능성 높음. -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은 모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계약예규) 공사계 반조건 제 46조
기준설정	사후관리	I-d1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잔금 지급 기일의 차이(조달청14일, 한국가스공사20일)(제도개선)	- 상기 지급 기한의 연장은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 비해 6일 이상 연장한 것으로 조달업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사안임. *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4)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 비교 결과 기전설정문제유형의 평가 및 낙찰 단계에서 12건이 분석됐다. 문제점이 상이하고, 2)평가위원 선정의 적절성 및 공정성 문제, 3)평가위원 구성 인원수의 상이성, 4)평가위원 대상사업의 유무, 6)제안서의 평가 항목 및 평가방식이 기관마다 상이하다. 또, 7)배점 비율의 차이가 존재하고, 8)가산점 항목이 나고, 9)평가 결과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도 부재, 10) 평가수당지급 기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11)평가방식이 상이하며, 12)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이 명시되어있지 않는 곳도 존재한다([표48] 참조).

문제유형	단계	내용	문제점	관련규정
	입찰이전	-	-	-
	입찰	-	-	-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J1. 기관별 평가위원 선정 근거 규정의 상이함 (단순차이)	- 조달청의 경우 「기술 평가위원 규정」 제11조에 따라 선정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시행령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선정하고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3조 - 「기술 평가위원 규정」 제11조
			- 평가위원 선정 방식 및 인원 수 등의 규정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근거 규정의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J2. 평가위원 선정의 적절성 및 공정성 (제도개선)	- 조달청 포함 모든 기관에서 평가위원 중 추첨을 통해 위원장을 선발하고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술 평가위원
규정」 제1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3조

「기술 평가위원
규정」 제11조

—기술 평가위원
규정」[별표]의
대분류 “구매(우
수제품 심사 제
외)”

-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 132 -

			에 해당하는 자 가. 6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다만, 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등급을 준용한 재직자) 나. 해당 심사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다. 2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이상인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관련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는 해당 근거기준이 없어 규정의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타 기관에서는 따로 대상사업별 평가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범용적인 평가항목만 명시하고 있음(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관련) 조달청 : 1. SW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 2. 단순구매(H/W, S/W등) 사업 3. 전산감리사업, 4. 행사용역 한국전력공사: 1. 학술·연구용역, 2. 기술용역, 3. 일반용역, 4. 정보화사업용역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J5. 제안서평가 대상사업의 유무(제도개선)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J6. 제안서의 평가 항목 및 평가방식이 기관마다 상이함(단순차이)	- 조달청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는 상생협력 및 하도급적정성, 녹색성장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이외에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도 제안서 평가 시 활용하고 있어 평가 방식에 통일이 필요함 - 조달청의 경우 각 대상사업별 평가분야별 평가항목이 서로 상이하지만, 조달청 기준자료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능력 평가의 경우 평가항목은 동일함 · 수행실적 · 기술·지식능력 · 인력·조직·관리기술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재무구조·경영상태 · 상호협력, 중소기업참여 등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 용역 유형 및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적인 평가체계 없이 개별 입찰건별로 표준평가 틀을 변형하여 활용하고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세부기준 제 9조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J7. 배점 비율의 차이(제도개선)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세부기준 제 9조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J8. 평가점수 산출	- 조달청의 경우 평가점수산출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	- 협상에 의한 계약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12
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13 조

1

J9. 평가 결과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 부재(제도개선)

J10. 평가수당지급
기준의 차이(제도
개선)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2]

1

			-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조달청 기준과는 다르게 평가시간에 따른 수당지급이 아닌 사업 예산가격(추정가격)에 따라 수당지급에 차이를 두고 있어 사업 내용적 측면에서 내실 있는 평가진행에 한계점 발생 예상됨.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J11. 신용평가등급의 평점 표현 방식의 상이성(단순 차이) - 경영상태평가기준인 신용등급에 따른 평점의 표현방식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 퍼센티지(%(100%~70%))로 표현하고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환산점수(K점, 1.000~0.800)으로 표현하고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13]
기준설정	평가 및 낙찰		J12.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마련(제도개선) - 또한 신용평가등급 간 평점간격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경우 3~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0.01점으로 차이가 있어 평가방식의 통일이 필요함 - 입찰자 수의 평가등급은 조달청과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고 타 기관에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조달청은 입찰자 수에 따라 3개 등급(상·중·하)로 구분하여 평가하지만,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5개 등급(수·우·미·양·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어 참여업체에 따라 배점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됨.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18]
	계약이행 사후처리		- -	- -	- -

(5) 계약특수조건 세부기준 비교분석 결과(지방공공기관)

계약특수조건에 대한 세부기준을 비교한 결과 기준설정문제유형의 계약이행단계에서 부당한 계약이행 사례가 분석되었다([표49] 참조).

[illegible]

적 판단에 따라 계약금액 대비 일정 비율 감
 액 조항을 추가한 것은 사실상 부당한 계약
 금액 조정으로 계약의 안정성 저해 및 중소
 업체의 경영상 부담 가중 예상

				- 부당한 감액 및 사후정산 조정 이외에도 특 정 기관 퇴직자 채용, 특정 채용자에 대한 일 정 수준의 이상의 임금지급과 임금상율 보장 등의 부당 특약 추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5.3 공공기관 자체조달 계약규정 및 기준 운영사례 기반의 규제요인 식별

아래 표는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의 적격심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중소기업 애로사항, 질의회신 사례 중 계약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조달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표50] 참조).

[표50] 계약규정 및 기준 운영 사례 기반의 규제적 요인 식별

조달단계		계약규정 및 기준 운영 사례 기반의 규제적 요인 식별	
		중소기업 애로 사례	질의회신 사례
입찰이전 단계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기술개발/제조업체 중 제조업체도 직생등록 허용)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요건 강화(직생기준 상향) - 직접생산확인기준의 완화(공장 임대 비용 부담) - 제조 및 공급업체 등록기준(2건) - 물품목록화, MAS등록 기준 - 직접생산확인기준(직포맷 직생기준 강화 필요)	- 사전규격공개의 실효성 제고(이의제기 답변 후 공고 필수 여부) - 상품의 물품목록화 과정에서 세부품명 분리 및 통합 기준 명확화 - 물품과 설치(공사 또는 용역)가 혼재된 경우 조달대상물의 구분(물품 제조자로부터 구매하여 설치 시에는 물품구매로 가능, 공사에 포함하여 납품되는 경우는 공사로도 발주 가능) - 사전규격공개 기준
입찰단계	입찰참가자격	- 특정 또는 과도한 규격기준 설정(적정기준 대비 10배~100배) - MAS 2단계경쟁 및 회피금지 기준	- 물품공급과 설치가 동시에 요구되는 입찰에서 설치 관련 자격, 인 증, 면허 보유 의무 - 물품구매 및 제조계약에서 직접생산 요구되는 제조의 요건(직접 생산하는 제3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여 공급 가능 여부) - 발주기관이 물품공급 또는 기설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협약을 제출토록 입찰공고 하는 것이 부당한 입찰참가제한 사유가 아닌지(유효함) - 대표자 변경 시 조달청에 미신고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유효한 입찰이 아님) - 국제입찰 비대상 입찰에서 외국업체 입찰참가 가능 여부(불가함)
	대가산정	- 대가산정체계의 실효성 확보(복수예비가격산정방식에 따른 예정가격 신뢰성 낮음) - 사업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 기준의 적정성	-
	기타	- 지명경쟁입찰 요건 적정성(특정지역 명시로 해당 소재 업체만 참가) - MAS 계약물품의 총액계약 구매 - MAS 계약 체결 기준	-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한 분리발주(품목별)하지 않고 통합발주 가능 여부 - MAS 2단계 경쟁 회피 시도 차단(1회 납품요구액의 의도적 분할 등) - 업체의 재무상태에 따른 제한경쟁 가능 여부(가능함) - KS인증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동시에 제한경쟁 요건 설정 가능 여부(KS가능, 고효율기자재 인증은 중복 불가) - 지역제한 경쟁입찰에서 적용 대상 범위 - 본점 소재지 변경 후 조달청 신고하였으나 등록완료 전 입찰 참

			가 가능여부(참가 가능함) 7. 공동계약불허 사유(경쟁 불성립 또는 저하 예상되는 경우, 개별 경쟁계약이 발주기관에게 유리한 경우)
평가 및 낙찰		1. MAS 계약단가 조정기준 2. 신기술 인증의 유효성(2년 이상 연장) 3.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신뢰성 강화	1. 단순노무가 중심이 되는 일반용역에서 협상계약 적용 가능 여부 2. 신인도가점 평가 시 “특허”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당행 물품과 직접 관련성 있는 경우에만 적용) 3. 실적인정 및 증빙 발급과 관련하여 공사와 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계약내용에 대한 실적증명 발급 기준(계약담당자의 분석과 판단에 따르는 것의 적정성 여부) 4. 하도급 및 외주가공 제조실적을 원도급자의 제조실적으로 인정 가능여부(일부 구성 및 부분품에 한하여 외주 시 직생 인정 가능) 5. 적격심사에서 차순위자의 적격심사 가능 여부(최고순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 6. 특정 거리(15km) 이상 실적 요구 시 12km는 직접설치, 3km는 하도급 실적에 대하여 전체실적 인정 여부(인정 가능) 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가격 이외에 발주자의 구매 의도에 따른 다양한 평가항목 반영 가능 여부(가능함) 8. 납품실적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44km 소요물량에 대하여 10km만 평가기준으로 제시 가능 여부(1/3배 이내 요구로 적합, 특정한 경우 최대 1배까지 요구 가능함) 9. 소기업/소상공인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경영상태평가방법(중기간 경쟁제품의 소기업/소상공인 경우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
계약 이행	대가조정	-	1. 공사현장과 설계서가 다른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2.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일 기준 3. 재시공에 따른 기시공분의 철거비용과 재설계비용 분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4. 시설공사 설계변경 시 세부공종별 분류되지 않은 비목별 금액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5. 공사 관급자재 중 하치장상차도인 경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6. 설계서에 속하지 않는 예정가격조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 단가 과다, 과소 계상에 다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계약 첨부서류가 아니므로 불가함) 7.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조정 기준 8. 터키공사에서 예측할 수 없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한 경우 부담주체(계약상대자인 업체가 부담) 9. 현장사무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비용부담 주체(설계내역서 누락 시 발주기관 부담)
	기타	-	1. 공동계약체결 후 구성원 중 일부가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출자비율 조정 방법 2. 관급자재에 대한 선금지급 가능 여부(요청 시 70/10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3. 계약서와 주문서상 납기일이 다른 경우 어느 서류의 일자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계약서의 납기일자를 준수하여야 함.) 4.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전체공사 정지 시 공동계약 일부 구성원이 임의 시공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가능함)
사후 관리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 등	-	1. 검사검수 기간 및 완료일산정기준(신청 후 14일 이내 이나 계약 기간 내 완료되어야 하는지) 2. 물품구매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요건이 국가계약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 첨부 서류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

			수조건” 준수 필요성 여부 3. 하자보수보증채권 확보방법으로 계약대금 중 일부를 유보금으로 설정하고 하자보수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 4. 물품구매 시 품질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용 여부(하자 담보와 품질보증기간 불일치 가능, 시설공사와 달리 별도의 하자 보수보증기간 미부여) 5. 해외 제조사의 제조지연으로 납기초과 시 지체상금 적용 예외 대상 가능 여부(불가함) 6. 공사 분리 발주한 창호설치를 위한 선행공사 지연으로 인한 창호 설치 업체 지체상금 부과 대상 여부(대상 아님) 7. 인수거부사유 및 지체상금 부과 기준(불합격 후 합격하면 해당 기간까지를 지체일수 포함(최대 기간 설정 가능), 납품기한 경과 시 익일부터 납품검사 완료시까지,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익일부터)
	대가지급	-	1. 관급자재의 대금 지급일 기준(단 건은 검사검수 14일 후 대금청구 후 5일 이내, 기성분에 대해서는 30일마다 공평 분할 지급)

계약규정 분석 자료별 상·하위 규정비교는 조달청 자료 및 시행령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각 기관의 내용과의 합치성을 분석한다. 세부적인 분석은 공공조달 조단단계(입찰이전, 입찰단계, 평가 및 낙찰, 계약이행, 사후관리)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표51] 참조).

[표51] 공공조달 단계별 기초통계량

공공조달 조달 단계별 구분		입찰이전	입찰단계	평가 및 낙찰	계약이행	사후관리	합계
계약총칙	건수	0건	5건	1건	4건	2건	12건
	비중	0.00%	41.67%	8.33%	33.33%	16.67%	100.00%
적격심사기준	건수	0건	0건	33건	0건	0건	33건
	비중	0.00%	0.00%	100.00%	0.00%	0.00%	100.00%
계약일반조건	건수	0건	0건	0건	12건	10건	22건
	비중	0.00%	0.00%	0.00%	54.55%	45.45%	100.00%
협상에 의한 계약	건수	0건	0건	12건	0건	0건	12건
	비중	0.00%	0.00%	100.00%	0.00%	0.00%	100.00%

(1) 계약총칙

(가) 입찰단계

① 입찰의 성립에 관한 내용이 일부기관에만 명시

[표52]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2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2(입찰의 성립)]

-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입찰이 성립한다. 다만, 기관장이 매각재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찰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0.9.30.]

입찰의 성립에 관한 내용은 일부기관에만 명시되어 있다. 조달청 기준 자료에서는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기관 중 한국원자력기술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만이 해당조항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해당 조항이외에 보안측정과 관련한 적합판정이나 사업자등록증의 고유번호 유무 등의 내용인 “경쟁입찰의 자격”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타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외에 타 공공기관의 경우 유효한 입찰 성립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단독입찰임에도 사실상 경쟁의 결과로 보고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계약 체결 가능하여, 이에 관한 질의 회신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사무규칙 준용이 원칙이므로 별도 재개정 등 조항호의 추가의 필요성은 낮지만, 공공기관별 입찰의 기본적 성립 요건에 대한 규정은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표52] 참조).

②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의 구매 위탁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

[표53] 계약사무규칙 제7조의2

[계약사무규칙 제7조의2(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 ①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이 조에서 “제품”이라 한다)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디자인 공모 및 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미리 제품을 선정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품으로서 각 기관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핵심 기자재로서 구매 전문성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의 특수성·전문성·안전성 및 구매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수요물자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품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 ③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품을 해당 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품명·규격·수량·추정가격·수요시기 및 직접 구매의 필요성을 적은 신청서를 미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0.3.30.]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에 대한 위탁의무와 관련해서 조달청 계약사무규칙을 제외하고 타 공공기관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물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중앙조달 요청에 대한 예외 인정 사항과 관련한 규정으로 계약사무규칙 준용 시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중기간경쟁제품(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품목) 분리구매와 관련한 조달업체의 질의회신 사례와 실제 통합발주 사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 규정 항목으로 추가 검토 필요하다([표53] 참조).

③ 계약의 원칙 및 청렴원칙에 대한 설명방식의 통일성 부재

[표54] 계약사무규칙 제5조

[계약사무규칙 제5조(계약의 원칙)]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의 원칙 및 청렴원칙에 대한 설명방식의 통일성이 부재하다. 계약사무규칙 제5조 계약의 원칙에서는 계약 시 서로 동등해야하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부당하게 제한을 두는 특약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조항은 조사대상 기관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만이 따르고 있으며, 타 공공기관은 계약의 원칙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청렴원칙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청렴원칙의 경우 계약사무규칙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언급하고 있다. 부당한 계약이나 간섭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

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동서발전 등의 발전공공기관의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외에 타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제4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과도한 제재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당해 조항에 대해서는 청렴계약 준수 의무를 강조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 4항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표54] 참조).

④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

[표55] 계약사무규칙 제8조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13.1.25., 2013.11.18., 2014.8.26.>
(세부 조항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조달계약"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으로 본다. <신설 2014.8.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8.26.>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6.>
⑤ 제3항과 제4항은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 가목(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8.26.>
⑥ 계약담당자가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6.>
[제목개정 2014.8.26.]

입찰단계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설명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계약사무규칙을 따르고 있었다. 다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경우 사업예산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공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수의계약 금액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 물품 및 용역의 경우 5천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계약실무에서 적용되는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수계약은 관행적인 것으로 별도 기준 제시는 상·하위 계약법령의 기준이 상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표55] 참조).

(나) 계약이행단계

① 선금지급의 지급 범위의 상이성

[표56] 계약사무규칙 제 13조, 14조

[계약사무규칙 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국제 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4조(대가의 수납)]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5. 연불(延拂)수출 또는 수출 후 대금 송금의 결제 방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서 해당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들이는 경우
2. 대가를 미리 내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것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9.1.>
-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자 부과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9.1.>
- ⑤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9.1.>
- ⑥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

대가의 지급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계약사무규칙의 경우 대가의 수납과 관련해서 대가를 지급해야하는 시기에서부터 분납조건까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선금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만 존재한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선금지급과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으나,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 제34조에 따라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이 원칙이므로 그 이하의 기준 설정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선금지급의 대상 및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금지급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최대 지급 가능 비율을 상·하위 계약규정 통일 관점에서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표56] 참조).

(다) 사후관리

- ① 대가의 지급 기한이 상이하여 계약당사자에게 불이익 초래

[표5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 ①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9.6.29.>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 ③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2009.6.29.>
-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신설 2006.12.29.>

대가의 지급기한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기관 중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연구재단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기관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경우, 검사 후 14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14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약 상대방이 계약이행에 소요된 비용을 수요기관에게 신속히 회수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와 같이 검사 검수 후 계약상대방인 조달업체의 요청 후 5일 이내 지급으로 기준의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57] 참조).

(2) 적격심사기준(물품구매)

(가) 평가 및 낙찰

① 기관별 물품구매 적용범위의 차이가 존재

[표58]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배점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 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 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②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관별 물품구매 적용범위의 차이가 존재한다. 기관별 물품구매 추정가격별 범위는 3개의 기준으로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 원 미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전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에서는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하로 2개의 평가기준을 갖고 있어 범위의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시금액미만의 물품구매 입찰에서는 최저가 적용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적격심사기준 없는 경우 이론적으로 1원 차이에 의해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하한을 보장과 순수 최저가 낙찰로 인한 대가보장 수준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시금액 미만에 대해서도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공공기관별로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표58] 참조).

② 납품실적 인정 기간의 축소 운영

[표59]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1-1 납품실적 [주] 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

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조달청 기준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 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의 실적까지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납품이 완료된 시점을 최근 3년 이내로 하고 있다. 조달청 및 행자부 계약예규 제 35호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동등 및 유사실적에 대한 인정이 일반적인 추세이므로, 중소기업체의 실적평가 부담완화 차원에서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표59]참조).

- ③ 납품실적 평가 시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실적평가 기본가점이 기관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추정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표6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 입찰 생략

-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생략

납품실적 평가 시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한 실적평가 기본가점이 기관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조달청과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5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기준이 기관마다 상이했다.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기본가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창업초기기업에게 주는 점수가 조달청 3점에 비해 2점으로 비교적 작은 점수를 가점으로 주고 있어 관련업체에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기본점수 2점을 부여했고, 창업초기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기본점수를 부여하므로 규모가 작은 업체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전력공사의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에는 기본점수 1.5점을 각각 부여하고 있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초기 기업에게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중기업에게도 기본 점수 1.5점을 부여함으로써 창업초기기업이 갖게 되는 이점이 조달청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실적평가의 배점비중을 달리하더라도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기본과점을 일정 비율 또는 점수 이상 부여토록 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표60] 참조).

④ 납품실적 차등 평가 시 창업초기기업 가점 부여를 위한 창업기간 축소 평가

조달청 및 다수 공공기관에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인정은 창업이후 5년 이내이지만 다수의 기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 기본점수 2점,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동발전의 경우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 기본점수 2점, 최근 2년 이내 사업 개시한 창업초기기업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인정을 2년으로 단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가점 부여효과를 저감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창업 이후 공공입찰에 참여하기까지의 준비기간과 이후 초기 안정단계까지 지원기간 보장을 위해 5년으로 기준을 통일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표60] 참조).

⑤ 기술능력 평가 시 기술등급 평가의 미 실시(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표61] 기술등급평가

(단위 : 점)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 우수	9.8
T3	우수수준	9.6
T4	양호 수준	9.4
T5	보통이상	9.2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조달청의 경우 기술능력평가 시 ‘기술인력보유 및 생산기술축적정도’와 ‘기술등급’ 2개의 평가를 진행(2016년 7월 이후 “기술평가등급”으로만 운영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 이외에 모든 기관에서는 ‘기술인력보유 및 생산기술축적정도 평가’만 실시하고 있었다. 이는 기술인력 및 생산기술축적정도(공장설립 연수 등)는 상대적으로 신생 및 중소기업체에 불리한 평가항목 작용 가능성 있고 자의적 기준 상향 설정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제3자를 통해 객관적인 기술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과 동일한 개념)을 발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표61] 참조).

⑥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신인도평가

[표62]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신인도 평가] 별첨 (1) 참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일 때 신인도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조달청,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뿐이었으며, 다른 기관은 신인도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규정의 통일이 필요하다(별첨1 참조).

[표63]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상 신인도 가감점 평가항목

조달청	한국석유공사
가. 고도인증(1.5) 나. 녹색·일반인증(0.75) 다. 중소기업 등(3.0) 라. 납품지연(-2.0) 마. 불공정하도급거래(-2.0) 바. 부정당업자 제재(-2.0)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1.2) 나. 품질보증(1.0) 다. 환경관리(1.5) 라. 중소기업 등(1.5)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2.0) 나. 불공정거래(-2.0)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구간에서 입찰 시 적격통과점수가 적정할 경우 신인도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인증취득 수요를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신인도 외에 기본평가항목만으로 적격통과점수 획득이 어려운 신생 및 중소기업에게는 신인도 가점 평가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최소 항목으로 도입하여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표63]참조).

⑦ 경영상태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의 차이

[표64]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조달청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지만, 대한석탄공사는 재무제표상의 재무비율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배점한도는 조달청과 동일하게 30점이다.

가. 부채비율(10점)

나. 유동비율(8점)

다. 매출액순이익률(10점)

라. 총자산회전율(6점)

등급 간 점수의 차이는 모든 기관이 조달청기준과 동일하게 0.2점으로 동일하며(대한석탄공사 제외), 조달청 기준으로 최고점수(30점)의 등급은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으로 'AAA부터 A-'등급 까지 인정되지만,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중소기업에게는 'BBB+' 등급까지 만점(30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등급은 상대적으로 중소 및 신생업체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항목으로 과도한 배점 또는 평점기준(급간) 설정 시 기존 역량 있는 업체 중심의 낙찰 심화 가능성 존재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용평가 한등급간 평점차이는 0.2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공조달 시장의 99.5%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자료인 신용평가등급이 BBB0 이상이면 매우

우량한 기업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만점 부여 구간을 현행 AAA ~ A- 등에서 BBB0 이상 등으로 하향하여 평가토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표64]참조).

조달청의 경우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제조 또는 구매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기관에서는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의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에는 창업초기기업에 신용평가 점수에 대한 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창업 초기기업의 공공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규모가 큰 업체 위주의 입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실제 충분한 수준의 사전 준비기간 보장 차원에서 창업초기기업 인정 기준을 5년 이내로 확대할 필요성 있다.

(3) 적격심사기준(일반용역)

(가) 평가 및 낙찰:

① 신인도 평가 항목의 상이성 및 주요 인증 및 조건 배점의 차이

[표6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3항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3항 및 [별표 7]]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 2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 2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표66]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A .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가) 10년 이상 1.0 (나)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다) 3년 이상 ~ 5년 미만 0.5 (라) 3년 미만 0.25 (2)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가)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나)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나.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A .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 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2.0 (나)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27% 이상인 기업 1.0	

[표67] 대한석탄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항 목	평점(점)
A. 최근 1년 이내에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5%이상 △1.0 (2) 2%이상~5%미만 △0.5 (3) 2%미만 △0.25	
B.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1.5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1.0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0.5	
C. 최근 1년 이내 아래 사항의 산업재해를 발생한 업체 (1) 사망 재해 △1.0 (2) 부상재해 2건 이상 △0.5 (3) 부상 재해 1건 △0.25	
D. 최근 2년 이내 아래 사항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업체 △2.0 *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노사관리 부실 * 안전관리 부실, 재해빈발로 공사에 유·무형 손실 초래 * 범법, 기타 불미스런 행위로 공사에 손실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신인도 평가 항목의 구조는 조달청 및 타 기관들의 평가항목을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단일차원 평가방식이며 이는 조달청을 비롯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이와 같다. 둘째는 다차원 평가방식이다. 이는 2~3개의 차원으로 평가하며, 이를 채택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이 있다. 신인도 평가 시 세부항목의 차이로 인해 관련업체가 공공조달 시장 진출 시 서로 다른 인증 획득 소요 야기, 동일 가치를 부유한 인정의 과도한 차등 배점 등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내용의 평가항목이라도 배점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배점의 차이가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상이한 주요항목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조달청과 인천국제공항사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에 1.25점,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에 0.75점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에게는 1.0점을 적용한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에게 1.0점을 적용한다([표65] ~[표67] 참조).

신인도 가점은 기본평가항목 이외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추가적인 수행역량 및 대외적 신인도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그러므로 정부 정책적 목적에 따라 동일한 시간, 비용, 인력을 투입하여 취득한 인증 등이 공공기관에 따라 최대 2~3배 배점 비중 편차가 발생한다면, 해당업체는 다른 공공기관 입찰시 다른 인증을 추가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부족한 가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인도 가점 및 감점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가 감점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평가항목별 동일배점, 다시 말해 동일가치 동일 평가 원칙을 채택함을 권고한다.

② 실적평가기간의 차이가 존재함

[표6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5조 1항 제 2호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5조 1항 제 2호 관련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2

-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표69]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해당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25
	3. 신인도		+4.25~ △2.0	+4.25~ △2.0
	계		35	25

[별표2]

[표70] 대한석탄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해당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 경영상태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2.5	12.5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2.5	12.5
	3. 신인도		(0~△6)	(0~△6)
	계		35	25

[별표 2])

조달청 및 대부분의 기관들의 경우 실적평가 대상 및 기간을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석탄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전력거래소는 실적평가 인정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수행실적 인정기간이 축소됨으로써 영세한 신생 및 중소기업체들의 실적평가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 있다. 조달청 및 광역지자체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실적평가 대상 실적의 인정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을 채택하는 추세인 것을 반영하면, 신생 및 중소기업체들의 실적평가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실적평가에서 상대적 불이익 예방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실적평가 대상 실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 적용토록 개선 권고하는 바이다.

③ 경영상태평가의 최고 등급부여 폭이 상이함

[표7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7조 3항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 한도별		
			30점	25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	25	10

(별표 6] 제 7조 3항 관련)

[표72]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 한도별		
			30점	25점	10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25.0	1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9.9	24.9	9.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8	24.8	9.8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2] (제7조 제3항 관련)]

조달청 및 대부분의 기관은 경영상태평가의 기준인 신용등급 최저 AA-에서 AAA까지 최고 점 부여하고 있다([표71] 참조). 반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는 AAA 등급 일 때만 최고점 부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72] 참조). 이는 곧,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등급 폭이 작아 만점 획득이 어려운 편임을 뜻한다. 또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조항을 비교하더라도, 물품구매 적격심사 대비 신용평가등급 만점 부여 최저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용역 입찰 역시 영세한 중소기업체들

의 참여가 많으므로 BBB0 또는 BBB+수준에서 만점 부여하는 하한 구간 설정 권고한다. 중견 기업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AA이상 등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평점기준 운영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④ 경영상태평가의 평가방식 상이

[표73]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해당 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9	-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3.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	-
	4.신인도		+6.75~ △2.0	+6.75~ △2.0
	계		40	3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 (제 5조 제 1항 제 3호 관련)]

[표74] 정보통신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해당 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 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9	-
	2.경영상태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5	15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	15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	-
	4.신인도		(0~△6)	(0~△6)
	계		40	30

[대한석탄공사 [별표 3의 1]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조달청 및 다른 기관들은 경영상태평가를 기준을 신용평가등급으로 정한다.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 중 일부 평가대상이며, 배점은 100점 만점에 30점으로 한다([표73]참조). 이에 반해, 대한석탄공사는 배점은 30점은 같으나, 신용평가등급대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1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 15점으로 평가한다.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위해 타 기관 및 상위규정과 통일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경영상태 평가의 객관성 향상을 위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이 효과적인 수단이나 신

생 및 중소기업의 경우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서는 재무비율(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로 평가 할 수 있는 선택 조항 추가를 권고한다.

⑤ 평가 및 낙찰 : 신용평가등급 평점 차

[표7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 한도별		
			30점	25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	25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24.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24.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24.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24.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24.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23.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20.0	7.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제 7조 3항 관련]

조달청 및 대다수 공공기관이 신용평가등급의 등급 간 평점 차는 0.2점차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평가를 받는 신생 및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조달청 및 타 기관들의

해당 조항을 확인한 결과, 조달청 및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에서 경영상태평가를 위한 신용 평가 등급 간 평점 차는 0.2점이 일반적이다([표75] 참조).

[표76]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 한도별		
			30점	25점	10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25.0	1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9.9	24.9	9.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8	24.8	9.8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제 7조 3항

반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는 해당 등급 간 평점 차를 0.1점씩 차이로 하고 있어 해당 업체, 특히 중소기업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 점차가 작다는 것은, 신생 및 중소기업체의 평가 불이익 완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표76] 참조). 그러나 광역 지자체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는 지방 공기업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신용평가등급 평점차가 0.2~1점까지 편차가 발생하므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 필요함.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업력 및 재정적 안정성 등에 따른 경로의존성이 크고 탄력성이 낮아 과도한 배점은 신생 및 중소기업체에게 상대적 불이익 작용 가능성 높음. 따라서 신용 평가 등급 간 평점 차는 0.2점 내외로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부여(만점)

[표7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제 7조 3항 관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 한도별		
			30점	25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	25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24.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24.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24.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24.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24.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23.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20.0	7.0

5.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6조 제1호에 따른다.

조달청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나,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중부발전의 기관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상의 혜택이 없다([표77] 참조).

⑦ 평가 및 낙찰 : 결격사유의 심사항목 중 폐기물용역에 대한 내용 누락

[표7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9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9조 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달청에는 제 9조 결격사유의 심사 3항에서 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 현재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비교 조사한 기관들에서는 해당 내용이 없다. 기준의 통일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용역 범주에 포함된 적격심사 세부기준별 차이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표78] 참조).

(4) 적격심사기준(기술용역)

(가) 평가 및 낙찰

①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내의 감점항목

[표79] 대한석탄공사 적격심사항목(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 준	심사방법	비고
▷수행능력	70점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적용	
▷입찰가격	3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 점 = $30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한다.	
계	100점		
▷결격사유	△20점	▷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 공사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 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0점	▷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도록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한석탄공사 <별표1>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표80]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준	심 사 방 법	비 고
▷수행능력	70점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평 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7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 (단, 필요시 요구 가능)
▷입찰가격	30점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text{평 점} = 30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한다.	
계	100점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기술용역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조달청 및 타 기관에서는 적격심사항목은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같은 배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감점항목은 없다([표79] 참조). 반면, 대한석탄공사에서는 결격사유가 있으면 감점하는 감점항목이 있다. 감점항목은 조달청 및 타 기관들과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규제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현안 및 쟁점은 없으나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은 고려해야한다([표80] 참조).

②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항목 중 특별 신인도 가점 차이

[표81]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기술용역 <별표1>

구분	심사분야 (배점)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10)	경영 상태 (10)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기준비율	5	적격심사제출서류 :별지참조
		A. 100%이상	(5)	
		B. 90%이상	(4.5)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4) (3.5) (3)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특별 신인도 (+2.5)	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	
		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 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 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 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입찰가격(90)		※ 아래 평점산식 참조	90	
계			100	

[표82] 대한석탄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분	심사 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총 점		10	
당해용역수행능력	경영상태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5	적격심사 제출서류: 별지참조
		A. 100%이상	(5.0)	
		B. 75% 이상 ~ 100%미만	(4.5)	
		C. 50% 이상 ~ 75%미만	(4.0)	
		D. 25% 이상 ~ 50%미만	(3.5)	
		E. 0% 이상 ~ 25%미만	(3.0)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	
		A. 100%이상	(5.0)	
		B. 75% 이상 ~ 100%미만	(4.5)	
		C. 50% 이상 ~ 75%미만	(4.0)	
		D. 25% 이상 ~ 50%미만	(3.5)	
		E. 0% 이상 ~ 25%미만	(3.0)	
	특별 신인도	▷ 당해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서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당해 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특별 신인도 가점을 +2.5점을 가점으로 준다.([표81] 참조) 반면, 대한석탄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석유공사는 +2점으로 가점이 조달청 기준보다 0.5점 적다. 가점이 상위규정보다 가점이 적은 것은 해당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표82] 참조)

③ 수행능력 평가 배점이 세분화 된 경우(추정가격에 상관없이 적용됨)

[표83]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기준	심사방법	비고
▷수행능력	70점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평 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70$ 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 (단, 필요시 요구 가능)
▷입찰가격	30점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 점 = $30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한다.	
계	100점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기술용역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표84] 국립공원관리공단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 <별표1>

심사항목	기 준	심사방법	비고						
당해 용역 수행 능력	67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평 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67$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적격심사 제출서류: 없음(단, 필요시 요구가능)						
	지역 업체 참여도 3점	•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table><tr><td>지역업체참여비율</td><td>30%이상</td><td>30%미만 20%이상</td></tr><tr><td>점수</td><td>3점</td><td>1점</td></tr></table>		지역업체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 20%이상	점수	3점	1점
	지역업체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 20%이상					
점수	3점	1점							

		※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등과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역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이상인 경우는 3점, 20%미만 10%이상인 경우는 1점을 적용한다.	
입찰가격	3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text{평 점} = 30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영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기술인력	△10점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계	100점		

조달청 및 타 기관에서는 수행능력을 <별표 1>에서 명시하는 것처럼, 평점 식으로 70점 만점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표83] 참조). 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와 달리 수행능력을 ‘사업수행능력’, ‘지역참여도’의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 67점, 3점으로 이 두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표84] 참조).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에는 조달청의 기준과 달리, 기술자 보유현황이 미달일 경우 감점 처리한다. 이는 규제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현안 및 쟁점은 없으나, 해당업체의 편의를 위해 평가항목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④ 심사 기준 일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

[표85]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심사기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2조 심사기준]	
①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조달청 및 타 기관에서 적격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표85] 참조). 반면, 한국석유공사는 해당내용 제 2조 심사기준에 해당 항이 없다. 이에 따라, 상위규정과 같이 적격심사기준 일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하다([표86] 참조).

[표86] 한국석유공사 제 5조(평가기준)

[한국석유공사 제 5조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개별법령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거나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기술용역
가.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 별표 1
나.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경우 : 별표 2
다.	추정가격 5억 원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 수행능력평가대상 기술용역 포함) : 별표 3
라.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별표 4

⑤ 결격 사유의 심사 항목이 일원화 되지 않음.

[표87]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3조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3조 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표88] 국립공원관리공단 제 3조

[국립공원관리공단 제 3조 수행능력결격사유]	
1.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구성원중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에 포함한다.

조달청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결격사유 심사를 하고 있다([표87] 참조). 그러나 조달청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기관들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규제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현안 및 쟁점은 없다. 또한, 조달청 및 타기관의 내용에는 없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적격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였어도 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 될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88] 참조).

(5) 적격심사기준(시설공사)

(가) 평가 및 낙찰

① 기관별 공사 적용범위의 차이가 존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서는 공사규모별 적용범위는 7개로 구분되며,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조달청 기준과 동일하였다. 이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경우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2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며,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50억 미만부터의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고 있다. 기관의 특성상 공사의 규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규제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현안 및 쟁점 요소는 없다고 볼 수 있다([표89]참조).

[표8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2조]

① 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200억 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이하 “사전 심사 대상공사”라 한다)의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5
6. 추정가격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 원 미만 8천만 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6
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 원 미만, 전문 공사는 1억 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② 기관별 공사 적용범위의 차이가 존재

[표9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7] <개정 2014.8.19.>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별 최근 5년 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생략	

조달청기준으로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에서는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10점)이외에 추가적으로 특별신인도에 가점(+2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대한석탄공사 및 석유공사에서는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에서 부족한 점수를 채울 수 있는 가점 항목이라는 점에서 기준의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90] 참조).

(6) 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

(가) 계약이행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이 가능한 조정가능 일 수입의적 변경

[표91]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 11조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11조 별첨(2) 참고

조달청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시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일 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별첨 2 참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 일로부터 90일 이내 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우체국물류지원단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을 60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물가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조달 업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상위 계약 법령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상치되므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사후처리

① 대가의 지급기한이 상위 법령 보다 긴 경우

[표92]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 22조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22조(대가의 지급)]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조달청 및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경우 대가지급기한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가 지급 기한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달리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신속한 검사·검수 이후 대금 지급문제까지 연계하여 단축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표92] 참조).

② 계약이행 완료 후 검사를 해야 하는 기한의 차이

[표93]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 24조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24조(지체상금)]

별첨(3) 참고

조달청 및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계약 상대방의 입회아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별첨3 참조). 이와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검사기간을 외관 및 수량검사(3일), 시험검사(7일)로 총 10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 통보 후 1일 이내에 필요한 경우 7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검사 검수는 14일 이내가 원칙이나 다수 공공기관에서 14일 보다 단축된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속하게 검수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계약을 완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검수 기간의 단축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현행 14일 이내보다 빠른 검사·검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계약일반조건(일반용역)

(가) 계약이행

- ① 계약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처리 받을 시의 상계처리 여부가 서로 상이함

[표9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 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4.11.4.>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4.8., 1996.12.31., 1997.7.10., 1997.12.31., 1998.2.2., 1999.5.13., 1999.9.9., 2000.8.5., 2002.4.20., 2002.12.5., 2003.12.11., 2004.12.31., 2005.9.8., 2006.12.29., 2007.10.10., 2008.2.29., 2008.7.29., 2009.6.29., 2010.11.15., 2011.1.17., 2011.1.24., 2011.1.26., 2011.2.9., 2012.5.14., 2013.3.23., 2014.5.22., 2014.11.4., 2016.2.11.>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에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표95] 조달청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조달청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표96] 우체국 물류지원단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우체국 물류지원단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지원단에 귀속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지원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원단에 귀속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조달청 및 다른 기관들에서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데 있어서,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미지급액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표95] 참조). 다만,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다.(시행령을 따름을 명시한 내용도 없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표96] 참조). 당해 조항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조달업체 입장에서는 미지급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 가능성 있다. 따라서 계약보증금 및 미지급 기성액과 상계처리 조항 추가 권고한다.

② 과업 내용의 변경 시 대가지급 및 계약금액 청구 기한

[표9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 1항, 제6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7.10.10., 2010.7.21.>

⑥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8.2.29.>

[표98] 조달청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제 16조

[조달청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 까지 하여야 한다.

[표99] 우체국물류지원단 제 16조

[우체국물류지원단 제 16조 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일반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을 준용함을 명시하고 있다([표98] 참조). 그러나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생략했다.(시행령에 해당 내용은 없음) ‘계약금액조정 청구’ 완료 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해당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표99] 참조).

③ 계약 연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

[표100]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제 19조 1항, 7항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제 19조 계약기간의 연장 1항과 7항]

-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

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101] 우체국물류지원단 제 19조

[우체국물류지원단 제 19조 계약기간의 연장]

-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중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달청 및 타 기관들과 달리,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계약 연장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기간 종료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후 계약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없다([표100] 참조). 우체국물류지원단에는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표101] 참조). 또한 계약기간 연장이 계약완료 후 종료된 경우에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당해 조항의 취지로 판단됨. 이에 따라, 조달청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각항과 동일하게 일반조건 개정 할 것을 권고한다.

(나) 사후처리

- ① 대가의 지급기간을 5일을 초과하여 지정 운영

[표10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58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8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9.6.29.>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2009.6.29.>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신설 2006.12.29.>

[표103]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제27조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표104] 우체국물류지원단 계약일반조건 제 27조

[우체국물류지원단 계약일반조건 제 27조 대가의 지급]

-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달청 및 타 기관들은 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해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급연장 특약을 정하고 있다([표103] 참조). 그러나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의 대가 지급, 14일 이내에 대가 지급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의를 통해 14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표104] 참조). 이는, 지연지급을 통해 업체에 적기 대금지급 지연을 초래함과 동시에 업체에 경영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대금지급은 검사검수 완료 후 조달업체 청구 시 5일 이내 지급이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도 검사검수 지연 등으로 5일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지연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14일로 대금지급 기한을 설정한 것은 시행령과 상치되는 기준설정이므로 해당 내용을 5일 이내로 수정 권고한다.

- ②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에 대한 조항이 없는 기관이 있음

[표105]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2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과 달리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다. 이와 관련 하여 시행령 및 상위 법령을 따른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은 영세한 중소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것으로 시행령 준용 조항이 없는 경우 조달청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와 동일 내용으로 기준 개정 권고한다([표105] 참조).

(8) 계약일반조건(시설공사)

(가) 계약이행

① 공사 계약 시 계약문서의 과다요구

[표106] 조달청 공사계약 계약일반 세부기준 제 22조

[조달청 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22조(대가의 지급)]

-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8.12.29.>
- ② <신설 2011.5.13., 삭제 2016.1.1.>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발진 공공기관(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5부 작성 및 시공부서로 제출하는 조항이 추가되어있다. 또한 계약이후 착수계 등 제출 서류 및 행정절차가 복잡한 상황에서 산출내역서 5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최소 부수 제출이 필요하다. 공사 계약 시 기본적으로 동일한 서류를 다량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계약 상대방에게 과다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106] 참조).

② 계약보증금 납부의 차별

[표107] 조달청 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 7조

[조달청 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7조(계약 보증금)]

-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 1.<삭제 2010.9.8.>
- 2.<삭제 2010.9.8.>
- 3.<삭제 2010.9.8.>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 보증금과 관련해서 조달청과 타 기관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보증금 납부에 관한 제제가 없다. 하지만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부터 총 제재기간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실제 납부하게 하는 조항을 추가(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자를 대상)하고 있다. 이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차등적으로 실제 계약보증금 납부토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정당제재를 통해 입찰제한 등 제재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중처벌적 요소로 판단될 수 있고, 상위 법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도 별도의 관련 조항 없다. 동일한 자격을 보유한 조달업체에게 다른 업체가 가지는 편익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충분치 않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표107] 참조).

③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

[표108] 조달청 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 19조의 5

[조달청 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19조의 5]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달청 및 타 기관에서는 발주자에 의해 설계변경이 일어났을 때 이로 인한 공사 중지에 대한 재착수 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반면에 발전 공공기관(서부발전, 전력거래소, 전력공사)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했을 때 “중지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착수하게 할 때에는 발주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착수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있어 계약상대자인 조달업체가 자재수급 및 공사착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일방적 어려움 감수 가능성 있다. 설계변경에 따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설계변경이 발생했을 때 중지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착수 할 경우 3일 이내 재착수는 과도하게 짧은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역, 공사 등에서 착수는 7일 내외이며 단축하더라도 5일 내외를 적용한다는 점을 참조하여 추가기간 설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표108] 참조).

(나) 사후관리

①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표109] 조달청 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 43조의 2

[조달청 공사계약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43조의 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

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2.7.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서는 발주자가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있다. 반면에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에 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어 표면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서부발전의 하도급대금직접 지급 관련 조항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협의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발주자의 역할과 합의 조건으로 “명백하게 합의”하라는 조항을 통해 실제 하도급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보다 강화된 조항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운영 과정에서 하도급법령을 준용하겠으나 계약일반조건에 포함할 경우 하도급법령의 조항 호와 동일한 형태로 수정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109] 참조).

② 계약금액조정 시 관련 용어의 통일

[표110] 조달청 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 20조

[조달청 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20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생략

조달청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만, 조달청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는 ‘실적공사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2015년 9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원가계산 작성기준 개정을 통해 기존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대체하였으므로 상위 계약법령과 다

른 용어 통일 필요하다([표110] 참조).

③ 설계변경 시 부당한 계약금액의 조정

[표111] 조달청 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 20조

[조달청 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20조]

④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7.4.>
생략

조달청의 경우 설계변경 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신기술 및 공법을 적용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원용한 것으로 표면상 특별한 문제점 없으나 실제 조달업체 입장에서는 기술 및 공법 개발 노력을 통해 공사 품질을 향상시킨 결과가 최종적으로 감액의 형태로 보상된다면 동기저하 유발 가능성 높다. 따라서 해당 사안과 관련한 상위 규정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111] 참조).

④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잔금 지급 기일의 차이(조달청14일, 한국가스공사20일)

[표112] 조달청 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 46조

[조달청 공사계약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46조]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은 모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수행을 완료한 날부

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기 지급 기한의 연장은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 비해 6일 이상 연장한 것으로 조달업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20일로 연장된 기성대금 및 철수비용 등을 14일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며, 필요시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의 14일도 10일 또는 7일 이내 등으로 단축 검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112] 참조).

(9) 협상에 의한 계약조건

5.5.4 상·하위 계약규정 분석 결과 : 자체조달 사업 및 규정 분석 결과 종합

공공기관별 상·하위 계약규정, 평가기준 및 계약조건 분석 결과 개선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영상태평가, 신인도, 실적평가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약 60%로 확인되었다. 상·하위 규정 분석결과를 처리형태와 개선분야로 통합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법령위반이 대가 및 대금 지급과 관련한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낙찰자 선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는 경영상태평가, 신인도평가, 실적평가, 결격사유심사, 평가 및 배점한도와 관련하여 36.25% 정도의 문제점들이 식별되어 중점 개선 분야로 판단한다([표113],[표114] 참조).

[표113] 공공기관별 상·하위 계약규정/평가기준 및 계약조건 분석 결과(개선분야별)

분야	경영상태 평가	신인도 평가	실적 평가	결격사유 심사	낙찰자 결정	대가 및 대금지급	평가 및 배점한도	과업변경/ 계약금액조정	기타	합계
건수	7	8	5	4	3	9	5	6	33	80
비중	8.75%	10.0%	6.25%	5.0%	3.75%	11.25%	6.25%	7.5%	41.25%	100.00%

[표114] 공공기관별 상·하위 계약규정/평가기준 및 계약조건 분석 결과(처리형태/개선분야별)

분야		경영상태 평가		신인도 평가		실적 평가		결격사유 심사		낙찰자 결정		대가 및 대금지급		평가 및 배점한도		과업변경/ 계약금액조정		기타		합계	
건수	법령위반		0		0		0		0		0		4		0		0		3		7
	제도개선	7	6	8	6	5	5	4	0	3	2	9	5	5	3	6	6	33	21	80	54
	단순차이		1		2		0		4		1		0		2		0		9		19
비중		8.75%		10.0%		6.25%		5.0%		3.75%		11.25%		6.25%		7.50%		41.25%		100.00%	

자체조달 사업현황과 상·하위 계약규정 현황 분석결과 식별된 규제요인을 처리 형태별로 구분하면 전체의 약 13.5%인 13건(중복 제외 시 9건)이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기재부 계약예규, 행자부 예규 제 34호, 제 35호와 상치되는 계약관행 또는 규정을 보유한 것으로 식별되었다. 전체의 약 60%는 법령 및 행정규칙 등

을 위배하지 않았으나 계약실무 과정에서 규제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식별되었다. 통합분석 결과 공공기관별 계약규정에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되거나 특별한 규제적 요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단순한 차이에 해당하는 사안은 19건으로 동일하였다.([표115] 참조)

[표115] 공공기관 자체조달 사업현황 및 상·하위 계약규정 조사 통합분석 결과(처리형태별)

구분	법령/행정규칙 위반	제도개선	행태적 오류	단순차이	합계
건수	13건*(9건)	58건**(55)	6건	19건*** (13건)	96건(93건)****
비율	13.54%	60.42%	6.25%	19.79%	100%

5.5.5 2015년 자체조달 전수조사 13개 유형 개선일정 (관련 법·규정은 별첨4 참조)

① 1-1 입찰시 예정가격 편차율(±2%) 범위지정

검토항목

1-1. 입찰시 예정가격 편차율(±2%) 범위지정

☐ 조사통계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합계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85	70.83	25780	52.95	36	26.47	824	12.39	121	47.1	26,604	48.1

* 해당사례(예정가격 편차율 미준수 사례)

기관명	빈도	비율	기관명	빈도	비율
인천항만공사	37	90.24%	인천교통공사	64	94.12%
한국철도시설공단	537	68.49%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44	93.62%
한국석유공사	61	67.78%	부산 지방공단스포원	20	76.92%
한국서부발전	700	62.78%	경기 관광 공사	218	72.43%
한국남동발전(주)	881	62.66%	제주에너지공사	11	68.75%

☐ 현황 및 문제점

- 원칙적으로 예정가격 산정은 배정예산을 기준으로 조정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기준 ±2%,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기준 ±3%를 적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중앙공공 기관의 경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산정 범위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공공기관별로 과도하게 자의적인 범위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사업 대가를 감액하는 사례 빈번
- 보다 근본적으로 적정 사업예산으로 책정된 배정예산에서 기초금액으로 조정되는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없으며(감액 사유도 공개되지 않음) 이로 인해 복수 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이 산정되면 최소 4%~10% 수준의 사업대가가 감액 될 수 있음
- 중앙공공기관 71%(85개/120개), 지방공기업 27%(36개/136개)가 예정가격 편차율 하한선을 하회하여 입찰 수행

* 공공기관별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을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
한국철도시설공단 : ±2.5% / 한국전력공사 : ±4% / 한국가스공사 : -5%(수익계약 시 -10%)

☐ 개선 내용

- 개선내용 : 복수예비가격 범위율 명시, 특별교육 실시
- 기재부 : 예정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복수예비가격의 개념 및 작성 범위율을 규정화
- 행자부 : 행자부는 ±3% 복수예비가격 범위율을 지키도록 지자체 대상 특별교육 실시
- 개정대상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해당 사항 신설(기재부), 특별교육(행자부)
- 시행부처 : 기재부, 행자부
- 개정시한 : '17.6월

② 1-2 계약 이행 후 검사·검수 완료 간주제 도입

검토항목

1-2 계약 이행 후 검사·검수 완료 간주제 도입

조사통계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합계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29	24.2	266	0.67	10	7.3	24	0.4	39	0.15	290	0.5

* 해당사례 (검사검수 완료후 대금지급까지 30일 이상 지연 사례)

기관명	사업수	비율	기관명	사업수	비율
한국전력공사*	79	0.6%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9	9.6%
한국조폐공사*	47	61.0%	평택도시공사	4	36.4%
한국콘텐츠진흥원*	30	3.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	3.5%

* 100일 이상 대금지급 지연 기관

현황 및 문제점

국계법 및 지계법 시행령에서 발주기관은 사업기간 만료 후 계약상대자의 검사요청에 따라 14일 내 검사 완료해야하며(국계법 시행령 제55조, 지계법 시행령 제64조),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청구 받은 후 5일 내에(합의시 연장 5일) 대가를 지급 하도록 규정(국계법 시행령 제58조, 지계법 시행령 제67조)

한국전력공사, 평택도시공사, 한국에너지 공사 등 일부기관은 150일 이상 대금지급을 지연하여 기업경영에 상당한 지장 초래

계약기간 만료 후 검사기간(14일), 대금 청구 및 지급 기간(10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해도 사업완료 후 30일 이상을 경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시행령 위반임(지체상금 등 위반제재가 없는 경우 해당)

개선 내용

개선내용 : 고시금액(2.1억) 미만의 물품·용역의 경우 사업완료 후 최대 21일 경과시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검수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완료된 것으로 간주

개정대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검사) 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4조)

시행부처 : 기재부, 행자부

개정시한 : '17.6월

③ 1-3 수의계약도 3일 이상 안내공고 의무화(근무일 기준)

검토항목

1-3 수의계약도 3일 이상 안내공고 의무화(근무일 기준)

☐ 조사통계

공고	중앙공공기업			지방공기업		
	사업 총건 수	기준미만 공고 경쟁5일, 수의3일)	비율(%)	계약건 수	기준미만 공고 (경쟁5일, 수의3일)	비율(%)
경쟁계약	27,982	1,417	5.1	4,323	235	5.4
수의계약	20,469	294	1.4	2,317	296	12.8
합계	48,451	1,711	3.5	6,640	531	8.0

* 경쟁입찰에서 5일 미만 공고한 사례

기관명	경쟁건수	빈도	비율	기관명	경쟁건수	빈도	비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8	79	89.8	울산시설공단	164	131	79.9
울산항만공사	26	22	84.6	대구환경공단	54	11	20.4
인천항만공사	29	22	75.9	화성도시공사	16	5	31.3
국립공원관리공단	250	119	47.6	인천교통공사	54	3	5.6
국민건강보험공단	170	45	26.5	대구도시공사	44	1	2.3

*** 수의계약에서 3일 미만 공고한 사례**

기관명	수의건수	빈도	비율	기관명	수의건수	빈도	비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1	34	82.9	서울도시철도공사	260	246	94.6
울산항만공사	8	8	100	광주환경공단	21	21	100
인천항만공사	12	9	75.0	부산교통공사	45	25	55.6
한국전력공사	4,158	66	1.6	김포도시공사	1	1	100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35조에 따라 최소 7일 이전에 입찰공고하고, 재공고 등 예외적으로 5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경쟁(일반, 제한, 지명경쟁)사업중 5.1%(1,652사업)가 5일미만 공고하고 있어 법령위반 또는 법·규정 적용 행태의 문제점 있음
-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최소3일 안내공고를 통하여 기업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해야 하나, 중앙공공기관 294개 사업, 지방공공기관 296개(12.8%) 사업이 3일 미만 안내 공고로 공고기간 단축 또는 공고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 발주기관은 우수한 업체와의 계약체결 기회를 상실할 수 있고 기업은 계약참여 기회를 박탈당하는 계기가 됨

□ 개선 내용

- 개선내용 : 소액수의계약 체결 시에 ‘근무일 기준 3일 이상 안내공고 의무화’ 추가
- 개정대상 : 예규개정
 - 기획재정부 :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개정
 - 행정자치부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시행부처 : 기재부, 행자부
- 개정시한 : ‘17.3월

④ 1-4 제한경쟁 시 실적요구 금지, 고시금액 이상도 1/3이상 금지

검토항목 1-4 제한경쟁 시 실적요구 금지, 고시금액 이상도 1/3이상 금지

□ 조사통계

중앙공공기업				지방공기업				합계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50	41.67	1,245	2.56	13	9.56	49	0.74	63	24.5	1,294	2.3

*** 해당사례 (사업규모 대비 100%이상 실적 요구 사례)**

기관명	사업수	비율	기관명	사업수	비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6	46.15%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6	100.00%
교통안전공단	50	38.17%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1	50.00%
한국국토정보공사	42	32.31%	여수 도시공사	2	40.0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2	30.77%	성남도시개발공사	9	33.3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14	29.08%	포항 시설관리공단	1	33.33%

* 100일 이상 대가지급 지연 기관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계약법에서 실적 등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시 실적제한은 당해입찰 규모, 양의 1배 이내 원칙이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은 1/3로 완화예정(‘16.9월)
- 한편, 기재부 계약예규 및 행자부 예규 제35호에서는 실적제한은 계약목적물의 1/3배 이내에서 부과되 불가피한 경우 또는 특수한 경우에만 1배까지 실적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행자부 예규에서는 규모·양으로 1/3배 초과금지, 추정가격 기준 1배 초과 금지)
- 따라서 1배 이상 실적 요구는 자체조달 사업에서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1/3배 (규모, 양)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해야 하며 당해입찰의 특성상 불가피한 특수한 경우에도 1배 이내 요구토록 한 규정을 과도하게 상회하는 것으로 행정규칙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음(지방공공기관은 규모, 양 기준 시 1/3배 이내)
- 중앙공공기관의 41.67%(50개), 지방공기업의 9.56%(13개)의 기관에서 1배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는 법·규정 위반 사례가 있음(63개 기관, 1,294건)

□ 개선 내용

- 개선내용 : 제한경쟁 입찰시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1배 → 1/3배 이내로 완화하고,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 입찰에 대해 실적제한 폐지하도록 개정
- 개정대상
 - 기재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개정

- 행자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 기준) 개정
- 시행부처 : 기재부, 행자부
- 개정시한 : '17.6월

⑤ 1-5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기술:가격 평가비중 의무화

검토항목

1-5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기술:가격 평가비중 의무화

조사통계

중앙공공기업				지방공기업				합계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20	16.67	275	0.56	2	1.47	5	0.08	22	8.6	280	0.5

* 해당사례 (기술100% 적용 등 기술:가격 평가 비중 자의적 설정 사례)

기관명	사업수	비율	기관명	사업수	비율
한국농어촌공사	65	9.02%	단양 관광공단	4	100.00%
한국전력공사	40	6.72%	제주관광공사	1	4.00%
한국지역난방공사	9	1.63%	-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6	10.90%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	8.47%	-	-	-

현황 및 문제점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분야(기술 및 가격)의 배점은 기본 80(기술):20(가격)으로 할당된 것을 기준으로 각각 10점 범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90:10 또는 70:30의 평가비중만 설정할 수 있음

중앙공기업 275개 사업, 지방공기업 일부사업에서 해당 비율을 초과한 입찰진행

기술평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기업 실적, 기술력, 인적구성 등 제안서 평가에 의한 낙찰자 선정 의존으로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개선 내용

개선내용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기술:가격 평가비중 자의적 설정 금지

사전규격 등 입찰진행 전 과정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 강화위한 전문기관 신설

개정대상 : 예규개정

기재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별표 개정

행자부 : 기 규정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전문기관 신설시는 양기관 모두 법률개정 필요

시행부처 : 기재부, 행자부

개정시한 : ‘17.3월

⑥ 1-6 협상에 의한 계약 시 특정평가 항목의 과다배점 금지

검토항목		1-5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기술:가격 평가비중 의무화									
☐ 조사통계											
중앙공공기업				지방공기업				합계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16	13.33	90	0.18	1	0.74	1	0.02	17	6.6	91	0.2
* 해당사례 (협상에 의한 계약 중 특정평가 항목에 대해 30%이상 과다배점 사례)											
기관명		사업수	비율	기관명		사업수	비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4	30.36%	대구시설관리공단		1	0.9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	10.53%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10.17%	-		-	-				
독립기념관		1	3.33%	-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6	2.48%	-		-	-				

☐ 현황 및 문제점

-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기준 제7조 및 관련된 [별표]에서 특정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30%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공기관 16개 기관 90개 사업은 특정항목의 평가배점이 30%를 초과 하도록 배정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 되었을 수 있음
- * 입찰 및 계약실무에서 동일 기관의 유사 입찰에 대해서 최초 잘못된 제안서 평가기준이 만들어지면 이후 업무인수인계 또는 단순 참고 과정에서 수정 없이 오류를 내포한 평가기준을 지속 사용하는 사례 빈번

☐ 개선 내용

- 개선내용 : 협상에 의한 계약시 특정 평가 항목에 과다배점(1항목 30%이상) 금지하도록 조치
- 개정대상 : 공문서 통하여 시정하도록 시행
- 시행부처 : 기재부, 행자부
- 개정시한 : '17.3월

⑦ 2-1 선금 30%미만 지급 시 사용내역서 간소화

검토항목

2-1 선금 30%미만 지급 시 사용내역서 간소화

조사통계

중앙공공기업				지방공기업				합계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109	90.83	29,073	59.71	121	88.97	4,993	75.11	230	89.5	34,066	61.6

* 해당사례 (선금 미지급 사례)

기관명	사업수	비율	기관명	사업수	비율
한국언론진흥재단	1	100%	서울매트로	649	100%
한국전력거래소	3	83.0%	서울시설관리공단	249	100%
한국과학창의재단	67	75.0%	울산시설공단	161	10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59	70.0%	대구환경공단	115	100%
한국정보화진흥원	96	70.0%	부산 시설공단	111	100%

현황 및 문제점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 요청 시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지급 할 수 있음(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 신청 시 신청금액만 지급)

* 선금 지급은 '계약체결 후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선금을 지급하여 계약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중앙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대부분이(89.5%) 선금지급 하지 않고 있음

선금 지급 비율이 낮은 이유는 선금사용 후 사업완료시 제출하는 선금 사용내역서에 임금비, 기업이윤 등 기업 기밀의 노출을 꺼려 업체가 신청하지 않는 사유가 대부분임

개선 내용

개선내용 :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에서 30% 미만의 선금 지급 시 사용내역서 제출을 사용확인서 등으로 간소화(30%이상 선금지급 시 종전과 동일)

개정대상 : 예규개정

기재부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개정

행자부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시행부처 : 기재부, 행자부

개정시한 : '17.3월

⑧ 2-2 입찰 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대상 확대(1억→5천만 원)

검토항목

2-2 입찰 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대상 확대(1억→5천만 원)

조사통계

중앙공공기업				지방공기업				합계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110	91.67	29,062	59.69	74	54.41	4841	72.82	184	71.6	33,903	61.3

* 해당사례 (사전규격 미지급 사례)

기관명	사업수	비율	기관명	사업수	비율
한국석유공사	90	100.00%	서울시설관리공단	304	100%
한국디자인진흥원	19	100.00%	울산시설공단	164	10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9	100.00%	광주환경공단	146	100%
한국국토정보공사	130	100.00%	인천환경공단	112	100%
한국관광공사	92	100.00%	대구시설관리공단	104	100%

현황 및 문제점

- 중앙공공기관의 경우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 조항은 없음
- 기재부 예규는 1억 원 이상의 물품·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업체에 사전공개 하도록 '16.1월부터 시행하였고, 지방공기업은 지방계약법을 개정하여 5천만 원 이상에 대해 사전공개 하도록 '16.11월부터 시행 예정
- 현재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사전규격 공개 제도 하에서는 제시된 의견을 본 공고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없어 사전규격 공개만으로 공고 규격에 대한 법령위반, 중소기업 진입제한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조달청이 운영 중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받고 있으나, 기업정보(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이나 기업 내 개인의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가 미미하며, 자체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의견접수 기능 자체가 없음

개선 내용

- 개선내용 :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대상 금액 확대(1억 → 5천만 원)
- 개정대상
 - 기재부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개정
 - 행자부 : 지방계약법 9조의 2(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개정
- 시행부처 : 기재부, 행자부
- 개정시한 : '17.3월(기재부), '16.12월(행자부)

⑨ 2-3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 기업에 우대 가점 부여

검토항목	2-3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 기업에 우대 가점 부여										
☐ 조사통계											
중앙공공기업				지방공기업				합계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77	64.17	5,138	10.55	41	30.15	822	12.36	118	45.9	5,960	10.8
* 해당사례 (물품구매 적격심사에 기업규모별 차등평가 미적용 사례)											
기관명			사업수	비율	기관명			사업수	비율		
예금보험공사			27	100%	인천교통공사			68	100%		
한국디자인진흥원			19	100%	통영 관광개발공사			58	100%		
한국관광공사			92	10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54	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8	100%	성남도시개발공사			27	100%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47	100%	파주시시설관리공단			25	100%		

□ 현황 및 문제점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물품제조 입찰시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실적평가 배점한도의 2~3점 수준의 가점부여”하고 있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우대조항이 있음
- * 10억 원 미만 물품제조 입찰은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기업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적평가가 없음
- 그러나, 중앙공기관의 경우 자체적인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과 창업초기기업에 우대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신인도 평가에서만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소규모 기업의 공공조달진입 애로로 작용
- * 자체규정이 없는 공기관은 조달청 규정을 따르고 있어 문제없음
- 지방공기관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은 부여하지만 실적평가 시 소기업·소상공인과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별도의 차등적 가점을 부여하지는 않음
- * 실적평가 항목은 기본평가 항목으로 실적이 충분하지 못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창업초기기업에게 실질적인 진입장벽 요소로 작용 가능성 높음.

□ 개선 내용

- 개선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예규 개정
- 개정대상 : 예규
- 기재부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개정
- 행자부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행부처 : 기재부, 행자부
- 개정시한 : '17.3월

⑩ 2-4 물품공급 입찰 시 순수최저가 제도폐지(제한적 최저가 도입)

검토항목

2-4. 물품공급 입찰시 순수최저가 제도폐지(제한적 최저가 도입)

조사통계

중앙공공기업				지방공기업				합계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30	25.00	121	0.25	7	5.15	20	0.30	37	14.4	141	0.3

* 해당사례 (과도한 저가투찰 사례)

기관명	사업수	비율	기관명	사업수	비율
사회보장정보원	1	20.00%	구미 시설공단	1	3.4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	8.33%	창원 시설관리공단	1	2.04%
선박안전기술공단	1	5.88%	이천시시설관리공단	1	1.61%
한국수력원자력(주)	27	4.33%	경기도시공사	1	1.45%
한국주택금융공사	2	4.08%	서울도시철도공사	10	1.11%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및 지방계약법 모두 일반경쟁입찰, 최저가 낙찰이 기본적 원칙임
- 특히 고시금액 이하 물품 공급입찰에서는 순수 최저가 입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낮은 공급물품에 대한 과도한 가격경쟁 발생
- '15년 직접조달 사업 전수조사 결과 141개 사업이 예정가격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 투찰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과도한 가격경쟁은 조달업체의 계약이행과 경영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품질저하, 계약불이행 등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게 됨

개선 내용

- 개선내용 :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구매 입찰시 순수 최저가 제도를 폐지하고,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지정하여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하는 낙찰자에서 배제 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도입
- *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방식으로 정함. 낙찰하한율은 기재·행자부가 협의하여 타당한 비율을 결정
- 개정대상
 - 기재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개정
 - 행자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개정
- 시행부처 : 기재부, 행자부
- 개정시한 : '17.6월

⑪ 3-1 적격심사 납품실적 평가 기준의 동등 또는 유사 실적 기준제시 의무화

검토항목	3-1 적격심사 납품실적 평가 기준의 동등 또는 유사 실적 기준제시 의무화																																				
☐ 조사통계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중앙공공기업</th><th colspan="4">지방공기업</th><th colspan="4">합계</th></tr> <tr> <th>해당기관</th><th>비율(%)</th><th>사업건수</th><th>비율(%)</th><th>해당기관</th><th>비율(%)</th><th>건수</th><th>비율(%)</th><th>해당기관</th><th>비율(%)</th><th>사업건수</th><th>비율(%)</th></tr> </thead> <tbody> <tr> <td>65</td><td>54.17</td><td>4,218</td><td>8.66</td><td>36</td><td>26.47</td><td>694</td><td>10.44</td><td>101</td><td>39.3</td><td>4,912</td><td>8.9</td></tr> </tbody> </table>		중앙공공기업				지방공기업				합계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65	54.17	4,218	8.66	36	26.47	694	10.44	101	39.3	4,912	8.9
중앙공공기업				지방공기업				합계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65	54.17	4,218	8.66	36	26.47	694	10.44	101	39.3	4,912	8.9																										
* 해당사례 (동등·유사실적 평가기준 불명확 사례)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명</th><th>사업수</th><th>비율</th><th>기관명</th><th>사업수</th><th>비율</th></tr> </thead> <tbody> <tr> <td>예금보험공사</td><td>27</td><td>100%</td><td>장수한우공사</td><td>81</td><td>100%</td></tr> <tr> <td>한국언론진흥재단</td><td>17</td><td>100%</td><td>통영 관광개발공사</td><td>58</td><td>100%</td></tr> <tr> <td>한국산업인력공단</td><td>128</td><td>100%</td><td>파주시시설관리공단</td><td>25</td><td>100%</td></tr> <tr> <td>한국정보화진흥원</td><td>121</td><td>100%</td><td>안동 시설관리공단</td><td>15</td><td>100%</td></tr> <tr> <td>한국문화예술위원회</td><td>37</td><td>100%</td><td>창영 개발공사</td><td>15</td><td>100%</td></tr> </tbody> </table>		기관명	사업수	비율	기관명	사업수	비율	예금보험공사	27	100%	장수한우공사	81	100%	한국언론진흥재단	17	100%	통영 관광개발공사	58	100%	한국산업인력공단	128	100%	파주시시설관리공단	25	100%	한국정보화진흥원	121	100%	안동 시설관리공단	15	1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7	100%	창영 개발공사	15	100%
기관명	사업수	비율	기관명	사업수	비율																																
예금보험공사	27	100%	장수한우공사	81	100%																																
한국언론진흥재단	17	100%	통영 관광개발공사	58	100%																																
한국산업인력공단	128	100%	파주시시설관리공단	25	100%																																
한국정보화진흥원	121	100%	안동 시설관리공단	15	1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7	100%	창영 개발공사	15	100%																																
☐ 현황 및 문제점																																					
- 중앙공공기관 54%, 지방공기업 26%는 실적평가 방법을 사전공개 하지 않고 있음 - 실적평가방법 중 동등 및 유사 실적 인정 기준에 따라 실적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당해 입찰에서 동등·유사 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미 제시 - 이로 인해 동등·유사 실적 인정과 관련한 쟁점 발생 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자의적 판단 개입 가능성 있음																																					
☐ 개선 내용																																					
○ 개선내용 : 사업별 입찰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 상에서 물품명, 용역명, 물품목록번호 등으로 유사·동일 실적의 명확한 판단기준을 사전제시토록 의무화 ○ 개정대상 : 예규개정(기재부, 행자부), 지침마련(조달청) - 기재부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개정 - 행자부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 지침마련 ○ 시행부처 : 기재부, 행자부, 조달청 ○ 개정시한 : '17.3월																																					

⑫ 3-2 사업대가 감액기준을 관련 규정에 명시

검토항목	3-2 사업대가 감액기준을 관련 규정에 명시																																				
☐ 조사통계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중앙공공기업</th><th colspan="4">지방공기업</th><th colspan="4">합계</th></tr> <tr> <th>해당기관</th><th>비율(%)</th><th>사업건수</th><th>비율(%)</th><th>해당기관</th><th>비율(%)</th><th>건수</th><th>비율(%)</th><th>해당기관</th><th>비율(%)</th><th>사업건수</th><th>비율(%)</th></tr> </thead> <tbody> <tr> <td>59</td><td>49.17</td><td>3,062</td><td>6.29</td><td>40</td><td>29.41</td><td>454</td><td>6.83</td><td>99</td><td>38.5</td><td>3,516</td><td>6.4</td></tr> </tbody> </table>		중앙공공기업				지방공기업				합계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59	49.17	3,062	6.29	40	29.41	454	6.83	99	38.5	3,516	6.4
중앙공공기업				지방공기업				합계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59	49.17	3,062	6.29	40	29.41	454	6.83	99	38.5	3,516	6.4																										
* 해당사례 (과업변경 시 감액 조정된 사례)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명</th><th>사업수</th><th>비율</th><th>기관명</th><th>사업수</th><th>비율</th></tr> </thead> <tbody> <tr> <td>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td><td>13</td><td>92.86%</td><td>강원도개발공사</td><td>111</td><td>99.11%</td></tr> <tr> <td>신용보증기금</td><td>12</td><td>15.79%</td><td>창영 개발공사</td><td>9</td><td>60.00%</td></tr> <tr> <td>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td><td>5</td><td>14.71%</td><td>안양시시설관리공단</td><td>2</td><td>40.00%</td></tr> <tr> <td>인천항만공사</td><td>6</td><td>14.63%</td><td>광주광산구 시설관리공단</td><td>1</td><td>33.33%</td></tr> <tr> <td>한국시설안전공단</td><td>1</td><td>9.09%</td><td>대전마케팅공사</td><td>11</td><td>32.35%</td></tr> </tbody> </table>		기관명	사업수	비율	기관명	사업수	비율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13	92.86%	강원도개발공사	111	99.11%	신용보증기금	12	15.79%	창영 개발공사	9	60.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14.71%	안양시시설관리공단	2	40.00%	인천항만공사	6	14.63%	광주광산구 시설관리공단	1	33.33%	한국시설안전공단	1	9.09%	대전마케팅공사	11	32.35%
기관명	사업수	비율	기관명	사업수	비율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13	92.86%	강원도개발공사	111	99.11%																																
신용보증기금	12	15.79%	창영 개발공사	9	60.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14.71%	안양시시설관리공단	2	40.00%																																
인천항만공사	6	14.63%	광주광산구 시설관리공단	1	33.33%																																
한국시설안전공단	1	9.09%	대전마케팅공사	11	32.35%																																

☐ **현황 및 문제점**

- 공사 및 용역의 과업 변경 시 대체로 계약금액 감액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감액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여 을의 위치에 있는 조달업체가 부당하게 사업대가를 감액당하는 사례가 발생
- 최초 계약금액에 맞춰 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갖추어 참여하였으므로 과업변경 등을 통해 계약대금이 감액될 경우 수주업체의 안정적 운영수행 환경이 저하되고, 동시에 계약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 * 신기술 개발로 공기 단축 등 비용이 절감되는 사유로 조달업체가 설계변경 요청하면 당해절감액의 30/100을 감액(국계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하여 국가에 반납하도록 조치하여 신기술 개발 의욕을 저해함(주로 시설공사 경우)
-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과업 변경 사례의 55%가 감액조정

☐ **개선 내용**

- 개선내용 : 사업대가 감액방식, 감액대상, 감액시기 등을 명시하여 규정 개정
- 개정대상 : 예규개정
 - 기재부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해당 사항을 개괄적으로 반영하는 조항 신설
 - 행정자치부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행부처 : 기재부, 행자부
- 개정시한 : '17.3월

⑬ 3-3 과업변경의 범위, 유형, 절차 등 명시하여 규정개정

검토항목

3-3. 과업변경의 범위, 유형, 절차 등 명시하여 규정개정

조사통계

중앙공공기업				지방공기업				합계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건수	비율(%)	해당기관	비율(%)	사업건수	비율(%)
43	35.83	1,349	2.77	43	35.83	1349	2.77	86	33.5	2,698	4.9

* 해당사례 (사전규격 미지급 사례)

기관명	사업수	비율	기관명	사업수	비율
아시아문화원	4	36.36%	연천군시설관리공단	1	100.00%
한국철도공사	41	22.91%	성북구 시설관리공단	3	37.50%
한국과학창의재단	13	17.57%	평택항만공사	5	35.71%
국립공원관리공단	95	15.8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35	35.35%
한국기상산업진흥원	2	15.38%	충북 개발공사	4	28.57%

현황 및 문제점

중앙/지방 공기업의 33.5%가 계약 이후 과업변경을 하고 있으며, 과도한 과업변경은 계약상대방인 조달업체의 안정적 계약이행을 저해하는 부담으로 작용

조달업체는 최초 계약시점에서 확정된 과업내용과 계약금액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바 과업변경이 되면 추진 공정변경으로 추가비용의 투자 또는 손실 발생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공사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최초 사업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부정확한 과업설계 후 계약 이행 단계에서 과업내용을 보완하는 형태로 남용되거나 대가없이 추가적인 과업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개선 내용

개선내용 : 과업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 유형, 절차 등을 적시하여 관련 규정에 명시

개정대상 : 예규개정

기재부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

행정자치부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행부처 : 기재부, 행자부

개정시한 : '17.3월

5.6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비교분석 기반의 규제적 요인 식별 및 개선방안

5.6.1 국가·지방·공공 계약 규정 조정 결과

(1) 국가-지방 계약법 일치화

① 개산계약 시 정산기준

검토항목	1. 개산계약시 정산기준
국가기준	지방기준
○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정산	○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계약금액을 확정·정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개산계약) 제3항>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6조 (개산계약의 정산)>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여야 한다.
□ 개선내용 ○ 개선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기준으로 일치화 (계약 이행 완료 후 정산) ○ 개정대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86조(개산계약의 정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개산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시행부처 : 행자부 ○ 개정시한 : '16.12월	

②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검토항목	2.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 조세포탈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관련규정 없음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관련규정 없음>
□ 개선 계획 ○ 개선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국가기준으로 개정 ○ 개정대상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신설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 ○ 시행부처 : 행자부 ○ 개정시한 : '17.10월(국회 제출)	

③ 농공단지 입주공장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수의계약

검토항목	3. 농공단지 입주공장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공장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 수의계약 규정 없음 -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 농공단지 입주 공장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입주공장의 직접생산 물품은 수의계약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개선 계획 ○ 개선내용 : 농공단지 내에서 이중혜택 부여되지 않도록 국가 기준으로 개정 ○ 개정대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5조 (수의계약 ⇒ 제한 및 지명 입찰로 전환) <제20조제1항 : 제한입찰> 12.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특정사업자의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이내에 직접 생산한 물품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가 직접 생산한 물품 <제22조 : 지명입찰>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이내에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제25조 : 수의계약> 제1항제6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 ○ 시행부처 : 행자부 ○ 개정시한 : '17.6월 ※ 입법예고('16.8.30~9.12), 법제처심사(~11.14) * 농공단지협의회와 반대로 중단(공청회 등 토론 과정을 거친 후 개정)	

④ 소액수의 계약 낙찰한계율

검토항목	4. 소액수의 계약 낙찰한계율	
	기재부 계약예규(280호)	행자부 예규(40호)
	○ 예정가격의 88% 이상(물품)	○ 예정가격의 87.745% 이상(물품)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 요령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개선 계획 ○ 개선내용 : 물품·용역의 소액수계약 낙찰하한율을 국가기준인 '88%이상'으로 일치화 ○ 개정대상 : 예규(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시행부처 : 행자부 ○ 개정시한 : '17.3월	

⑤ 수의계약 결정사유

검토항목	5 수의계약 결정사유
국가계약법	행자부 예규(40호)
○ 관련내용 없음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은 수의계약 결정사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결정사유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정사유에 해당됨
☐ 개선 계획 ○ 개선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 제출 사실 있는 자 등은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결정의 결정사유로 지정하도록 개정 ○ 개정대상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2(소액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개 ○ 시행부처 : 기재부 ○ 개정시한 : '17.3월	

⑥ 선금지급 채권확보

검토항목	6. 선금지급 채권확보
기재부 계약예규(280호)	행자부 예규(40호)
○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약정이자율을 산정	○ 약정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정 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약정 이자율을 산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제35조(채권확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4. 채권 확보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 개선 계획 ○ 개선내용 : 선금지급 채권확보 시 한국은행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약정이자율로 지정 ○ 개정대상 : 예규(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요령) 개정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시행부처 : 행자부 ○ 개정시한 : '16.12월	

⑦ 선금지급 예외규정

검토항목	7. 선금지급 예외규정
기재부 계약예규(280호) ○ 잔여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선금 지급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행자부 예규(40호) ○ 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등은 잔여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선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제34조(적용범위) ⑩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1)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국내·외 연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별표6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공무원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는 제외), 수학여행 등 선금지급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 나) 긴급을 요하는 재난복구공사 다) 원자재가격급등, 환율, 물가변동 등 그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선 계획 ○ 개선내용 : 선금지급 시 잔여이행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하도록 개정 ○ 개정대상 : 기재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개정 ○ 시행부처 : 기재부 ○ 개정시한 : '17.3월	

⑧ 물품구매 적격심사(심사기준)

검토항목	8. 물품구매 적격심사 관련 (심사기준)	
	조달청지침(509호)	지방계약법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 원)을 기준으로 3가지 심사기준 운영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제조입찰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이상 제조입찰,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구매입찰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제조 및 구매 입찰	○ 추정가격 2억 원을 기준으로 3가지 심사기준 운영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물품 (제조, 구매 별도 적용)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물품 (제조, 구매별도 적용) -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물품(제조, 구매 별도 적용)
	☐ 개선 계획 ○ 개선내용 :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에 추정가격을 고시금액으로 적용하도록 지방기준의 2억 원을 고시금액으로 개정 * 모든 규정에 적용되는 2억 원은 모두 고시금액으로 개정 ○ 개정대상 : 예규(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물품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추정가격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 시행부처 : 행자부 ○ 개정시한 : '17.3월	

⑨ 물품구매 적격심사(낙찰하한율)

검토항목	9. 물품구매 적격심사(낙찰하한율)	
	조달청지침(50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39호)
	○ 공통 : 80.495%	○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 80.495% ○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 84.245%
	☐ 개선 계획 ○ 개선내용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낙찰하한율을 고시금액 이상 80.495%, 고시금액 미만 84.245%로 적용하도록 개정 ○ 개정대상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개정 ○ 시행부처 : 조달청(기재부 협의) ○ 개정시한 : '17.3월	

⑩ 물품구매 적격심사(서류제출 기한)

검토항목	10. 물품구매 적격심사(서류제출기한)	
	조달청지침(50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39호)
	○ 심사서류 제출 : 고시금액 이상 5일 이내, 고시금액 미만 3일 이내	○ 심사서류 제출 : 7일 이내
	☐ 개선 계획 ○ 개선내용 :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심사서류 제출 기한을 고시금액 이상은 5일 이내, 고시금액 미만은 3일 이내로 개정 ○ 개정대상 : 예규(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제5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은 5일 이내, 이하는 3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난복구사업의 경우 4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부처 : 행자부 ○ 개정시한 : '17.3월	

⑪ 물품구매 적격심사(기간계산 기준)

검토항목	11. 물품구매 적격심사(기간 계산기준)
조달청지침(50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39호)
○ 신용평가 등급 등 심사 대상 자료의 기간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	○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자료인정 * 기타자료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인정
☐ 개선 계획 ○ 개선내용 : 신용평가 등급 등 심사대상 자료의 인정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정 ○ 개정대상 : 예규(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시행부처 : 행자부 ○ 개정시한 : '17.3월	

⑫ 물품구매 적격심사(납품이행 능력평가)

검토항목	12. 물품구매 적격심사(납품이행 능력평가)
조달청지침(50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39호)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제조입찰에서만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을 평가	○ 제조입찰인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을 평가
☐ 개선 계획 ○ 개선내용 : 물품구매 납품이행 능력평가 시 추정가격 10억 원, 고시금액 구간 지정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 기술 + 실적 평가 - 추정가격 10억 원 ~ 고시금액 : 기술 평가 - 고시금액 이하 : 기술 및 실적 평가 X ○ 개정대상 - 행자부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조달청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 별표2 개정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구간에서 기술능력평가 실시 ○ 시행부처 : 행자부, 조달청(기재부 협의) ○ 개정시한 : '17.3월(행자부), '16.12(조달청)	

⑬ 물품구매 적격심사(실적인정기준)

검토항목	13. 물품구매 적격심사(실적인정 기준)
조달청지침(50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39호)
○ 최근 5년 이내 실적을 인정	○ 최근 3년 이내 실적을 인정
☐ 개선 계획 ○ 개선내용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최근 5년 이내 실적을 인증하도록 개정 ○ 개정대상 : 예규(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행부처 : 행자부 ○ 개정시한 : '17.3월	

⑭ 물품구매 적격심사(신인도)

검토항목	19. 물품구매 적격심사(신인도)
조달청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39호)
○ 없음	○ 품질하자(검사 불합격 및 불량품 발생으로 감액 받은 경우)에 대해 감점(-1점) 적용
□ 개선 계획 ○ 개선내용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품질하자(검사불합격 및 불량품 발생으로 감액받은 경우)에 대해 감점(-1점) 적용하도록 개정 ○ 개정대상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3 개정 ○ 시행부처 : 조달청(기재부 협의) ○ 개정시한 : '17.3월	

5.6.2 국가·공공 계약 규정 조정 결과

① 입찰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검토항목	1.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가계약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국가계약법 제6조>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代理)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 할 수 있다	<계약사무규칙 제7조제2항>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감사원, 주무부처 또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로부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하 "중징계"라 한다) 처분을 요구받아 계약사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기소 또는 중징계 요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직원이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상급 관리자가 관리하는 단위 부서를 말한다) 소관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해당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개선 계획 ○ 개선내용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는 사안이 발생(비리관련 혐의로 기소되거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경우)할 경우 해당 사실을 기재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에 통보하도록 개정 ○ 개정대상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개정 ○ 시행부처 : 기재부 ○ 개정시한 : '17.6월	

②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검토항목	2.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계약사무규칙 제15조제1항>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기관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개선 계획 ○ 개선내용 :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업자 제재사유(22개)와 계약사무규칙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5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국가계약법의 사유를 준용하도록 개정 ○ 개정대상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정 ○ 시행부처 : 기재부 ○ 개정시한 : '16.9월 개정 완료		

③ 이의신청

검토항목	3. 이의 신청	
국가계약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국가계약법 제28조> 국제입찰 : 물품·용역(2.1억원), 공사(82억원), 그 외 물품·용역(1.5억원), 공사(70억 원)	<계약사무규칙 제17조제1항> 국제입찰의 경우만 이의신청 가능, 6.5억 원 245억 원	
제28조(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국제입찰에 관한 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개선 계획 ○ 개선내용 : 국가계약법 상 이의신청 적용대상을 고려하여 계약사무규칙의 이의신청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정 ○ 개정대상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7조(국제입찰에 의한 이의신청) 개정 ○ 시행부처 : 기재부 ○ 개정시한 : '17.6월 완료		

5.6.3 공공기관 대상 정부조달 규제개선 제도개선과제(15개 과제)

5.6.1과 5.6.2에 언급한 사항 중 공공기관 간담회를 통해 언급된 15개 과제에 대하여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세부내용과 부처의견 및 조정내용을 분석했다. (별첨 4 참조)

5.7 중소기업 공공조달 관련 애로사항 및 관련 규정 분석

5.7.1 중소기업 정부조달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결과 요약

[표116] 130건의 중소기업 건의과제 검토결과 요약

연 번	과제명	소관기관	세부내용 (현황, - 문제점, → 개선방향)	검토 및 조정내용	카드 재작성 대상
① 조달진입 장벽완화					
1-1. 무리한 실적제한 완화					
1	제한경쟁입찰 시 단일 건 실적에 의한 참가제한 금지	행자부 (회계제도 과) 기재부 (계약제도 과)	행자부 예규 상 “실적” 규모제한은 1/3 원칙, 1배 내 에서 계약특성 을 고려 조정 가능, 실적 금액 제한은 1배 이내 제한 - 창업 초기기업 및 소기업에게 조달 진입장벽으로 작용, 적격심 사를 통한 실적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바, 원천적으로 제 한함은 부당 → ①안 제한경쟁입찰 시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금지 → ②안 실적제한 범위 최대1배 이내 → 1/3배 이내 원칙 * 국제법 및 지계법 시행규칙에 규정 (예외사유 열거)	제한경쟁 입찰 시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을 1/3배 이내 원칙으로 완화하고, 2.1억 원 미만 물품·용역 입찰에 대해서 는 실적제한 폐지 * 국제법 및 지계법 시행규칙에 실적제한 최대 1/3원칙 기재(예 외사항은 예규에 규정)	○
2	조사용역 입찰 참가 실적제한 합리화	행자부 (회계제도 과) 기재부 (계약제도 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입찰시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가능 - 현실에 맞지 않는 입찰참가자격 기준으로 창업·소기업의 조달진 입에 한계 → 조사용역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을 제한적으로 운영토 록하고 구체적인 추가요건을 배제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지자체·교육청 등 협조 공문 기 시행 ('15.3.20, 4.23, 7.28, '16.4.1, 5.3 등) 현재도 실적제한 등 제한경쟁은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 도록 규정	-
3	인쇄물 분야 과도한	한국기술 교육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인쇄물(중기간 경쟁) 입찰 공 고 시 중복 제한기준 적용 및 과도한 수행능력기준 설정	향후 인쇄업체 선정 시 입찰참가자격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과도한 실적제한 및 수행능력제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소기
도록 할 예정임

입찰참가제한 기준 완화			교	- 지역제한 및 실적제한 등 중복적으로 입찰제한기준 설정 → 실적제한을 1/3배 이내로 설정, 단순 중복제한입찰로 진행, “건 물소유 등”의 입찰제한기준 삭제	도록 할 예정임
4	홈페이지 구축 입찰참가 실적기준 완화 및 실적인정기간 확대	한국기술 교육대학 교	기재부 예규 상 “실적”은 과거 1건의 실적을 의미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1/3 이내에서 실적 요구함이 원칙이나, 계약의 특성 난이도를 감안 최대 1배까지 실적과 유관한 유지 및 세 부 전 입찰참가 → 단일 실적 폐지 또는 1/3배 이내에서 실적 제한 → 실적인정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3년 또는 5년으로 연장	향후 용역입찰 추진 시 적 연법령을 준수하고 신규업 종이하도록 할 예정임	
			시스템 또는 인터넷 사이트 구축용역 분야 입찰공고에서 실적, 재 무제표, 매출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법령에서 정한 참가자격 외 요건이나 방식으로 참가자격을 부당 하게 제한하는 것은 부당 (행자부예규) 실적규모 제한은 1/3 원칙이나 1배 내 에서 조 정가능, 실적금액 제한은 1배 이내 (국가계약) 규모 제한 시 계약 목적물의 규모의 1배 이내이 며, 실적 금액 제한 시 추정가격의 1배 이내 (지방계약) 규모 제한 시 계약 목적물의 규모의 1배 이내이 며, 실적 금액 제한 시 추정가격의 1배 이내에서 행자부장관 이 정하는 금액 → (제한방식합리화) 구축실적 3건 → 1건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제한 → (민수차별금지) 공공기관 외 유사기관 내지 민간업체 실적도 포 함 → (불합리한 부대조건 방지) 현 공공기관 유지보수 실적 3건 삭제	차후 입찰공고 시 법적 요 음	
5	시스템 또는 인터넷 사이트 구축 입찰참가자격 제한 합리화	인천 서구 시설관리 공단			
6	직원 근무복 제작구매 입찰 시 과도한	교통안전 공단 (재정회계	교통안전공단은 ‘16년 직원 근무복 제작 구매 입찰 공고 시 최근 2 년간 사원복 제작 납품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입찰참가제한 또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AAA에 준하는 등급일 경우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 실적이 사업예산 추정가격)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회사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부당(회사채 A- 이상, 기업어음 A2- 이상이면 신용평가 만점)
-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2년간으로 한정

* 지자체에서 예산상 이유로 에스코투자사업 또는 렌탈사업 형태로 발주가 일반화될 경우 중기간 경쟁제품임에도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

			효과 상설	안내판 제작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옥외 광고업자만이 공공조달 참여 가능		
10	안내판 제작 및 공사조달 입찰참여 업종제한 합리화	부여 등 지자체 전북 관광공사	<안내판 제작관련 조달 업종제한 사례 예시> 조달기관 광고명 추정액 업종제한 충남 부여군 안내 판제 작 1.4억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및 정비 옥외광고업 관광공사(전북) 안내 표 지 판 0.8억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 신축 사업 경기 여주시 관 광 안내 판 0.4억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신설보수 옥외광고업 전남 장성군 안내 표 지 판 0.5억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정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중복 물품계약 시, 현장설치 지어진 등 사유로 물품 등 관계로 공사계약)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로 물품과 공사의 업종		
11	한국철도공사 역명표지 개량공사 입찰참가자격 개선	한국철도 공사	→ 안내판 관련 조달 시 옥외광고업 외 업종에 대한 조달참여 허 용 배제 한국철도공사에서 “역명표지 제작 설치”가 혼합된 “역명표지 개량 공사”를 발주 시 입찰참가자격을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자로 한정 * 옥외광고업자에 한해 조달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부당(수 을 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임 용납이 불가함)	한국철도공사는 역명표지 을 수립 시행 중 (‘16.7.1)		
			역명표지는 광고물의 일종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 옥외광고업자의 업무임 안내판(철도안내표지판 포함)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옥외광고업체만 공공조달 참여가능 → ①안 전기공사업과 옥외광고업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또는 공동 수급으로 입찰 → ②안 역명표지 제작설치는 “물품제조입찰”로 옥외광고업자가 입찰하고, 전기공사 부분은 “시설공사 입찰”로 전기공사사업자가	* (방침내용) 역명표지 제작 설치는 옥외광고업 면허보유자, 전기 배선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보유자로 분리발주		

입찰토록 분리발주

			* 역명표지 설치·개량공사 입찰과정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및 입찰 공고 시 반영 옥외광고물 제정·표지·설치·형상을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시장 등에게 옥외광고업 등록을 해야 함 - 시설물 이용안내시설(안내판) 보수정비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옥외광고업과 관련 중소기업, 신규 설치 등은 별 있음
12	한강공원 이용안내시설 보수정비 입찰참가자격 개선	서울시	- 그러나, 입찰자격을 옥외광고업자를 제외한 시설물유지관리업면 허 취득자로 한정 - 지계법 위반소지 → 이용안내시설 보수정비 입찰참가자격을 옥외광고업으로 변경. 단, 단순교체설치가 아닌 건설장비를 요하는 경우 공동수급 발주 또는 분리발주 필요	향후에도 공사 발주 단, 옥외광고를 분야(안내)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록 조치하겠음.
13	가스히트펌프 냉난방장치 공공조달 참여제한 개선	조달청 (쇼핑몰구 매과)	* 교량·터널 등 시설물 완공이후 기능보전 및 이용자편의를 위해 시설물을 점검·정비하는 공사 가스엔진히트펌프(GHP) MAS 계약 입찰공고 상 자격제한으로 중소기업이 공급업체로 MAS계약에 참여 곤란 - 현재, LG, 삼성, 삼천리ED 대기업 3사가 MAS등록으로 물품 공급 중 - 중소기업(설치업체 등)이 이들 3사로부터 독점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없어 MAS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이용안내시설 보수정비 관련 입찰자격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및 입찰 공고 시 반영	MAS 계약 시 계약자와 중소기업이 MAS 계약에 참여할 수 있음 (현장설치도 옵션 선택)

			- 또한, 현장설치도 옵션 선택 시 MAS 업체가 직접설치토록 되어 있어 중소설치업체의 설치공사 참여 곤란(불법하도급 우려) * 제조업체는 1개사에만 공급약서를 발행할 수 있어 발행 제조업체는 입찰참가 불가 → 따라서 대기업설치도 옵션 선택 시 GHP 설치업체(GHP공급업체 외 협력업체) 선택이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 GHP공급업체가 하자책임을 지는 일종의 공동컨소시엄 형태로 MAS등록하는 방식 고려 * GHP 공급업체의 자청에 용역은 일반방역에 포함하여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밖의 설치 협력업체 및 설치가격 경쟁가를 서찰할 수 있도록 목록 제시 (청소용역) 일반용역의 일종으로서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하여 통합발주 가능 (청소용역)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춰 신고한 업체만이 수행 가능 (방역소독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장비·인력을 갖춰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만이 가능 - 방역소독을 청소용역에 포함하여 발주함에 따라 방역소독업자는 청소용역 필수사항인 위생관리용역업 미신고시 입찰 참여 불가			소독업의 경우 금액이 소다는 통합 발주를 선호 소규모 방역소독업체의 입액 이상의 소독용역에 대해 주 독려하도록 하도록 업무
14	방역소독용역과 청소용역 분리발주 요청	행자부, 조달청 등	- 청소용역·방역용역 통합발주 시 청소·방역 2개 면허를 모두 갖춘 대규모 사업자의 참여는 기능하나, 2개 면허 중 1개만 갖춘 소규모 업체 참여 곤란 → (조달청) 청소용역에서 방역소독용역을 분리하고, '방역소독용역'에 관한 정의 규정을 추가 * 적격심사 개정 시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임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고 있고, 개정 시 행자부와 각 시·도에 공문을 통보하에 따라 청소용역과 방역('16. 7)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조 개정			

→ (지자체) 청소용역과 방역소독용역의 분리발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가자격과 동일하게 적용하 을 갖춘 조합원만이 물품	
15	협동조합의 공공조달 참여자격 차별 해소	행자부 (회계제도 과) 기재부 (계약제도 과) 중기청 (공공구매) * 조합원 1 이상인 기업은 1 이상인 기업으로 인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기청장에 의한 참여자격* 확인을 통해 중 기간 경쟁제품 입찰참여 가능 →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중기간 경쟁제품의 경우 “중소기업협동 조합”의 입찰참가자격과 동일하게 규정 → 일반기업은 국가계약법 및 지계법 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입찰참가자격과 동일하게 규정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인 허용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면 인허가 없이도 조합명의 동 예외조항을 협동조합법 것은 조합 내부의 임의적
16	속초시 종합경기장 탄성포장재 구매입찰 ks인증 업체 참여 허용	속초시 (회계과) 대한육상경기연맹(KAAF) 규칙 상 탄성포장재는 국제육상경기연맹 승인제품과 KS인증 제품이어야 함 - 다만, 종합국제대회(IAAF 주최대회 포함)의 경우 IAAF 승인제품 에 한정 - 속초시의 경우 IAAF 승인 제품과 KS인증 제품을 모두 취득한 업체일 것을 요구 →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대상 및 중기협 실적 기준 모두 IAAF 공 인품 및 KAAF 공인품을 “IAAF 공인품”으로 변경	대한육상경기연맹(KAAF) 규칙 상 탄성포장재는 국제육상경기연맹 승인제품과 KS인증 제품이어야 함 - 다만, 종합국제대회(IAAF 주최대회 포함)의 경우 IAAF 승인제품 에 한정 - 속초시의 경우 IAAF 승인 제품과 KS인증 제품을 모두 취득한 업체일 것을 요구 →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대상 및 중기협 실적 기준 모두 IAAF 공 인품 및 KAAF 공인품을 “IAAF 공인품”으로 변경	개정된 “육상 경기장과 용 중소기업 음부조각 검토 의 개별기업
17	알루미늄 창호 KS인증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	한국토지 주택공사 (조달계약 단) 알루미늄 창호는 중기간 경쟁제품이자 MAS 계약 물품으로 직접생 산 확인업체가 공공조달참여 가능 - LH공사는 MAS 입찰공고 상 필수사항이 아닌 KS인증을 요구하	알루미늄 창호는 중기간 경쟁제품이자 MAS 계약 물품으로 직접생 산 확인업체가 공공조달참여 가능 - LH공사는 MAS 입찰공고 상 필수사항이 아닌 KS인증을 요구하	경쟁입찰시 KS인증제품을 및 산업표준화법 및 건축 우선구매토록 되어 있으며 구되는 경우 KS인증제품의
		* 속초시 체육시설탄성포장재 구매 입찰관련 지침 마련		

→ KS인증 제품을 가공한 알루미늄 창호제품이면 KS인증 미보유
라 하더라도 공공조달 참여토록 입찰 참가자격 완화

– 209 –

특정상표에 의한 입찰제한 금지			(회계제도 과)	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례가 빈번 - 대구 달성군 및 마포구 등 규격에 특정상표를 표시	협조 공문 기 시행 ('15.3.20)
22	학교급식납품 김치 지하수 사용 허용	달성군 외	→ 지자체 소나무 재선충 및 가로수 병해충 약품 등의 입찰공고 및 규격서 등에 특정 상표 표시 금지	김치의 학교급식 납품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를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토록 규정 - '16.6.월 일부 학교의 구매 공고에서 특수조건으로 “상수도 사용 업체만 응찰가능”토록 규정 - 지하수 사용업체의 입찰을 막는 과도한 제한	지금까지는 배추 및 부원로고 있어, 지하수 사용 업체 학교에서 김치를 구매하는 는 지하수 살균 소독장치 하는 업체를 이용하도록 군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사용 할 수 있음
23	지자체 공사용역 회생절차개시기 업의 참여제한 개선	교육부	→ 학교급식 김치구매 공고 시 살균 소독된 지하수 사용업체도 참여가능토록 공고에 반영	지자체는 시설공사에 입찰한 기업이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인정 - 조달청은 부도업체에 대해서도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공사수행능력 결격사유에서 제외토록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14.1.) → 국가계약에 비해 지자체의 경우 불합리한 차별로,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수행능력 결격사유에서 제외토록 개선	국가 - 지방간 차이 검토
24	부당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추진 재검토	행자부 (회계제도 과)	공동대표 2인중 1인이 부정한 사유로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는 것은 불합리 - 부정당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 필요	개별민원으로 조정 제외	
25	1억원 미만 에너지진단용역 입찰 시 중기업	중기청 (공공구매 과)	2,000toe이상의 에너지 다소비사업자는 산업부에서 지정한 전문기술능력을 갖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규정	「판로지원법」 능·기술·품질 있으며, 에너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 1억 원 미만의 에너지지단 용역사업의 경우에도, 공공입찰 시 소기업·소상공인만 입찰을 허용하여 중기업은 입찰참여 불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1억 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만 입찰 가능 (제한경쟁) * 고난이도 기술 등 전문성이 중시될 경우 소기업 제한경쟁입찰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4조제2항, 시행령 제2조의2 단,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업의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기청고시) 제5조 → 1억 원 미만의 에너지지단용역사업의 경우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외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청 고시 개정 - 학교급식 조달시장에서 식재료 구매는 대부분 1억 원 미만으로 중기업은 참여 불가하여 판로가 크게 제약됨 - 최근 도입한 1억 원 미만 물품·용역입찰 시 소기업간 제한경쟁 입찰의 규제강화로 일정 규모이상 중기업 판로에 심각한 타격 중기청 (공공구매과) → 1억 원 미만의 학교급식의 경우에도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토록 개선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 개정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 개정		
26	1억원 미만 학교급식 입찰 시 중기업 참여 허용 (80번과제와 유사)	참여 허용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다만, 대외 중기업의 판로를 지니고 있다고 보임. 공청회 등을 통하여 금액 상한 조정 추진 - 대상품목 검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1억 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만 입찰 가능 (제한경쟁)

- 한국인정기구(KOLAS)가 승인한 유량계 교정기관이 많지 않아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 시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

27 1억원 미만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중기업
참여 허용

28 발전소 연료물질
해외수입 시
해상운송 용역
입찰 참여가능
대상 확대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의 안전
자 등 운송사업 이행능력*
하기는 곤란

특히, 발전연료 수송은 화
항에서 하역항까지 수송안
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하나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

29	레오미터, 국산 대체장비 과도한 스펙요구 관행 개선

29 대체상비 과도한
스펙요구 관행
개선

30 직접 제 조 업체

농어촌공사, 한전 및 발전소 입찰에는 직접 제조업체만 입찰 참여

레오미터에 대해서는 국내
달요청 시 내자전환토록 수

- 212 -

외 대리점의
조달 참여 확대

기회 부여, 조달청 등록된 대리점 업체는 참여불가

→ 조달청에 등록된 특약 대리점도 농어촌공사, 한전 및 발전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기준절차 합리화	
			2-1. 실적기준 현실화 등	
			기재부 예규상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소규모(2.1억) 사업평가 시 원칙적으로 수행실적 평가 생략(14.1.), 조달청도 평가 삭제(13.11.)	
31	소규모 사업 제안서 평가 시 수행실적 평가 생략	행자부 (회계제도 과)	- 반면, 행자부 예규에는 수행실적 평가 포함 → 협상에 의한 지방계약에서도 소규모(2.1억) 사업의 경우 수행실 적 평가 생략 필요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인 소 규모사업에 대한 실적평가를 가항목에서 제외토록 함 ※ (예외) 원활한 사업이행 을 위한 실적평가를 평가
32	단체급식 입찰제안서 평가 시 실적기준 완화	행자부 (회계관리 과)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수요기관이 참여업체에 대한 수행실적, 경영 상태, 인인도 등 “정량적평가”가 중소기업 창업기업에 불리하게 작 용 - 지자체 “물품구매 적격심사” 실적기준은 세부적으로 규정된 반 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세부기준 부재로 기관별 자의적 설정 → 국가계약(기재부 조달청)과 같이 고시금액(2.1억) 미만인 소규모 사업 입찰 시 수행실적 평가 폐지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인 소 규모사업에 대한 실적평가를 가항목에서 제외토록 함 ※ (예외) 원활한 사업이행 을 위한 실적평가를 평가
33	가스히트펌프 구매 입찰 시 유사실적 인정	조달청 (쇼핑몰과) 강원도, 경기도	기재부, 조달청은 사업금액 대비 과도한 실적기준을 요구하 는 관행을 탈피코자 “수행실적 평가기준”, “소액사업(2.1억 원 미만) 실적평가 금지조항” 신설(13.2.) 기재부도 추정가격 고시금액(2.5억)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실적 평가항목 제외조항 신설(14.1.) 지자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은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20점)과 유사물품(10점)”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 - 가스히트펌프 구매 입찰의 경우 “동등이상 물품” 실적만 인정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예규) 개정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규정이며 조달청에서는 기준을 적용하여 집행

여 조달진입 제한

가스히트펌프(GHP)와 전기
시행령」 [별표 1] 기계설
고 있는 바와 같이 유사한
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판

			(회계과) → 지자체 입찰 시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유사물품 실적도 인정(중소기업 참여 확대) * 조달청은 10억 미만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평가 생략 * 가스히트펌프 입찰 시 건설기술용역사업 발주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자 선정 평가기준 : 참여기술자(60), 유사용역수행실적(10), 신용도(1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교체만도(5)	* GHP와 EHP를 "시스템 에어컨(GHP, EHP)"으로 묶어 함께 규정하고 있음. 다만, '15년 7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품목 등록한 펌프 및 전기히트펌프 물품이 다수공급자에게 물품으로 등록됨에 따라 현재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는 모두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입찰 공고 등을 통한 직접 구매는 해당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문성 확보를 위해 현행대로 성, 규모, 여건 등을 감안(이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34	건설사업관리용역 유사업역수행실적 평가 개선	국토부 (기술기준 과) 해수부 (항만기술 과) 예산군 (재무과) → (국토부,해수부) 해당직무분야 용규정 삭제	→ (국토부,해수부) 해당직무분야 용규정 삭제 → (국토부) 유사업역수행실적 함하여 인정	유사업역의 수행실적은 해당 용역의 60% 적 * 관계자 회의개최('16.7월)→입안→행정예고→기술자문위원회 심의→규제·법제심사→훈령발령('16.12월) (조정내용) 용역업체의 지하고, 유사용역이외실정 삭제는 불가 인정범위에 민간부문용역실적도 포 다만, 유사업역수행실적 정하도록 지침 개정 현재 예산군 신청사건립공 여 공사 추진에 있으며, 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마련 * 유사용역이면서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아닌 설계용역실적과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70%를 인정하고 유사용역이외 실적은 60% 인정되도록 각각 규정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수부 훈령)		

공공기관 실적만 인정하
는 금지하도록 기규정
관계부처합동 환경부 주
시달(12.12.26)
다만 시·도에 위임하
활폐기물 관련 적격심사
대토록 공문 시행계획(12.26)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적격
격심사 세부기준 폐기물처
를 반영한 것임

- 민수실적(사업장폐기물)
추진할 사항이며,

- 이행실적기간을 3년에서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

- 단, 특정한 기술 영역이 필요한 경우 예외(사유공표)
- 천안문화재단은 무대장치(음향반사판)이 중기간 경쟁제품임에도 미적용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적용

현재는 2.1억 원 미만 물품
하고 있음

			→ 음향반사판 등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시 중기간 경쟁입찰로 진행	* 천안문화재단 공고 제2014-7호(2014. 03. 18)	
			경상남도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구역(이하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적격심사 시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① (이행실적 심사기준) 최근 실적이 높은 기업에 유리하며, 통상 5년의 이행실적 인정기간보다 짧은 3년에 한해 인정, 평가등급은 3등급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게 유리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에 비해 배점차가 커 소기업에 불리, 사업금액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 하면서 최대-최소점수 차는 동일하게 하여 소기업에 불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하여 확대 추진
3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구역 적격심사기준 합리화	경상남도 (회계과)	→ ① (이행실적 심사기준) 인정기준은 공공실적 외 민간실적·유사실적 인정하고, 인정기간은 최근 3년→5년으로 조달청 기준과 일치화, 평가등급은 조달청과 같이 현행 3등급→4등급으로 구분하면서 일정한 이행실적비율에 따라 등급 구간 설정		이행실적인정범위(3년→5년)로 대·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 및 계약규모 확대
			→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 평가구간은 조달청과 같이 만점기준을 AAA→ A- 이상으로 조정, 배점격차는 조달청 기준을 참고하여 만점과 BB- 평점 간, 만점과 CCC+ 이하 평점 간 배점격차 축소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으로 소·중·대기업 초기 기업 배려
			* 국가계약기준(조달청)은 사업금액별 배점은 10천만 원 이하 1등급, 10천만 원 초과 2등급, 100천만 원 초과 3등급, 1000만 원 초과 4등급, 1000만 원 초과 5등급으로 설정하고, 최대-최소 점수 차는 3점으로 한정하여 소기업 배려		
39	지역제한경쟁입찰 소재지 제한기준 일치화	기재부 (계약제도과)	지방계약법령은 국가계약법령과 준 자가 10인 미만 시에는 인접계법 규정 없음	유사하나, 해당 시·도에 자격을 갖는 시·도의 관할 구역 포함 가능 (국·시·도별 배점을 차등화 하는 경우, 최대-최소 점수 차를 하향 조정)	지방계약법령처럼 충분한 경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

→ 국제법도 지계법과 같이 인접 시 도까지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
상지역 확대토록 근거규정 마련필요

40	보존처리 구역 특정제품 사용요구 관행 개선	국군재정 관리단 (해상항공 물자계약 과)	페인트는 중기간 경쟁제한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제품으 로 원칙적으로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17년 상반기 국가계약법령 개정 - 특정제품 사용요구 지침으로 인해 타 중소기업 제품판로에 악영 향 발생 → 보존처리 구역에 있어 소요자재에 대한 단일제품 사용지침 관 행 개선 방위사업청은 수요군 급식부대에 필요한 김치 조달계약 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재질의 상자를 사용하여 납품토록 요구하고 있 으며, 폴리에틸렌 상자는 수요군 급식부대가 1:1 교환방식으로 납 품 업체에 반납하도록 규정 * 천안함 장기 보존처리방안 정립 연구용역('14. 6. 3), 항후 동일 상자 재사용을 통해 중 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페인트 사양 하지 않거나 파손·분실하는 등으로 인해 김치 납품업체에 손실 이 발생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분리 발주 예정	본 보존처리 구역은 천안함 하여 '14년 연구용역을 통 선제 장기 보존에 적합한 따라 해당도료를 지정하여
41	군납 김치 운반상자(HDPE) 반납 이행 현실화	방사청 (급식유류 계약팀)	- 김치 조달계약 원가에는 폴리에틸렌 상자 가격이 미반영 되어 상자 구매비용(개당 평균 3,000원 이상)은 납품 업체에서 전적으 로 부담 → 비용부담이 큰 단일운반수단(HDPE)으로 한정하여 납품토록 하 는 포지티브 재질 규제방식 개선 (운반에 부적절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김치운반수단을 업체의 자율에 맡기도록 고밀도 폴레 에틸렌 재질 규정 삭제)	폴리스틱 상자는 식품위생 높아 업체민원이 발생하는 규격과 비교 분석 후 추진
42	폐활성탄 직접생산 공장등록증 요구기준 폐지	중기청 (공공구매 과)	활성탄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MAS 물품으로 업체가 조달에 참여하기 위해 공장등록증, 직접생산 확인 및 폐기물재활용허가증 필요 * '16년 하반기(12월) 예정	활성탄 제조업의 경우 표 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대상으로 판단되며, 실제 산화인증명서를 발급받음

* 방위사업청 구매요구서 김치류 개정

- 폐기물재활용시설(제조시설)에서 활성탄을 제조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는 “공장”이 아니라 “자원순환관련시설”로 공장등록증 발급
 불가

향후 관련 부처 확인을 통
후 확인기준 개정 반영 검.

			→ 폐기물재활용시설에서 폐활성탄을 활용하여 활성탄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 없이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제출로 공장등록을 갈음토록 요구 (조정내용) 자생아스콘 생기준 마련		
43	석재 직접생산 확인기준 관련 부담경감	중기청 (공공구매 과)	자연석판석의 직접생산*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해야 함 자연석판석의 직접생산 확인 생산시설 기준 ①절삭기(3대 이상 필수), ②재단기(필수, 굴림판석과 부정형 디딤판석 제외), ③연마기(부수), ④버너기(부수) ※단 굴림판석의 경우 ①절삭기(3대 이상 필수) ②판석굴림기(필수) - 수억 원의 고가장비가 필요함에도 생산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불가(단, 건물·토지 및 생산시설을 포함한 공장 전체를 임차한 경우에는 인정함) - 기계·설비 등 시설대여가 점차 활발히 이용되고 있고, 일부 중 기간 경쟁제품(플라스틱계 맨홀, 공장레미콘)은 생산시설의 임차 보유가 인정됨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 → 석제품 전반의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기준 완화 → 생산시설에 대한 임차보유 인정기준 완화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장비의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 임차보유 인정) * 의견수렴('16.7.), 공청회개최('16.8.)	고가 생산설비의 임차 보유 인정 등 생산시설 가 나치게 기준을 완화 시 확 등 직접생산 위반 사례가 향후 확인기준 개정 시 인 건 수렴과 타당성 검토 등 정할 계획 (조정내용) 고가 생산설비 생산시설 기준은 업계 토 등을 거쳐 기준 완화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배전반의 직접생산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해야 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또는 수의 계약으로 제품조달계약체결 시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확인을 의무화*

영세 소기업의 공공조달사나, 지나치게 기준을 완화한 납품 등 직접생산 위반

향후 확인기준 개정시 안전수렴과 타당성 검토 등을 할 계획

44	배전반 직접생산 확인기준 합리화	중기청 (공공구매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촉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0조) 직접생산 확인에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다수 요건 요구하며, 특히 생산공장은 복수제품은 264.46㎡ 이상이고 생산인력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생산직 5인 이상이어야 함	기준 설정 불합리(제조시설 면적을 264.46㎡ 이상으로 정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향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생산 확인기준 완화 개
45	동일제품의 생산공장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	중기청 (공공구매과) - 다수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나누어 직접생산확인을 받지 못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기준 동일제품의 공정상 생산공장을 복수로 하는 경우 생산시설 보유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직접생산 확인 인정	생산시설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생산공장의 설비에 한 하여 인정 * 의견수렴('16.7), 공청회개최('16.8.) * (조정내용) 면적 기준 합리화 * (조정내용) 면적 기준 합리화	향후 자사의 복수 공장에서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및 업계 생산 여건 등을 고 향후 자사의 복수 공장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특성 및 업계 생산 여
46	매트리스 커버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	매트리스커버의 직접생산을 확인받기 위해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함 생산시설은 ① 재단대(폭 2M, 길이 3M 이상) 1대, ② 전기 재단기 1대, ③ 사절미싱 1대, ④ 쌍침미싱 1대, ⑤ 체인미싱 1대, ⑥ 징검기(고인찌) 1대, ⑦ 오바로크미싱 1대를 요구 * 컴퓨터누빔기의 소음으로 부득이하게 제2공장을 두고 생산공정을 나누어 진행하였으나, 직접생산을 확인받지 못함	매트리스커버 제품에 대한 미싱과 징검기 보유를 요 향후 확인기준 개정 시 공 후 해당 시설의 보유 필요 * 의견수렴('16.7), 공청회개최('16.8.) * (조정내용) 문제된 업체의 경우는 직접생산확인 인정	
			* 의견수렴('16.7), 공청회개최('16.8.)	

			-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매트리스 및 커버'로 함께 규정되어 있고, 매트리스커버만 직접생산을 확인하는 기준은 없음 - 즉, 매트리스커버만 납품하려고 해도 '매트리스 및 커버'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조정내용) 매트리스와	
			→ 매트리스커버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및 분리 마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업계의견을 청취 후 해	
			조달 업체등록 후 제조물품 등록[※]시 '공장등록' 된 사업장을 자가 또는 임차하도록 규정, 소규모 업체로는 공장등록을 위한 임대료 부담이 상당	① 현행 공장면적 500㎡ 미만 건축물관리대장상 해당 용 시설인 경우 해당 생산공장을 현장 확인하여 공장등록 ②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업계의 의견 수렴과 여부를 검토할 계획	
47	발전기 직접생산 확인기준 합리화 (공장등록 없이 조달등록가능토록 개선)	조달청, 중기청	→ ① '직접생산 시설기준'을 개정하여 공장등록 없는 소규모 사업장도 납품실적, 세금계산서 등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제조물품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 ② 발전기 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만으로도 직접생산을 인정토록 개선	① 제조물품으로 등록을 하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직접생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상 용 리생활시설"로 기재된 경우 직접생산여부 확인 가능 ② 수용곤란	
48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기간 확대	행자부 (회계제도 과) 중소기업확인서 갱신신청 시점이 경쟁입찰 시기와 근접해 있는 경우 재발급 지연으로 입찰참여 곤란한 경우 발생 기자부 (계약제도) * 발전기용배와 엔진을 조립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현 직접생산 시설기준에서 요구하는 생산시설이 필요없음	* 의견수렴(7월), 공청회(8월) → 입찰마감일 전에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하고,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동 확인서 제출 시 입찰자격 인정	입찰마감일 전에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시 입찰자격 인정 현행 계약예규는 입찰참가 서류 접수마감일로 규정 따라서, 동 마감일 기준으로	

조달청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정
기재부 및 행자부 예규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까지 제출토록 규정

서가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가능

			입찰공고 시 실적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납품실적 증명서를 공고기간 동안 사전에 제출토록 규정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납품실적 증명서를 공고기간 동안 사전에 제출토록 규정 * 조달청의 경우에도 개찰일 이후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도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	
49	실적제한 경쟁입찰 시 납품실적증명서 제출기한 연장	조달청	한편,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상 납품실적증명서 등 적격심사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후 제출 - 납품실적증명서 등을 입찰참가 시 사전 제출토록 함은 입찰참가 * 조달청(제조)입찰요시 제14조(제1항)에 상당한 불편 초래 → 적격대상자 통보 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납품실적증명서 제출토록 개선	실적증명서 제출은 참가자 적격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마감일로 운영 필요
50	개인 신설업체 적격심사 재무평가 방법 개선	행자부 (회계제도 과) 조달청 (건설용역 과)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제정) 제2조 발주기관은 개인 신설업체에 재무평가 증빙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등”을 요구함 - 그러나 개인신설업체는 소득세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세무사 서류 제출이 사실상 불가 → (행자부) 조달청과 같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 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로 재무평가 증빙. 다만, 개인 신설업체의 경우 추정가격 2억 미만 기술용역 입찰 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로 재무평가 징빙 인정 * 조달청 내부지침 마련 및 입찰공고 시 반영 (조달청) 개인 신설업체의 경우, 추정가격 2억 미만 기술용역 입찰 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로 재무평가 증빙 인정	기술용역(설계)의 적격 심사 시 입찰자의 자산 등금에 대한 안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함 다만, 신설업체의 경우 입찰은 설립일이나 등기 보고서, 2억 원 미만은 재무제표나 관할세무서 (소득세 신고기간 미도래) 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 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를 확인 검토하여 개선

					기술용역의 적격심사 재정상태 안정성 등을 기결산서를 제출하여야
					예외적으로 기준비율이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인지 여부는 신뢰성 확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음
					(조정내용, 다 안검토) 소 여하거나, 신용평가등
					시공실적신고 누락분 실적 기간은 과거 1년치로 한정
					전기공사실적에 대한 예비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누락신고분 재 신고 제가 없어 신고기한 경과 시 실적신고 수리 불가	
				- 최소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시공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건 설 누락 신고분 인정기간을 과거 1년치로 함은 지나치게 단기임 - 건설공사 외 소방시설 전기 정보통신공사는 누락 신고분을 인 정하지 않음	
				→ (국토부) 누락신고분 인정기간을 과거 3년치로 연장 → (미래부, 산업부, 안전처) 국토부와 같이 누락신고분 재 신고제 마련	현행 제도상 6월말까지 보 가능하고, 새롭게 예비공사 적 신고절차 실효성 미흡 '17년도 시공능력평가부터 3년으로 적용할 계획 사공능력평가 신청 이후 실 를 제공하고 있음 (예비공사
51	시공실적 신고 누락분 재신고 또는 인정기간 확대	미래부 산업부의			누락신고에 대한 재신고 가 당연자발성 가능성이 있어 계 될
				* 전기공사 실적 검증 및 공시 절차 : (신고접수) 매년 (실적보완) 5월말→(실적열람)6월→(예비공시) 7월초→ (공시) 7 월말	

52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합리화	중기청 (공공구매 판로과)	공공조달시 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5천만 원 이하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해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운영 - 요청건수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선착순에 의한 추천방식의 공정 성에 대해 불만제기	선착순	3배수 후	랜덤방식
53	비축물자 구매관련 이용불편 해소	조달청	→ 공정한 추천신청이 되도록 공공기관의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사전공고제” 실시 또는 선착순에서 추천제(랜덤)으로 변경 비축물자 판매가 산출방식 비공개로 구매계획 예측 곤란, 구매물자 의 국가별 품질이 상이하여 생산 시 곤란함, 또한 대금 지급방식도 현금 및 보증서로 되어 있어 자금부담 상당 → 외상구매 한도와 담보제공 지원 방안 검토 → 비축물자 판매금액 산출내용 인터넷 공개 → 비축물자 판매분 원산지국가 표시	① 외상결제 시 담보제공 보증보험증권, 예금증서 등 - 단, 비축물자는 국가가 상결제 시 담보가 반드시 인정하기 곤란함 ② 판매가격과 산출방법은 ③ 구리는 원산지를 공표하 늄, 아연, 납, 니켈, 주석)은 없고 이용업체의 요구도 없		
54	조달등록변경시 서류 간소화 및 민원실 업무행태 개선	조달청	기존 조달등록업체의 면허 신청을 위해 조달청 민원실을 방문 시 사소한 오타 등으로 3회에 걸쳐 재방문, 구청에서는 전산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인데 조달청의 과도한 행태라 평가 → 조달청 민원실의 고압적인 업무행태 개선	등록업무담당자에게 철저한		
55	조달등록 제도 간소화	조달청	영세 소상공인은 조달제도의 이해가 적어 조달 등록하는 것도 힘 든 상황 → 조달등록 등을 위한 컨설팅 및 상담창구 마련 필요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이 가

			나라장터 홈페이지 사용방법이 어려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마감일이 주말인 경우 문의할 곳도 마땅치가 않음		24시간 근무에 투입할 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조달물족도 저하를 초래할 우려	
56	나라장터 이용 불편절차 개선	조달청	→ 사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동영상 및 안내파일 마련, 상담전화 24시간 운영 및 마감에 있는 주말에도 입찰 담당자와 상담창구 마련, 공고를 찾기 쉽도록 마감 전까지 배너로 남아있도록 조치		온라인 메뉴얼 제공 등	
57	조달관련 제출자료 파일형식 다양화	조달청	10억 미만의 IT용역 조달은 전자평가가 많아져서 심사를 위해 PDF와 동영상 시연이 들어있는 PPTX 파일로 제안서와 요약서를 제출하려 했는데, PPT파일로만 첨부가 가능하여 준비한 자료로는 제출이 불가함 → 조달청에 제안서를 제출 시 PPTX도 첨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심사위원들도 최신 버전 리더기를 사용하도록 개선		제안서 유출방지를 위한 OS 버전만 지원하여 발 최근 64bits OS를 지원하는 PPTX도 사용이 가능(완료)	
58	입찰공고시 기초금액 및 낙찰하한율 기재	조달청	전문 지식도 없이 무조건 과거와 요율을 핑계 삼아 수요기관에서 보내온 기초금액의 90% 또는 기타 금액을 설정하여 적정단가 보장이 어려움 → 수요기관에서 여러 업체 및 설계 사무소를 통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받아 조달청에 “기초금액”을 의뢰함이 가장 적절하며, 공고문에 기본적으로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율을 명시			
59	MAS 등록 간소화 등 절차 개선	조달청	MAS등록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적격성 평가서류 협회제출→검토 및 수정보완→조달청 전산실 재요청→수정보완→적격성평가 자료 재송부→협회검토 등 통상 1달 이상 소요) → 모든 자료를 협회에 제출토록 하여 서류제출 기관을 일원화하고, 관련 검토시간을 단축			
60	2단계입찰시 1차탈락 합리화	조달청	2단계 입찰(규격, 가격 분리)시 평가배점(객관 30, 주관 70)이 80점 미만이면 1차 부적격으로 탈락하는데, 평가위원단의 주관적 평가로 인해 1차에서 불합리하게 탈락하는 업체가 다수 발생 → 업체명을 무기명으로 제출, 주관적·객관적 점수의 배점 조정, 입찰 후 업체서류적격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서류판단 외 제 안설명회 실시			

61	나라장터 납품실적 인정요건 합리화		조달청 나라장터 제조등록 시 물품분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납품 실적에 유사한 명칭의 물품은 제외되며(핸드백 납품실적에서 가방, 손가방, 소형 케이스는 제외), 조달청의 G2B물품분류번호에 유효기간종료일자 외에 투찰제한일자는 표시되지 않아 사용자가 투찰제한에 걸리는 문제 발생, 조달청은 070번호만 사용하여 스팸으로 자동 수신차단 되는 경우가 많음 → 물품분류의 통폐합 간략화, 유사한 명칭의 물품도 납품실적으로 인정, 투찰제한일자의 별도 표기, 070외 일반전화번호 채택 조달기업 부담경감 3-1. 적정단가 보장 중기간 경쟁제품 외 일반물품은 적격심사 기준 및 낙찰하한율에 따라 일반경쟁형식으로 낙찰자 결정 - 일반물품에 대한 적격심사 시 현행 낙찰하한율은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 등으로 업계 불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시행(16.7.15)에 따라(변경) 메뉴화면에 “등록간이 명시될 예정 조달청 전화 수신시 각 지갑, 핸드백, 가방은 7 물품분류 통폐합공란
62	일반물품 입찰 적격심사 시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기재부 (계약제도 과)	조달청 (구매총괄 과)	2.1억 미만 일반물품 낙찰	
63	중기간경쟁제품(물품제조·구매) 2단계 경쟁 시에도 중기간 경쟁제품 낙찰하한율(88%) 적용		→ ①안 일반물품 낙찰하한율(80.5%→85%) 상향조정 → ②안 2.1억 미만 일반물품에 한해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중기간 경쟁제품은 적정가 보장을 위해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나, 2단계 경쟁으로 진행시 최저가로 결정 * 고시금액(2.1억) 이상 물품 구매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낙찰자 선정(국경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계약이행능력심사 적용대상인 중기간 경쟁 제42조제3항 낙찰제 적용으로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 곤란 * 하한율 : 중기간경쟁제품(88%) 최저가(2.1억 이상) 80.5%, 2.1억 미만 84.3%, 방사청(83%) *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조달청 지침) 개정	중기간 경쟁제품도 2단계 경쟁 시에도 낙찰하한율(88%) 적용	중기간 경쟁제품에서 2단계 월8일 까지 검토하여 제도
			* 국제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지계법 시행령 제18조제42조제1항제3호,		

5천만 원 이하 물품제조 구매 수의견적 시 최저가격낙찰제 및 낙찰하한율(88%)를 적용하여 업체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재무관리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			
64	5천만원 이하 인쇄물 수의계약 시 낙찰하한율 적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낙찰하한율 미적용 → 소액수의계약시 낙찰하한율(88%) 적용토록 시정		2천만 원 초과~고시금액 코자 관련규정 개정	
65	MAS 2단계경쟁 시 중기간 경쟁제품의 적정이윤 보장	조달청	* 수의계약 대상기업 : 2천만 원 이하 (모든 기업), 2천~5천만 원 이하 MAS 2단계 경쟁 시 1억 원 이상의 중기간 경쟁제품의 경우 적정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가격우위를 위해 제안가격 하한선(90%) 규정 → 중기간 경쟁제품의 경우 최초 등록가격의 최대 15% 인하 후, MAS 2단계 경쟁 제안가격은 최대 최초 등록가격의 76.5%로 낮 아질 수 있어 출혈경쟁 불가피 → 최초 등록가격을 인하하여 계약가격을 수정 등록한 경우 2단계 경쟁 제안요청 시 최초 등록가격의 85% 미만으로 가격제안 불 가	現, 최초등록가격 기준 15% 하 → 後, 최초등록가격 기 가 10% 인하) (즉, 現 최저 76.5% 보장→		
66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낙찰자 선정기준 개선	조달청 (쇼핑물과)	종합 평가방식 가격배점 조정, 다수공급자계약 참여업체의 적정이 윤 확보 → 2단계 경쟁제안서 최저가낙찰제 폐지하고, 평가 시 종합 표준 평가방식 가격배점을 최대 50점으로 하향조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시 최저가낙찰제,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 등으로 낙찰자 선정 - 각 평가방식 모두 가격비중이 높아 기업은 가격인하요구 압력 상당함, 특히 최저가 낙찰제는 제안서 평가가 무의미함	MAS 2단계경쟁에서 중기간 가방식 제외 일반물품은 대기업, 중견기 절감 및 경쟁성 확보를 위 다만, 표준평가방식 가격비 하는 방안 검토		
67	음향반사판 구매 입찰 시 낙찰하한율 적용	해남군	중기간경쟁제품의 낙찰 하한율 88%를 적용하여야 하나 84.245% 적용(법령 미준수)	물품 입찰 시 중기간 경쟁 수하도록 하겠음		
68	플로어링보드 MAS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조달청	플로어링보드는 MAS를 통하여 최저가 낙찰, 지역우선구매로 운영. 품질과 관계없이 가격으로만 평가되고 있어 창의적 기업육성 목적 이 퇴색	MAS 2단계 경쟁에서 중소 평가방식 이미 폐지("14.5.))		

→ 최저가 낙찰제도를 개선하여 기술우위 제품에 우선권 부여, 시장규모가 작은 상품은 지역우선구매 품목에서 제외

MAS 구매 시 지역업체 우

* 플로어링보다는 중간 경쟁제품으로 최저가 평가방식 적용 시

외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덤핑입찰에 따른 사회·경제적 폐해를 극복하고자 '14~'15년 시범사업을 거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16.1.1)

				* 플로어링보드는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최저가 평가방식 적용 제외 외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덤핑입찰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자 '14~'15년 시범사업을 거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16.1.1)			
69	종합심사낙찰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물량내역수정 입찰대상을 고난이도 공사 중 발주기관이 물량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 기회 부여 (물량내역수정 공사의 획일적 기준 폐지) ▶ 공사의 특성, 난이도 및 현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물량내역수정 입찰공사로 발주토록 개선 → 입찰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물량내역수정 가점운용 폐지 * 개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공사에 최저가 수준 이하 낙찰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무담에 따른 최저가 낙찰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	- 조달청 집행기준에서 물량심사 필요성의 판단 없이 대상공사를 규정함에 따라 적용대상 증가 및 낙찰율 하락으로 업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입찰공사)로 발주할 수 있는 대상	물량심사제도는 건설업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 건설업계의 입찰부담 등 이도·입찰참여자등을 은 PQ 및 실적제한공사 가점제도는 물량내역수익을 최소화하기 위한가 설계변경 등에서 유낙찰률은 시행 초기로 판단하기 어려움 → 지속적인 입찰현황 모 검토		
70	MAS 적정 재계약시 단가 보장	조달청 조달청 소품물 등록된 업체(대양광발전장치 제조 납품업체)는 4월 초 재계약 실시, 재계약시 기존 계약금액 대비 하향조정만 가능하여 부품다변화에 따른 단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함 *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기조치 ?)		

→ 매년 조달청 원가조사에 의거 가격이 책정된 경우, 기준금액 범위내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3-2. 비용감축

			조달청은 조달인증평가체계를 5단계에서 2단계로 지속 간소화	
	지자체 물품구매 입찰 시 인증평가체계 간소화	행자부 (회계제도 과)	- 지자체 입찰의 경우 여전히 5단계 인증평가체계 적용 → 지자체 인증평가체계를 조달청과 같이 2단계(고도인증, 녹색·일반인증)로 간소화 - 행자부 예규 미반영 * 지자체 입찰시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인증평가체계 간소화 개정
71				
	중기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 사 시 우대인증기준 합리화	중기청 (공공구매 과)	조달청은 고도인증과 일반 녹색인증 2단계 분류체계로 간소화하고 단계별 우수인증 1개로 평가(15.12.) - 중기청은 인증관련 심사항목을 4개*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평점을 차등적용 하여 다수인증 취득 유발	현재 중기간 경쟁제품 계약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정부 인증평가 규제 정비 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인증
72			→ 중기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우대인증기준을 조달청과 같이 간소화 조달청은 고도인증과 일반 녹색인증 2단계 분류체계로 간소화하고 단계별 우수 인증 1개만 평가 * 1. 녹색인증(에너지, 환경, 사회적 책임 등) 4. 사후관리(서비스 품질 우수 기업 인증) → 성능인증제품도 기술인증 우대항목에 포함 * 물품적격심사 기준 개정 → 우대인증기준을 조달청과 같이 합리화(2분류체계로 간소화)	기술관리능력 변별력제고를 설 추진
73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 시 우대인증기준 합리화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3의1 개정	
				* 물품적격심사 기준(방사청 예규 제3조 및 별표1 개정 (16.7. 공포, 1년 후 시행))

* 조달청 우대인증기준 및 배점기준 반영

			조달청은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초기 납품 전과 납품 후 일정조건 충족 시 조달물품에 대한 중간 검사를 의무화		
74	조달청 단체표준제품 중간검사제도 개선	조달품질 원 (납품검사 과)	전문검사기관에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한 검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납품업체가 부담 - 조달 납품 인증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한 사후 시험검사를 '누적 납품금액'과 연동하여 연간 3~4회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시간 및 비용 낭비) → 조달물품 중 단체표준인증제품의 납품 후 중간검사 수행기준 변경, 추가 검사항목 요청절차 개선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품목 - 단체표준인증 물품의 경우, 심사항목이 납품검사와 일치하는 경우, 납품업체의 검사부담 경감을 위하여 1년 이내 단체표준인증 연속 합격 후 3번째 납품 시 단체표준인증 대상 품목 해당 품목의 검사를 면제	
75	공공조달 제안서 보상제도 도입	* 국가계약법 제 34조 제 2항 제 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작성 의 비용 을 보상 하는 제 도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 공공조달 시 낙찰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총 사업예산이 20억 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에 한하여 보상제안 → 제안서 제작비 보상제도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전자매체 이용 등 대체	
76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기재부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는 공기연장이 빈번히 발생	현재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 ☞ *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 개정		

		문제 개선	- 공기연장 추가비용이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자율조항목에서 제 66조의2에 의거하여, 제1차 추계 발주기관들이 기재부와 사전협의* 부담 등 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 국토부 - 또한, 휴지기 과도설정, 차수계약을 늦게 체결하는 편법으로 비 용지급 회피 →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변경의 근 거를 명시적으로 마련 * 총사업비 관리 지침상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총사업비 조정 시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규정 →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을 위해 운영하는 부당특약, 차수계 약체결 시기 임의조정 등 각종 편법적 불공정관행 폐지 중소자재 제품업체 보호를 위해 별도 지정 공사용 자재에 대해 발 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시공사에게 공급 하도록 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운영 중 * (총사업비 조정근거 마련) 건설업자가 자재를 직접구매하여 시공하지 못함에 따라 시설물 하자 및 심각한 안전사고 빈번히 발생 * (공사계약금액 변경) 자율조항목 포함 제100조 -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 공사비 상승, 공사수행 효율성 저하 등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 ① 국가 82억, 지방 100억 이상 공사로 축소, ② 턴키공사 제외,		
77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청 등과 TF를 구성·운영중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		
					* 연구용역(~8월), 제도개선(~17.상)

- ③ 상시퇴출 시스템 도입, ④ 조합을 통한 업체선정 방식 개선,
⑤ 2진아웃제 도입, ⑥ 적기 미지급 시 사급전환 가능

78	기술개발투자비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PQ 적격심사평가 개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관한법 제6조 제12조 시행령 제6, 11조 기술개발투자비 인정을 건설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만 인정토록 건설기술개발비 관련 규정 개정('15.12월)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 선정세무처장판정통과제도가 확인한 연구·인력개발비 인정 → (개정후) 세무서에 세액공제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 세액공제 신청대상 아닌 비용은 기술개발비로 인정되지 않는 등 새로운 기준에 따른 기술개발투자비 인정 범위가 대폭 축소됨 → 기술개발투자비율이 낙찰자 결정에 결정적 평가항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술개발투자비 평가결과(6월말)를 토대로 등급 간 격차 축소 등 개선요망	입찰의 경쟁성,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투자비 등급간 배점 간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의 세부기준에 규정될 사항								
79	조달청 일반관리비율 상향 조정	조달청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가 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마련·발표하고 있으나, 원가 현실을 반영하기에 미흡 - 공사규모의 대형화, 공사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현 제경비율은 이를 반영하지 못함 <공사규모별 일반관리비율(> 일반공사 <table><thead><tr><th>공사원가</th><th>일반관리비율</th></tr></thead><tbody><tr><td>50억 원 미만</td><td>6.0</td></tr><tr><td>50억 원 ~ 300억 원 미만</td><td>5.5</td></tr><tr><td>300억 원 이상</td><td>5.0</td></tr></tbody></table>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0억 원 ~ 30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기재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을 적용 - 가장 높은 6% 일반관리비율 미만으로 상향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겠음 중 장기적으로 간접노무비 대해서도 건설현장에서 발 있도록 노력하겠음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0억 원 ~ 30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 일반관리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공사규모 분류기준을 현실에 부합하게 재조정 요망

80	가격투찰 조달 방식 최소화	* (현행 50억 원 미만 조달청)	▶ 중·장기적으로 일반관리비 뿐만 아니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제경비율이 적절 지급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필요 조달등록 업체의 난무로 입찰참가자의 질적 능력 저하 우려, 낙찰가 기준을 예비가격 번호추첨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비뽑기로 선정하는 공평체계 마련에 어려움 → 입찰 자격에 대한 정밀한 검토 방안 마련, 수요자·입찰자의 기초 가격조사를 통해 낙찰가를 선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예비가격의 투명한 선정을 호추첨식 방식을 활용중
81	종합쇼핑몰 등록시 브로커 근절 등 부당한 관행개선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을 직접 업체가 하는 경우에는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행업체를 통해야 하는데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아직도 등록대행브로커가 존재 →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브로커 근절 3-3. 취약기업 우대	
82	신용평가등급 점수 배점 합리화	조달청	40억 이상 입찰 건에 대해서는 공개된 평가위원 80명이 심사를 하는데 공개된 평가위원 Pool내에 유대관계가 있는 위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로 수주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신용평가등급점수 불합리 → 등록된 평가위원수를 수백에서 수천 명으로 확대시키고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 신용평가등급 점수 배점 합리화 (내용 및 답변 수정키로 함)	일반평가위원 풀은 약 200명인데 비해, 전문평가위원 풀은 약 100명인데 비해, 전문평가위원 풀은 약 11~13명밖에 발생하여, 이의 근절하였음. 참고로, 평가위원의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과 공무원 각각 50% 수평기부문별 평가점수와
83	지자체 물품 적격심사 시 창업초기기업의 범위 및 가점 확대	행자부 (회계제도 과)	행자부 예규상 지자체 입찰의 경우 2억 원 미만 물품에 한해 적격심사 시 2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은 가점 1점 부여 (행자부) 2억 원 미만 물품에 한해 적격심사 시 2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가점 1점 부여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조달청,중기청) 적심기준 상 창업초기기업(5년 내)기업 평가시 우대
 -10억 원 이상 5점 만점 중 기본가점 3점 부여, 10억 원
 미만 이행실적평가 생략
 -21억 미만 창업초기기업 경영상태 만점 부여, 별도 신인도 가점 없음

84	지역외무공동도 급제도의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상향조정	기재부 (계약제도 과)	- 창업초기기업 인정범위를 2년 이내로 한정함은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기간으로 부족 → ①창업초기기업의 인정범위 2년→5년으로 확대 → ②창업초기기업 우대체계를 조달청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처럼 변경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 관할지역에 영업소가 있는 업체에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실시 중 - 現, 최소지분율은 지역 중소기업업체 보호에 불충분 → 지역업체 참여지분비율 상향조정 필요 (일반사업 최소지분율 35% 또는 40%로 상향, 턴키 대안입찰의 경우 25% 또는 30% 이상으로 상향)	현행 규정 내에서 대안 마
85	MAS 2단계 경쟁 종합평가 시 소기업 등 신용평가 우대	조달청 (쇼핑몰기 획과)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 일반사업(고시금액 미만)은 30%, 기재부 장관 고시사업 40%, 고시사업 중 대안입찰 또는 턴키계약 20% 이상을 조건으로 함 MAS 2단계 종합평가 시 평점이 동점인 경우 신용평가등급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 → 신용평가항목 삭제, 품질기술력 중심으로 평가방식 개선 필요 → ①안 21억 미만 중기간 경쟁제품의 경우 창업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평가등급 만점 평가 → ②안 경영상태 항목 배점 5점→3점 이하 조정 → ③안 중 소기업 소상공인 약자지원 평점(배율 0.6)인정 → ④안 21억 미만 표준평가방식 의무화 또는 적극권장 경영상태 항목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MAS 2단계경쟁 중평시 “약자지원” 평가항목에 소기업 소상공인은 없음	2단계경쟁 평가지표별 변 등을 조정하고, 동등한 조 수 있도록 지원 예정
			* MAS 2단계경쟁 평가방법 개선(16.하반기) * 장애인·사회적기업 등 (1), 창업초기기업·고용우수기업(0.7) 등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에 따르면 2.1억 원 미만 중기간 경쟁제품인 일반용역은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경영상태 만점 부여

86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창업초기기업 경영상태 평가 우대	조달청 (구매총괄 과)	- 단, 창업초기기업(5년 이내)에 대해 물품의 경우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하나, 용역의 경우 우대 없음 - 용역과 물품을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함 → ①안 2.1억 미만 일반용역에도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경영상태 만점 부여 → ②안 2.1억 미만 중기간 경쟁제품인 일반용역의 경우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경영상태 만점 부여	용역은 창업과 폐업이 상충하여 창업기업에 가점 부여 시 있어 신인도의 변별력을 두 단, 추정가격 2.1억 미만 용역에 경영상태 배점한도 부여
87	조달청 일반물품 적격심사 시 소기업 경영상태 평가 우대	조달청 (구매총괄 과)	조달청은 2.1억 미만 물품 적격 심사 시 창업초기기업만 중기간 경쟁제품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상태” 만점 부여 → 중기간 경쟁제품 외 일반제품 적격심사 시에도 창업초기기업과 같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경영상태” 만점 부여	5년 이상의 소기업 · 소상공인 성장 유도 등이 필요하므로, 평균 수준의 소기업 받지 않도록 신인도 가산점
88	방사청 물품 구매입찰 경영상태 평가체계 합리화	방사청 (회계제도 과)	물품구매 입찰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 * '17년부터 1.5점으로 확대 적용되어 경영상태 B- (총 8등급)에서 B (총 5등급)로 축소 - 경영상태 평가 시 만점기준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간격이 커 중소기업에 불리	또한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으로 참가자격이 제한되어 소기업 · 소상공인 경영상태 만점 적용되므로 적격심사 반영 곤 ① (수용불가) 중소기업 경영상태 평가 - 적격심사 기준의 경영상태는 심사항목이며 범용성 부족 (재부 '14.12.) ② (수용) 기술능력 평가기 - 배점 상향조정하고 평점 높임

(방사청) 적격심사 시 'A+'이상인 경우에 한해 경영상태 만점(제조 30점, 구매 40점) 부여하여 중소기업 배려 미흡
(조달청) 'A-'이상인 경우 경영 상태에 만점(30점) 배당하여 상대적으로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중소기업 배려

			- 창업초기기업(5년 이내)에 대해 신용평가등급에 상관없이 경영상태 만점 부여제도 없음 → 평가기준 합리화 ①안 BB 등급 이상 기업에 대해 경영상태 만점 부여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A+'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만점(30점) 배당하여 상대적으로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중소기업 배려)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A+'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만점(30점) 배당하여 상대적으로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중소기업 배려 →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경영상태평가 만점 부여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A+'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만점(30점) 배당하여 상대적으로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중소기업 배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수의계약 한도는 2.3억에서 7.9억 원으로 확대('13.11.) 우수조달공통상표 : 5개이 상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공통상표로서 품질인증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지정제품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가능(국가 지자체 21억, 공기업등 65억) → 지자체 수의계약 한도를 행자부고시 금액(3.5억)으로 확대 필요		
89	우수조달공통상표 물품의 지자체 수의계약 금액한도 확대	행자부 (회계제도 과)	우수조달공통상표 : 5개이 상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공통상표로서 품질인증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지정제품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가능(국가 지자체 21억, 공기업등 65억)	국가와 지방계약제도 간 통	
90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가능 및 1인 견적 가능금액 확대 (2천만원→5천만원)	기재부 행자부 (회계제도 과)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하나 사회적 기업은 2천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 "사회적 기업"의 경우도 2천만 원~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 허용 → 사회적 기업의 1인 견적 가능금액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수의계약 대상금액 국가 및 지자체 23억 원	수의계약 대상을 축소하고 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사 존 수의계약 적용대상과 불려) 다만, 입찰의 경우에는 물 신인도 가산점(0.5점) 부여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목적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약자	
91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성화	기재부 (정책총괄 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기협동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 우로, 법률에 의해 재량이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곤란	
		중기청 (공공구매 과)	-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미활용하여 제도도입취지 무색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① (기재부) 매년 공공기관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실적 공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 ② (중기청) 조합추천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목표를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서에 포함·관리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 부처에서 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안을 마련하는 제도 확산의 필요성 등을
			중기간 경쟁제품 외 일반제품은 1억 원 미만 입찰 시 소기업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의무화 반면, 중기간 경쟁제품은 1억 원 미만 입찰에도 소기업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적용 없음(중소기업간 경쟁원칙)	
92	일정 금액 미만 중기간 경쟁제품 소기업간 제한경쟁 의무화	중기청 (공공구매과)	- 중기간 경쟁제품은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함 - 중기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 규모별 제한경쟁 제도*(12개 제품)가 있으나 제한적으로 운용 → ①안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해 일정한 품목 및 금액기준(일정 금액 이하)을 정하여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적용을 의무화 → ②안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규모별 제한경쟁 적용대상을 현행 '간판, 가구 등 12개 제품'에서 대폭 품목 확대 * 중기간 경쟁입찰에서 과도한 입찰경쟁으로 인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에 발생 우려 시, 해당 제품의 산업현황, 공공기관의 구매현황 및 규모별 중소기업 분포 등을 검토하여 중소기업 규모별 제한경쟁 제품 설정 가능	'15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 소상공인의 수주비율이 70.6% 수준으로 상당한 비율 차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달계약을 소기업 소상공인 기업의 판로확보가 어려워 있음 소기업 소상공인의 수주기 경쟁제품 중 소기업 우선-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93	소기업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조달청	용역 입찰 총액 1억 이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나, 실적 증명원·결과물 제출 등 실적이요건 때문에 신규업체는 입찰 참여가 제한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기청고시) 발표 개정	

적격심사기준
합리화

→ 실적증명서와 결과물 제출 등 제한 조건 없이 과업에 해당하는
시안과 기획안만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 방법을 개선

				기술개발 촉진 및 제도개선	
			4-1. 기술개발 촉진		
			신제품 개발 중소기업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사실상 불가		
94	MAS 신제품 등록제도 개선	조달청 (쇼핑몰과)	MAS계약 등록 요건 : 연간거래실적 3천만 원 이상업체 3개 이상 2천만 원 이상 업체 2개 이상이고,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어야함 - 단,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신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가능(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 → MAS 계약 추진 시 3개 이상업체 요구패지		
95	신개념 제품(웨어러블 체어)의 품명 및 물품분류번호 신설	조달청 (물품관리 과)	정부조달 참여를 위해서는 나라장터에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 물품 등록을 해야 함 - 신제품의 경우 기존 물품분류 체계 내에 포섭하기 곤란하여 새 로운 품명 신설 필요 → 신개념 제품인 웨어러블 체어의 품명 및 물품분류번호 신설	16. 6.10 제조사의 동 물품 만에 따라 조달청에서 업 업연수원내)하여 현장에서 는 세부품명 자체지시용의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자제 였음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품명과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는데 알맞은 품명이 없는 경우 새로운 품명을 만들어서 부여해야 함		
96	폐수열회수장치 나라장터 물품등록 개선 (85번과 유사)	조달청 (물품관리 과)	- 신제품, 복합제품은 종래 물품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품명으로 특성표시 불가, 새로운 품명 부여 필요 → 복합제품인 “폐수열회수장치”로 품명 및 물품분류번호 신설	16. 6. 10 제조사의 동 물 즈만에 따라 자료를 검토 특허기술 등이 여과방식에 하였음	
97	디지털헬스케어 용 스마트워치 조달 물품등록	조달청	(85, 86번과 유사) → 디지털헬스케어용 스마트워치 등 신제품이 정부조달에 참여도	기능과 용도에 따라 기존 해당품명으로 등록하는 것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 9조 및 시행 규칙 제9, 10조		

개선 (85,
86번과 유사)

록 조달 물품등록 개선

신제품 개발기업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등록 불가

98	다수공급자계약 세부품명 3인 이상 기준 요건 폐지	조달청 (쇼핑몰과)	→ 다수공급자계약 시 계약 상대방 3인 이상 규정 폐지	(조정내용) 옴부즈만에서 청에 제시하면 조달청이 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검토	
99	지자체 일반응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에 벤처기업 포함	행자부 (지자체 외 공공기관)	* 다수공급자계약은 원칙적으로 소모품, 계약 상대방이 세부품명 기준 3인 미만 시 MAS 등록 불가 →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벤처기업 모두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보아 가점부여 필요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개정	지자체 일반응역 적격심사 고 있고, 개정 시 행자부와 각 시·도에 공문을 통보하 가점을 부여토록 하겠음('16)	
100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중기청 (공공구매 과)	성능인증제품 등은 공공기관의 정부가 판로를 지원 중 - 구매담당자는 감사부담으로 인증제품구매를 꺼림 → ①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율 상향조정 (10% → 20% 이상) * 조달청은 "일반응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벤처,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도 신인도 가점 부여토록 개정('16.5.) → ② 공공기관 성능인증제품 구매 시 감사 면책	기술개발제품의 종류가 매출 달성이 의무화된 것 실질적으로도 어려운 목 감사관련 법령에서 규정 감사여부는 감사원 고 은 권한하다고 통보('15.	
101	지자체 행사기획·운영 2단계 제안서 평가방식 적용 활성화	행자부 (회계제도 과)	지방계약의 경우, 디자인사업·설계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은 2단계 제안서 평가방식을 통해 실적보다는 창의성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실적 등 정량평가 부문은 통과방식(합격·불합격)을 통해 비중을 축소하고, 창의성 위주의 평가를 위해 정성평가 비중 확대 - 행사기획 운영의 경우 디자인사업 설계와 다르게 2단계 평가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행사기획·운영도 해당 사업 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록 예규 개정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상이 구체화되지 않아 그 적용여부 불명확

→ 기술능력 위주의 평가가 필요하여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디자인사업·설계 외에 행사기획·운영도 구체적으로 명시

지방계약의 경우, 디자인사업·설계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은 2단계 제안서 평가방식을 통해 실적보다 창의성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하고 있으나, 국가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2단계 평가방식 미도입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계약법 제53조 제4항)에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실적 등)·정성평가 배점 구분 없이 평가항목(수행실적 등 8개) 표시 후 총점 80점 부여

현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발주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지방계약법령을 준용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

102 2단계 제안서 평가방식 국가계약 도입 (79번 유사)

기재부 (계약제도 과)

- 이 경우 실적 등 정량평가 비중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창의성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비중 확대 없이는 상대적으로 수행경험이 많은 기업만 반사 이익을 취득하는 불공정 발생

→ 협상에 의한 국가계약으로서 디자인사업, 설계 등 창의성·기술능력 위주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2단계 평가방식 적용

103 음향반사판 중기간 경쟁입찰에 의한 구매 입찰 이행

* 지방계약의 일반적 평가기준(지방계약법 제53조 제4항)에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실적 등)·정성평가 배점 구분 없이 평가항목(수행실적 등 8개) 표시 후 총점 80점 부여

무대장치는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업체만 공공구매 대상에 포함하여 할인 10% 적용

- 인천시 계양구청은 “외산 반사판의 우수한 성능”을 이유로 외자구매로 발주

향후 무대장치 구입 건 발찰을 통하여 물품구입을 감

104 기동화 제조 입찰시 규격서 개선

법무부, 안전처, 경찰청

법무부 교정국, 소방 방재청, 경찰청은 기동화 내피에 사용되는 원단을 고아텍스 규격과 동일한 원단규격을 명기하여 고아텍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원단 수급의 어려움으로 입

원단의 섬유 혼용율을 개선 단, 기능성 기동화 수요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예규) 제7조 및 별표 개정

연구용역 등 개발 및 성적 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 적인 검토가 필요함.

찰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

			→ 수요업체, 교육기관, 시험기관, 제조업체와의 공청회를 통해 고 아텍스 원단 및 국내원단 복수 사용 가능하도록 규격서를 개정	현행규격 이상의 성능 등 규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	
				시설유도시설을 다양한 색 문제를 일으키고 운전자의 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격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110대, 우리나라에서도 0 치 및 관리에 대하여 국토 행하고 있음	
105	시선유도봉의 조달 규격 기준 개선	국토부	시선유도봉 조달참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 규)에서 정한 시선유도봉의 조건과 규격에 맞아야 가능, 지나치게 세세한 규정과 규격화로 신개발 제품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 → 시선유도봉의 지나친 규격화 기준 완화	지침에서 규정한 이외의 대해서는 지침의 근본 취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시선유도시설 편 - 1. 총칙 (국조실의견) 현 폴리우 봉이 지침에서 정한 인 인정토록 “도로안전 시 3824의 PE, PP 등 다른 선방안 수용여부 검토	
106	MAS 입찰자격에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요구 폐지	조달청 (쇼핑몰과)	판매업체의 경우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MAS 계약 참여 가능→다수 판매업체는 공공조달 진입 불가 → ①안 (現)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제출 → (後)제조업체의 공급 확약서 제출 → ②안 제조사가 1개 지자체만 직접납품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지 역별 독점공급확약서 제출	②안 수용	

107	납품실적이 없는 MAS 물품의 차기계약 체결 배제 규정 폐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특성상, 가구류는 구경별, 부품별 여러 품목을 MAS 계약품목으로 등록하고 있어 2년간 거래가 없는 경우 발생 * 現 MAS 입찰참가자격요건 : 제조, 제조 또는 공급, 제조업체 독점공급(의무공급물과) - 이 경우 최근 2년간 MAS계약 체결실적이 없어서 향후 계약대 상에서 제외 됨	2년간 거래실적을 3년간
108	제조업체 수가 적은 조달품목의 공동계약 발주 지양	→ 가구류의 경우 2년간 MAS 계약체결 실적 예외 공공조달 경쟁입찰 시 계약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둘 이상으로 공동계약 형태의 발주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 전선관 종류 중 제조업체가 과소한 품목은 공동발주 대상에서 제외(개별발주 진행) → 경질비닐전선관은 개발발주로, 나머지 전선관은 공동발주로 진행	공사용 직접구매 자재 중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합성수지 전선관, 합성비닐전선관을 분리하여 구매함으로써 수급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축
109	상하수도용 맨홀뚜껑 MAS계약에 권리보유 협업승인업체 참여 허용	- 상 하수도용 주철맨홀뚜껑은 시험성적서 제출로 MAS 계약참여 불가 (수도법 및 상하수도법에 따른 인증 필수) - 기술개발 권리 보유 협업승인업체는 직접생산 확인 발급은 가능 하나 공장이 없어 단체표준 취득 불가 →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권리보유 협업승인업체에 한해 자기 명위 단체표준 인증서 외 최종제품의 협업생산업체가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 제출로도 MAS 계약 참여 허용 중기청 조달청 (쇼핑몰과) * '16.07월 전선관 구매방법 기준 수립 * 공동도급 입찰 관련 지침 마련 및 입찰 공고 시 반영 * 물의 침투가 있는 수도용 자재는 별도의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수도법 제14조)	중기청의 협업생산업체
		* 주철맨홀뚜껑 다수공급자계약 입찰공고 정정공고 필요 * '15.11. (보도자료) 주철맨홀뚜껑의 경우 시험성적서로 대체가능 *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상하수도용 주철맨홀뚜껑"까지 포함 하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함(수도법)	

관급자재로 납품되는 “석재블록”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자 MAS 물품임 - MAS 계약 참여시 중소기업청의 직접생산확인 필요

110	석재블록 MAS 입찰 원석	중기청 (쇼핑몰과)	- 수입산 원석으로 석재블록을 제작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은 받 을 수 있으나 MAS 계약참여 불가	(조정내용) 중기청의 철 건으로 수용
111	전기방식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합리화	행자부	→ 원석의 원산지 구분 없이 국내산 또는 수입산 모두 허용 전기방식 업체는 통상 전기공사업 면허를 갖추고 있으며, 전기방식 자재는 중기청의 직접생산 확인 규격서는 원석을 국내산으로 한정 상수도관 전식방지공사 등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그 결과, 전문성을 가진 전기방식업체는 다수의 전기공사업체와 경쟁을 하여 현실적으로 낙찰을 받기 어려운 실정	전기방식공사는 전기설비를 공사업 면허로도 충분함 전기방식자재 등록업체로만 업체가 소수로 축소되어 규
112	전산업무 중기간 경쟁입찰 대상 금액기준 합리화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중기청 (공공구매과)	→ 전기방식공사 조달 등의 경우, 전기방식자재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권고 미래부 및 중기청 고시에 의거 중기간 경쟁제품 대상 금액기준이 불명확 → 해석상 논란으로 민원유발 판로지원법 개정('16.1.)으로 20억 원~40억 원 미만의 경우 중기간 경쟁입찰 대상으로 중소기업 참여가능 또한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미경과 시 직접생산을 불문하고 예외적으로 참여가능 이 경우, 지배-종속관계 기준에 따른 종속기업인 중소기업은 40억 원 이상 사업에만 입찰참여 가능을 의미 - 즉, 지배-종속관계 기준에 의거 종속기업이 중소기업이더라도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 초기 중견기업의 종속기업인 참여제한 중소기업도 초기 중견기업처럼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조정내용) 판로지원법 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이 간 경쟁입찰 참여허용 전산업무에 대한 중기간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따라 운영되는 사항으로 : 필요한 사항임 미래부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근거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미래부고 시) 상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은 40억 원 미만의 전산업무 공공조달 참여불가 - 단, 중견기업 해당 대기업은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미경과 시 20억~40억 원 미만의 전산업무 공공조달 참여허용 - 판로지원법 상 지배-종속 관계 기준에 의해 종속기업이 중소기업이더라도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 전 산업무의 중기간 경쟁입찰 금액기준간 비교 > <table><thead><tr><th>금액기준</th><th>20억 원 미만 기준</th><th>40억 원 미만 기준</th></tr><tr><th>사업금액 구간</th><th>20억 원 미만</th><th>20~40억 원 미만 20억 원 미만 20~40억 원 미만</th></tr></thead><tbody><tr><td>중기간 경쟁입찰 자격</td><td></td><td></td></tr><tr><td>대기업</td><td>X</td><td>X</td></tr><tr><td>초기 중견기업*</td><td>X</td><td>(직생[○]불요) X (직생[○]불요)</td></tr><tr><td>참여제한 중소기업</td><td>X</td><td>(직생[○]불요) X</td></tr><tr><td>중소기업</td><td>(직생[○]필요)</td><td>(직생[○]불요) (직생[○]필요)</td></tr></tbody></table> *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이 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중견기업 ** 참여제한 중소기업 : 판로지원법 상 지배-종속관계 기준에 따라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중소기업 <table><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행자부</td><td></td><td></td><td></td></tr></table> 조달청은 추정가격 5억 미만 시설분야 용역 입찰의 적격심사 시에는 이행실적 평가 제외. 단, 용역 성질상 수년간 이행이 필요한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체결 가능 - 장기계속총액계약 시 추정가격 5억 이상이면 이행실적평가로 창	금액기준	20억 원 미만 기준	40억 원 미만 기준	사업금액 구간	20억 원 미만	20~40억 원 미만 20억 원 미만 20~40억 원 미만	중기간 경쟁입찰 자격			대기업	X	X	초기 중견기업*	X	(직생 [○] 불요) X (직생 [○] 불요)	참여제한 중소기업	X	(직생 [○] 불요) X	중소기업	(직생 [○] 필요)	(직생 [○] 불요) (직생 [○] 필요)																	행자부				
금액기준	20억 원 미만 기준	40억 원 미만 기준																																											
사업금액 구간	20억 원 미만	20~40억 원 미만 20억 원 미만 20~40억 원 미만																																											
중기간 경쟁입찰 자격																																													
대기업	X	X																																											
초기 중견기업*	X	(직생 [○] 불요) X (직생 [○] 불요)																																											
참여제한 중소기업	X	(직생 [○] 불요) X																																											
중소기업	(직생 [○] 필요)	(직생 [○] 불요) (직생 [○] 필요)																																											
행자부																																													
113	시설분야 일반용역 장기계속계약 입찰방식 금지		자치단체 특성에 미만 시설분야 용 역 지양을 위해																																										

업 소기업 조달진입 곤란

114	홈페이지 유지보수 적격심사 방식 개선	행자부 (회계제도 과) 서울시청 (회계과)	- 5억 미만 단년도계약으로 체결 시 이행실적 평가를 하지 않으나, 행정편의를 위해 장기계속총액계약으로 체결 시 5억 원 초과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없는 창업 소기업에 불리 - 단년도 계약이 가능함에도 장기계속 계약으로 체결함은 법령 위반소지가 있음 → 시설관리 등 연차별 용역내용 범위가 동일한 경우 시설분야 용역은 단년도 계약으로 체결 → 지자체도 조달청 기준과 동일하게 5억 원 미만의 시설분야 용역은 이행실적 평가 제외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은 적격심사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활용 가능 - 적격심사는 최저가 입찰자를 1순위 후보로 결정함으로 무리한 경쟁이 남발되고 우수업체가 탈락되는 경우 발생 → (행자부) 정보통신용역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활용권고 → (서울시) 2억 미만 정보통신용역은 입찰가격 배점한도를 9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	입찰의 방식은 발주기관 결정할 사항임 현행 규정으로도 정보통신 방식 가능 지자체 등에 공문으로 권고 서울시 정보화사업은 대으로 발주 다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 소액 유지보수용역의 경우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어 하향 조정할 필요 없음
115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기간 확대	조달청	신기술을 적용한 우수제품의 신청기한을 신기술 인증 후 2년으로 너무 짧게 제한함에 따라 시제품 개발기간(형식시험) 등을 감안하면 제품의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너무 부족 → ① 신기술을 적용하여 우수 제품을 신청한 경우 인정 기간이	① (대체) 특허와는 달리, 신이 최대 3년이기 때문에, 서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 그러나, 신기술인증을 받 * '15년도 협상계약 77.1%, 적격심사 15.3%, 수의계약 7.6%

			유효하다면 특허와 같이 신청기한을 5년으로 연장 → ② 신기술에 적용된 특허와 신기술 인증은 이미 조달 우수 제 품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품명이 다르거나, 적용특허기술이 추가된 경우 1차 심사 시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개정 국가·지방계약법령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지체상금(지연배상금) 부과	우 동 특허의 등록일이 기술로 하여 우수제품 ②(수용) 세부품명이 다른 기술이더라도 1차 심사를 (7.28) 공사의 경우 지체상금률 1,
116	지체상금률(지연 배상금률)개선	조달청 행자부 기재부	- '대가지급의 지연'과 '계약 이행의 지체'가 모두 계약당사자가 의 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 시중은행의 연체이자 률* 수준으로 완화 필요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시중은행 연체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1/2 수준으로 조정하더라도 시중은행 연체 이자율에 따른 배상적 가산율 및 위약벌적 가산율(3~10% 정도) 을 포함한 수준에 해당 → (현행) 공사의 경우 지체상금률 1,000분의 1 → (개선안) 지체상 금률 1/2 조정	공사의 경우 지체상금률 1,
117	OEM 생산업체 및 신기술보유업체 의 조달등록 개선	* 시중은행 연체 이자율(조달등록 팀)	신기술보유업체가 '생산업체'가 협력하여 OEM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적접 생산한 생산업체만 조달업체 등록 가능 → '신기술 보유업체'도 조달업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	타 기관에서 OEM 생산방 사례 분석을 통해 허용판단
118	한전 감사실의 우수조달제품 구매 제한 개선	한전	한전 감사실이 내부적으로 2013년도 배전운영부서에 우수조달제품 인 제품(광고물 방지시트)의 구매금지 특별지침을 시달하여 현재까 지 유지 → 한국전력 본부 및 각 지점이 자유롭게 해당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폐지 요청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사용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에 대한 우선 구매를 하겠 다만, 현재는 광고물 부착방

			태양광 관련 물품을 조달청 쇼핑몰에 등재할 경우 태양광 발전장치, 풍력발전장치, LED안내판, 지주 등 각 부품별로 등록하고 있어서 특허를 획득한 하이브리드형 도로안내사인 제품(LED 도로 안내판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도로안내사인 시스템방식')은 조달 쇼핑몰에 등록할 수 없음(현재 특허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고 있음)		
119	멀티사인시스템의 종합쇼핑몰 등록 개선	조달청	→ 하이브리드형 멀티사인시스템도 쇼핑몰에 등재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120	송풍기의 조달청 물품등록 세분화 개선	조달청	물품입찰의 경우 카테고리가 방대*하며, 유사분야의 기업이 타 제품을 구매하여 참가하는 경우가 빈번, 물품별 카테고리의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음 → 송풍기 등과 같은 광범위한 카테고리는 세분화를 먼저 진행하고,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명확한 검열이 필요	송풍기(40101601)는 종류가 상이하나 물품분류가 단일	
121	MAS계약 상위업체 독과점 완화 기반 마련	조달청 (쇼핑몰과)	4-3. 공정조달 기반조성 MAS계약 상위 10%업체는 최근 3개년('10~'12년) 평균 56.5%('06년 78.8%→'12년 55.5%로 감소)로 높은 MAS시장점유율을 보임 - 상위업체들이 다른 중소업체와 MAS계약 시장 참여기회를 잠식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 필요 → MAS계약 상위 업체의 점유율 상한선* 지정 또는 상위 5~10% 송풍기 카테고리 내, 브레이크 등의 공급실적 수준을 연간 낙찰 상한액으로 설정) 근거 마련	수요기관 선택권을 크게 저 적합하지 않음 또한, 경쟁체제 하에서 이루어 공공시장 신뢰성 저하 한편, 별도로 필요한 품명 MAS계약 상위 업체의 점 ('15.8월) → 상위 업체 점유율이 높	
122	공공조달 시 수요기관의 제안서평가 점수 공개	기재부 (계약제도 과) 행자부 (회계제도 과)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시, 조달청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평가위원 별 평가부문별로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 발주기관 직접 제안서 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사례 빈번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한 계약체결 기준" 개정('15) - 평가부문별 공개를 조달 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비 차단, 신뢰도 제고 점수공개 ('16.12, 지자체 입찰시 낙찰	
			* 일부 기관은 입찰공고문에 심사점수 비공개 및 심사결과 이의제기 불가를 명시		

- 행자부는 평가위원별로 공개하나 조달청지침과 달리 평가부분별 점수가 공개항목으로 되지 않아 공개취지 무색

			조달청 (기술서비스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은 평가위원별, 평가부분별 점수를 공개(임의)할 수 있도록 규정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규정 부존재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경우에는 위원별 종합평가 점수를 공개(의무)하도록 함 → (기재부) 평가위원별 점수 의무공개, 평가부분별 점수 임의공개 → (행자부) 평가위원별(공개의무) 외 평가부분별 점수는 임의공개 → (조달청) 평가위원별 점수는 공개의무화(단, 평가부분별 점수현행 임의공개 유지) 국가기관은 공공조달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하는 당연기관으로 규정. 예외적으로 자체조달 허용	조달청으로 계약을 위탁하는 것은 15.10.1 입찰공고시한 후 3일 이내 나라장 평가부분별 점수를 공개하를 하는 것은 직접 공개하	
123	국가기관 조달청 당연조달 범위 확대	기재부 (계약제도와) 조달청 (구매총괄과 등) - 국가기관 자체 조달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이행 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가 이루어지는 입찰이 상당수 존재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계약을 당연조달에 포함 → 자체조달이 가능한 범위를 추정가격 30억 원→10억 원 이하 공사(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은 3억 원→1억 원 이하)로 축소	조달청 위탁범위 확대는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국가기관의 모든 구매 건을 우 기관의 구매 효율성 및 계약전문성 확보 및 투명성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정착나 계약업무 부담 증가와 적 검토가 필요		
124	수요기관 자체조달 기준 컨설팅기능 강화	* 추정가격 1억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계약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이행 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가 이루어지는 입찰이 상당수 존재 국가기관 자체 조달 가능 자체조달 기준은 기관·입찰공고별로 산재, 관리·감독이 곤란하므로, 자체조달 시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행자부 (회계제도와) → 수요기관 자체조달 기준 관리·감독 기관 지정 근거 마련	(조정내용) 현재 지방계대(안) 검토 사전모니터링 및 컨설팅기관에 대행 위탁) (조정내용) 사전모니터링		

			* 기재부 또는 행자부와 자체조달 기준 형인 시 공공조달투쟁본부의 원회의 자문(통합관리)을 통해 해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개혁 조치('14.4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령·소기업 제품 신뢰 부족, 구매 후 하자책임, 결 합·가격 관련 감사 우려로 우선구매에 소극적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의 복지부동 개척 조치('14.4월)	(조정내용, 대안마련) 조 자 교육을 통해 불합리
125	공공조달 시 사전컨설팅감사 세부기준 마련	기재부 행자부외	→ 물품 또는 용역 우선구매, 입찰참가자격 제한, 적격심사 세부기 준, 입찰공고 사전검토에 적합한 사전컨설팅감사 세부기준 마 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적격심사 세부기 준, 입찰공고 사전검토에 적합한 사전컨설팅감사 세부기준 마	(조정내용, 대안마련) 조 자 교육을 통해 불합리
126	구매감사 면책제도 법규화	기재부 (계약제도 과) 행자부 - 공공기관은 창업·소기업 제품 신뢰 부족, 구매 후 하자책임, 결 합·가격 관련 감사 우려로 우선구매에 소극적 * 행정안전부 발령 등 용역 우선구매 등 사전컨설팅감사 관련 조 요기관에 세부기준 마련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가 창업·소기업 제품 구매 이후, 해당 제품의 기술·결합·가격 관련 감사에서 면책되도록 규정 신설	21억 원 미만 물품·용역의 공공조달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 찰에 따라 계약체결	지방계약법령은 지자체가 항을 규정하고 있음 계약 등의 감사에 대한 사 항으로 면책규정 등도 감사 계약법령에서 감사 면책사 한침해 소지가 있음 계약 등의 감사에 대한 사 사항으로 면책 규정 등도	
127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 한 제도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기재부 * 행자부 중소기업 개발제 의 중과실은 제외) 가 부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사안의 나의 발주기관에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최대 2년간 우리나라 모 든 공공입찰참여 원천적 금지	경중이나 위반정도에 관계없이 하 받은 경우 최대 2년간 우리나라 모 든 공공입찰참여 원천적 금지 중소기업 개발제 의 중과실은 제외) 가 부여	제재효력범위를 해당 자치 찰 및 계약질서 문란 우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민 위로 공무원의 재량으로 관 성 확보 필요 (①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 도산위험 및 근로자 생존권 위협	
→ ①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력	범위를 당해 발주기관으로 한정
→ ②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 재량
으로 처분 결정	

(2)안 현재도 위반행위의
기관이 제재를 가중 또는

(국가공사) '09년에 500억 이상 최저가공사를 대상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300억 이상 최저가공사에 대해 적용 (지자체) '10년에 도입되어, 2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에 적용

국토부

-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해져 하자발생시 수요자에 피해초래 등

통합발주 및 분리발주 문
간 합의된 사항으로 변경

분리발주 관련규정 삭제
통해 하자책임, 공사품질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공공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도입"이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제시되어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 정부, 업계를 중심으로 이뤄졌음

→ 분리발주 예외적 허용 조항 삭제

130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과 상충되는 부당한 계약조건 등을 강 요하여 시공사에 부담을 증가하는 불공정 관행 빈발 * 국계약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 1항 제1호, 제2항 삭제- 국토부의 "공공기관불공정관행개선 TF"를 통해 4대 공기업의 불 공정관행 개선을 추진한바 있으나 여전히 불공정 관행을 하고 있음	일부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등에 따라 자율시정이 이루어 추가적으로 국무조정실 주 중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 ‘15.9월 ‘건설공사 불공정 산하 4대 공공기관의 내부 관행을 시정	불공정한 시정이 이루어 추가적인 조 불공정 내부
			→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및 불합리한 제도 조속한 개선		

*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이행실태 점검('16.10월)

5.7.2 중소기업 대상 정부조달 규제개선 제도개선과제(20개 과제)

앞서 5.7.1에서 언급한 사항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통해 언급된 20개 과제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분석했다(별첨 5 참조).

5.7.3 중소기업 공공조달 관련 애로사항 및 관련 규정 분석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관련 애로사항을 기반 한 분석결과를 처리 형태별로 조사한 결과, 자체 조달 계약현황 및 공공기관별 계약규정 비교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법령/행정규칙이 10% 수준이며 제도개선과 행태적 오류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법령/행정규칙 위반 사항과 행태적 오류가 중복으로 위반된 건수는 1개였으며, 특히, 제도개선의 경우 모든 분석 자료 원과 동일한 약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법령과 명백한 행태적 오류는 아니나 조달업체의 조달실무 과정에서 개선요구의 반영 검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표117] 참조).

[표117] 중소기업 공공조달 관련 애로사항 기반 분석결과(처리 형태별)

구분	법령/행정규칙 위반	제도개선	행태적 오류	합계
유형	2(1)*건	15**건	1건	18건
비율	9.68%	59.14%	20.43%	100%

자체조달 계약현황 및 공공기관별 계약규정 비교분석 결과와 달리 중소기업이 조달실무 현장에서 경험하는 규제적 요인은 “입찰이전”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18건 중 6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입찰단계”와 “평가 및 낙찰”단계에서 식별되는 제도적 개선요구 사항과 행태적 오류는 기술적 조정을 통한 규정 개선 등을 시도하면 되나 “입찰이전”단계에서는 입찰참가 기회 자체 확보 여부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표118] 참조).

[표118] 중소기업 공공조달 관련 애로사항 기반 분석결과(조달 단계별)

조달단계별 통합	입찰이전	입찰단계	평가 및 낙찰	계약이행	사후관리	합계
건수	6건	9건	3건	-	-	18건
비중	33.33%	50.0%	16.67%	-	-	100.00%

중소기업 율부즈만을 통해 수집된 공공조달 관련 애로 사항 중 계약규정 및 평가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조달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119] 참조).

[표119] 중소기업 공공조달 관련 애로사항 및 관련 규정 분석

구분	문제 차원	중소기업 공공조달 애로사항(내용)	관련규정	개선 시사점
입찰이전	E1.경쟁입찰 참가자격 기준, 직접생산 확인기준	직포매트의 경우 중기간경쟁품목 제외 되었으나 직생기준 존재하므로 준수해야 되나 직접제조 없이 공급하는 업체들로 기준 준수 제조업체 불이익 발생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 -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 기준 제12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 현행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 해제된 제품의 경우 일반 조달물품 대비 상대적으로 공정, 설비, 인력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 지정 해제된 경우라도 구매 품목이 아닌 제조품목일 경우 기존 다수 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요건을 충족한 상황 기준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후 신규 진입 업체도 동일 요건 설정으로 전반적인 상향평준화 유도 필요 - 개별 품목별 직접생산확인기준 설정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로 기준의 수정보완을 별도의 개정과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함.
	E2.제조와 공급 등록 기준	수요기관별로 동일 물품에 대한 제조 및 공급 혼용 등 물품제조구매입찰에서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간 구분 불명확하여 유사 제품 생산 업체가 공급으로 타 유사 제품입찰에 참가하여 원 제조업체에게 불이익 발생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3장 물품등록” 제20조 내지 제23조의2	- 동일물품에 대해 제조와 구매 모두 가능한 경우 생산업체가 아닌 공급(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유리한 조건의 입찰참가가 가능함. - 특정 품목별 제조 및 공급(구매) 중 보다 적합한 조달 방식을 채택하고 제조와 공급을 혼용하여 입찰하는 경우 제조물품의 공급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강화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제조와 공급이 모두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 및 제조 모두 제조업체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방안 검토
	E3.기술개발/	기술개발업체와 제조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	- 해당 품목의 성능, 품질 등

	제 조 업 체 의 경쟁입찰참가 자격 등록	중 기술개발업체만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가능, 제조업체도 등록 요청	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3장 물품등록” 제20조 내지 제23조의2	에 있어 기술개발이 미치는 영향력과 제조업체의 제조역량이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여 판단되어야함. - 일반적인 다수의 제조업체가 일반적 설비를 갖추고 개발된 기술 또는 기술에 기반한 특정 구성품을 조립하는 것이라면 제조업체가 해당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제조업체 등록은 불합리함. - 반대의 경우 기술 개발된 제품의 생산에 있어 특정한 업체의 제조공법 및 기술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등록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4공장임대 관련직접생산 확인기준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직생 기준상 공장등록을 위한 공장 임대비용 부담, 기준 완화 요청	- 조달청 제조물품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2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 소규모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생산확인기준 제도의 운영목적을 고려할 때 특정 업체가 다수 업체가 최소 생산 및 품질 요건으로 공장등록 요건 충족 시 해당기준은 예외 없이 모든 업체에게 적용되어야 함. - 특히 해당 품목과 관련하여 타 부처의 법령, 행정규칙, 기술기준 등에서 공장을 요구하는 경우 단순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서 제외 곤란함
	E5.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강화	역량 있는 업체 중심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강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3장 물품등록” 제20조 내지 제23조의2	- 해당 품목이 산업특성, 생산업체간 경쟁구도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직접생산확인기준 설정 필요 - 업체 간 기술수준에 따른 편차를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반영하여 경쟁을 차단하는 진입장벽 활용은 곤란함.
	E6.제조 및 공급업체 등록기준	한전, 농어촌공사 등에서 직접제조업체만 참여토록 하는 것은 문제, 공급 대리점도 참여토록 허용 필요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3장 물품등록” 제20조	- 해당 품목이 제조물품일 경우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기준의 충족은 필수적임.

				조 내지 제23조의2	- 단, 해당 품목이 제조 및 공급의 방식으로 모두 공급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전향적 검토가 가능하나 수요기관의 조달목적 상 직접제조업체만 참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찰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야 함.
입찰	일반	E7.지명경쟁 입찰 요건 적정성	공공기관의 휴양시설 입찰 시 특정 지역 명시하여 지명경쟁 시행으로 입찰참가 기회 제한	- 국가계약법 제7조 (계약의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 기준)	-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지명경쟁입찰 요건에 부합여부를 심사하고 사실상 특정지역 및 특정시설에 대한 의도는 사전규격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해소 가능함. - 현재 시행(기재부 계약예규) 및 시행예정(지방계약법)인 사전규격공개 관련 조항에 제한 및 지명경쟁 입찰에 대해서는 조달대상 및 금액 구분 없이 모두 사전규격공개 의무화 필요
		E8.특정 규격 요구	외산 장비 공급 에이전트 로비로 적정 규격 대비 10 또는 100배 이상의 과도한 규격 기준치 요구한 입찰	- 기준설정/적용 오류	- 사전규격공개 강화를 통하여 해당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증 필요함.
		E9.MAS 계약 물품의 총액 계약 구매	일부 교육청 MAS계약된 졸업앨범을 총액계약방식으로 구매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제1항 제2호 나목	- 다수공급자계약이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제조업체에게 공급기회를 보장할 수 있음. - 총액계약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1개 업체만 공급 가능함.
		E10.MAS 계약 체결 기준	동일업체 3개사 이상이어야 하나 투명카누, 투명보트 등은 3개사 미만으로 계약불가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 제17조 (계약체결)	-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은 종합쇼핑몰 등록되면 대부분의 수요기관이 구매를 하게 되고 3개 미만, 즉 2개 이하 업체만 등록할 경우 사실상 수의계약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해당 제품을 공

					급할 수 있는 업체가 1개밖에 없다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 공급 가능할 것임.
		E11.MAS 계약 체결 기준	신재생에너지 사용 도로안내사인 시스템의 MAS등록 어려움, 개별제품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있으나 시스템장비는 경쟁업체 3개사 미만으로 등록 불가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 제17조(계약체결)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 제17조(계약체결)
		E12.MAS 2단계 경쟁 및 회피 금지 기준	일부 공공기관 중 1억 원 미만 엘리베이터 자체구매 1억 원 이상만 2단계 경쟁 실시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제4조(2단계 경쟁 회피금지)	- 중기간경쟁제품인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억 원 이상 구매건만 2단계 경쟁입찰 대상임. - 동일 목적을 동일 세부품명인 엘리베이터를 30일 이내 분할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대 가 산 정	E13.사업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 기준의 적정성	수요기관에서 통보한 기초금액의 90% 수준 등 일률적 사업예산 감액 제한, 공고문에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율 등 명시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 최초 책정된 사업예산을 입찰과정에서 예정가격 산정기준 금액인 기초금액 결정 단계에서 특별한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일률 감액하는 사례 통제 필요 - 최초 “예산배정 → 사업예산 → 기초금액 → 예정가격” 결정 과정까지 증감이 될 경우 계약예규 원가계산작성기준에 따라 비목별 상세 증감 변동내역을 첨부하여 공개 검증토록 하여야 함.
		E14.대가산정 체계의 실효성 확보	예정가격산정체계가 적합성이 낮음, 복수예비가격을 통한 예정가격 결정은 제비뽑기식으로 문제 있음.	- 국가중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최초 “예산배정 → 사업예산 → 기초금액 → 예정가격” 결정 과정까지 증감이 될 경우 계약예규 원가계산작성기준에 따라 비목별 상세 증감 변동내역을 첨부하여 공개 검증토록 하여야 함.

		E15.MAS 계약단가 조정 기준	MAS 재계약 시 기존 단가 대비 하향 조정만 가능, 원가조사를 등을 통해 적정 계약금액 조정 필요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 제22조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MAS) 업무처리규정 제22조 (계약금액 조정)
평가 및 낙찰		E16.적격심사 평가기준 완화	발전소 연료물질 운송 및 운송주선 용역 입찰참가 확대를 위한 평가기준 개선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일반적으로 수행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 공공기관 일반용역 입찰에서 수행실적, 기술(장비보유 등)능력 평점기준에 따라 사실상 사전자격심사화된 평가요소가 존재할 수 있음. - 해당 항목의 평가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다수 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가항목 및 기준 개선 권고
		E17.신기술 인증의 유효성	신기술 인증 취득 후 2년 이내 우수제품 신청기한 짧음, 시제품, 상용화 기간 부족	- 조달청 우수조달 물품지정관리규정 제8조(1차 심사)	-
		E18.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신뢰성 강화	40억 원 미만 ICT용역 외부평가위원풀 80명으로 특정업체와 사전 접촉 가능성, 평가 공정성 신뢰성 강화 필요	- 조달청 기술 평가 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 “제3장(전문인력 명부의 운용)”	-

5.8 공공조달 및 계약 관련 질의회신 및 관련 규정 비교분석

자체조달 계약현황 및 공공기관별 상·하위 계약규정 비교분석 결과와 대비하여 법령/행정규칙 위반은 1/3 수준인 3.6%(2건) 수준이며, 해석적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이 50.0%(28건)을 차지하였다. 공공조달 실무 과정에서 수요기관과 조달업체들이 당면하는 계약규정 적용상의 실무적 문제점과 관련하여 빈번한 질의회신 사례이므로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열거주의 형태 등으로 규정 추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표120] 참조).

[표120] 공공조달 및 계약관련 질의회신/유권해석 사례 기반 분석결과(처리 형태별)

구분	법령/행정규칙 위반	제도개선	행태적 오류	해석적 질의	합계
유형	2건	20건	6건	28건	56건
비율	3.58%	35.71%	10.71%	50.0%	100%

공공조달 및 계약 실무 과정에서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질의된 주요 내용을 조달단계별로 구분하면 입찰단계와 계약이행 단계에서 과반이 넘는 51.8%(29건)의 규제적 요인 또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 식별되었다. 타 자료원의 분석 결과, 입찰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규제적 요인이 5건으로 전체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수집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중 ”입찰이전“ 단계에서 해소되어야 규제적 요인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표121] 참조).

[표121] 공공조달 및 계약관련 질의회신/유권해석 사례 기반 분석결과(조달 단계별)

조달단계별 통합	입찰이전	입찰단계	평가 및 낙찰	계약이행	사후관리	합계
건수	5건	14건	10건	15건	12건	56건
비중	8.93%	25.0%	17.85%	26.79%	21.43%	100.00%

아래 표는 2015년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과 관련하여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들이 빈번하게 질의 회신한 사례 중 규제적 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계약규정 및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조달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개선방안은 통합분석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며, 문제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 규정이 동일하면 개별 사례와 상관없이 동일한 해결방안 적용 가능하다([표122] 참조).

[표122] 공공조달 및 계약관련 질의회신 및 관련규정 비교분석과 개선점

구분	문제차원	질의 내용	관련법령	개선 시사점
입찰이전	F1.SW분리발주 (단순질의)	SW 분리발주 시 조달청 종합쇼핑몰 미등록 물품구매 가능여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	- SW분리발주 규정 준수 여부 확인
	F2.사전규격 공개의 실효성 (제도개선)	- 사전규격 공개 시 이의제가 있을 경우 답변 의무화 여부 및 답변 이후 본 공고 게시 가능한지 여부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한 후에 입찰공고 게시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 1억 5천만 원 이상의 물품·용역에 대한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 가능 - <u>구매규격 사전공개가 법적절차 아닌 내부 지침 수준으로 답변 이후 공고게시 의무화 아니므로 실효성 제구를 위해서는 사전규격공개 의무화, 사전규격 공개된 건에 대한 와치도그 적용으로 문제요소 식별 후 해당문제 완료된 후 본공고 게시를 규정화하는 것이 필요함.</u>
	F3.물품목록화 및 분류 (행태적 오류)	골재류에 대한 물품목록 개정을 통해 물품분류 번호의 수정 및 통합 검토 필요		- 단체표준 제정 시 물품분류체계와 실제 생산 및 공급제품과 상이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및 표준제정 어려움 있으므로 생산실태 및 공급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물품분류 노력 강화
	F4.사전 규격 공개 기준 (행태적 오류)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방법으로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고 열람하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제1항(예외사유) 1. 긴급 수요물자나 비밀물자, 수의계약대	- 물품의 추정가격 산정 시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록 하여 그들이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 필요

상 물품이나 용역
2.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물품이나 용
역

3.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이나 용역
- 지방계약법 제9조의 2

		F5.특정규격 요구 여부 판단기준 (행태적 오류)		-	
		F6.중기간경쟁제품 에 대한 업종별 분 리발주 원칙 준수 여부 (행태적 오류)	청소, 시설물경비 은 분리발주 하여야 하나 이를 통합하여 발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용역과 같은 중기간경쟁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포함된 경우 업종별 분리발주 가 원칙
입찰		F7.물품공급시 설 치도 조건인 경우 설치에 필요한 자 격 미보유시 공급 가능 여부 (제도개선)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업체가 설치도 조 건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설치에 필요 한 면허, 자격 등이 없는 경우는 제3자에게 설 치를 위탁 가능 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 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 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F8.물품구매 및 제 조 계약에서 적법 한 물품 공급방법	- 물품구매 시에는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 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물품제조 계약의 경 우는 직접 생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공급은		- 조달청-제조물품 등록-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2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 _____ _____ _____ _____

불가하며 계약당사자가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함.

	(제도개선)	- 일부 구성품이나 부속품 등 자기가 생산하지 않는 물품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 가능		
	F9.공동수급체 구성업체의 입찰보증금 납부 (단순질의)	- 대표사가 공동수급 구성업체의 부정당제재 이력 확인해야 하며 제재기간에 따라 보증금 납부비율 증가하므로 확인하여 현금지급 (각서 대체 불가함) - 공동수급 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 중 1인이 일괄 납부 가능		- _____ _____ _____
	F10.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조정 문제 (제도개선)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수급체구성원 비율 조정 할 수 없으나 당초 협정대로 계약이행 곤란한 구성원이 있을 경우 연명으로 출자(공동이행)비용 또는 분담내용(분담이행)의 변경 요청 시 가능함	공동계약체결 후 자의적으로 비율 조정 할 수 없으나 당초 협정대로 계약이행 곤란한 구성원이 있을 경우 연명으로 출자(공동이행)비용 또는 분담내용(분담이행)의 변경 요청 시 가능함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의 사유
	F11.입찰참가자격 제한 (행태적 오류)	기업의 재무상태에	다른 제한경쟁 가능 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1조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KS표시품에 대한 제한경쟁 가능 여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과 중복제한 가능 여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
	F12.제한요건 중복 적용 (법령위반)			

	F13.입찰참가자격 요건 부여 적정성 (법령위반)	발주기관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에 반영하여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하 '협약서')을 체결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제조사로부터 협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입찰공고서에 명시하는 것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F14.대표자 변경 입찰참가자격 유효성 (단순질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자가 변경(7.24) 되었으나 조달청에 변경 신고 전(7.28, 13:30)에 입찰서를 제출(7.28, 09:50)하였으므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되는지?	-
	F15.지역제한 경쟁 입찰에서 지역제한 참여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단순질의)	1. 공사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 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 원 2.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 : 21억 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 21조 제1항 제6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 CCTV설치(또는 교체)는 물품의 제조 인가요 공사인가요? - 엘리베이터(승강기)의 설치(또는 교체)는 물 품의 제조인가요? 공사인가요?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의 2(설비공사의 공동계약) 제1항
	F17.초달대상 구분 (제도개선)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

		F18.공동계약 불허 사유 (단순질의)			
			국제입찰 제외대상 품목에 대해, 해외업체가 한전의 기자재 공급유자격자로 등록될 경우, 한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 부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 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 조제3항」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 제5항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조
평가 및 낙찰		F19.국제입찰 비대 상 입찰에 외국업 체 참가 가능 여부 (단순질의)			
		F20.청소용역 경영 상태 평가방법 (단순질의)	청소용역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의 “[주]5”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고 규정

		납품실적 평가기준 입찰공고 시 연간 발주물량 44Km를 기준수량으로 하지 않고 10km를 평가 기준 수량으로 해도 되는지 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
	F21.납품실적 인정 요건 (제도개선)		
	F22.단순용역에 대한 협상계약 적용 가능 여부 (제도개선)	단순노무용역 성격이 강한 청소, 경비용역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_____ _____ _____ _____

	F23. MAS 2단계 경쟁 대상 및 회피 예방	MAS 2단계 경쟁 시 1회 납품요구액이 5천만 원(일반물품) 또는 1억 원(중소기업자간경쟁제 품) 이상이 되어야 하난 이를 회피하고자 수요 기관이 분할납품하는 것의 적정성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 제1항
	(형태적 오류)		
	F24.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특허의 인정 여부 (제도개선)	특허는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만 신인도 평가대상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음.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 입찰 “III. 신인도” 세부 평가방법
	F25. 낙찰하한율의 의미 (단순질의)	시설공사에 적격심사에서 낙찰하한율이 최저가 낙찰제와 동일한 것이 아닌지 여부	
	F26. 하도급 또는 외주가공 제조실적을 원도급자의 제조실적을 인정 가능 여부	- 300억 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적용 시설공사 평균 낙찰율 '13년 74%, '14년 75.3% 수준임. -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이란 원도급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한 것으로 하도급을 통한 타 제조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다만 일부 구성품을 하도급 및 외주가공에	-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 기준 제12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의하여 확보한 경우에는 직접생산인정 가능
하고 실적인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도개선)			
	F27.적격심사에서 차순위 입찰자 적 격심사 가능 여부 (제도개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자가 적격심사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 하여 낙찰자 선정 가능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 준」 제9조 제3항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 준」 제11조 제2항 _____
	F28.실적인정범위 (제도개선)	15km이상 설치 실적 인정기준에서 특정 업체 가 12km 직접시공, 3km 하도급 한 실적에 대 한 실적인정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F29.다수공급자계 약 2단계 경쟁 평 가기준 관련 (단순질의)	제안요청 건에서는 수요기관이 자체 사정에 따 라 단순히 가격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지역업체 또는 약자기업 지원 목적 등에 대한 평가요소 반영 가능 여부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 준 제7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제1 항 _____
				_____ _____ _____

			F30.발주기관 책임 있는 사유로 전체 공사 정지시 공동 계약일부구성원 임 의 시공시 기간연 장 가능 여부 (단순질의)	- 발주기관 책임 있는 사유일 경우 공동수급 체 일부구성원이 공사정지기간 중에 일부 임의 시공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기간연장 가능	-
				관급자재 계약 시 선금 신청 가능 여부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34조제1항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3항 및 제4항
계약 이행	일 반	F31.관급자재의 선 금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제도개선)			
		F32.지체상금 부과 기준 및 일정지연 책임 유무	공사와 분리 발주한 창호 물품구매계약에서 창 호설치를 위한 선행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 - - - -

황에 창호설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단순질의)	F33.계약파기 시 수요기관의 대응조치	- 납품기한 내 납품 거부 또는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하고 부정당제재 처분 부과 가능,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가능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2조 및 제24조
		F34.계약서와 주문서의 우선적용 납기	계약서와 주문서의 납품기한이 상이한 경우 어느 쪽을 기준으로 납기를 적용해 하는지?	
대가조정	(제도개선)	F35.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 사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F36.공사현장과 설계서의 상태가 다른 경우 (단순질의)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	
		F37.물가변동 계약 금액 조정일 기준 (단순질의)	계약체결 90일후에 입찰일 기준 등록요건 3% 동시 충족되어야 계약금액 조정신청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물 조
		F38.재시공에 따른 기시공분의 철거 비용과 재시공 관련 설계비용 분담 (단순질의)	발주기관의 설계서에 따라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변경하여 재시공할 경우 철거 및 재시공 설계비용을 공사업체에 부담 요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실 으 및 에
		F39.시설공사 설계 변경 시 세부공종 별 분류되지 않은 비목별 금액 조정 방법	총계방식으로 1식 등의 형태로 계약금액 산정된 경우 1식에 포함된 단가의 내용을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을 비교하여 확인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조정 소요 비목이 1식에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가능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7항	-

(제도개선)

		F40. 하치장상차도의 관급자재인 경우 인수장소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제도개선)	-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아닌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조정으므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을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F41. 물가변동 산정 기준 (단순질의)	-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여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F42. 턴키입찰에 이한 공사계약에서 예측하기 힘든 추가비용 부담 책임 (단순질의)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물량을 초과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3에 따라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인 업체가 부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3
		F43.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대가 조정 근거 (단순질의)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라 조정 가능함.

		F44.현장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의 주체 (단순질의)	- 현장사무소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설계내역서(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추가 비용 요청 및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검사검수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인수거부 및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체일수 산정기준은?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8호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4항
사후관리		F45.인수거부 사유 및 지체상금 부과 기준 (제도개선)		
		F46.검사검수 기간 및 완료일 기준 (제도개선)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성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검사검수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기간 이내 검사검수 요청된 경우 계약기간 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물품구매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제도는 국가계약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70조 등에서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첨부서류인 특수조건에 따라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F47. 물품구매계약 계약첨부서류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준수여부 (제도개선)	현재 계약번호를 기준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물품과 공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계약담당자가 분석하여 실적증명서 발급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F48. 실적증명서 발급 기준 (제도개선)		
	F49. 하자보수보증금 채권 확보 방법 (단순질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을 유보하고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채권 확보를 위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설정하고 하자 발생 시 이를 하자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은 협의하여 검토 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71조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서 특기사항으로서 품질보증기관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 그러나 시설공사와 달리 조달청 물품제조계약에서는 별도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F50.물품구매 품질 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관계 (제도개선)		
	F51.지체상금 부과 대상판단 (단순질의)	- 계약상대자(공급자)가 외국제작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납품함에 있어, 외국제작사의 사정(부품 부족과 주문 이 많아 제작이 지연 됨)으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 예외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지체상금률)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F52.물품의 검사검수 (단순질의)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 제1항 -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조 제3항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 14일(원칙)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①조달 계약된 관급자재 중 관급자재의 현장도착도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대금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급자재가 현장에 도착하여 자재가 설치 완료하여야 대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②기성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F53.관급자재 대금
지급일 기준
(단순질의)

*검
완
일
*검
청

			- 의무적인 중앙조달 요청 대상은 1.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2. 다수공급자계약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 조달사업법 제5조의2 제1항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
기타	F54.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조달 요청 대상 및 기준 (단순질의)		- 공사계약은 지자체 자체발주 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중앙조달요청 가능함. - 100억 이상 공사는 조달청에 원가검토 요청하여야 하나 일정 사유 있는 경우 적용 예외 가능	
기타	F55. 다수공급자계약 단가의 부가세 포함여부 (단순질의)		다수공급자 계약 시 품목별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2단계경쟁 금액 판단 기준인 1회 납품요구액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
	F56. 공사계약의 예가율과 낙찰율 (단순질의)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의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

6. 종합적 공공조달 단계별 규제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종합적 공공조달 단계별 규제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은 입찰이전, 입찰, 평가 및 낙찰, 계약이행, 사후관리 순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에 앞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지 간략히 설명을 하고 전술된 규제유발 유형과 개선방안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였다. 즉, 공공조달 단계별 개선방안은 개별 단위로 분리·제시된 것이 아니라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의 계약현황, 상·하위 규정 등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6.1 통합적 개선방안 수립 개요

2015년 자체조달 사업 분석을 통해 식별된 5대 분야 13개 규제유형에 대한 개선방안을 규제유형별로 확인하였으나 전체 조달단계를 고려할 경우 통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자체조달 사업 분석 결과와 상·하위 계약규정 비교분석을 통해 식별된 규제유형 및 요인에 대한 조달단계별 규제속성별 유사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14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표123] 참조).

조달단계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입찰이전 단계에서 공공조달 시장진입 통합지원 체계마련 등 2개 과제, 입찰단계에서 사전규격공개 실효성 강화 등 3개 과제, 평가 및 낙찰단계에서 낙찰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기준의 모듈화 기반 단일체계 마련 등 2개 과제, 계약이행 단계에서 과업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4개 과제, 사후관리 단계에서 계약결과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3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통합적 개선방안으로서의 의의를 살펴보면 평가 및 낙찰단계에서 제시된 “낙찰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기준의 모듈화 기반 단일체계 마련” 방안은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낙찰자 선정과 관련한 상이한 실적평가 대상, 인정기간, 배점비중에 대하여 기본 공통평가 모듈을 기준으로 기관별 특수성이 반영된 기관 고유평가 모듈을 추가할 수 있는 형태의 단일한 평가체계 운영이 핵심이다. 이는 자체조달 사업 및 상·하위 계약규정 분석을 통해 드러나 모든 형태의 평가항목, 평가기준 관련 문제점을 상기의 단일방안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123] 규제유형 및 요인에 대한 조달단계별 규제속성별 유사성을 고려한 개선방안

구분	A. 입찰이전	B. 입찰	C. 평가 및 낙찰	D. 계약이행	E. 사후관리
개선방안 a	A-a. 공공조달 시장진입 통합지원 체계 마련	B-a. 사전규격 공개 실효성 강화	C-a. 낙찰자 선정 관련 세부 평가기준의 모듈화 기반 단일체계 마련	D-a. 과업(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E-a. 계약결과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개선방안 b	A-b. 제조 및 공급물품 판단기준 명확화	B-b. 입찰 공고 시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공고 의무화	C-b. 실질낙찰율 개선 * 입찰단계의 예정가격 편차율 조정을 통해 해소 가능	D-b.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 운영 강화(부당한 요구에 대한 긴급구제 및 조정 기능 부여)	E-b. 통합적 계약규정 관리 시스템 구축
개선방안 c	-	B-c. 예정가격 편차율 기준조정 및 준수 의무화	-	D-c. 선금지급 의무화	E-c.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의 간주 규정화
개선방안 d	-	-	-	D-d. 부당특약 검증강화	-

6.2 통합적 개선방안과 규제유발 유형과의 연계성

구체적인 통합적 개선방안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조달단계별 문제유형 및 14가지의 통합적 개선방안의 연계성은 문제의 유형이 무엇인지, 해당 문제가 어떠한 규제유발 유형과 연관성이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개선방안이 필요한지 순으로 설명하고자 한다([표124] 참조).

[표124] 통합적 개선방안의 5대 분야 13개 규제유발 유형과 연계성

조달 단계	문제유형 (규제유발 5대 분야)	통합적 개선방안 (14개 방안)
입찰 이전	사전규격공개 의무화 및 이의제기 의견에 대한 처리방법 및 본 입찰공고와 연계성 (입찰참가기회 확대 저해 분야)	사전규격공개 실효성 강화(B-b)
	배정예산 vs. 예정가격 편차율이 -2%, -3% 초과하는 입찰 발생 (적정대가 보장 저해 분야)	예정가격 편차율 기준 조정 및 준수 의무화 (B-c)
	최소 공고기간 5일 이전 미준수 입찰공고 시행 (입찰참가기회 확대 저해 분야)	사전규격공개 실효성 강화(B-b)
	공공기관의 2015년 자체 조달 계약 건 중 1배 이상 실적 요구	사전규격공개 실효성 강화(B-b) 낙찰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기준의 모듈화 기반

	(입찰참가기회 확대 저해 분야)	단일체계 마련(C-a)
평가 및 낙찰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실적평가 미시행 (공정한 평가/낙찰 저해 분야)	낙찰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기준의 모듈화 기반 단일체계 마련(C-a)
	사전 실적평가 방법 중 동등 및 유사 실적 평가기준과 관련 한 명확한 평가기준 제시 여부 (공정한 평가/낙찰 저해 분야)	낙찰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기준의 모듈화 기반 단일체계 마련(C-a)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배점비율 항목 조정 (공정한 평가/낙찰 저해 분야)	낙찰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기준의 모듈화 기반 단일체계 마련(C-a)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기술 및 가격 평가 비중 조정 (공정한 평가/낙찰 저해 분야)	낙찰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기준의 모듈화 기반 단일체계 마련(C-a)
계약 이행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투찰 (적정대가 보장 저해 분야)	입찰 공고 시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공고 의무화 (B-b) 실질낙찰율 개선(C-b)
	낮은선금 지급율 (안정적 계약이행 저해 분야)	선금지급 의무화(D-c)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과업변경 요구시 계약금액 조정은 감 액비율이 많고 특히 발주자에 의한 과업변경 요구시 감액비 율이 2배 이상 높음 (적정대가 보장 저해 분야)	과업(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D-a)
	발주자에 의한 빈번한 과업변경 요구 (적정대가 보장 저해 분야)	과업(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D-a)
사후 관리	검사검수 후 대금지급 기한 5일 이상 초과한 계약집행 사례 (신속한 사후관리 저해 분야)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의 간주 규정화(E-c)

6.2.1 입찰이전

입찰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규제 유발 분야는 입찰참가기회 저해 및 적정대가 보장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을 중점으로 문제의 유형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전규격공개 의무화 및 이의제기 의견에 대한 처리방법 및 본 입찰공고와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는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사전규격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배정예산과 예정가격의 편차율이 기준 대비 초과하는 문제는 적정대가 보장이 필요하므로 예정가격 편차율 기준 조정 및 준수 의무화를 통해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공고기간 5일 이전 미준수 입찰공고 시행 문제는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함으로 사전규격공개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2015년 자체 조달 계약 건 중 1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는 문제 역시 입찰참가기회를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사전규격공개 강화 및 낙찰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관련 모듈화 기반 단일체계 마련으로 해소 가능하다.

6.2.2 평가 및 낙찰

평가 및 낙찰 단계에서 발생하는 규제 유발 문제점은 주로 공정성 관련 쟁점이므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세부평가기준의 낙찰자 선정에 대한 개선을 중점으로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평가 및 낙찰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실적평가 미시행, 사전 실적평가 방법 중 동등 및 유사 실적 평가기준과 관련한 명확한 평가기준 제시 여부,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배점비율 항목 조정,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기술 및 가격 평가 비중 조정 등 4가지이며, 각 문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찰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기준의 모듈화 기반 단일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2.3 계약이행

계약이행 단계의 주요 규제유발 분야는 적정대가 보장, 안정적 계약이행 등이며, 해당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은 조달업체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이 높으므로 보다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투찰은 적정대가 보장 관점에서 입찰공고 시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공고 의무화, 실질낙찰율 개선 등의 개선방안을 통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낮은 선금 지급율의 경우 조달업체의 안정적 계약이행에 저해를 가하는 요인이므로 선금지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다.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과업변경 요구 시 계약금액 조정은 감액비율이 많고 특히 발주자에 의한 과업변경 요구 시 감액비율이 2배 이상 높은 문제점은 적정 대가 보장을 위해 과업(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발주자에 의한 빈번한 과업변경 요구 문제 역시 적정대가 보장과 연관성이 높으므로 과업(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2.4 사후관리

사후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검사검수 후 대금지급 기한이 5일 이상 초과한 계약집행 건이 많아 계약 사항을 모두 수행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이는 신속한 사후관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임으로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의 간주를 규정화함으로써 어떠한 사유에 의하더라도 대금지급 기한이 준수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6.3 공공조달 단계별 개선방안

본 연구진은 공공조달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공공조달의 단계인 입찰이전, 입찰, 평가 및 낙찰, 계약이행, 사후관리 순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각 단계별 개선방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입찰이전 단계에서 제시될 수 있는 개선방안은 공공조달 시장진입 통합지원 체계 마련, 제조 및 공급물품 판단기준 명확화 등 2가지이다. 입찰 단계의 개선방안은 사전규격 공개 실효성 강화, 입찰 공고 시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공고 의무화, 예정가격 편차율 기준 조정 및 준수 의무화 등 3가지이다. 평가 및 낙찰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은 낙찰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기준의 모듈화 기반 단일체계 마련, 실질 낙찰율 개선(입찰단계의 예정가격 편차율 조정을 통해 해소 가능) 등 2가지이다. 계약이행 단계의 개선방안은 과업(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 운영 강화(부당한 요구에 대한 긴급구제 및 조정 기능 부여), 선금지급 의무화, 부당특약 검증강화 등 4가지이다. 사후관리 단계에서 제시될 수 있는 개선방안은 계약결과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통합적 계약규정 관리 시스템 구축,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의 간주 규정화 등 3가지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은 현재 계약 단계별 발생하는 ① 주요 현안과 현안을 기반으로 수렴되는 ② 문제 특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③ 개선방안, 그리고 해당 개선방안을 통해 ④ 해소 가능한 규제유발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6.3.1 입찰이전 단계

(1) A-a 공공조달 시장진입 통합지원 체계 마련

① 주요 현안

공공조달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기 위해 기존 제품의 기능, 성능, 품질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기술, 신제품 및 특허 등을 출원한 개선 제품, 연구개발을 통한 완전한 신상품 등의 경우 물품목록번호가 없어 등록이 지연 또는 등록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목록은 국제전자상거래 표준인 UNSPSC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제품 및 소재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신산업에서의 새로운 제품들이 출현 또는 세분화되면서 선제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고 나서도 오랜 기간 적정한 제품분류와 그에 따

른 물품목록번호를 등록하지 못해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문제의 특성

하지만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더라도 이후 경쟁 입찰 참가자격 확보를 위해서는 새롭게 목록번호를 부여받은 제품이 제조 또는 공급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제조물품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기준 제정, 제조 및 공급물품과 상관없이 해당제품의 기능,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최소 검증 문서인 규격서의 존재 유무, 새로운 제품의 대가 책정을 위한 적정 거래실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원가가계산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기 쟁점에 대한 대응은 각 단계별로 분절적으로 파편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시 새로운 더 큰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공공조달시장 참가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③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조달 물품 중 신상품 등을 사유로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최초 물품목록화 단계에서 이후 예상되는 직접생산확인기준 제정 → 표준 규격서의 작성 →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 등의 후속 과정에 대해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업체들이 단계별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상기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향후 조달업체들은 특정 제품에 대한 등록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후 예상되는 모든 단계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한 번의 지원요청으로 그 이후 과정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현행과 같이 단계별 문제를 담당기관에서 검토하고 해결방안이 마련된 후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 나가야 하는 “제기 후 추적 방식”에서 “제기 후 망각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조달청의 현행 물품목록화, 직접생산확인기준, 표준규격서 제정, 가격조사 및 원가검증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단일 체계로 통합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통합지원 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④ 해소 가능한 규제유발 요인(사업 및 규정별 식별 문제점)

[표125] A-a 문제유형

문제유형(세부내용 붙임 1-1 참조)
E1.경쟁입찰참가자격기준, 직접생산확인기준
F3.물품목록화 및 분류 (행태적 오류)

(2) A-b 제조 및 공급물품 판단기준 명확화

① 주요 현안

중소업체들이 자사 제품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해당제품이 제조물품인지 또는 공급물품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이며, 제조 물품인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급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부담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제조물품을 공급도 가능토록 할 경우 자격을 갖춘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반대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제조물품으로 한정할 경우 신생 중소기업체의 조달시장 참가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

② 문제의 특성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위해 물품의 경우는 직접 제조여부와 단순히 대리점과 같이 공급이 가능한 물품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특정 물품이 제조 또는 공급 대상 여부에 따라 업체들의 입찰참가자격 확보 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제조인 경우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장면적, 생산과정, 생산설비, 검사설비, 생산인력 등에 대한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 제조물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투자해야 하므로 제조로 공급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게 참가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이를 공급업체에게도 조달 가능토록 한다면 성실히 제조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 업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제품의 표준화 및 상용화 수준을 고려할 때 직접 제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품질을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조달 가능토록 할 수 있으나 제조자가 한정되어 있는 공급업체를 통한 가격조절 및 담합 가능성에 대한 부담은 존재한다. 동시에 공급업체의 역량이 확대되면 사실상 중소 제조업체가 공급업체에게 종속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따라서 조달물품 중 제조 및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조달 과정에서도 제조와 공급을 혼용하여 조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일 기준을 적용하여 제조 물품은 제조로 공급물품은 공급으로만 조달 가능토록 조정해야 한다.

③ 개선방안

상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조달을 통해 공급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세부 품명번호 10자리 기준 제품에 대한 제조와 공급 기준 설정 후 상시 공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조물품이나 고시금액 이하로서 시중의 동일 성능 기성품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공급물품이나 수요기관의 구매요구사항 또는 설계사양 충족을 위해서 해당제품의 50% 이상을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제작이 필요한 경우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조달청으로 중앙조달을 요청하는 수요기관의 경우 제조 및 공급물품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조달청은 제조 및 공급물품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입찰 건에 대해 수요기관에게 통보한 후 기준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조달을 요청해야 한다.

즉, 제조 및 공급이 모두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와 공급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실제 입찰 과정에서 혼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④ 해소 가능한 규제유발 요인(사업 및 규정별 식별 문제점)

[표126] A-b 문제유형

문제유형(세부내용 붙임 1-2 참조)
물품 공급과 제조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부재
E2.제조와 공급 등록 기준
E3.기술개발/제조업체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E5.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강화
E6.제조 및 공급업체 등록기준
F8.물품구매 및 제조 계약에서 적법한 물품 공급방법 (제도개선)
F13.입찰참가자격 요건 부여 적정성 (법령위반)

6.3.2 입찰단계

(1) B-a 사전규격공개 실효성 강화

① 주요현안

입찰공고 이전 해당 입찰공고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사전규격공개제도가 국가계약법령 적용 대상 기관은 계약예규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지방계약법령 적용 대상 기관은 지방계약법이 개정되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1억 원 이상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만 사전규격 공개가 되고 있고 다수 입찰이 이루어지는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사전규격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사전규격공개 요건 중 제한, 지명경쟁과 같이 공개사유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입찰, 물품의 제조와 같이 규격에 의한 진입장벽 요건 제시가 수월한 입찰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문제의 특성

또한 사전규격공개를 하더라도 의견 개선율이 매우 낮으므로 일부 쟁점 및 현안이 있는 물품 및 용역이 아닌 경우 사전규격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저하 될 수 있다. 동시에 사전규격이 공개된 건에 대하여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본 입찰공고 반영 의무화 여부 등의 이행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물품과 용역의 규격 또는 과업내용과 관련해서는 잠재적 입찰참가업체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으나 계약법령 및 조달실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규격 공개를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③ 개선방안

사전규격 공개 대상 금액의 하향조정 또는 전면적인 하향조정이 어려운 경우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입찰과 제조물품 입찰에 한해서만 전면적인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토록 할 필요가 있겠다. 동시에 사전규격공개를 하더라도 조달업체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규격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하여 사전규격공개 내용에 대해 적법성,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심사 후 의무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 제도를 병행해야 하겠다. 예를 이와 유사한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경우 ICT 용역에 대한 분리발주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 준수여부 등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단, 전면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고시금액 이상 제조물품 등으로 한정하여 의무 검토를 시행한 후 전면적인 확대 고려가 가능하다.

또한 현행 법령 하에서는 사전규격공개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의무적으로 본 입찰공고에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의견이 개선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의무적 답변 등록 및 해당 답변에 따른 의견별 수용 및 불수용 이유를 제시하고 수용한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

④ 해소 가능한 규제유발 요인(사업 및 규정별 식별 문제점)

[표127] B-a 문제유형

문제유형(세부내용 불입 1-3 참조)
사전규격공개 이의제기 의견에 대한 처리방법 및 본 입찰공고와 연계성(A5,)
최소 입찰공고기간 5일 이전 미준수 입찰공고 시행(A4,) (법령위반)
E8.특정규격 요구
F2.사전규격 공개의 실효성 (제도개선)
F4.사전규격공개 기준 (행태적 오류)
E7.지명경쟁입찰 요건 적정성
F11.입찰참가자격 제한 (행태적 오류)
F12.제한요건 중복 적용 (법령위반)

(2) B-b 입찰 공고 시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공고 의무화

① 주요 현안

물품 및 용역 입찰 시 대가산정 기준인 산출내역서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 과업 내용 대비 책정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거래실례 등을 통해 대가 수준의 확인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물품과 달리 요구 과업 내용과 수준에 따라 대가의 수준이 달라지는 용역의 경우 당해 과업의 요구 사항과 책정된 사업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정된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책정된 기초금액을 바탕으로 $\pm 2\% \sim -8\%$ (중앙 공공기관), $\pm 3\%$ (지방 공공기관)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됨으로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대비 입찰기준 대가는 최대 92% 이하로 과도하게 감액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적격심사 등에서 낙찰하한율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80% ~ 88% 수준에서 예정가격을 곱하게 되면 실질낙찰율은 70% 중후반대까지 낮아질 수 있어 계약이행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

하시킴으로써 부실한 결과물을 산출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② 문제의 특성

현행 공공조달 입찰에서 입찰기준가격은 “사업예산 → 기초금액 →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의 4단계를 걸쳐 결정되고 각각의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일정 비율로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단계에서 감액되는 이유가 실제 최초 책정된 사업예산의 특정 비목별로 감액 여부 확인 없이 총액 기준으로 감액됨으로써 감액의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특히 사실상 각각의 단계에서 감액은 현실적인 예산운영 여건상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예산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공공조달 대가의 적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기와 같이 감액된 기준대가를 바탕으로 최대 88% 수준에서 낙찰율이 결정되고 계약이후 발주자인 공공기관에 의하여 과업(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계약금액이 감액 조정되면 최초 부족한 대가설정 수준이 더욱 낮아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 심화될 수 있다.

③ 개선방안

산출내역서와 관련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입찰에 책정된 예산의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사전규격공개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책정 근거인 발주기관에 의한 산출내역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 검증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단, 모든 입찰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고시금액 이상 일반용역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별도의 대가 산정 기준 및 표준품셈 등이 있는 용역 등에 우선 적용하여 과업의 범위 및 수준에 따라 안정적 이행이 가능한 적정대가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하겠다.

사업예산 이후 예정가격 결정단계에서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현재와 같이 총액기준 감액비율이 아닌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원가비목별로 감액비율을 제시하고 해당 비목이 감액된 경우 과업내용도 비례 조정이 필요하다.

④ 해소 가능한 규제유발 요인(사업 및 규정별 식별 문제점)

[표128] B-b 문제유형

문제유형(세부내용 붙임 1-4 참조)
사업예산 산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
동일 용역, 동일 추정가격 규모에서 상이한 낙찰하한을 적용 사례(LS9) (제도개선)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투찰(A2,) (단순행태)
E13.사업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 기준의 적정성
E14.대가산정체계의 실효성확보

(3) B-c 예정가격 편차율 기준 조정 및 준수 의무화

① 주요 현안

현행 전자입찰에서는 사업예산과 연동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평균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있다. 복수예비가격 산정을 위해 물품 및 용역 입찰 시 대가산정 기준인 산출내역서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 과업 내용 대비 책정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

② 문제의 특성

현행과 같은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기준의 마련은 1999년도 전후 도입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에서 예정가격의 기밀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계약실무 과정에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기초금액 대비 상하 일정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산정)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예산금액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정된 것이다.

사업예산과 연동된 기초금액 이후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산정범위 하한율에 가깝게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2%(중앙공공기관)에서 - 3%(지방 공공기관)의 예산이 과업내용의 변경 등 실질적인 대가 조정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됨으로써 사업예산 책정과 가격결정 과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있다.

③ 개선방안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공통 또는 개별적으로 통일된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율을 설정하여 적용이 필요하며,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행자부 예규 제34호에서 $\pm 3\%$ 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

양 공공기관에서도 계약예규를 통하여 $\pm 2\%$ 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토록 의무화가 필요하다.

특히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가 적용되는 기준이 기초금액은 사업예산과 동일하거나 또는 감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정대가 보장 관점에서 기초금액은 최초 사업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결정된 예정가격이 실제 소요 사업예산 대비 과도하게 감액되지 않는 수준에서 예정가격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무과정에서 복수예비가격을 통해 설정된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기준 산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최소 산정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입찰의 예정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④ 해소 가능한 규제유발 요인(사업 및 규정별 식별 문제점)

[표129] B-c 문제유형

문제유형(세부내용 붙임 1-5 참조)
예정가격 편차율 -2%, -3% 초과하는 입찰 발생(A1,) (행정규칙 위반)
E13.사업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 기준의 적정성
E14.대가산정체계의 실효성확보

6.3.3. 평가 및 낙찰단계

(1) C-a 낙찰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기준의 모듈화 기반 단일체계 마련

① 주요 현안

물품, 용역을 중심으로 중앙 공공기관의 적격심사기준과 지방공공기관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의 배점기준, 평점기준 및 평점급간 설정 등의 방법과 기준이 서로 달라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업체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 및 유사용역에 있어 중앙/지방공공기관의 실적평가대상 수행 실적 인정기간의 상이함(3년 또는 5년 이내), 경영상태 평가에 있어 만점을 부여하는 최저 신용평가등급의 상이함(AAA ~ BBB+ 사이에서 공공기관별로 다양), 신용평가등급간 평점급간

차이가 0.2~1점까지 과도한 편차 발생, 신인도 평가의 경우 동일한 신인도 가점 항목이 공공기관에 따라 0.25~1점까지 4배 이상의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등에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태 평가의 배점한도를 만점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존재하며, 창업초기기업의 인정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운영하는 등 일괄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② 문제의 특성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이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어느 곳에서 입찰대상이 되더라도 평가기준은 동일해야 중소 조달업체들의 평가를 위한 준비에 부담이 없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신인도 가점항목에 대하여 A기관에서는 0.5점을 부여하고 B기관에서는 1점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해당업체가 적격심사의 기본평가항목 중 적격통과점수 획득에 1점이 부족한 경우 B기관에서 하나의 신인도 항목으로 부족한 점수를 보완할 수 있으나 A기관에서는 최소 2개 이상의 신인도 가점항목인 인증 등을 추가로 획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2015년도 공공조달에서 소요되는 인증을 대폭적으로 감축하였으나 동일한 인증에 대한 가치 부여 방법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 평점기준 및 평점급간을 달리 설정할 경우 업체들은 기관별로 심사기준에 따른 신인도 가점 획득을 위해 중복적 투자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조달업체의 경제적, 심리적 측면에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중 해당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 특성으로 추가적인 신인도 항목 및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별 고유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 평가항목의 차별성 역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구분 없이 조달업체가 인지하는 수요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모두 동일하고 따라서 평가체계 역시 기관별 특수성, 고유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인 평가항목, 배점비중, 평점기준 및 평점급간 등의 설정에 있어서는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국가 및 지방계약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경우 수요기관으로 개별 공공기관의 사적자치 권리로서 계약 자율성의 보장을 추구해야 하나 기관별 자의성 과도할 경우 계약상대방인 조달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계약제도 운영 자율성과 조달업체의 평가부담 완화 관점에서 균형 잡힌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③ 개선방안

적격심사, 2단계경쟁입찰의 기술적격성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능력평가, 중기간경쟁 제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MAS 2단계 경쟁의 종합 및 표준평가 등과 같이 모든 형태의 평가에서 실적평가는 동등 및 유사실적을 모두 인정하고 평가대상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으로 통일해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과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실적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와 관련하여 실적평가에 대한 기본가점을 배점비중의 40% 이상(실적평가점수 5점일 경우 최소 기본점수 2점 이상 부여), 창업초기기업의 경우는 최대 60% 이상의 가점(기본점수)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또한 창업초기기업 인정기간 역시 창업이후 5년간으로 통일하여 실질적인 평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중소기업, 특히 창업초기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같이 재무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충분치 못한 업체들에게 불리한 평가항목으로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수준을 고려하여 만점을 부여하는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 및 신용평가등급 간 평점급간을 최소화(조달청 기준 0.2점) 해야 한다. 특히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전국적으로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조달업체의 재무적 안정성이 평가되므로 평점급간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조달청 기준 준용 필요) 단, 통일된 경영상태평가 기준보다 하향 조정하는 것은 허용이 필요하며, 평점기준 및 급간의 완화가 필요하다.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에서 기술능력평가는 인력 및 공장연수 등과 같이 양적인 지표가 아닌 공인된 기술평가등급 기관에서 발행한 “기술평가등급”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평가등급에 의한 기술능력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와 같이 소기업·소상공인과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상기 수행실적, 경영상태평가, 기술능력평가 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모두 공통적인 평가모듈로 기관별 적격심사기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행자부 예규 제34호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선정기준의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서 관련 기준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

신인도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여성고용촉진, 장애인고용촉진, 중앙 부처 주관의 우수기업 등에 대한 신인도 가점은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모두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기관별 업무적 특수성, 고유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가점항목에 대해서는 “수요기관 특수성 적합도”와 같은 신인도 평가모듈을 추가하여 별도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자

울성을 부여함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공통적인 신인도 항목 이외에 공공기관별 고유 신인도 항목 추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구성해야 한다. ([표130] 참조)

[표130] 낙찰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기준의 평가 모듈

구분	평가항목	기준
공통평가모듈	실적평가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모두 동일 기준 제시
	경영상태평가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모두 동일 기준 제시
	기술능력평가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모두 동일 기준 제시
	공통 신인도 평가항목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모두 동일 기준 제시
고유평가모듈	공공기관별 추가적인 신인도 가감점 항목	공공기관별 고유 평가기준 제시 (기재부 및 행자부 협의 필요)

④ 해소 가능한 규제유발 요인(사업 및 규정별 식별 문제점)

[표131] C-a 문제유형

문제유형(세부내용 붙임 1-6 참조)
공공기관의 2015년 자체 조달 계약 건 중 중앙 공공기관 2.56%, 지방공공기관 0.74% 수준의 1배 이상 실적 요구(A6,)(법령위반)
중앙 공공기관 약 8.66%, 지방 공공기관 약 10.44%에서만 사전 실적평가 방법 등 낙찰자 선정기준 명확히 제시함(A9,)(단순행태)
시설공사 등에서 거리, 무게, 면적 등에 따른 상세 실적 평가기준 부재
납품실적 인정기간의 축소운영 및 유사실적 미인정(H-b4, LS4,)(제도개선)
H-b5.낙찰자 결정시 종합평점의 하향 조정(제도개선)
적격심사 자료 제출기간의 차이(H-b2, LS2,)(제도개선)
H-b3.적격심사 분야별 심사 기준일의 차등 적용(제도개선)
10억 이하 물품구매 입찰에서 실적평가(H-b7,)(제도개선)
고시금액 미만 물품구매 입찰에 대한 별도 적격심사 세부기준 미운용 사례
H-b8.기술능력 평가 시 기술등급 평가의 미실시[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제도개선)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한 차등적 실적평가 미시행 및 기본배점 및 가점 차등화 해소(A12, H-b6, H-b15.)(단순행태)
신용평가등급 평점급간의 과도한 차등화 해소(H-b13, H-a4, H-a5, H-a6, LS5, LS6,)(제도개선)
H-b14.경영상태 평가 시 창업초기기업 신용평가 우대 여부(H-a8,)(제도개선)
적격통과점수 수준의 과도함
신인도가점 인정범위(최대 가감점 수준), 평가항목 점수 편차 해소 필요(H-b9, H-b9, H-d2, LS7)(제도개선)
신인도 평가 시 과도한 계약이행 성실도 요구[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H-b11, H-c6.)(제도개선)
H-b12.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신인도평가(제도개선)
협상에 의한 계약 집행 시 세부평가기준 중 특정 평가항목의 배점과다 배점 사례(A10,) (행정규칙 위반/단순 행태)
A11.협상에 의한 계약 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중 설정 자의성(행정규칙 위반/단순행태)
낙찰자결정을 위한 추정가격 기준 적격통과점수 수준의 상이함(LS10,)(제도개선)

E16.적격심사 평가기준 완화
F20.청소용역 경영상태 평가방법(단순질의)
F21.납품실적 인정 요건(제도개선)
F22.단순용역에 대한 협상계약 적용 가능 여부(제도개선)
F23.MAS 2단계경쟁 대상 및 회피 예방(행태적 오류)
F24.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특허의 인정여부(제도개선)
F26.하도급 또는 외주가공 제조실적을 원도급자의 제조실적을 인정 가능여부(제도개선)
F27.적격심사에서 차순위 입찰자 적격심사 가능 여부(제도개선)
F28.실적인정범위(제도개선)
J2. 평가위원 선정의 적절성 및 공정성 (제도개선)
J3. 평가위원 구성인원 수의 상이성(제도개선)
J4. 평가위원 자격의 부재(제도개선)
J5. 제안서평가 대상사업의 유무(제도개선)
J8. 평가점수 산출방법의 차이(제도개선)
J9. 평가 결과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 부재(제도개선)
J10.평가수당지급 기준의 차이(제도개선)
J12.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마련(제도개선)

6.3.4 계약이행 단계

(1) D-a 과업(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① 주요 현안

다양한 유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과업(설계)변경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 분쟁 발생 이전에 체계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인 조달업체가 부담을 감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문제특성

계약이후 물품제조에서 설계사양의 변경, 용역에서는 과업범위 및 요구수준 변경, 공사의 경우 공법, 적용기술 변경, 특정 구간, 장소에 대한 공사 추가, 제외, 지연 등 특수성에 따른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고 절대적 기준으로 사안별 과업변경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및 유사사안에 대하여 매년 유사한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등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 입찰에서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과업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개선방안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 조달대상별 과업(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분쟁조정, 판례, 유권해석, 질의회신 사례 등을 조사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유사속성을 보유한 과업변경 및 대가조정 현안에 대한 표준조정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계약일반 또는 특수조건에서 규정하는 과업(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항목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참조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화해야 한다.

④ 해소 가능한 규제유발 요인(사업 및 규정별 식별 문제점)

[표132] D-a 문제유형

문제유형(세부내용 붙임 1-8 참조)
발주자에 의한 빈번한 과업변경 요구(A8,)(단순행태)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과업변경 요구 시 계약금액 조정은 감액비율이 많고 특히 발주자에 의한 과업변경 요구 시 감액비율이 2배 이상 높음(A3,)(단순행태)
법령에 없는 사업대가 감액 조건 설정 예방
발주자에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사업대가 감액 조건 설정 예방
I-a2.과업내용의 변경 시 대가지급 및 계약금액 청구 기한 (제도개선)
I-a3.계약 연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제도개선)
I-b2.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이 가능한 조정가능 일 수입의적 변경(제도개선)
I-d6.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제도개선)
Id-7. 계약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불이행(제도개선)
I-d11.설계변경 시 부당한 계약금액의 조정(제도개선)
F35.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 사유(제도개선)
F36.공사현장과 설계서의 상태가 다른 경우(단순질의)
F37.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일 기준(단순질의)
F38.재시공에 따른 기시공분의 철거 비용과 재시공 관련 설계비용 부담(단순질의)
F39.시설공사 설계변경 시 세부공종별 분류되지 않은 비목별 금액 조정 방법(제도개선)
F40.하차장상차도의 관급자재인 경우 인수장소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제도개선)
F41.물가변동 산정 기준(단순질의)
F42.터키입찰에 이한 공사계약에서 예측하기 힘든 추가비용 부담 책임(단순질의)
F43.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대가 조정 근거(단순질의)
F44.현장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의 주체(단순질의)
I-d5. 휴일 및 야간작업에 대한 허용 여부(제도개선)

(2) D-b 불공정 조달신고센터 운영 강화

① 주요 현안

낙찰자 선정이후 계약시점에서 조달업체가 수요기관으로 비공식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받은 추가적인 과업수행 요구 또는 과업수행과 본질적으로 관련성이 없거나 낮은 추가요구 조건 등을 낙찰업체에게 구두로 요구하는 경우 업체들이 이를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이유는 계약단계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사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계약체결 거부로 부정당제재 처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문제의 특성

수요기관의 비공식적 추가요구 또는 부당한 요구는 명시적으로 계약문서, 추가협상조건 등에 부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낙찰 및 계약예정 업체가 직접적으로 밝히기 이전에는 식별하기가 어렵다. 이는 계약단계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사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로 부정당제재 처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당해 입찰 건에서 다소 무리한 요구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향후 동일 및 유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불이익 가능성을 고려하여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개선방안

현행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계약시점에서 수요기관의 비명분화, 비공식적 추가요구 사항에 대하여 즉시적으로 조사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가 제기된 해당 공공기관의 입찰내용, 계약담당자, 조달업체 담당자의 조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특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당해 입찰 및 계약을 긴급 정지시킴으로서 수요기관의 입장에서조차 지연 조달로 인해 발생할 현실적 부담 및 조달업체와의 문제적 소지가 있는 요구 의도를 보다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달업체가 수요기관과 관계를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해당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 비공식적 요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실제 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문제점을 사후적으로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

④ 해소 가능한 규제유발 요인(사업 및 규정별 식별 문제점)

[표133] D-b 문제유형

문제유형(세부내용 붙임 1-10 참조)
상위법령 근거 없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운영(G12) (법령위반)
I-d1.공사 계약 시 계약문서의 과다요구 (제도개선)

(3) D-c 선금지급 의무화

① 주요 현안

선금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계약상대방인 조달업체에게 먼저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경영상의 자금운용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동시에 안정적인 계약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의 자체조달 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선금을 지급한 입찰건의 비율이 전체 입찰건수의 약 20% 미만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선금지급 비율이 낮은 이유는 계약예규 제34조 제9항의 각호와 제10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업체의 선금 지급 요청이 있어야하고 지급 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년 상반기 예산조기 집행을 위해 수요기관에서 조달업체에게 선금지급 신청을 요청해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선금신청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② 문제의 특성

현재 기재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9항의 각호, 제10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동시에 선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방인 조달업체는 동 집행기준 제35조에 따라 선금액과 그 이자(선금액에 이자율 3.5% 적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증권을 요구하고 있다.

선금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 건으로서 조달업체가 선금을 신청하고 싶다 하더라도 선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증권을 발급하게 되는 경우 보증증권 수수료율이 보증기준금액의 약 0.83%(선금액 5천만 원 기준) ~ 1.2%(선금액 2억 원 기준)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물품의 경우 제조원가의 25%, 일반용역의 경우 10%, 공사의 경우 15%를 최대

계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계상 및 반영 가능한 이윤율이 10% 미만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윤의 10%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선금지급 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제조 및 용역 이행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소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차용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의 하나인 “공공구매론(네트워크론)”의 경우도 과거와 같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 가능하던 것이 계약서와 업체의 추가적인 신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심사하여 대출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재정적 안정성이 낮은 중소기업들에게 선금 지급과 관련된 거래비용의 부담은 현실적으로 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선금지급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계약금액의 70% 수준까지 대가를 선지급하는 것으로 업체들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선금액 만큼의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에게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③ 개선방안

기본적으로 현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에 따른 선금지급 규정을 현재와 같이 업체의 신청에 의해 수요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선택적 조항에서 원칙적으로 지급하고 조달업체가 지급 예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선금에 대한 최소한의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현재도 적용되고 있는 국가 및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과 농협(중앙회 포함), 수협(중앙회 포함), 임협(중앙회 포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실제 금전적 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각각의 조합 등에 속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각서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하겠다.

상대적으로 현행 보증증권 형태의 채권 확보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기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재부 및 행자부 계약예규 상의 선금지급 최대 비율과 조달대상 및 금액별 의무지급비율을 현재보다 10~20% 포인트 하향 설정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④ 해소 가능한 규제유발 요인(사업 및 규정별 식별 문제점)

[표134] D-c 문제유형

문제유형(세부내용 붙임 1-7 참조)
낮은 선금 지급 실태 개선 및 선금 지급율 임의 설정(A7, G9)
F31.관급자재의 선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제도개선)

(4) D-d 부당특약 검증강화

① 주요 현안

일반적으로 현행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하에서 계약문서의 상·하위 체계는 국가 및 지방계약법 → 시행령(시행령 특례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시행규칙 → 기재부 및 행자부 예규(행정규칙) → 공공기관별 자체 계약규정 →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대부분의 경우 공공기관별 계약규정까지는 완전히 공개적으로 제정, 개정 등의 이력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사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계약일반조건의 경우 기재부 및 행자부 계약예규에 따라 사전공개 되어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별로 별도의 일반조건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유사한 조항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되어 사전 확인도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특수조건의 경우에는 개별 공공기관별·입찰건별 자율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 특약사항을 반영하여 제정 및 운용함으로써 사전 검증과정을 거치고 공개되어 있는 계약규정 대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② 문제의 특성

계약특수조건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기재부 및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고시 및 지침 형태의 규정화된 문서로 관리되지 않고 입찰건별로 별도 제정하여 계약 첨부서류로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 입찰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발주기관 입장에서 주요한 관리적 현안인 계약이행(과업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검사검수, 지체상금 및 대금지급 등의 내용을 상대적으로 발주기관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특약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입찰공고 시점에서 계약특수조건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시점에서 특수조건을 계약 첨부 문서로 제시하고 있어 낙찰된 계약업체는 다소 부당한 요구가 반영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계약포기 등이 어려워 부담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계약이행과 대가의 지급 등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 대하여 사전 검증 및 공개되지 않은 문서를 수요기관이 자의적으로 작성하여 운용하고 결과적으로 업체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관련 규정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③ 개선방안

계약특수조건에 과업변경, 계약금액조정, 대가지급 등 계약과 관련된 핵심적인 항목에 대하여 특약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사전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에 해당 특수조건의 상위 계약법령 합치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단, 현실적으로 개별 입찰건별로 분석이 어려우므로 공통·반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약특수조건을 기관별로 사전 제정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승인 받아 평소 이해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입찰 건에 계약 관련 핵심요건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 설정 시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계약특수조건을 포함하여 조달업체가 계약상대방으로서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중요성, 예상되는 위험과 문제점을 사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규격공개 단계에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통합 게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사전규격공개단계에서 통합 게시된 문서 중 계약특수조건 등에 대해서는 해당 특수조건의 상위법령과의 합치성 및 규제적 요인 내포 여부 등을 사전 검증하여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검증체계 운영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기재부 및 행자부에서 약 300여 개에 이르는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모두의 계약특수조건을 사전 또는 입찰건별로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규격공개를 통해 5천만 원 이상 물품 및 용역 입찰건 등에 우선 적용을 검토가 가능하다.

④ 해소 가능한 규제유발 요인(사업 및 규정별 식별 문제점)

[표135] D-d 문제유형

문제유형(세부내용 붙임 1-9 참조)
입찰건별 사전 검증 또는 공개되지 않는 계약특수조건 운영
I-d2.채권 양도시 추가조건 요구 (제도개선)
부당한 계약이행 조건을 특약 형태로 반영 (법령위반)

6.3.5 사후관리 단계

(1) E-a 계약결과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① 주요현안

공공조달 분야의 규제는 복합적 규제로서 계약규정과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 하더라도 계약실무과정에서 다양한 행태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결과가 계약현황 데이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적 요인을 포함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후적으로 민원, 소송 등의 과정에서 인지 및 식별되고 있다.

특히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해당 사안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 케이스별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선후행의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동시에 개선방안의 실행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새로운 문제점 발생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체계도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② 문제의 특성

공공조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입찰과 계약의 문제는 특정한 사안에 국한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선·후행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와 연계되어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시점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방안 실행보다 그 이후 해당 방안이 제도화되어 안착되는 과정에서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후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도 문제적 요인이 될 수 있는 계약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센싱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상 징후가 식별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심층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문제점을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구상해야 하겠다.

③ 개선방안

조달청 온통조달 시스템을 통해 집계 관리되는 공공조달 정보를 활용하여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대상 계약현황을 관리하는 추가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계약관련 이상 징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공공조달 관련 규제유발 가능성이 큰 공공기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관리적 차원에서 검토 가능한 관리방안은 공공기관 포함 전체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관련 규제유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평가 및 피드백 하는 것이다. 가칭 “규제유발 가능지수”를 개발하여 그 평가수준에 따라 규제유발 가능성이 높은 수요기관에 대해 집중적 점검과 개선권고 등으로 신속한 규제요인 제거 및 완화가 가능한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 관련 절대적인 수의계약을 보다 수의계약 사유에 따라 내용적 측면에서 적정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계약이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사유로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을 사전 식별할 수 있고 해당 공공기관의 문제 유발 가능성이 높은 수의계약 입찰건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구매 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해소 가능한 규제유발 요인(사업 및 규정별 식별 문제점)

[표136] E-a 문제유형

문제유형(세부내용 붙임 1-13 참조)
-

(2) E-b 통합적 계약규정 관리 시스템 구축

① 주요 현안

현재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약 300여개에 대한 계약규정, 세부평가기준,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등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의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적격심사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등을 제정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하고 있으나 각각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제·개정이력, 기재부 협의이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과 조달업체를 가장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계약특수조건의 경우에는 상위 계약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특약을 추가하더라도 사전·사후적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사전공개 되어 있고 관리수준이 높은 공공기

관별 자체 계약규정 총칙, 적격심사 등의 세부평가기준 및 계약일반조건과 달리 계약특수조건
의 경우 상위 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규정보다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당한
특약 등이 조달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② 문제특성

공공기관별로 제정부터 현재시점까지 개정과정에 대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형태의 문서에 대해서는 최신성을 검증한 계약문서를 공공기관 주도로 해당 사이트에 업데이
트 하여 상·하위 법령 간 일치성과 공공기관 간 비교를 통한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후 계
약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규정과 관련해서는 계약규정 통합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문서를 링크하여 해당 문서를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추후 계약규정
의 버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조항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특히
수요기관들이 임의적으로 특약 설정이 가능한 계약특수조건 등에 의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
는 상황에서 업체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독소조항들의 반영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현재에도 특정 계약규정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수정한 후 기재부 협의
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자체 판단으로 해당기준을 운영하더라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공공기관의 자체조달 과정에서 드러난 행태적 문제는 규정상 문제가 없어도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담당자의 재량권이 보장되는 경우에 발생하나 처음부터 규정과 기준이 상위법령을 위
배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점 및 담당자의 재량권이 아닌 직접적으로 규정을
위배하고 이를 수요기관에게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계약법체계의 안정성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③ 개선방안

공공기관 통합 계약규정 관리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현행 중앙 공공기관 정보 공개 사이트인
알리오 및 지방공공기관 정보 공개 사이트인 클린아이 사이트에 별도의 관리기능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별 제정부터 현재시점까지 개정과정
에 대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형태의 문서에 대해서는 최신성을 검증한 계약문
서를 공공기관에서 등록 및 관리토록 해야 한다.

계약규정의 최신성 유지를 위해서 전자입찰로 진행되는 모든 공고에 계약관련 규정은 통합

계약규정 사이트를 링크 또는 참조해야 한다.

특히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핵심적 항목인 과업변경, 계약금액조정, 검사검수, 지체상금 부과 및 대금지급과 관련한 조항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토록 하고 해당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④ 해소 가능한 규제유발 요인(사업 및 규정별 식별 문제점)

[표137] E-b 문제유형

문제유형(세부내용 붙임 1-12 참조)
I-a1.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처리 받을 시의 상계처리 여부 (제도개선)
I-d3. 계약보증금 납부의 차별(법령위반)
I-d8.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제도개선)
I-d9.하도급 대가지급에 대한 투명성(제도개선)
I-d10.계약금액조정 시 관련 용어의 통일(제도개선)
E.4공장 임대 관련 직접생산확인기준
E10.MAS 계약 체결 기준
E11.MAS 계약 체결 기준
F9.공동수급체 구성업체의 입찰보증금 납부(단순질의)
F10.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조정 문제(제도개선)
F14.대표자 변경 입찰참가자격 유효성(단순질의)
F15.지역제한 경쟁입찰에서 지역제한 참여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단순질의)
F16.본점 소재지 변경(단순질의)
F17.조달대상 구분(제도개선)
F32.지체상금 부과 기준 및 일정지연 책임 유무(단순질의)
F47.물품구매계약 계약첨부서류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준수여부(제도개선)
F48.실적증명서 발급 기준(제도개선)
F49.하자보수보증금 채권 확보 방법(단순질의)
F50.물품구매 품질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관계(제도개선)
F34.계약서와 주문서의 우선적용 납기(단순질의)

(3) E-c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의 간주 규정화

① 주요 현안

현재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검사검수는 계약완료 후 조달업체가 검사검수를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추가 7일) 완료하고 검사검수 영수증이 조달업체에게 전달되면 업체가 대금지급 요청을 한날로부터 5일 이내(협의하여 추가 5일 가능)에 지급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검사검수가 14일 이내 또는 추가기간을 포함하여 21일 이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체상금의 부과 등 검사검수 지연에 따른 적법한 조치 없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검사검수 이후에도 조달업체가 검사검수에 합격한 영수증을 근거로 대금지급 요청을 해야 대금이 지급되므로 검사검수가 14일 이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금지급 요청과 관련하여 별도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금지급 기한이 계약완료 후 2~3달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② 문제의 특성

검사검수 → 업체 대금 청구 → 대금 입금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자의성이 개입되어 검사검수가 지연되거나 업체의 대금청구가 발주기관에 의해 지연되어 사실상 5일 이내 대금지급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

검사검수 과정에서 수요기관 담당자의 주관성 개입여지가 크므로 입찰공고 이전 검사검수 요건에 대한 평가기준과 검사검수담당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로 통하여 검사검수 과정이 임의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검사검수 과정이 지연되어도 업체 입장에서 지연의 사유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대기하거나 검사검수가 끝나더라도 대금지급 요청 역시 발주처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므로 계약완료 이후 수개월 이상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공공기관별 자체조달 사업현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계약완료 이후 최장 3개월 이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사례도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안

향후 검사검수 일정과 대금지급 일정은 간주조항으로 하여 14일 이내 적정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4일 초과 시 자동으로 검사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동시에 검사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조달업체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5일 이내 대금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수요기관의 입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충분하고도 안정적인 검사검수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면 현행과 같이 7일의 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공신력 있는 증빙수단을 통해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추가적인 검사검수 기간 부여 등도 검토하여 수요기관의 납품검사 권한 보장 강화 역시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검사검수와 관련된 평가기준, 담당자, 진행 일정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검사검수 실명제의 시행 및 검사검수 기간에 대해서는 간주 조항으로 규정하여 지정 기한 이후 자동으로 검사검수 완료 및 대금지급 의무화가 필요하다.(조달업체 청구와 상관없이 5일 이내 지급)

④ 해소 가능한 규제유발 요인(사업 및 규정별 식별 문제점)

[표138] E-c 문제 유형

문제유형(세부내용 붙임 1-11 참조)
물품구매에 대한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기간 명시
G11.검사 및 검수의 기준이 일원화 되지 않음(G11,)(단순차이)
대금지급 기한 연장하거나 상위법령보다 긴 지급기한 설정(A13, G10)(법령위반/단순행태)
I-a4.대가의 지급기간을 5일을 초과하여 지정 운영(법령위반)
I-a5..‘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대한 조항이 없는 기관이 있음(제도개선)
I-b3.계약이행 완료 후 검사를 해야 하는 기한이 서로 다름(조달청 기준보다 짧은 경우도 있음)(단순차이)
I-b4.대가의 지급기한이 상위 법령 보다 긴 경우(법령위반)
I-d12. 기성대가의 지급 기간의 차이(조달청 5일, 우체국물류지원단 7일(법령위반))
I-d1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잔금 지급 기일의 차이(조달청14일, 한국가스공사20일)(제도개선)
F45.인수거부 사유 및 지체상금 부과 기준(제도개선)
F46.검사검수 기간 및 완료일 기준(제도개선)
F51.지체상금 부과 대상판단(단순질의)
F52.물품의 검사검수(단순질의)
F53.관급자재 대금 지급일 기준(단순질의)

[표139] 5대 분야 13개 규제유발 가능 요인

규제 유발 차원	유관 조사 항목	중앙 공공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문제유형
적정대가 보장 저해 요인 (수행의 안정화)	6번	예정가격 편차율 -2%초과로 대가보장 적정성 문제 발생 (25,780건, 52.95%)	예정가격 편차율 -3%초과로 대가보장 적정성 문제 발생 (824건, 12.39%)	기준제정/설정/ 적용 오류
	12번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 낙찰사례 존재 (121건, 0.25%)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 낙찰사례 존재 (20건, 0.3%)	기준적용 오류
	17.1번	과업변경 요구 시 계약금액 조정은 증액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감액 사례도 많음 (1,349건, 2.77%)	과업변경 시 감액 사례가 많고 특히 발주자에 의한 과업변경 요구 시 높은 감액 사례 발생 (558건, 8.39%)	기준적용 오류
입찰참가기회 확대 저해 요인 (진입의 자유화/ 경쟁의 활성화)	5번	공고방법 및 최소 공고기간(5일) 미준수 (96건, 0.2%)	공고방법 및 최소 공고기간(5일) 미준수 (668건, 10.05%)	기준설정 오류
	8번	낮은 사전규격공개 수준 (29,062건, 59.69%)	낮은 사전규격공개 수준 (4,841건, 72.82%)	기준해석 오류
	14.1번	1배 이상 과도한 실적 요구 (1,245건, 2.56%)	1배 이상 과도한 실적 요구 (49건, 0.74%)	기준제정/설정/ 적용 오류
안정적 계약이행 저해요인 (수행의 안정화)	13번	낮은 선금지급 수준 (29,073건, 59.71%)	낮은 선금지급 수준 (4,993건, 75.11%)	기준해석/적용 오류
	17번	발주자에 의한 과업변경 요구 빈번 (수주자 대비 3배 이상) (3,062건, 6.29%)	발주자에 의한 과업변경 요구 빈번 (수주자 대비 3.6배 이상) (454건, 6.83%)	기준적용 오류
공정한 평가/낙찰 저해 요인 (평가와 선택의 공정화)	14.2번	낮은 실적 평가방법 사전 공개 수준 (4,218건, 8.66%)	낮은 실적 평가방법 사전 공개 수준 (694건, 10.44%)	기준제정 오류
	15.1번	협상계약 시 특정 평가항목 과다 배점 (90건, 0.18%)	협상계약 시 특정 평가항목 과다 배점 (1건, 0.02%)	기준제정, 설정 오류
	15.2번	협상계약 시 평가비중 설정 자의성 (275건, 0.56%)	협상계약 시 평가비중 설정 자의성 (5건, 0.08%)	기준제정, 설정 오류
	14.4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차등적 평가 미시행 (5,138건, 10.55%)	중소기업 등에 대한 차등적 평가 미시행 (822건, 12.36%)	기준설정 오류
신속한 사후관리 저해 요인 (사후관리 신속화)	20번	5일 이상 초과한 대금지급 (5,041건, 10.35%)	5일 이상 초과한 대금지급 (2,225건, 33.47%)	기준적용 오류

7. 기대효과 분석

[표140] 공공조달 규제식별 자료원(법령, 중기건의 및 자체조달사업)별 진입규제 개선 기대효과

구분	유관 과제	중소기업 시장 진입 비용 보호 및 절감 효과(억 원)	공정한 조달절차 및 서류간소화 통한 기업 부담 절감 효과(억 원)	중소기업(조달업체) 매출 증가 효과 (억 원)	창업초기업 등의 경쟁기회 확대 효과(억 원)	고용 창출 효과 (명)	기존고용의 유지 및 질적 향상 효과 (명)
국가/ 지방/ 공공 계약법령 개선과제	1. 용역계약 등에서 총액확정계약 후 사 후정산 행위 금지	-	-	1,659억 원	-	-	1,459명
	2. 국가계약법령 적용 공공기관의 물품구 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	-	192억 원	-	169명	
	3. 제조 및 공급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공공기관별 선금지급 채권확보 이자율 하 향 조정하여 통일	-	408억 원	-	-	-	359명
	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적용 해제		-	-	1,219억 원	-	-
자체 조달 사업 개선 과제	[1-1]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2%(중앙), -3%(지방) 준수 강화 및 중앙공공기관 산 정범위를 +-2% 단일화를 통한 실질 낙찰 율 상향	-	-	1,018억 원	-	896명	
	[1-2] 계약이행 및 검사검수 후 대금지급 기한의 과도한 지연(30일 이상) 해소를 위 한 지급절차 기한 규정의 간주화	-	574억 원	-	-	-	-
	[1-3] 입찰 공고 시 최소 입찰공고 기간 위반 (최소 5일) 예방 및 수의계약의 입찰 공고(업무일 기준 3일 이상) 의무화	-	-	-	1,978억 원	-	-
	[1-4] 사업규모대비 과도한 실적요구 관행 금지(물품 및 용역분야 고시금액 미만 실		-		9,299억 원	8,183명	

적제한 폐지)

[2-1] 선금 지급 신청/정산 서류 부담을
완화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

1,538억 원

-

중소 기업 건의 개선 과제	[2-2] 사전규격공개 기준 확대(5천만 원 미만 포함) 및 검토의견 기재 의무화	-	-	-	-
	[2-3]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한 기본가점 시행	-	-	-	365억 원
	[3-2] 부당한 감액계약 예방 위한 계약금 액 조정 가이드라인 제작/활용	-	-	-	145억 원
	1. 직접생산확인기준 제정 등 시장진입 통합지원을 통한 컨설팅 비용 절감	576억 원	-	-	-
	2. 제조 및 공급 물품의 분류기준 확립 및 입찰 시 준수 의무화	2,431억 원	-	-	-
	3. 입찰 공고 시 기초금액 및 낙찰하한율 기재 및 배정예산 대비 기초금액 감액 시 감액 근거 및 기준 제시	-	-	-	-
	4. 공공조달 제안서 작성비용 절감을 위 한 전자적 수단 제출	-	1,252억 원	-	-
	5. 고시금액 미만 물품공급 입찰에서 순 수 최저가제도 폐지 후 제한적 최저가 도 입	-	-	-	547억 원
	6. 제조 및 공급 공공조달 입찰 시 서류 제출 간소화	-	1,397억 원	-	-
	7. 시설공사 지체상금율(지연배상금률) ½ 인하로 자체상금 부담 절감	* 4,945억 원	55억 원	-	-
합계		3,007억 원	5,224억 원	-	8,871억 원

결과적으로 총 경제적 유발효과는 31,437억 원이며, 총 고용유발 인원은 직접고용유발인원 17,110명, 간접 고용유지 및 수준 향상 인원 5,106명(총 경제적 유발효과 3.1조원 기준 시 27,280명의 고용창출 예상)으로 예상된다. 고용창출로 추산되는 17,110명은 2015년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창출 가능한 고용유발 가능 인원인 971,371명을 기준으로 약 1.76%p 수준의 고용율 개선효과로 2016년 1/4분기 중 OECD 평균 고용율 개선 수준인 0.3%p 수준대비 약 5.9배 수준이며, 국내 고용율 개선 수준인 0.5%p 대비 약 3.5배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표140] 참조).

국내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현황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04년 1460만 명에서 2014년 1784만 명으로 연평균 2% 가량 증가추세인 반면, 동 기간 제조업은 419만 명에서 434만 명으로 연평균 0.4%, 건설업은 194만 명에서 197만 명으로 0.1% 증가에 그쳤고, 농림어업은 심지어 182만 명에서 145만 명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금번 개선을 통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율 1.76%p 수준의 개선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¹⁾(현대경제연구원, 2015)

[표141] 공공조달 규제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차원

구분	내용
중소기업 시장 진입 비용 보호 및 절감 효과	중소기업 등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물품등록, 직접생산 기준 요건 충족 등을 위한 설비투자비용을 보호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공정한 조달절차 및 서류간소화 통한 기업 부담 절감 효과	중소기업 등이 조달과정에서 적용되는 금융비용 산정기준, 전자적 수단 제한서 제출 등으로 서류제출 폐지 등에 따라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이 감소함으로써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중소기업(조달업체) 매출 증가 효과	실제 예산편성, 예정가격 결정 등에 추가적인 금액이 반영되어 실제 기존 낙찰율 등이 고정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체에게 실제 지급되는 대가가 늘어남으로써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창업초기기업 등의 경쟁기회 확대 효과	실제 공공조달 예산의 증가, 비용감소 및 직접적 매출증대 효과는 아니나 기존 단독 또는 소수의 선발 업체에게만 제한적으로 참여가 허용되던 시장이 창업초기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전면 확대되는 입찰금액
고용 창출 효과	경제적 확대 효과를 통해 추정되는 금액을 투자비용으로 환산하여 제조업 기준 고용(취업) 확대가 가능한 인원 수준
기존고용의 유지 및 질적 향상 효과	경제적 확대 효과를 통해 추정되는 금액의 성격상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 중 해당 금액이 기업에게 추가 지급되는 경우 기존 고용된 인력의 고용안정성과 처우수준 개선이 가능한 인원 규모

1) 자료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일자리 창출의 변화와 시사점

7.1 국가·지방·공공계약 법령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7.1.1 용역계약 등에서 총액확정계약 후 사후정산 행위 금지

(1) 개선방안 개요

현재 총액이 확정된 물품, 용역, 시설공사에서는 과업변경 요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계약이 완료된 이후, 정산을 통해 감액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계약이행 이후 사후정산을 통해 대가를 확정해야 하는 경우가 주로 발생하는 신기술, 복잡한 공정, 설계 및 전문성이 높은 물품, 용역 등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시행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에서 사전준비 등의 어려움으로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사후정산과 같은 필요성이 낮은 일반적인 용역에 대해서도 편의상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아닌, 모든 용역이 완료된 이후 발주자 정산을 통해 계약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당특약 또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총액확정계약방식에서의 사후정산 요건 설정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2) 기대효과

① 정량적 기대효과

총액확정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실시할 수 있는 법령상 규정이 없음에도 일반용역 부문에서는 부당한 사후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후정산의 형태는 단순히 정산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부터 내역서와 증빙서류가 문제없더라도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정산내역 검토기관(원가계산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용역 수행을 위해 사용한 비용임에도 환수당하는 문제점 발생할 수 있다. 정산을 통해 용역 대가를 최종 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현행 계약법령 체계 하에서도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등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는 발주기관의 편의상 총액확정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의 용역이행 안정성 및 경영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사후정산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전체 일반용역 계약건의 약 20%에서 3% 계약금액 조정율을 가정하여 사후정산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추가적으로 조달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대가 수준 향상 가능하다.

정량적 기대효과

- 총액확정계약 이행 이후 부당한 감액 예방액 : **약 1,659억 원**

* $15,406,950,835,986\text{원 (2015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일반용역 계약 규모)} \times 35.9\% \text{ (최근 5년 간 사후정산 대상 가능 용역 규모 비율, MICE/PCO/청소/경비/시설물관리/유지관리 용역)} \times 3\% \text{ (계약금액 평균 조정을 추정치)} = 165,932,860,504\text{원}$

※ 자료출처 : 공공조달통계 분석자료(나라장터 온통조달시스템)^a, 2015년 기준 최근 3년간 일반용계약 현황 분석자료 (나라장터 온통조달시스템)^b, 내자구매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자료(한국조달연구원, 2015)^c

총액확정계약 이행 이후 기존 고용의 유지 및 질적 향상 효과(명) : **1,459명**

* $165.9\text{투자단위(1,659억 원/10억 원)} \times 8.8\text{명 (2013년 기준 10억 원 투자 시 제조업 고용유발계수)} = 1459.92\text{명}$

※ 자료출처 : 2015년 자체조달사업 조사표(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제출)^a, 2013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5)^b

② 정성적 기대효과

수요기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사후정산을 통해 예산절감 등 총액확정계약의 제도적 예방할 수 있고, 조달업체에게 안정적인 용역수행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용역품질 향상 및 판로 지원 효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

7.1.2 국가계약법령 적용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1) 개선방안 개요

현재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물품구매에 대한 적격심사 적용 시 낙찰하한율이 80.495%로 지방계약법령 적용 공공기관이 적용하는 적격심사기준의 낙찰하한율 84.245% 대비 약 3.75% 낮은 수준이다. 조달업체의 입장에서 동일한 물품을 공급하면서 동일한 적격심사를 받아 물품을 공급하면서 단순히 적용받는 계약법령에 따라 다른 대가가 지급된다는 점에 대한 수용력이 낮고 또한 국가의 공공조달 대가 산정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낙찰하한율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한 물품구매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을 지방계약법령 적격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 조달업체에게 보다 안정적인 계약이행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2) 기대효과

① 정량적 기대효과

현재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 기관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80.5%이나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기관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84.245%로 동일한 물품일 경우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에 공급하는 조달업체가 약 3.745% 많은 대가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단순히 국가와 지방 계약법 적용 대상 기관에 따라 대가가 달라지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가격결정 및 대가보장 등 계약체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동일한 낙찰하한율 설정이 요구된다.

2015년 조달청 중앙조달 기준 일반경쟁 물품 공고건(MAS 제외) 62,624건 중 적격심사 대상은 적격심사 대상 5,519건이며 이 중 낙찰률 84.245% 미만 2,062건 중 입력오류와 낙찰률 80.5% 미만 건을 제외한 1,848건의 입찰에서 낙찰율이 84.245%로 상향 시 증액되는 금액은 총합계는 19,237,534,132원으로 예상된다.

정량적 기대효과	
- 2015년 조달청 중앙조달 기준 일반경쟁 물품 공고건(MAS 제외) 62,624건 중 적격심사 대상은 적격심사 대상 5,519건이며 이 중 낙찰률 84.245% 미만 2,062건 중 입력오류와 낙찰률 80.5% 미만 건을 제외한 1,848건의 입찰에서 낙찰율이 84.245%로 상향 시 증액되는 금액은 총합계는 19,237,534,132원 으로 예상된다.	
※ 자료출처 : 물품구매 낙찰방법별 통계 분석(나라장터 온통조달시스템)	
물품구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시 고용 창출 효과(명) : 169명 * 19.2투자단위(192억 원/10억 원) ^a × 8.8명(2013년 기준 10억 원 투자 시 제조업 고용유발계수) ^b = 168.96명	
※ 자료출처 : 2015년 자체조달사업 조사표(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제출) ^a , 2013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5) ^b	

② 정성적 기대효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계약 상대인 국가 및 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대가를 보장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공공조달 및 계약과정에서 대가산정과 계약금액 확정 체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개선할 수 있고, 물품구매적격심사를 통해 적격업체에게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한다는 제도적 취지도 달성할 수 있다.

7.1.3 제조 및 공급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공공기관별 선금지급 채권확보 이자율 하향 조정하여 통일

(1) 개선방안 개요

현재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 계약업체에게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위해 적용하는 이자율을 산정하는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계약법령의 경우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고 지방계약법령의 경우 지자체의 금고(주거래은행)의 대출

이자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령 적용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을 신청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하게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지방계약법령도 선금지급 채권확보 이자율을 산정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부담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2) 기대효과

① 정량적 기대효과

선금지급 채권확보 이자율은 국가계약법의 경우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나 지방계약법의 경우 각 지자체의 주거래은행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선금 관련 이자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하게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평균 0.59%의 이자율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12월말 기준 신탁 4.61%, 새마을금고 3.95%, 은행신탁대출 3.61%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였으며 동기간 한국은행의 대출평균금리 3.46%로 지자체의 주거래 은행에 해당될 수 있는 은행권의 금리와 비교하여 약 0.59%의 금리 차가 발생한다.

정량적 기대효과

- 선금지급 채권확보 이자율 조정을 통한 이자절감액 : **약 408억 원**
 $\ast 55,191,507,053,719\text{원}(2015\text{년 공공조달 실적 중 선금지급 대상 규모를 } 50\% \text{로 추정})^a \ast 30\%(\text{개선방안 적용 시 의무화에 준하는 선금 지급율}) \ast 0.59\%(\text{한국은행과 시중은행 대출평균 금리차})^b \ast 41.8\%(\text{중앙조달 계약규모 기준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기관 } 2015\text{년 공공조달 실적 비중인 } 41.8\% \text{ 적용})^a = \mathbf{40,833,988,409\text{원}}$

※ 자료출처 : 2015년 조달사업 실적 분석자료(조달청 온통조달시스템)^a, 금리자료 분석(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b

- 선금지급 채권확보 이자율 조정을 통한 이자율 하향 조정 시 기존 고용의 유지 및 질적 향상 효과(명) : **약 359명**
 $\ast 40.8\text{투자단위}(408\text{억 원}/10\text{억 원})^a \times 8.8\text{명}(2013\text{년 기준 } 10\text{억 원 투자 시 제조업 고용유발계수})^b = \mathbf{1459.92\text{명}}$

※ 자료출처 : 2015년 자체조달사업 조사표(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제출)^a, 2013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5)^b

② 정성적 기대효과

선금 지급과 채권 확보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국가 또는 지자체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이자율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다. 또, 중소기업 등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에 대해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 적용하는 과잉금지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

7.1.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적용 해제

(1) 개선방안 개요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과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제한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의 일반 산업단지 및 기타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지역 내 농공단지에 속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품의 경우 단지 내 다른 기업들의 동일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지역제한 요건을 설정할 경우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해당 업체들이 입찰과정에서 기존 대비 과도한 입찰참가기회를 제약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기대효과

① 정량적 기대효과

지방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으나 지역제한입찰 등을 고려하면 수의계약까지 보장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 농공단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요건을 제외하면 다수의 지역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량적 기대효과

- 수의계약 요건 제위를 통해 경쟁확대 금액 : 약 1,219억 원
* 756억 원(중앙조달기준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규모)^a + 지방공공기관 463억 원(중앙조달 계약규모 기준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기관 2015년 공공조달 실적 비중인 41.8%를 적용한 추정치)^a = 1,219억 원

※ 자료출처 : 중앙조달기준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규모 및 지방공공기관 추정치 및 실적비중(조달청 온통조달시스템)^a

② 정성적 기대효과

최근 지방자치단체 계약 중 가장 많은 유착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농공단지 수의계약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특히,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제, 금융,

판로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이 있고 지역제한경쟁 등을 통해 간접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다수 지역소재 기업의 입찰참가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의계약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

7.2 자체조달사업과제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표142] 2015년 공공기관 자체조달사업의 5대 분야 13개 규제유형 개선 기대효과 세부분석

분야	사업 추진 단계	주요내용(국무조정실 검토)		경제적 유발효과	고용창출 효과
1. 법령위반 (감사 등 처벌대상)	평가 및 낙찰	1-1	예정가격 편차율 -2%(중앙), -3%(지방) 초과 입찰 ⇒ (계약예규 개정) 계약예규에 복수예가 범위율(±2) 명시	- 실질 낙찰금액 증액분 : 1,018억 원 * 중앙공공기관: 652억 원 * 지방공공기관: 366억 원	- 고용유발효과: 896명(실질 낙찰금액 증액분\ 기준)
	사후관리	1-2	계약이행 후 대금지급 기한의 과도한 지연(30일 이상) ⇒ (시행령 개정) 사업완료 후 최대 21일 경과시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검수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 주	- 대금 지급 지연이자 절감액: 574억 원	-
	입찰단계	1-3	입찰공고 최소기한 위반(최소 5일 이전) ⇒ (시행령 개정)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3일 이상 안내공고(워킹 데이 기준)” 의무화 추가	- 수의계약 입찰공고 의무화를 통한 경쟁 확대 예상 금액: 절감액: 약 1,978억 원	-
	입찰단계	1-4	사업규모대비 과도한 실적요구 관행(사업규모의 1배 이상) ⇒ (시행규칙 개정) 제한 경쟁 시 실적은 1/3이상 요구 금지, 물품· 용역 입찰시 고시금액 미만은 실적요구 금지 원칙	- 입찰참가기획 확대: 약 11% 향상 * 물품: 연평균 11.21%(17,006업체) * 용역: 연평균 10.78%(11,798업체) - 신규 등록업체 공급 가능금액 : 9,299억 원 * 물품: 7,310억 원 * 용역: 1,989억 원	- 고용유발효과: 8,183명(신규 등록업 체 공급 가능금액 기준)
	평가 및 낙찰	1-5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기술 : 가격 평가비중 자의적 설정 ⇒ (시행규칙 개정) 기술 : 평가 비중을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도 록 명시 단,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이 없는 기관은 조달청 기준을 따르도록	-	-

개정 또한, 사전규격 등 입찰진행 전 과정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 강화(사전검토 의무화, 공공조달 도슨트 운영, 전문기관 신설)

	평가 및 낙찰	1-6	협상에 의한 계약 시 특정 평가 항목에 과다배점(1항목 30%이상) ⇒ (계약예규 개정) 기재부, 행자부, 중기청(오부즈만) 등 관련기관 의 감시·감독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예규위반에 대한 평가반영 등 벌칙조항 마련	-	
2. 제도개선 (법령 행정 규칙 등 제도 개선 대상)	계약이행	2-1	계약 이후 선금 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금 미지급 ⇒ (계약예규 개정) 선금정산서 제출의 원인이 되었던 하도급 인건 비 지급지연 등의 문제는 ‘하도급 지킴이’ 등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 으므로, 선금 정산서류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	- 중기 신용대출 이자 절감액 억 원	
	입찰이전	2-2	입찰 공고 전 사전규격공개 기간 미준수 관행 ⇒ (계약예규 개정) 1억 이상으로 규정된 사전규격 공개대상 금액의 하향조정 또는 지명경쟁, 제한경쟁, 제조물품 입찰과 같은 규격 오 류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전면적 사전규격 공개하도록 규정개정	- 사전규격공개 검증 강화를 통 제한경쟁 입찰 등의 경쟁 호 액 : 1,839억 원	
	평가 및 낙찰	2-3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기업규모를 고려한 차등적 가점 미 시행 ⇒ (예규개정)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예규개정	- 차등적 가점 시행으로 낙찰금 증액분 : 365억 원	
	계약이행	2-4	예정가격 대비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투찰 ⇒ (시행령 개정) 물품공급 입찰의 최저가 제도 폐지	-	
3. 형태개선 (교육 등 제도 대상)	입찰이전	3-1	사전실적평가 시 동등 또는 유사 실적 평가기준 미 제시 ⇒ (예규개정) 창업·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활성화를 위해 동일 실적에 준하여 평가하는 방안 강구	유사	- 제도개선 [2-2] 과제 효과에
	계약이행	3-2	계약 후 감액계약으로 기업의 적정대가 보장 저해 ⇒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대가 감액방식, 감액대상, 감액 시기 명시한 과업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 계약금액 감액 축소분 : 145 * 중앙공공기관: 10억 원 * 지방공공기관: 38억 원
	계약이행	3-3	발주자에 의한 빈번한 과업변경 요구로 안정적 기업운영 저해 ⇒ (가이드라인 마련) 과업변경을 할수 있는 범위, 유형, 절차 적당한 과업변경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필요최소한의 과업만 가능하도록 조치	등을 변경	- 제도개선 [3-2] 과제 효과에
합계					약 16,756억 원

7.2.1 [1-1]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2%(중앙), -3%(지방) 준수 강화 및 중앙공공기관 산정범위를 ±2% 단일화를 통한 실질 낙찰율 향상

(1) 개선방안 개요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의 공통 또는 개별적으로 통일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설정하여 적용이 필요하며,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행자부 예규 제34호’에서 ±3%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 공공기관에서도 계약예규를 통하여 ±2%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토록 의무화가 필요하다. 특히,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적용되는 기준이 기초금액은 사업예산과 동일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정대가 보장 관점에서 기초금액은 최초 사업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결정된 예정가격이 실제 소요 사업예산 대비 과도하게 감액되지 않는 수준에서 예정가격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실무과정에서 복수예비가격을 통해 설정된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기준 산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최소 산정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입찰의 예정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기대효과

① 정량적 기대효과

현행 조달청을 기준으로 중앙 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배정예산과 동일 추정)의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는 ±2%이며,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행자부 기준 ±3% 수준이나, 2015년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의 자체조달 사업에서는 해당 기준의 하한범위를 초과하는 예정가격 산정사례가 약 11.3천 건 발생했다. 특히 중앙공공기관 중 자체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기업 등에서는 ±2%를 넘어서는 -6% 또는 최대 -8%의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부당한 대가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량적 기대효과

- 예정가격 상승분에 따른 실질 낙찰금액 증액분 : 약 1,018억 원
 - * 중앙 공공기관 예정가격 편차율 축소에 따른 낙찰율 상승액 : 약 652억 원
(약 4.9만 여건의 중앙 공공기관 자체조달 사업실적 중 예정가격 산정 하한범위율(조달청 기준) -2%를 초과한 10,538건의 -2% 이내 조정된 예정가격 상승분: 71,613,579,250원 * 10,538건의 기존 낙찰율: 91.05% = 65,204,163,907원)
 - * 지방 공공기관 예정가격 편차율 축소 절감액 : 약 366억 원
(약 7천여 건의 지방 공공기관 자체조달 사업실적 중 예정가격 산정 하한범위율(행자부 기준) -3%를 초과한 1,038건의 -3% 이내 조정된 예정가격 상승분: 41,334,596,828원 * 1,038건의 기존 낙찰율: 88.65% = 36,643,120,088원)

※ 자료출처 : 2015년 자체조달사업 조사표(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제출)^a, 2013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5)^b

- 예정가격 편차율 조정금액을 통한 실질 낙찰금액 상승에 따른 선제적 생산역량 확충 투자관점에서 고용유발 효과:
 약 896명
 * 101.8투자단위(1,018억 원/10억 원)^a × 8.8명(2013년 기준 10억 원 투자 시 제조업 고용유발계수)^b = 895.8명
 ※ 자료출처 : 2015년 자체조달사업 조사표(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제출)^a, 2013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5)^b

② 정성적 기대효과

입찰공고 시 산출내역서 공개 의무화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통일/범위율을 준수하여 최초 산정된 사업예산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증감 및 기타 합리적 사유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감액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에게 동일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율을 설정하고(필요시 국가 및 지방 각각 설정)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면 공공조달에서 대가산정체계 전반의 신뢰성과 타당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7.2.2 [1-2] 계약이행 및 검사검수 후 대금지급 기한의 과도한 지연(30일 이상) 해소를 위한 지급절차 기한 규정의 간주화

(1) 개선방안 개요

향후 검사검수 일정과 대금지급 일정은 간주조항으로 포함시켜, 14일 이내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4일 초과 시 자동으로 검사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동시에 검사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조달업체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5일 이내 대금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수요기관의 입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충분하고도 안정적인 검사검수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면, 현행과 같이 7일의 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공신력 있는 증빙수단을 통해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추가적인 검사검수 기간 부여 등도 검토하여 수요기관의 납품검사 권한 보장 강화 역시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검사검수와 관련된 평가기준, 담당자, 진행 일정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검사검수 설명제의 시행 및 검사검수 기간에 대해서는 간주 조항으로 규정하여, 지정 기한 이후 자동으로 검사검수 완료 및 대금지급 의무화가 필요하다.(조달업체 청구와 상관없이 5일 이내 지급)

(2) 기대효과

① 정량적 기대효과

정량적 기대효과		
- 계약완료 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기업의 금융(이자)비용 절감액 : 약 574억 원 * $[64,340,811,129,931 \text{원}(2015\text{년 국가계약법령 적용 중앙공공기관 조달 실적}) \times 10.35\%(2015\text{년 중앙공공기관 자체 조달사업 실적 중 5일 이상 대금지급 지연 입찰건수 비중}) \times 6.03\%(2015\text{년 말 기준 기업 평균 신용대출 이자율 평균})] / 12\text{개월(평균 초과일수 10.84일을 적용하여 한 달 30일의 1/3 수준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한 달 30일을 이자 부과기간으로 설정)} = 33,462,851,609\text{원}$ * $[46,042,202,977,506 \text{원}(2015\text{년 지방계약법령 적용 지방공공기관 조달 실적}) \times 33.47\%(2015\text{년 중앙공공기관 자체 조달사업 실적 중 5일 이상 대금지급 지연 입찰건수 비중}) \times 6.03\%(2015\text{년 말 기준 기업 평균 신용대출 이자율 평균})] / 12\text{개월(평균 초과일수 10.84일을 적용하여 한 달 30일의 1/3 수준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한 달 30일을 이자 부과기간으로 설정)} = 23,945,974,241\text{원}$		
* 2015년 자체조달사업에 한정 한 이자비용 절감액 : 약 69.5억 원 * $646,303,063,191\text{원}(중앙 공공기관 5일 초과 지급 5,041건의 사업실적) \times 6.03\%(기업 평균 신용대출 이자율 추정) / 12\text{개월(평균 초과일수 10.84일을 적용하여 한 달 30일의 1/3 수준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한 달 30일을 이자 부과기간으로 설정)} = 3,247,672,893\text{원}$ * $736,259,943,015\text{원}(지방 공공기관 5일 초과 지급 2,225건의 사업실적) \times 6.03\%(기업 평균 신용대출 이자율 추정) / 12\text{개월(평균 초과일수 10.84일을 적용하여 한 달 30일의 1/3 수준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한 달 30일을 이자 부과기간으로 설정)} = 3,699,706,214\text{원}$		
구분	중앙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건(비율)	5,041건(10.35%)	2,225건(33.47%)
사업규모	646,303,063,191(약 6천 4백억 원)	736,259,943,015(약 7천 3백억 원)
평균 지급일수	12.35일	9.33일
※ 자료출처 : 2015년 자체조달사업 조사표(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제출)와 시중 6대 은행별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분석자료 (전국은행연합회)		

② 정성적 기대효과

계약완료 시점과 별개로 검사검수 14일 완료시점, 검사검수 후 조달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이 5일 이내라는 기한 규정과 별개로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체상금부과 및 부정당제재와 같은 처분이 없이 계약대금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계약 실무에서 일부 수요기관 담당자에 의한 검사검수 및 업체 대금지급 신청 요건을 편의적으로 적용하여 부당한 추가 납품 및 과업 수행을 요구하고 신속한 계약대금 회수를 위해 조달업체가 이를 부당하게 수용해야 하는 문제점 해소가 가능하다. 또한, 계약완료와 동시에 대금이 지급

되도록 함으로써 재무적 안정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완화에 기여가 예상된다.

7.2.3 [1-3] 입찰 공고 시 최소 입찰공고 기간 위반 (최소 5일) 예방 및 수의계약의 입찰 공고(업무일 기준 3일 이상) 의무화

(1) 개선방안 개요

산출내역서와 관련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입찰에 책정된 예산의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사전규격공개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책정 근거인 발주기관에 의한 산출내역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 검증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단, 모든 입찰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고시금액 이상 일반용역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별도의 대가산정기준 및 표준품셈 등이 있는 용역 등에 우선 적용하여 과업의 범위 및 수준에 따라 안정적 이행이 가능한 적정대가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 사업예산 이후 예정가격 결정단계에서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현재와 같이 총액기준 감액 비율이 아닌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원가비목별로 감액비율을 제시하고 해당 비목이 감액된 경우 과업내용도 비례 조정이 필요하다.

(2) 기대효과

① 정량적 기대효과

현재 수의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기재부 계약예규 및 행자부 예규 상 안내공고만을 규정하고 있어, 나라장터 등을 통해 일반공고와 같은 입찰공고의 성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수의계약 중 2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인 경우, 사실상 경쟁에 준하는 공식적인 입찰공고가 일정 기간 이상 이루어진다면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실질적인 참여기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안내공고 기준을 최소 3일(기재부 및 행자부 예규)에서 최대 5일(행자부 예규)까지 설정된 기간을 업무일 기준 3일로 통일하여 수의계약에 대한 입찰공고 의무화를 시행하면 실제로 휴일을 포함한 5일 이상의 공고기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거나 견적수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등 사실 상 경쟁입찰에 준하는 수의계약 건이 늘어나고 소규모 입찰에서 창업초기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입찰 참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량적 기대효과

- 수의계약 입찰공고 의무화를 통한 경쟁입찰 확대 금액 : 약 1,978억 원
 - * 157,754건(2015년 말 기준 국가계약법령 적용 중앙공공기관 수의계약 건수) × 53.19%(2015년 자체조달사업 중앙공공기관 실적 중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 비중) × 33.12%(2015년 자체조달사업 중앙공공기관 실적 중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 중 3일미만 수의계약 공고 비중) × 33,263,602원(2015년 자체조달사업 중앙공공기관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평균 금액) × 11.2%(2015년 자체조달사업 중 일반경쟁입찰 비중) = 103,535,192,850원
 - * 1,205,621건(2015년 말 기준 지방계약법령 적용 지방공공기관 수의계약 건수) × 59.25%(2015년 자체조달사업 지방공공기관 실적 중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 비중) × 4.89%(2015년 자체조달사업 중앙공공기관 실적 중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 중 3일미만 수의계약 공고 비중) × 20,455,432원(2015년 말 기준 지방계약법령 적용 지방공공기관 수의계약 평균 금액) × 13.19%(2015년 자체조달사업 중 일반경쟁입찰 비중) = 94,245,683,685원

※ 자료출처 : 조달통계(조달청, 2015.12)^a, 2015년 자체조달사업 조사표(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제출) 분석(5일 미만 입찰공고 입찰건수)^b, 2015년 임금동향과 2016년 임금전망(월간 노동리뷰, 2016.4.)^c

② 정성적 기대효과

본 입찰공고 이전 최소 5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에서 5일 정도의 여유기간 확보를 통해 입찰참가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5일 이상의 기간 부여가 아닌 전담기관에 의한 검토절차 필수화 및 의견반영 의무화로 사실상 추가 공고기간 실효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11월 말을 기준 국가(2016년 7월 현재 시행 중) 및 지방계약법령(시행 예정)을 적용받는 1억 원 이상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사전규격공개가 의무화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물품 및 용역 입찰이 이루어지는 1억 원 미만 구간과 지명 및 경쟁입찰 등에서 사전규격공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사전규격공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조달업체수가 전체 조달업체로 확대될 수 있다. 동시에 주요 입찰 건에 대하여 사전규격공개에 대한 검토 분야별 전문기관(전문가)을 통한 검토를 필수화함으로써 제도 시행 목적과 취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2.4 [1-4] 사업규모대비 과도한 실적요구 관행 금지(물품 및 용역분야 고시금액 미만 실적제한 폐지)

(1) 개선방안 개요

사전규격 공개 대상 금액의 하향조정 또는 전면적인 하향조정이 어려운 경우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입찰과 제조물품 입찰에 한해서만 전면적인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토록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사전규격공개를 하더라도 조달업체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

규격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하여 사전규격공개 내용에 대해 적법성,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의무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경우 ICT 용역에 대한 분리발주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 준수여부 등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단, 전면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고시금액 이상 제조물품 등으로 한정하여 의무 검토를 시행한 후 전면적인 확대 시행을 고려해볼만 하다.

또한, 현행 법령 하에서는 사전규격공개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의무적으로 본 입찰공고에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의견이 개진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의무적 답변 등록 및 해당 답변에 따른 의견별 수용 및 불수용 이유를 제시하고 수용한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

(2) 기대효과

① 정량적 기대효과

물품 및 용역분야의 제한경쟁입찰 중 상당수가 실적제한 입찰로 인해 평균 70% 내외 수준의 입찰이 고시금액 미만 입찰인 점을 감안할 경우 물품 및 용역업체로 신규 등록하는 업체들의 대부분이 실적을 제한하는 수행실적 미보유시에도 입찰에 참가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창업초기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와 초기 물품 및 공급역량 등을 감안할 경우 대다수의 입찰참가가 가능한 추정가격 기준 입찰규모는 고시금액 미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창업초기기업과 신생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고시금액 미만 입찰의 실적제한이 완화되면 실질적으로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참가 제약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²⁾

정량적 기대효과

- 신규 물품 조달업체 입찰참가기회 확대 : 연평균 약 11.21%의 입찰참가기회 확대, 17,006개 신규 등록 기업이 제한 경쟁입찰에 참가 가능
 -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물품 조달업체 평균 증가업체 수 : 17,006개 / 최근 5년간 물품 조달업체 평균 등록업체 수 : 151,760개 = **11.21%**
 - 최근 5년간 중앙조달 내자구매(물품/용역) 기준 제한경쟁비율 43.88% 적용 시 실질 경쟁참가 기회 확대 수준은 약 4.92% 수준 추정
- 신규 용역 조달업체 입찰참가기회 확대 : 연평균 약 10.78%의 입찰참가기회 확대, 11,798개 신규 등록 기업이 제한 경쟁 입찰에 참가 가능
 -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용역 조달업체 평균증가 수 : 11,798개 / 최근 5년간 용역 조달업체 평균 등록업체 수 : 109,422개 = **10.78%**
 - 최근 5년간 중앙조달 내자구매(물품/용역) 기준 제한경쟁비율 43.88% 적용 시 실질 경쟁참가 기회 확대 수준은 약

2) 제한경쟁 사유 중 실적 이외에 기술, 면허, 자격 등에 의한 제한경쟁은 해당 물품 및 용역업 수행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기본 요건으로 실질적인 제한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73% 수준 추정

■ 신규 등록업체의 공급 가능금액: 약 9,299억 원

- 17,006개(2015년 기준 최근 5년간 물품 조달업체 증가 수 평균)^a × 86.5%(2015년 기준 최근 3년간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록기업 비중) × 195,934,947원(2015년 나라장터 등록업체 기준 물품분야 소기업·소상공인 조달업체 평균공급금액)^b × 57.8%(물품구매 고시금액 미만 입찰비율)^c × 43.88%(최근 5년간 나라장터 물품/용역 제한경쟁 입찰비율)^a = 731,012,230,719원
- 11,798개(2015년 기준 최근 5년간 용역 조달업체 증가 수 평균)^a × 86.5%(2015년 기준 최근 3년간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록기업 비중) × 76,506,666원(2015년 나라장터 등록업체 기준 용역분야 소기업·소상공인 조달업체 평균공급금액)^b × 58.05%(일반용역 고시금액 미만 입찰비율)^c × 43.88%(최근 5년간 나라장터 물품/용역 제한경쟁 입찰비율)^a = 198,880,690,440원

※ 자료출처 : “조달통계” 분석자료(조달청, 2015.12)^a, 공공조달통계 분석자료(나라장터 온통 조달시스템)^b, 2015년 자체조달사업 분석 추정치(한국조달연구원, 2016)^c

■ 신규 등록업체의 공급 가능금액 기반 고용유발 효과 : 약 8,183명

- 930투자단위(929,892,921,159원 / 1,000,000,000원)^a × 8.8명(2013년 기준 10억 원 투자 시 제조업 고용유발계수)^b = 8,183.12명

※ 자료출처 : 2015년 자체조달사업 조사표(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제출)^a, 2013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5)^b

② 정성적 기대효과

현행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체계 하에서도 물품 및 용역분야의 경우 특수한 공법, 기술 및 지식 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한 실적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는 선제적으로 예방 가능하다. 전체 입찰 건의 약 70% 정도로 추정되는 고시금액 미만 입찰 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창업초기기업과 신생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입찰 참가 기회를 제약하는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³⁾

7.2.5 [2-1] 선금 지급 신청/정산 서류 부담을 완화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1) 개선방안 개요

기본적으로 현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에 따른 선금지급 규정을 현재와 같이 업체의 신청에 의해 수요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선택적 조항에서 원칙적으로 지급하고, 조달업체가 지급 예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선금에 대한 최소한의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현재도 적용되고 있는 국가 및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과 농협(중앙회 포함), 수협(중앙회 포함), 임협(중앙회 포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실제

3) 보도자료 ‘10억 원 당 고용유발 계수’ 참조

금전적 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각각의 조합 등에 속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각서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현행 보증증권 형태의 채권 확보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기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재부 및 행자부 계약예규 상의 선금지급 최대 비율과 조달대상 및 금액별 의무지급비율을 현재보다 10~20% 포인트 하향 설정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2) 기대효과

① 정량적 기대효과

선금지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선금신청을 주저하는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선금보증증권 발급을 위한 수수료와 선금신청을 위한 선금신청서 및 계약대금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선금사용내역서 또는 정산서가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안이다. 특히, 선금사용 내역서에는 물품매입원 및 단가 등이 모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조달업체의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노출될 수 있어 다수의 업체들이 선금신청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계약 이행을 초기, 준비자금 수준으로 판단되는 계약대금의 약 30% 정도의 선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정산내역서 제출 요건을 삭제한다면, 선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해당 선금액 만큼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수요 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 추론의 근거는 시중 일반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선금 의무화에 준하는 개선방안 시행으로 대출수요 감소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이행에 필요한 필수자금을 계약금액의 30% 수준의 선금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2015년 자체조달사업에서 선금 미지급 계약 건 비중인 61.6% 계약에서 선금지급을 통한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량적 기대효과

- 선금지급 의무화를 통한 중기 신용대출 이자 절감액 : 약 1,538억 원

* $55,191,507,053,719\text{원}(2015\text{년 공공조달 실적 중 선금지급 대상 규모를 } 50\% \text{로 추정})^a \times 30\%(\text{선금 의무화에 준하는 선금지급율}) \times 61.6\%(\text{선금지급 의무화 통한 선금신청 확대 예상 계약 건수 비중, 2015년 공공기관 자체조달사업 조사결과 선금 미지급 계약 건수 기준}) \times 6.03\%(2015\text{년말 기준 시중 6대 은행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 평균})^b \times 25\%(\text{평균 대출기간을 연간 3개월/12개월}) = 153,755,811,841\text{원}$

※ 자료출처 : 공공조달통계 분석자료(나라장터 온통조달시스템)^a, 2015년 자체조달사업 조사표(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제출)^b

- 선금지급 의무화 통한 선제적 생산역량 확충 투자관점에서 고용유발 효과 : 1,353명

* $153.8\text{투자단위}(153,755,811,841\text{원} / 1,000,000,000\text{원})^a \times 8.8\text{명}(2013\text{년 기준 } 10\text{억 원 투자 시 제조업고용유발 계수})^b = 1353.44\text{명}$

※ 자료출처 : 2015년 자체조달사업 조사표(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제출)^a, 2013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5)^b

② 정성적 기대효과

실제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가 없거나 담보가 있어도 신용도가 충분치 않을 경우 비교적 이자율이 낮은 시중 일반은행(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선금지급 의무화를 통해서 간접적 금융지원 효과 발현 예상된다.

7.2.6 [2-2] 사전규격공개 기준 확대(5천만 원 미만 포함) 및 검토의견 기재 의무화

(1) 개선방안 개요

사전규격 공개 대상 금액의 하향조정 또는 전면적인 하향조정이 어려운 경우,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입찰과 제조물품 입찰에 한해서만 전면적인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토록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사전규격공개를 하더라도 조달업체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규격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하여 사전규격공개 내용에 대해 적법성,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심사 후 의무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 제도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이와 유사한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경우 ICT 용역에 대한 분리발주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 준수여부 등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단, 전면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고시금액 이상 제조물품 등으로 한정하여 의무 검토를 시행한 후 전면적인 확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법령 하에서는 사전규격공개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의무적으로 본 입찰공고에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의견이 개진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의무적 답변 등록 및 해당 답변에 따른 의견별 수용 및 불수용 이유를 제시하고 수용한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

(2) 기대효과

① 정량적 기대효과

현행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는 5천만 원 이상의 물품, 용역에 대해서만 시행 또는 시행예정이나 이를 5천만 원 미만 입찰 건까지 확대하고, 동시에 입찰공고 이후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 및 의견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

다.

현재 시행 중인(국가계약법령 적용 기관) 또는 시행 예정인(지방계약법 적용 기관) 사전규격 공개 확대는 물품 및 용역의 5천만 원 이상 입찰 건에 대하여 단순히 구매규격만을 공개하고,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장치가 없다. 그러나 계약서비스 품질관리 관점에서 사전규격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구매규격 이외에도 입찰공고문, 낙찰자선정 기준 및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입찰건의 사전규격공개에 대하여 검토 전문기관 또는 분야별 전문가 풀을 운영하여 해당 입찰건의 법령 및 규정 적합성, 규격의 적정성, 품질 및 안전성 충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만약 전면적 시행이 어렵다면 제한 및 지명경쟁 입찰 건을 중심으로 제한경쟁 사유 적용의 적합성, 규격 설정의 공정성 등을 검토하여 경쟁제한적 환경조성 예방 및 특정 규격 편향 및 품질과 안전성 저해 가능성이 높은 입찰건의 선제적인 계약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계약을 하나의 계약 서비스로 보았을 때 공공계약 서비스의 품질비용을 절감시키는 선제적인 예방 및 평가비용 관점에서 사전규격공개제도 활용한다면 상·하위 계약규정과 불합치로 인한 소송, 규격 “알박기”로 인한 경쟁제한, 국민의 건강, 보건, 환경, 위생 등과 관련한 민감한 조달대상 물자의 품질 및 안전 기준 적용 및 확인 미흡으로 인한 공공계약서비스 품질을 극적으로 절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규격공개 기간을 최소 5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기간을 실질적인 의견제시 및 준비기간으로 활용한다면 개별 입찰 건에서 조달업체는 최소 5일 이상의 추가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기간 증가효과는 공공조달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입찰 관련 추가적으로 5일 이상 업무 기간을 확보하는 효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⁴⁾

정량적 기대효과

- 사전규격공개 실효성 강화를 통해 제한경쟁 사유 등을 검토(특정규격 명시 등의 적정성 등)하여 일반경쟁 전환을 통한 시장참가 기회 확대 효과 : **약 1,839억 원**

* 51,994,504,895,632원(2015년 공공조달 실적 중 제한경쟁 실적) × 13.3%(실적 및 기타 사유 등으로 특정 규격 및 실적 명시 가능 실적 비율) × 2.66%(정밀한 사전규격검토를 통한 제한경쟁의 일반경쟁전환 또는 제한 사유의 적정성 향상 비율, 기존 실적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제한경쟁 비율 중 20% 수준의 개선 목표 설정) = **183,946,159,420원**

※ 자료출처 : 조달통계(조달청, 2015.12)^a, 2015년 임금동향과 2016년 임금전망(월간 노동리뷰, 2016.4.)^b

4) 5일의 준비기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는 5일의 시간을 기회비용을 소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사전규격공개확대 강화 및 의견 개선 의무화를 통한 공공계약 서비스 품질실패비용 절감 규모 : 15.8조 원
 * 41,361,081,006,664원(2015년 물품계약 공급금액)*30%(서비스 기업의 매출액 대비 품질비용 비율) = 12,408,324,301,999원
 * 19,942,675,370,685(2015년 용역계약 공급금액)*30%(서비스 기업의 매출액 대비 품질비용 비율) = 5,982,802,611,205원

구분	2015년 조달대상별 공급실적(원)	품질비용(원)
물품	41,361,081,006,664	12,408,324,301,999
용역	19,942,675,370,685	5,982,802,611,205
합계	61,303,756,377,349	18,391,126,913,204

구분	품질비용(원)	품질비용 구분	금액(원)
물품	12,408,324,301,999	예방비용	1,488,998,916,240
		평가비용	248,166,486,040
		실패비용(품질비용)	10,671,158,899,719
용역	5,982,802,611,205	예방비용	717,936,313,345
		평가비용	119,656,052,224
		실패비용	5,145,210,245,637
합계	18,391,126,913,204	예방비용	2,206,935,229,585
		평가비용	367,822,538,264
		실패비용	15,816,369,145,356

② 정성적 기대효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적제한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더라도 실제 입찰공고 상에서 쉽게 식별되지 않는 구매요구조건 또는 규격항목과 기준 설정에 따라 경쟁력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실효성 있게 검토하여 숨어있는 경쟁 제한적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 2016년 11월 말을 기준 국가(2016년 7월 현재 시행 중) 및 지방계약법령(시행 예정)을 적용받는 1억 원 이상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사전규격공개가 의무화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물품 및 용역 입찰이 이루어지는 1억 원 미만 구간과 지명 및 경쟁입찰 등에서 사전규격공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사전규격공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조달업체수가 전체 조달업체로 확대될 수 있다. 동시에 주요 입찰 건에 대하여 사전규격공개에 대한 검토 분야별 전문기관(전문가)을 통한 검토를 필수화함으로써 제도 시행 목적과 취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

7.2.7 [2-3]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한 기본가점 시행

(1) 개선방안 개요

현재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실적 평가(5점 배점) 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2점, 창업초기기업

업(5년 이내) 3점의 기본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 실적평가 시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는 일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창업초기기업 인정을 2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사실상 실효성이 낮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실적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창업초기기업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기본 가점 부여방안을 시행하여 낙찰기회 증대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2) 기대효과

① 정량적 기대효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소기업 등에 대한 실적평가 기본가점을 2~3점 부여할 경우, 대부분의 물품구매적격심사에서 적격통과점수 평균 미달율이 2점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소기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의 적격통과점수 미달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것으로 판단된다. 적격통과점수를 충족하면 적격심사의 특성상 적격통과점수 획득이 가능한 가장 낮은 가격점수에 대응하는 가격으로 투찰이 가능하므로 적격심사 1순위 자 선정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적격심사점수 1점은 대략 투찰율을 0.5% 수준에서 변동시키므로 실적평가 기본가점 2점을 적용할 경우 약 1% 수준의 낙찰금액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량적 기대효과

-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기업 실적평가 가점부여를 통한 낙찰금액 증가분 : **약 365억 원**
 $\ast 41,361,081,006,664(2015\text{년 공공조달 물품구매 실적}) \times 10.2\%(\text{물품구매 입찰 중 적격심사 비중 추정비율}) \times 1\%(\text{기본점수 1점당 투찰율 0.5\% 상승, 소기업 및 소상공인 2점 부여 시 상승분}) \times 86.5\%(\text{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율}) = 36,492,881,772\text{원}$

※ 자료출처 : 공공조달통계 분석자료(나라장터 온통조달시스템)^a, 2015년 자체조달사업 조사표(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제출)^b

-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적격심사 실적평가 차등적 가점 시행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명) : **321명**
 $\ast 36.5\text{투자단위}(36,492,881,772\text{원} / 1,000,000,000\text{원})^a \times 8.8\text{명}(2013\text{년 기준 } 10\text{억 원 투자 시 제조업고용유발 계수})^b = 321.137\text{명}$

※ 자료출처 : 2015년 자체조달사업 조사표(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제출)^a, 2013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5)^b

② 정성적 기대효과

창업초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납품실적 확보가 여의치 않아 사실상 납품실적 평가여부가 결정적인 진입장벽적 요소로 작용했던 문제점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적격심사가 가격평가 체계상 1순위 심사대상자로 선정 가능성 높은 낙찰하한을 이상 최적 투찰 가능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7.2.8 [3-2]부당한 감액계약 예방 위한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제작/활용

(1) 개선방안 개요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 조달대상별 과업(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분쟁조정, 판례, 유권해석, 질의회신 사례 등을 조사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유사속성을 보유한 과업변경 및 대가조정 현안에 대한 표준조정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계약일반 또는 특수조건에서 규정하는 과업(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항목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참조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화해야 한다.

(2) 기대효과

① 정량적 기대효과

대가조정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과업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불확실성 완화되고 설계단계에서 과업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면 현행 대비 최소 2% 포인트 이상의 감액을 하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량적 기대효과

- 과업(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 감액규모 조정 시(2% 이내 조정) 계약금액의 증액 규모 : 약 145억 원
- * 중앙 공공기관: 533,421,160,322원(감액조정 대상 입찰건 사업규모)^a × 3%(평균 감액을 추정치)^b - 533,421,160,322원
(감액조정 대상 입찰건의 사업규모) × 1(평균 감액을 조정 목표치) = 107억 원
- * 지방 공공기관: 190,767,841,712원(감액조정 대상 입찰건 사업규모)^a × 3%(평균 감액을 추정치)^b - 190,767,841,712원
(감액조정 대상 입찰건 사업규모) × 1(평균 감액을 조정 목표치) = 38억 원

구분	중앙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건(비율)	1,286건(2.64%)	554건(8.33%)
사업규모	533,421,160,322(약 5,300억 원)	190,767,841,712(약 1,900억 원)

※ 자료출처 : 2015년 자체조달사업 분석 추정치(한국조달연구원, 2016)^a, 내자구매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자료(한국조달연구원, 2015)^b

- 부당한 감액계약 예방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제작/활용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명) : 127명
- * 투자단위(14,483,780,040.68원 / 1,000,000,000원)^a × 8.8명(2013년 기준 10억 원 투자 시 제조업고용유발 계수)^b = 127.6명

※ 자료출처 : 2015년 자체조달사업 조사표(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제출)^a, 2013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5)^b

② 정성적 기대효과

과업(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특정 사안이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 과업변경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또는 질의회신이 계약이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유사한 속성 및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전체 공공기관이 판단기준과 절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 공유가 가능하다. 또, 과업(설계)변경과 대가조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모두 계약이행 및 대가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소지 해소 가능하다.

7.3 중소기업 조달건의 과제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7.3.1 직접생산확인기준 제정 등 시장진입 통합지원을 통한 컨설팅 비용 절감

(1) 개선방안 개요

공공조달 시장진입 단계에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물품의 등록과 공급을 위해서는 물품목록화,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이 필요하나, 새로운 물품인 경우 해당 과정에서 별도의 물품목록화가 어렵거나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입찰참가자격획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물품목록화, 직접생산확인기준을 포함한 이후 소요되는 규격서 작성 및 가격결정 과정 등에서 중소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진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기대효과

① 정량적 기대효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위한 물품목록화, 제조 또는 공급물품의 결정, 직접생산확인기준(제조물품의 경우), 제품규격(MAS 물품), 가격검증(MAS, 우수제품 등) 과정이 최초 진입에서 계약을 위해 일차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신생 및 영세한 중소기업체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시간 및 정보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조달 진입과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하게 된다면, 업체들이 지불

하는 컨설팅 비용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한 MAS 및 우수제품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여 연간 약 576억 원의 중소기업 조달시장 진입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량적 기대효과

- 전체 공공조달 내자구매 시장 진입 컨설팅 비용 절약 : 약 576억 원

* 내자구매 : 28,804개 업체(2015년말 기준 최근 5년간 물품 및 용역 연평균 신규 등록 업체)^a × 2,000,000원(공공조달 평균 컨설팅 비용)^b = 57,608,000,000원

※ 자료출처 : 조달통계(2015.12) 분석^a, 한국조달연구원 자체분석 자료(MAS기준 평균 컨설팅 비용)^b

② 정성적 기대효과

공공조달 초기 진입단계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물품등록, 직접생산확인기준 충족, 물품 규격서 작성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조달업체의 시장진입을 위한 거래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 또, 한 번의 지원 요청으로 필요한 모든 절차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7.3.2 제조 및 공급 물품의 분류기준 확립 및 입찰 시 준수 의무화

(1) 개선방안 개요

제조 및 공급물품 판단기준은 명확히 수립하여 사전에 분류하고, 수요기관은 발주 시 해당 기준에 따라 제조 및 공급물품을 준수하여 입찰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 검사 설비 및 고용 등의 투자비용 등을 보호한다. 제조 물품을 공급으로 전환할 경우 제조를 위한 직접생산확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고정비용을 투자한 기업과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여 공급함으로써 제조 역량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하는 유자격 업체에게는 불이익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공급물품을 제조물품으로 전환하여 입찰을 진행할 경우, 단기간 제조기준 충족이 어려운 다수의 공급업체들이 입찰 참가를 제한당하는 진입장벽 발생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후적 혼란과 문제점 예방을 위해 제조 및 공급 물품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2) 기대효과

① 정량적 기대효과

제조 및 공급업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조역량을 갖춘 업체들에게 공급물품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면 연평균 약 4,832억 원의 설비투자 비용에 투자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설비투자 비용을 보호함으로써 해당 설비와 관련된 생산인력의 고용의 안정성과 질적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량적 기대효과	
- 직접생산확인기준 요건을 설비투자비용 보호 규모: 약 2,431억 원 * $6,332,861,273,000\text{원}(2014\text{년 말 기준 국내 중소기업체의 총 설비투자 비용})^a \times 10.43\%(2014\text{년 말 기준 중소기업체 국내총산액 } 7,482,101\text{억 원 대비 } 2014\text{년 중소기업 공공구매액 } 780,290\text{억 원의 비중})^b \times 36.8\%(2014\text{년 말 기준 } 5\text{인 이상 전체 중소기업체 중 설비투자 한 업체 비중})^a = 243,070,414,525\text{원}$	
※ 자료출처 :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stat2.smba.go.kr) ^a , 한국조달연구원 자체분석 자료 ^b	
- 투자된 설비보호를 통해 관련 고용의 안정성과 질적 수준 향상 인원: 약 2,139명 * $243.1\text{투자단위}(243,070,414,525\text{원} / 1,000,000,000\text{원}) \times 8.8\text{명}(2013\text{년 기준 } 10\text{억 원 투자 시 제조업고용 유발계수})^c = 2139.02\text{명}$	
※ 자료출처 : 2013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5) ^c	

② 정성적 기대효과

수요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충분한 경쟁이 가능한 공급물품이 제조물품으로, 반대로, 전문적인 기술과 생산기법이 요구되는 제조물품을 공급물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규격 알박기’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설비투자비용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기존 고용의 질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물품의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관된 제조 및 공급 물품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안정성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3.3 입찰 공고 시 기초금액 및 낙찰하한율 기재 및 배정예산 대비 기초금액 감액 시 감액 근거 및 기준 제시

(1) 개선방안 개요

조달업체들은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질 경우,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 투찰을 위한 기준정보인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율을 명확히 알아야 원활한 가격투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전자입찰 시, 배정예산, 기초금액 등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낙찰하한율의 경우는 적격심사 가격 산식에 따라 결정됨으로 별도로 공지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초금액의 경우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율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준가격이나 계약

실무에서 배정예산액에서 기초금액을 설정하는 경우 통상 2~5%의 감액을 통하여 입찰 및 평가 소요 비용을 충당하거나 예산절감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순히 기초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닌 배정예산, 기초금액 입력을 의무화하고 배정예산과 기초금액 간 감액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감액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밝히도록 함으로써 수요기관이 자의적으로 배정된 예산에서 대가를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

(2) 기대효과

① 정량적 기대효과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은 수요기관에서 통상적으로 2~5%(평균 2.5% 내외 추정) 정도를 배정예산에서 감액하여 책정되고 있다. 따라서 최종 배정예산 대비 95~98% 수준에서 기초금액이 설정되고 해당 금액에서 $\pm 2\% \sim \pm 3\%$ 범위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론적으로 배정예산 대비 최대 8~10% 정도 감액된 금액이 낙찰금액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를 전체 공공조달 실적에 적용하여 통상적인 기초금액 감액 수준을 1~3%(평균 1.5% 내외 추정) 정도로 평균 1% 정도만 감액율을 감소시키면 개별 입찰건의 대가보장 기준을 1% 정도 상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량적 기대효과

- 배정예산 대비 기초금액 설정 시 감액을 축소 통한 낙찰금액 증가분 : 약 4,945억 원

* $110,383,014,107,437\text{원}(2015\text{년 공공조달 실적})^a \times 0.5\%(\text{개선방안 적용 시 축소 예상되는 기초금액 감액율, 평균 } 2.5\% \text{ 감액율 적용 시 최대 축소 가능수준인 감액율 평균 약 } 2.5\% \text{의 } 20\% \text{ 수준 개선 추정})^b$ *기초금액 미공개율 =

551,915,070,537원(예정가격 작성 기준인 기초금액 증액분)

* $551,915,070,537\text{원} \times 89.6\%(2015\text{년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자체조달사업 평균 낙찰율})^c = 494,515,903,201\text{원}$

※ 자료출처 : 공공조달통계 분석자료(나라장터 온통조달시스템)^a, 2015년 자체조달사업 분석 추정치(한국조달연구원, 2016)^b 2015년 자체조달사업 조사표 분석자료(한국조달연구원, 2016)^c

② 정성적 기대효과

배정예산에서 기초금액 설정 시, 감액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신뢰성 및 공공부문 대가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적격심사 입찰 등에서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율을 명확히 인지한 상황에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낙찰하한율 미만에서 투자 할 가능성을 낮춰 입찰참가기회를 보장하고, 복수예비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 상승에 따라 예정가격 수준 역시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실질 낙찰율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7.3.4 공공조달 제안 시 전자적 제안서 제출

(1) 개선방안 개요

현재 시설공사 분야의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제안서 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 등의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제안서 작성에는 제안의 핵심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유무형의 기술, 지식 및 정보와 인력 투입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과 실제 물리적인 제안서를 작성하는 인쇄, 제본 등의 직접적 비용이 발생한다. 제안 내용의 산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입찰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적으로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의견도 존재하는 만큼 개별 입찰건별로 제안서 보상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은 예산상의 제약까지 고려할 경우 즉시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제안의 내용을 유형의 제안서로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는 경우 전자적 수단인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게 되면 인쇄 및 제본 비용 등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 제안서 제출이 필요한 입찰에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시행이 필요하다.

(2) 기대효과

① 정량적 기대효과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은 수요기관에서 통상적으로 2~5%(평균 2.5% 내외 추정) 정도를 배정예산에서 전자매체 이용으로 전환하여 ICT 및 기술용역 입찰 건에서 제안서 작성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 별도의 제안서 보상 규정이 있는 시설공사 부문 이외에 물품 및 용역 분야 중 특히 일반용역 중 ICT용역 및 기술용역 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분야 입찰에서 제안서 제출을 직접 제출방식이 아닌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 인쇄, 제본 등의 직접 준비 비용의 절감 예상된다.

한편 제안서 작성비용과 별도로 해당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1명의 인원이 최소 만나절 이상 출장을 통해 발주기관을 방문해야 하므로 각종 출장비용도 마찬가지로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량적 기대효과

- 제안서의 전자적 수단(디지털파일 형태) 제출 활성화로 제안서 작성 비용 절감액 : **약 1,252억 원**
 - * 기술용역 : 8,498건(2015년도 기술용역 계약건수의 약 15%, 협상계약 적용 비율 추정) $a \times 1,580,000$ 원(2015년 중소기업 공공조달 실태조사 중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 평균금액) $b \times 6$ 개 업체(2015년 기준 최근 3년간 기술용역 중앙조달 기준 평균 입찰참가업체 수 18.85명의 약 30% 적용) $a = 80,561,040,000$ 원
 - * ICT용역 : 7,066건(2015년 IT용역 계약건수 추정치, 공공부문 정보화예산 약 3.8조원 기준 추정) $a \times 1,580,000$ 원(2015년 중소기업 공공조달 실태조사 중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 평균금액) $b \times 4$ 개 업체 (2015년 기준 최근 3년 간 ICT용역 중앙조달 기준 평균 입찰 참가업체 수) $a = 44,657,120,000$ 원
- 제안서의 전자적 수단 제출 활성화로 제안서 제출 여비 절감액 : **약 48억 원**
 - * 기술용역 : 8,498건(2015년도 기술용역 계약건수의 약 15%, 협상계약 적용 비율 추정) $\times 6$ 만원(공무원여비규정 중 1일 기준 각각 일비 20,000원, 식비 20,000원 기준과 동일 반영, 교통비 20,000원 추정) $\times 6$ 개 업체(2015년 기준 최근 3년간 기술용역 중앙조달 기준 평균 입찰참가업체 수 18.85명의 약 30% 적용)^a = **3,059,280,000원**
 - * ICT용역 : 7,066건(2015년 IT용역 계약건수 추정치, 공공부문 정보화예산 약 3.8조원 기준 추정)^a $\times 6$ 만원(공무원여비규정 중 1일 기준 각각 일비 20,000원, 식비 20,000원 기준과 동일 반영, 교통비 20,000원 추정) $\times 4$ 개 업체 (2015년 기준 최근 3년간 ICT용역 중앙조달 기준 평균 입찰 참가업체 수)^a = **1,695,840,000원**

※ 자료출처 : 2012년~2015년 일반 및 기술용역 계약 실적자료 분석(나라장터 온통조달시스템)^a, 중소기업음부즈만 지원단^b

- 공공조달 제안서 작성비용 절감을 위한 전자적 수단 제출을 통해 기존 고용의 유지 및 질적 향상효과: **약 1,101명**
 - * 125.2투자단위(54,775,923,427원 / 1,000,000,000원) $\times 8.8$ 명(2013년 기준 10억 원 투자 시 제조업고용 유발계수)^c = **1101.76명**

※ 자료출처 : 2013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5)^c

② 정성적 기대효과

전자입찰 환경이 가속화되는 것과 반대로 제안서 제출이 필요한 다수의 입찰에서는 수요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물리적인 제안서를 제출하는 직접 입찰의 비효율성을 해소시킬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증빙서류 등을 원본과 복사본으로 구분하여 7~10부 이상 인쇄하거나 제본하는 불필요한 노력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전자적 제안서 제출과 연계하여 온라인평가 시행이 연계 되면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및 타당성 향상이 기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7.3.5 고시금액 미만 물품공급 입찰에서 순수 최저가제도 폐지 후 제한적 최저가 도입

(1) 개선방안 개요

현재 고시금액 미만 물품 공급입찰에서만 적용되는 완전한 최저가낙찰제 시행 시 일부 물품의 경우 50% 이하의 과도하게 낮은 저가 낙찰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부실품질의 제품공급과 그로 인한 사용 과정에서의 피해 등이 사회적으로 쟁점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 적용시 과도한 저가투찰이 이루어지 않도록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정상적인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지를 판단하거나 보다 궁극적으로 최저가낙찰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순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물품구매적격심사의 금번 개선방안에 포함되는 낙찰하한율 82.245%를 적용할 경우 적정수준의 공급대가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기대효과

① 정량적 기대효과

현재 고시금액 미만 물품 공급입찰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중인 순수 최저가제도는 최소 대가보장 수준 또는 과도한 저가투찰을 예방할 수 있는 낙찰하한율이 설정되지 않은 완전한 최저가 경쟁을 통한 낙찰자 선정 방법이다. 제조 물품이 아닌 표준화 및 상용화 수준이 높아 품질 및 성능 등이 검증되어 어떤 업체가 공급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므로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은 가격 중심으로 평가하나 실제 업체들이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보장받지 못할 경우 부실한 품질의 제품 등을 납품하거나 다른 입찰을 통해 손실을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격 이외에는 사실상 경쟁요소가 없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도 실적 확보 등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서 입찰에 참가하는 행태적 문제점도 있으므로 가격에 대한 무한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 폐지가 요구된다.

2015년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의 50%미만 입찰 건에 대하여 현재 물품구매적격심사의 개선 낙찰하한율인 84.245%와 50% 미만 입찰건의 낙찰을 편차를 활용하여 최저가를 폐지하고 제한적 최저가제도 도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량적 기대효과

- 순수 최저가제도 폐지 후 제한적 최저가 도입 효과 : **약 547억 원**
 - * 중앙공공기관 : 36,394,716,642원(50%미만 낙찰건 93건의 예정가격 합계)^a × 49.63%(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4.245%에서 93건의 개별 낙찰율을 차감한 편차율의 평균)^a = **17,443,391,267원**
 - * 지방공공기관 : 100,643,704,048원(50%미만 낙찰건 20건의 예정가격 합계)^a × 45.75%(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4.245%에서 20건의 개별 낙찰율을 차감한 편차율의 평균)^a = **37,332,532,160원**

※ 자료출처 : 2015년 자체조달사업 분석(한국조달연구원, 2016)^a

- 투자된 설비보호를 통해 관련 고용의 안정성과 질적 수준 향상 인원: **약 481.36명**
 - * 54.7투자단위(54,775,923,427원 / 1,000,000,000원) × 8.8명(2013년 기준 10억 원 투자 시 제조업고용 유발계수)^c = **481.36명**

※ 자료출처 : 2013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5)^c

② 정성적 기대효과

공공조달 분야의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전한 형태의 최저가 제도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시금액 미만 공급물품 입찰에서 최적가낙찰방법을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공공조달 영역 내에서 순수한 최저가제도 시행을 종료할 수 있다. 또, 과도한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품질, 계약불이행 가능성을 낮추어 양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 받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7.3.6 중소기업 조달건의 과제 공공조달 입찰시 서류제출 간소화

(1) 개선방안 개요

입찰참가 신청 시 불필요하거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은 조달업체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늘려 진입장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일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요구하는 입찰관련 서류(건물등기부등본,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 명부 등)를 요구하여 불필요한 서류발급 및 출력 비용 등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이행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과 같은 필수 서류 이외에 공공기관 장체 양식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달청에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에 업체별 관련 자료를 저장하여 입찰 시 발주기관에서 전자적으로 확인토록 하여 서류제출 부담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2) 기대효과

① 정량적 기대효과

실적증빙 발급 시마다 발급비용이 요구되는 서류와 입찰 시점에서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과거 실적 증빙 등의 경우에는 최초 입찰 시, 등록한 서류를 연간 또는 일정기간 유효성을 부여하여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서류간소화와 함께 발급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정량적 기대효과

- 공공조달 입찰 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서류제출 비용 절감액: 약 1,397억 원

* $[1,752,586\text{건}(2015\text{년 공공조달 총 입찰 건수 중 경쟁계약 건수})^a \times 7,700\text{원(공통서류 22종을 7부씩 출력 가정, 단순 출력비용 50원} \times 154\text{장, 제출서류 원본 1부 구성 기준})}^b \times 2\text{개 업체(경쟁입찰 건으로 최소 2개 업체 경쟁 성립 결과 반영)}^c] + [1,363,955\text{건}(2015\text{년 공공조달 총 입찰 건 수 중 수의계약 건수})^a \times 7,700\text{원(공통서류 22종을 7부씩 출력 가정, 단순 출력비용 50원} \times 154\text{장, 제출서류 원본 1부 구성 기준})}^b \times 1\text{개 업체(수의계약으로 1개 업체만 참가 결과 반영)}^c] + [1,752,586\text{건}(2015\text{년 공공조달 총 입찰 건수 중 경쟁계약 건수})^a \times 21,000\text{원(실적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 발급비용,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1부 3,000원 기준, 7부 제출 가정, 제출서류 원본 1부 구성 기준})}^b \times 2\text{개 업체(최소 입찰참가업체 수 가정)}^c] + [1,363,955\text{건}(2015\text{년 공공조달 총 입찰 건 수 중 수의계약 건수})^a \times 21,000\text{원(실적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 발급비용,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1부 3,000원 기준, 7부 제출 가정, 제출서류 원본 1부 구$

성 기준)^b × 1개 업체(수의계약으로 1개 업체만 참가 결과 반영)^a] = [26,989,824,400원] + [73,608,612,000원] + [10,502,453,500원] + [28,643,055,000] = **139,743,944,900원**

※ 자료출처 : 공공조달통계 분석자료(나라장터 온통조달시스템)^a,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료조사 기반 계산(중소기업옴부즈만, (2016.9)^b

- 입찰 시 서류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액을 통한 선제적 생산역량 확충 투자관점에서 고용유발 효과: **약 1,229명**
 * 139.7투자단위(1,397억 원/10억 원)^a × 8.8명(2013년 기준 10억 원 투자 시 제조업 고용유발계수)^b = **1,229.36명**

※ 자료출처 : 2015년 자체조달사업 조사표(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제출)^a, 2013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5)^b

② 정성적 기대효과

중소기업이 연간 다수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동일한 서류를 단순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찰참가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 또, 공공기관별로 자의적이고 필요성이 낮은 별도의 서류 제출요구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7.3.7 중소기업 조달건의 과제 시설공사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률) 1/2이하로 지체상금 부담 절감

(1) 개선방안 개요

국가·지방 계약법령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물품 1.5/1000, 용역 2.5/1000과 공사 1/1000를 적용하고 있다. 단순 계상율의 크기가 작아 보일 수 있으나, 물품 및 용역 대비 계약금액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 1,000분의 1을 적용할 경우, 연 이자율 기준 36.5%로 민간의 고금리 대부업체의 최대 이자율에 근접하는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계약 지연에 따른 예상 손실의 규모가 클수록 계약업체들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히 계약손실에 따른 실비 변상적 성격이외에 벌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도 함께 포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가지급 지연이 이루어질 경우,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계약 상대방인 조달업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가지급의 지연’과 ‘계약 이행의 지체’ 모두 계약당사자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① 정량적 기대효과

시설공사에 계약 건에 대한 지체상금을 적용을 기존 1/1000 대비 0.5/1000으로 50% 인하하면, 시중 은행 연체이자율을 기준의 최대 18.25%로 실질적으로 계약을 지연한 업체들의 연체이자 부담을 절반 이상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2015년 전체 공공조달 계약실적 중 시설공사 계약은 49,079,257,730,088원으로 이중 지체상금 적용 대상 계약규모는 약 0.5%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량적 기대효과

- 시설공사 지체상금율 1/2인하에 따른 지체상금 절감액 : **약 55억 원**

* 시설공사 공공조달 실적 기준 지체상금율 1/2절감 효과 추정액 : **약 55억 원**

49,079,257,730,088원(2015년 공공조달 실적)^a * 0.5%(지체상금 발생 가능 계약비율, 2015년 자체조달사업 분석결과) * 0.001%(시설공사 평균 지체상금 계상율)^b * 45일(평균 지체일수)^c * 50%(지체상금 계상율에 대한 1/2 감액율) = **5,521,416,495원**

* 전체 공공조달 실적 기준 지체상금율 1/2절감 효과 추정액 : **약 199억 원**

10,383,014,107,437원(2015년 공공조달 실적)^a * 0.5%(지체상금 발생 가능 계약비율, 2015년 자체조달사업 분석결과) * 0.0016%(물품, 용역 및 시설공사 평균 지체상금 계상율)^c * 45일(평균 지체일수)^c * 50%(지체상금 계상율에 대한 1/2 감액율) = **19,868,942,539원**

※ 자료출처 : 공공조달통계 분석자료(나라장터 온통조달시스템)^a, 국가계약법 시행령(법제처 법령정보센터, 2016)^b, 2015년 자체조달사업 분석 자료(한국조달연구원, 2016)^c

- 시설공사 지체상금율 1/2인하에 따른 지체상금 절감액을 통한 기존 고용 보호 효과 : **약 48명**

* 5.5투자단위(55억 원/10억 원)^a × 8.8명(2013년 기준 10억 원 투자 시 제조업 고용유발계수)^b = **48.4명**

※ 자료출처 : 2015년 자체조달사업 조사표(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제출)^a, 2013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5)^b

② 정성적 기대효과

시설공사의 지체상금률을 1/2인하하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인 계약대금과 지연이자와 조달업체의 귀책사유인 계약이행 지체 시 지연이자율의 부당한 차별을 발생시키는 이중징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실제 대규모 입찰에서 해당입찰을 통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기 확보한 수익은 물론 추가적인 손실까지 발생하여 기업경영의 부담을 초해할 가능성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7.4 공공조달 단계별 기대효과

본 절에서는 상기 도출된 14가지의 통합적 개선방안 실행을 통해 전체적인 조달단계별 업무

수행의 최적화 및 직간접적·경제적 유발효과에 대한 정량 및 정성적 기대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7.4.1 입찰이전단계

(1) A-a 공공조달 시장진입 통합지원 체계 마련

① 정량적 기대효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위한 물품목록화, 제조 또는 공급물품 결정, 직접생산확인기준(제조 물품의 경우), 제품규격(MAS 물품), 가격검증(MAS, 우수제품 등) 과정은 공공조달 최초 진입 시 계약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거쳐야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신생 및 영세한 중소기업체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함에 있어 인력, 시간 및 정보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공공조달 진입과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하게 된다면 업체들이 지불하는 컨설팅 비용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으로 MAS 및 우수제품을 기준으로 연간 약 231.36억 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정량적 기대효과

- 공공조달 시장 진입 컨설팅 비용 절약 : 약 231.36억 원

* MAS: 5,568개(2014년말 MAS 계약업체) × 2백만 원(평균 컨설팅 비용) = 약 111.36억 원

* 우수제품: 1,200개(연평균 신청업체 수) × 10백만 원(평균 컨설팅 비용) = 약 120억 원

② 정성적 기대효과

공공조달 시장진입 통합지원 체계 마련은 연구개발을 통한 융·복합 및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상품개발 시 최초 조달업체 등록단계부터 물품목록화, 직접생산확인기준, 규격표준화, 가격검증 단계 등 이후 순차적으로 직면하게 될 생소한 업무절차 및 처리 기간 등 포괄적인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역량 있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체와 유효경쟁력이 충분치 않은 창업초기기업에게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최초 단계부터 그 이후 예상되는 단계까지 쟁점과 현안을 일괄적으로 식별 및 지원하는 원스탑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편의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A-b 제조 및 공급물품 판단기준 명확화

① 정량적 기대효과

제조 및 공급업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조역량을 갖춘 업체들에게 공급물품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면 연평균 약 1,160억 원의 설비투자비용 대비 투자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량적 기대효과

- 직접생산확인기준 요건을 설비투자 비용 보호 규모 : 약 1,160억 원
(3.5조원 × 10%(공공조달 GDP 비중)/123,661개) × 40,981개 업체 = 1,160억 원
- * 2015년 제조 중소기업 설비투자비용 : 약 3조5,000억 원
- * 2014년 말 국내 중소제조업체 수 : 123,661개

② 정성적 기대효과

2016년 7월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40,981개이며 공급업체는 약 174,419개로 제조업체 대비 공급업체가 약 4.25배 많은 수준이다. 2015년 말 기준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보유한 유효업체수가 33,845개임을 고려할 때 약 7천 여 개의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중기간경쟁제품을 중심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물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준수하는 약 4만 여 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제조물품에 대해 공급방식의 조달을 원칙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생산역량을 갖춘 유자격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반대로 제조물품으로 한정되어 공급되어야 하는 물품이나 또는 제조의 필요성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급을 통해 조달을 가능케 함으로써 신생업체의 조달시장 참가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7.4.2 입찰단계

(1) B-a 사전규격 공개 실효성 강화

① 정량적 기대효과

사전규격공개 기간을 최소 5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기간을 실질적인 의견제시 및 준비기간으로 활용한다면 개별 입찰 건에서 조달업체는 최소 5일 이상의 추가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기간 증가효과는 공공조달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에게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5일 이상 업무 기간을 확보하는 효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5일의 준비기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는 5일의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소진하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정량적 기대효과

- 사전규격공개 기간 부여의 실효성 제고 효과(추가준비 기간 확보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 : **약 2,200억 원**
 $\ast 311,971\text{개}(2016\text{년 } 2\text{말 기준 나라장터 등록업체 수}) \times 1\text{인}(조달업체 계약 업무담당자) \times 3,110,283\text{개}(2015\text{년 } 5\text{인 이상 } 300\text{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 \times 22.7\%(5\text{일}/22\text{일, 사전규격 공개 기간}) = \mathbf{2,200\text{억 원}}$

② 정성적 기대효과

본 입찰공고 이전 최소 5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에서 5일 정도의 여유기간 확보를 통한 입찰참가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5일 이상의 기간 부여가 아닌 전담기관에 의한 검토절차 필수화 및 의견반영 의무화로 사실상 추가 공고기간 실효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11월말을 기준 국가(2016년 7월 현재 시행 중) 및 지방계약법령(시행 예정)을 적용받는 1억 원 이상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사전규격공개가 의무화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물품 및 용역 입찰이 이루어지는 1억 원 미만 구간과 지명 및 경쟁입찰 등에서 사전규격공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사전규격공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조달업체수가 전체 조달업체로 확대될 수 있다. 동시에 주요 입찰 건에 대하여 사전규격공개에 대한 검토 분야별 전문기관(전문가)을 통한 검토를 필수화함으로써 제도 시행 목적과 취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B-b 입찰 공고 시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공고 의무화

① 정량적 기대효과

현행 조달청 기준 중앙 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 기준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pm 2\%$ 이며,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행자부 기준 $\pm 3\%$ 수준이나 2015년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의 자체조달 사업에서는 해당 기준의 하한범위율을 초과하는 예정가격 산정사례가 약 11.3천 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중앙공공기관 중 자체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기업 등에서는 $\pm 2\%$ 를 넘어서는 -6% 또는 최대 -8% 의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율을 설정함으로써 부당한 대가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량적 기대효과	
- 복수예비가격 범위 기준 준수에 따른 예정가격 상승액 : 약 1,120억 원	
* 중앙 공공기관 예정가격 편차율 축소 절감액 : 약 716억 원	
(약 4.9만 여건의 중앙 공공기관 자체조달 사업실적 중 예정가격 산정 하한범위율(조달청 기준) -2%를 초과한 10,538건의 -2% 초과한 금액의 합계)	
* 지방 공공기관 예정가격 편차율 축소 절감액 : 약 413억 원	
(약 7천 여 건의 지방 공공기관 자체조달 사업실적 중 예정가격 산정 하한범위율(행자부 기준) -3%를 초과한 810건의 -3% 초과한 금액의 합계)	
- 예정가격 편차율 조정금액을 통한 선제적 생산역량 확충 투자관점에서 고용유발 효과 : 약 985명	
* (1,120억 원/10억 원) × 8.8명(2013년 기준 자영업자 제외 전산업 기준 10억원 당 고용유발 인원) = 985.6명	

② 정성적 기대효과

입찰공고 시 산출내역서 공개 의무화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통일 및 범위율 준수를 통하여 최초 산정된 사업예산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증감 및 기타 합리적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한 감액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에게 동일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율을 설정하고(필요시 국가 및 지방 각각 설정) 이를 준수토록 한다면 공공조달 대가산정 체계 전반의 신뢰성과 타당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B-c 예정가격 편차율 기준 조정 및 준수 의무화(입찰공고 시 산출내역서 공개 의무화 개성방안과 동일)

① 정량적 기대효과

현행 조달청 기준 중앙 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 기준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2%이며,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행자부 기준 ±3% 수준이나 2015년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의 자체조달 사업에서는 해당 기준의 하한범위율을 초과하는 예정가격 산정사례가 약 11.3천 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중앙공공기관 중 자체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기업 등에서는 ±2%를 넘어서는 -6% 또는 최대 -8%의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율을 설정함으로써 부당한 대가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량적 기대효과

- 복수예비가격 범위 기준 준수에 따른 예정가격 상승액 : **약 1,120억 원**
- * 중앙 공공기관 예정가격 편차율 축소 절감액: **약 716억 원**
(약 4.9만 여건의 중앙 공공기관 자체조달 사업실적 중 예정가격 산정 하한범위율(조달청 기준) -2%를 초과한 10,538건의 -2% 초과한 금액의 합계)
- * 지방 공공기관 예정가격 편차율 축소 절감액 : **약 413억 원**
(약 7천 여 건의 지방 공공기관 자체조달 사업실적 중 예정가격 산정 하한범위율(행자부 기준) -3%를 초과한 810건의 -3% 초과한 금액의 합계)
- 예정가격 편차율 조정금액을 통한 선제적 생산역량 확충 투자관점에서 고용유발 효과: **약 985명**
* $(1,120\text{억 원}/10\text{억 원}) \times 8.8\text{명}(2013\text{년 기준 자영업자 제외 전산업 기준 } 10\text{억원 당 고용유발 인원}) = 985.6\text{명}$

② 정성적 기대효과

입찰공고 시 산출내역서 공개 의무화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통일 및 범위율 준수를 통하여 최초 산정된 사업예산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증감 및 기타 합리적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한 감액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에게 동일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율을 설정하고(필요시 국가 및 지방 각각 설정) 이를 준수토록 한다면 공공조달 대가산정 체계 전반의 신뢰성과 타당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7.4.3 평가 및 낙찰단계

(1) C-a 낙찰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기준의 모듈화 기반 단일체계 마련

① 정량적 기대효과

각 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수수료·시험검사비·인건비 등 인증비용을 매년 5,420억 원씩 절감하고,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 시, 3년 누적 1조6,260억 원의 인증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증기간 단축으로 기업이 인증제품을 시장에 조기 출시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 증가는 연간 8,6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 시, 3년 누적 2조5,890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량적 기대효과

- 공공기관 계약관련 직원의 업무비용 절감효과
- 인증비용절감: 2015년 인증규제 개선효과 극대화

② 정성적 기대효과

(2) C-b 실질낙찰율 개선 입찰단계의 예정가격 편차율 조정을 통해 해소 가능

① 정량적 기대효과

현행 조달청 기준 중앙 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배정예산과 동일 추정) 기준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는 $\pm 2\%$ 이며,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행자부 기준 $\pm 3\%$ 수준이나 2015년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의 자체조달 사업에서는 해당 기준의 하한범위를 초과하는 예정가격 산정사례가 약 11.3천 건 발생했다. 특히 중앙공공기관 중 자체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기업 등에서는 $\pm 2\%$ 를 넘어서는 -6% 또는 최대 -8% 의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부당한 대가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량적 기대효과

- 예정가격 상승분에 따른 실질 낙찰금액 증액분 : 약 1,018억 원
 - * 중앙 공공기관 예정가격 편차율 축소에 따른 낙찰율 상승액 : 약 652억 원
(약 4.9만 여건의 중앙 공공기관 자체조달 사업실적 중 예정가격 산정 하한범위율(조달청 기준) -2% 를 초과한 10,538건의 -2% 이내 조정된 예정가격 상승분: 71,613,579,250원 * 10,538건의 기존 낙찰율: 91.05% = 65,204,163,907원)
 - * 지방 공공기관 예정가격 편차율 축소 절감액 : 약 366억 원
(약 7천여 건의 지방 공공기관 자체조달 사업실적 중 예정가격 산정 하한범위율(행자부 기준) -3% 를 초과한 1,038건의 -3% 이내 조정된 예정가격 상승분: 41,334,596,828원 * 1,038건의 기존 낙찰율: 88.65% = 36,643,120,088원)
- 예정가격 편차율 조정금액을 통한 실질 낙찰금액 상승에 따른 선제적 생산역량 확충 투자관점에서 고용유발 효과: 약 896명
 - * (1,018억 원/10억 원) * 8.8명(2013년 기준 자영업자 제외 전산업 기준 10억원 당 고용유발 인원) = 895.8명

자료출처 : 2015년 자체조달사업 조사표(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제출)와 [보도자료](#)(2013년 고용유발 인원)

② 정성적 기대효과(추가분석 예정)

입찰공고 시 산출내역서 공개 의무화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통일/범위율 준수를 통하여 최초 산정된 사업예산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증감 및 기타 합리적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한 감액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 및 지방계약 법령을 적용받는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에게 동일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율을 설정하고(필요 시 국가 및 지방 각각 설정) 이를 준수토록 한다면 공공조달 대가산정체계 전반의 신뢰성과 타당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7.4.4 계약이행단계

(1) D-a 과업(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① 정량적 기대효과

대가조정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과업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설계 단계에서 과업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면 현행 대비 최소 1% 포인트 이상의 감액율을 하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량적 기대효과		
- 과업(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 감액규모 조정 시(2% 이내 조정) 계약금액의 증액 규모 : 약 145억 원 * 중앙 공공기관: (533,421,160,322원(감액조정 대상 입찰 건 사업규모) × 3%(평균 감액율 추정치)) - (533,421,160,322원(감액조정 대상 입찰 건 사업규모) × 2%(평균 감액율 조정 목표치)) = 107억 원 * 지방 공공기관: (190,767,841,712원(감액조정 대상 입찰 건 사업규모) × 3%(평균 감액율 추정치)) - (190,767,841,712원(감액조정 대상 입찰건 사업규모) × 2%(평균 감액율 조정 목표치)) = 38억 원		
구분	중앙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건(비율)	1,286건(2.64%)	554건(8.33%)
사업규모	533,421,160,322 (약 5,300억 원)	190,767,841,712 (약 1,900억 원)

② 정성적 기대효과

과업(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 과업변경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또는 질의회신이 계약이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속성 및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공공기관이 판단기준과 절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업(설계)변경과 대가조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모두 계약이행 및 대가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2) D-b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 운영 강화(부당한 요구에 대한 긴급구제 및 조정 기능 부여)

① 정량적 기대효과

현재 공공조달 관련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판단과 사안의 복잡성이 높은 경우 대응기간이 15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또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낙찰자 선정 및 계약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는 최소 30일~6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불공정 조달센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계약 법령위반 또는 계약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에 기반한 행태적 오류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 및 추가과업 요구 시 입찰 긴급정지 등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면 관련 민원 대응기간을 10일 내외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부당한 과업 요구에 대하여 해당 입찰의 낙찰자선정 또는 계약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준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조달업체 담당자의 업무처리 시간 절감에 따른 효과는 약 4.5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량적 기대효과

* 265인(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별 계약 담당자) × (3,110,283(2015년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 × 54.55%)(단축기간 12일을 월 임금산정 기준일 22일에 대한 비중) = 4.5억 원

② 정성적 기대효과

발주기관의 비공식적인 추가 과업요구, 특히 과업과 관련성이 낮은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즉시적인 조치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민원처리의 대국민 응답성, 신뢰성 및 종합적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불공정 조달센터를 통해 수집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조달유형(추가과업 요구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금지 행위로 규정화하여 불공정 행위의 조기식별 및 선제적 예방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D-c 선금지급 의무화

① 정량적 기대효과

선금지급을 의무화 하려면 실질적으로 조달업체들이 현실적 부담인 선금보증증권 발급을 위한 수수료율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시행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약 637억 원의 보증보험 수수료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정량적 기대효과

- 선금지급의 의무화 및 보증보험료 절감액 : **약 637억 원**
 - * 중앙 공공기관: 약 102억 원(2015년 자체조달 사업실적) × 50%(수해복구 공사 등을 제외한 최대 의무 선금지급율) × 1%(평균 선금보증보험 요율 추정치) = **약 511억 원**
 - * 지방 공공기관: 약 25억원(2015년 자체조달 사업실적) × 50%(수해복구 공사 등을 제외한 최대 의무 선금지급율) × 1%(평균 선금보증보험 요율 추정치) = **약 126억 원**
 - * 선금보증증권 발급 평균 수수료율 추정치: 0.83%(5천만 원 수준) ~ 1.2%(2억 원 수준)

한편 선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해당 선금액 만큼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수요 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량적 기대효과

- 선금지급 의무화를 통한 중기 신용대출 절감액 : **약 4,815억 원**
 - * 21조4천억 원(2015년 중소기업제품 물품구매액 30조5천억 원의 70%, 선금 최대지급 비율) × 45%(시중은행 중소기업의무 대출비율) × 5.0%(2016년 평균 기업신용 대출 금리 추정치)

선금지급 의무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계약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이중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중 은행에서 대출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 5%만큼의 이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추론의 근거는 시중 일반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 45%를 충족하는 은행이 2015년 기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이행에 필요한 필수자금을 계약금액 50%수준의 선금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은행에서 중소기업을 의무적으로 대출해야 하는 비율 45%를 적용하여 해당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받는다면(받을 수 있다면) 설정 이자율만큼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량적 기대효과

- 최근 5년간 공공구매론 이자절감액 : **약 175억 원**
 - * 3,493억 원(2014년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구매론 규모) × 5.0%(2016년 평균 기업 신용대출 금리 추정치) = 약 175억 원
- 선금지급 의무화 통한 선제적 생산역량 확충 투자관점에서 고용유발 효과 : **4,237명**
 - * 제조업 기준 = **최소 154명 ~ 최대 4,237명 고용유발 가능**
 - * 고용유발계수 : **8.8명(2013년 자영업자 제외 전산업 기준)**
 - * 최소고용유발 기준금액(공공구매론 이자 절감액) : **약 175억 원**
 - * 최대 고용유발 기준금액(선금지급 전면 의무화시 이자 절감액) : **약 4,815억 원**

② 정성적 기대효과

실제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가 없거나 담보가 있어도 신용도가 충분치 않을 경우 비교적 이자율이 낮은 시중 일반은행(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으로 선금지급 의무화를 통해 간접적 금융지원 효과가 발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4) D-d 부당특약 검증강화

① 정량적 기대효과

부당한 특약을 축소함으로써 조달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증 단계를 강화할 경우 자체적으로 특수조건 운영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계약서류 검토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량적 기대효과

- * 중앙: 100개 × 1인 × 3백만 원 × 15%(특수조건 등 검토시간)
- * 지방: 145개 × 1인 × 3백만 원 × 15%(특수조건 등 검토시간)

② 정성적 기대효과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별·입찰건별로 제정이 가능한 계약특수조건의 사전검증을 통해 업체들이 공식적으로 부당한 요구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계약금액, 과업변경, 대가 조정(계약금액 조정),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등 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의 계약이행 및 경영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공공계약 최상위 부처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규제적 요인 발생의 선제적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4.5 사후관리단계

(1) E-a 계약결과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① 정량적 기대효과(추가분석 예정)

② 정성적 기대효과(추가분석 예정)

(2) E-b 통합적 계약규정 관리 시스템 구축

① 정량적 기대효과

정량적 기대효과

- 계약담당자 1인 × 공기업 직원 평균 임금 431만원(중소기업 평균임금에서 30% 가산 적용) × 26.4일(연평균 계약규정 관리를 위한 업무 투입시간, 계약실무 이외 행정적 과업투자 시간을 전체 과업시간의 10% 추정) × 265개 기관(중앙 120개 기관 / 지방 145개 기관) = **13억 원**

② 정성적 기대효과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별 계약규정 전반의 관리체계 가시성이 향상되면서 공공기관별 계약담당자가 상위법령의 제·개정 상황 모니터링 및 제·개정 시 해당 기관 반영여부 검토, 검토 후 기재부 및 행자부 협의 과정 등이 대폭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의 계약규정의 무결성, 통일성 및 체계성 향상으로 조달업체를 포함하여 공공부문의 계약법령과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3) E-c 검사점수 및 대금지급의 간주 규정화

① 정량적 기대효과

정량적 기대효과

- 계약완료 후 5일을 초과하여 계약대금 지급 시 지연 이자 절감액 : **약 57.6억 원**

* (646,303,063,191원(중앙 공공기관 5일 초과 지급 5,041건의 사업실적) × 5%(기업 평균 신용대출 이자율 추정) / 12개월(평균 초과일수 10.85일을 적용하여 한 달 30일의 1/3 수준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한 달 30일을 이자 부과기간으로 설정) = **26.9억 원**

* (736,259,943,015원(지방 공공기관 5일 초과 지급 2,225건의 사업실적) × 5%(기업 평균 신용대출 이자율 추정) / 3(평균 초과일수 10.85일을 적용하여 한 달 30일의 1/3 적용) = **30.7억 원**

구분	중앙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건(비율)	5,041건(10.35%)	2,225건(33.47%)
사업규모	646,303,063,191 (약 6천 4백억원)	736,259,943,015 (약 7천 3백억원)
평균 지급일수	12.35일	9.33일

② 정성적 기대효과

계약완료 시점, 검사검수 14일 완료시점, 검사검수 후 조달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이내 5일 등 관련 기한 규정과 별개로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체상금부과 및 부정당 제재 처분 없이 계약대금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점 해소가 가능하다.

특히 계약 실무에서 일부 수요기관 담당자에 의한 검사검수 및 업체 대금지급 신청 요건을 편의적으로 적용하여 부당한 추가 납품 및 과업 수행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계약대금 회수를 위해 조달업체가 이를 부당하게 수용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계약완료와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재무적 안정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일부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8. 결 론

본 연구는 공공조달 및 계약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당면하는 다양한 규제적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통해 중소기업의 유효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국가 경제산업정책의 활력제고와 동시에 국가재정운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공공조달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공공조달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실적제한, 부당한 특약 요구 등은 국가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을 통해 집행되는 중앙조달요청보다 공공기관별 자체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들이 경험한 규제적 요인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국가계약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계약을 집행하는 중앙 공공기관(법적 분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4개 유형으로 구분되나 통칭하여 중앙 공공기관으로 명명)과 지방계약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등에 따라 계약을 집행하는 지방 공공기관(법적 분류는 지방공기업으로 7개 유형으로 구분되나 통칭하여 지방 공공기관으로 명명)의 자체조달 사업실적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16년 3월 20일~4월 25일까지 약 35일간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에서 규제식별을 위한 조사표를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결과 중앙공공기관 120개 기관과 지방공공기관 137개 기관으로부터 각각 48,688건과 6,237건의 자체적으로 집행한 공공조달 계약실적 자료를 확보하였다.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대 120개 기관 중 120개가 모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총 대상 145개 기관 중, 신설, 폐업, 흡수합병 등의 사유로 7개 기관이 자료 제출을 할 수 없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조달 규제는 복합적 규제로서 단순히 계약의 결과로서 드러난 자료로만 규제를 식별하기 쉽지 않고, 동시에 식별된 규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규제 개선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계약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각종 계약법령과 규정 등의 적합성 등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당면한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계약 관련 법령과 제도 및 계약결과 드러난 문제점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통합적인 규제의 식별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조달 및 계약관련 기본 두 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제적 요인 또는 두 계약법령 간 상이함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로, 계약법령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규제식별은 국무조정실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조달연구원으로 구성된 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규제를 식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총 19건의 개선 의제가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17건의 조정, 통합 및 폐지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

둘째,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현장에서 실제 경험하고 당면하는 공공조달 규제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130건의 개선 건의 과제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적 요인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다만 수집된 130여 건의 과제 중 개선을 건의한 중소기업 등에게 한정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요인으로 식별하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통해서 해당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하였다.

중소기업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분석결과 130개의 건의 과제 중 개선 소요에 해당하는 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소관부처와의 조정을 통하여 113건에 대한 조정 및 개선이 이루어졌다.

셋째, 상기 공공조달 및 계약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집행된 결과 중소기업들이 실제 경험 하한 규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가 실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과정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체조달 사업실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57개의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의 2015년 자체조달 사업실적 55,633건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조달 5단계별로 5대 분야의 13개 규제 유형이 식별되었고 3건의 상위 계약법령 위반 유형, 3건의 해석상의 오류 유형, 7건의 공공기관의 계약 또는 사업담당자의 행태적 오류로 확인되었다.

상기 3개 차원에서 식별된 규제요인에 대하여 각 요인별 개선방안 또는 방향성과 관련된 규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규제적 요인의 개선을 통하여 공공조달 및 계약과정 전반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통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조달 및 계약의 주요 5단계에 따라 식별된 문제점을 아우를 수 있는 14개의 방안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 주요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입찰이전단계에서는 공공조달 시장진입이 가능한 통합 지원 체계 마련, 제조 및 공급물품의 판단기준을 명확화 하는 것이다. 입찰단계에서는 사전규격 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입찰 공고 시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공고를 의무화하며, 예정가격 편차율 기준조정 및 준수를 의무화한다. 평가 및 낙찰 단계에서는 낙찰자 선정관련 세부 평가

기준의 모듈화 기반 단일체계를 마련하고, 실질낙찰율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계약이행단계의 개선방안으로는 과업(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공정 조달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며, 선금지급 의무화와 부당특약 검증강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단계에는 계약결과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와 통합적 계약규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의 간주를 규정화함으로써 어떤 사유에 의해서라도 대금지급 기한이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 비용 및 인력 등의 투자가 수반되므로 이러한 개선 소요자원의 투입 정당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규제 개선의 효과를 가늠하고자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선방안 실행에 따라 중소기업 시장 진입비용 보호 및 절감 효과 약 3,007억 원, 공정한 조달절차 및 서류간소화를 통한 기업 부담 절감 효과 약 5,224억 원, 중소기업(조달업체)의 매출 증대 효과가 약 8,871억 원, 창업초기업 등의 경쟁기회 확대 효과 약 14,335억 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추정하는 고용유발효과는 약 17,110명으로 추산되었으며 특히 새로운 고용을 늘리지는 않으나 기존 고용인력의 고용안정성과 질이 향상되는 인력 규모도 약 5,106명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기준 국내 공공조달 시장 규모 약 110조 원 기준 약 2.81% 수준의 개선효과(3.1조 원)는 2015년도 기준 최근 3년 간 공공구매 실적규모 증감이 평균 2.79% 내외에서 증가된 것을 고려할 경우 창업초기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규제 개선의 가장 큰 수혜대상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효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창출 효과를 통해 2015년 공공조달 시장 규모 약 110조 원을 기준으로 창출 가능한 고용효과(약 971,371명) 기준 고용율 개선효과는 1.76%P(17,110명) 수준으로, 2016년 1/4분기 중 OECD 평균 고용율 개선 수준인 0.3%P 수준대비 약 5.9배 수준이며, 동기간 국내 고용율 개선 수준인 0.5%P 대비 약 3.5배 높은 고용율 개선 효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현황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04년 1460만 명에서 2014년 1784만 명으로 연평균 2% 가량 증가 추세, 반면 동 기간 제조업은 419만 명에서 434만 명으로 연평균 0.4%, 건설업은 194만 명에서 197만 명으로 0.1% 증가에 그쳤고, 농림어업은 심지어 182만 명에서 145만 명으로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개선을 통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율 1.76%p 수준의 개선은 최근 10여 년 간 해당 업종의 평균 고용율 증가수준인 1.2% 대비 약 1.5배 높은 것으로 실질적인 고용율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번 규제식별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큰 틀에서 공공조달 및 계약절차의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로서 공공조달 및 계약의 품질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체의 99% 이상을 중소기업이 공급을 담당하는 물품 및 용역 조달과 관련하여 “사전규격공개”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은 선제적인 품질관리활동으로 공공조달 및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 16조원의 실패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공공조달 및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규제를 만들어 내는 모든 규제원인 계약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과 법령 등에 따라 집행된 조달사업 실적자료 및 개별 중소기업이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건의한 공공조달 관련 및 계약 관련 문제점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규제를 식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공공조달 및 계약 관련 규제는 제도, 행태 및 제도와 행태가 결합된 복합적 규제로서 단순히 법제도 중심의 일회성 처방으로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양한 유형의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조달 및 계약관련 규제를 식별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규제개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령 제357호, 2016)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1879호, 2016)
-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280호, 2016)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5호, 2016)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6호, 2016)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3호, 2015)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령 제571호, 20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4038호, 20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령 제573호, 20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27524호 2016)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고시 제 2016-31호, 2016)
- 대한석탄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15.12)
- 대한석탄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14.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3583호, 2016)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4197호, 2016)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27401호, 2016)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건설용역과 5209호, 2015.11)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구매총괄과509호, 2016)
-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총괄과-8398, 2016.10)
- 조달청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제2016-51호, 2016.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3743호, 201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4197호, 201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자치부령 제86호, 2016)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25847호, 2016)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2733호, 2015)
- 2012년~2015년 일반 및 기술용역 계약 실적자료 분석 (나라장터 온통조달시스템)
- 2013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15)

2015년 기준 최근 3년간 일반용계약 현황 분석자료 (나라장터 온통조달시스템)
2015년 임금동향과 2016년 임금전망 (월간 노동리뷰, 2016.4)
2015년 자체조달사업 분석 추정치 (한국조달연구원, 2016)
2015년 자체조달사업 조사표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제출)
2015년 조달사업 실적 분석자료 (조달청 온통조달시스템)
공공조달통계 분석자료 (나라장터 온통조달시스템)
금리자료 분석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내자구매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자료 (한국조달연구원, 2015)
물품구매 낙찰방법별 통계 분석 (나라장터 온통조달시스템)
보도자료 (2013년 고용유발 인원)
시중 6대 은행별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분석자료 (전국은행연합회)
조달통계 분석자료 (조달청, 2015.12)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료조사 기반 계산 (중소기업 옴부즈만, 2016.9)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stat2.smba.go.kr)
중앙조달기준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규모 및 지방공공기관 추정치 및 실적비중 (조달청 온통조달시스템)
한국조달연구원 자체분석 자료 (MAS기준 평균 컨설팅비용)

첨부 1. 해소 가능한 규제유발 요인(사업 및 규정별 식별 문제점)

1) 통합적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체계 마련(입찰이전 단계)

개선차원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규정
E1.경쟁입찰참가자격기준, 직접생산확인 기준	직포매트의 경우 중기간경쟁품목 제외 되었으나 직생기준 존재하므로 준수해야 되나 직접제조 없이 공급하는 업체들로 기준 준수 제조업체 불이익 발생	현행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 해제된 제품의 경우 일반 조달물품 대비 상대적으로 공정, 설비, 인력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지정 해제된 경우라도 구매품목이 아닌 제조품목일 경우 기존 다수 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요건을 충족한 상향기준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후 신규 진입 업체도 동일 요건 설정으로 전반적인 상향평준화 유도 필요 개별 품목별 직접생산확인기준 설정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로 기준의 수정보완을 별도의 개정 과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2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F3.물품목록화 및 분류 (행태적 오류)	골재류에 대한 물품목록 개정을 통해 물품분류번호의 수정 및 통합 검토 필요	-	단체표준 제정 시 물품분류체계와 실제 생산 및 공급제품과 상이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및 표준제정 어려움 있으므로 생산실태 및 공급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물품분류 노력 강화

2) 물품의 제조 및 공급 판단 기준 불명확 (입찰이전 단계)

개선차원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규정
물품 공급과 제조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부재	- 물품 구매(공급) 또는 제조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어 동일 제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구매와 제조를 혼용하여 구매 가능하므로 제조업체들의 부담 증가 - 제조물품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증명 등을 받기 위해 인력, 설비 등을 투자하여 비용부담을 유발하나 공급으로 입찰이 이루어지면 비용투자 없는 유통업체도 참여 가능해짐	- 물품의 구매와 제조에 대한 정의를 등록단계에서 명확히 함 - 구매와 제조가 가능한 물품을 목록번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분류함 - 구매와 제조가 혼용되어야 하는 경우 제조물품을 구매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함 -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와 제조 모두 직접생산확인증명을 갖춘 제조업체만 참여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 검토 가능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3장 물품등록”의 제20조 내지 제23조의2
E2.제조와 공급 등록 기준	수요기관별로 동일 물품에 대한 제조 및 공급 혼용 등 물품제조구매입찰에서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간 구분 불명확하여 유사 제품생산업체가 공급으로 타 유사 제품입찰에 참가하여 원 제조업체에게 불이익 발생	- 동일물품에 대해 제조와 구매 모두 가능한 경우 생산업체가 아닌 공급(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유리한 조건의 입찰참가가 가능함. - 특정 품목별 제조 및 공급(구매) 중 보다 적합한 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제조와 공급을 혼용하여 입찰하는 경우 제조물품의 공급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강화해야 함 - 원칙적으로 제조와 공급이 모두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 및 제조 모두 제조업체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방안 검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3장 물품등록” 제20조 내지 제23조의2

E.3기술개발/제조업체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기술개발업체와 제조업체 중 기술개발업체만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가능, 제조업체도 등록 요청	- 해당 품목의 성능, 품질 등에 있어 기술개발이 미치는 영향력과 제조업체의 제조역량이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여 판단되어야함 - 일반적인 다수의 제조업체가 일반적 설비를 갖추고 개발된 기술 또는 기술에 기반한 특정 구성품을 조립하는 것이라면 제조업체가 해당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제조업체 등록은 불합리함 - 반대의 경우 기술개발된 제품의 생산에 있어 특정한 업체의 제조공법 및 기술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등록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3장 물품등록” 제20조 내지 제23조의2
E5.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강화	역량 있는 업체 중심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강화	- 해당 품목이 산업특성, 생산업체간 경쟁구도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직접생산확인기준 설정 필요 - 업체 간 기술수준에 따른 편차를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반영하여 경쟁을 차단하는 진입장벽 활용은 곤란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3장 물품등록” 제20조 내지 제23조의2
E6.제조 및 공급업체 등록기준	한전, 농어촌공사 등에서 직접제조업체만 참여토록 하는 것은 문제, 공급 대리점도 참여토록 허용 필요	- 해당 품목이 제조물품일 경우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기준의 충족은 필수적임 - 단, 해당 품목이 제조 및 공급의 방식으로 모두 공급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전향적 검토가 가능하나 수요기관의 조달목적 상 직접제조업체만 참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3장 물품등록” 제20조 내지 제23조의2

		체적인 입찰 및 사용조건을 고려해야 함	
F8. 물 품 구 매 및 제 조 계 약 에서 적 법 한 물 품 공 급 방 법 (제 도 개 선)	▪ 물품구매 시에는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는 직접 생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공급은 불가하며 계약당사자가 구매하여 공급해야 함. ▪ 일부 구성품이나 부속품 등 자기가 생산하지 않는 물품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 가능	▪ 시스템에어컨 등에 있어 에어컨 본체 또는 실외기 등의 핵심부품은 직접생산하나 실외기 연결과 관련된 단순 부품의 경우는 제3자 구매가 가능하나 해당 비핵심 부분 및 구성품까지 직접생산토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적합함 ▪ 이러한 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직접생산요구는 업체간 분쟁을 위한 분쟁 야기 가능성 높음 ▪ <u>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생산확인요건을 명확히 설정하여 불필요한 분쟁 예방 필요</u>	▪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2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F13. 입찰참가 자격 요건 부 여 적 정 성 (법령위반)	▪ 발주기관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에 반영하여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하 '협약서')을 체결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제조사로부터 협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입찰 공고서에 명시하는 것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 사전협약 여부는 입찰참가자격은 요건은 아니지만,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제조사로부터 협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원만한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미리 제조사와 사전 협약이 필요함	▪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3) 사전규격공개의 실효성 강화 (입찰단계)

개선차원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규정
사전규격공개 이의제기 의견 에 대한 처리 방법 및 본 입 찰공고와 연계 성 (A5,)	▪ 현재 사전규격공개가 모든 입찰 건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한계점과 별개로 사전규격공개된 입찰 건에 대한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영여부 등도 회신하지 않고 본 입찰 공고로 게시 ▪ 사전규격공개 과정에서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 관련 불합리 요소 정정 목적과 취지 달성 한계 존재	▪ 사전규격공개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한 후 본 입찰 공고토록 의무화 필요 ▪ 필요한 경우 사전규격공개에 대한 낮은 관심도 등으로 실질적인 이의제기 및 검증 수단으로 실효성이 낮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와치도그” 제도 검토 필요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최소 입찰공고 기간 5일 이전 미준수 입찰공 고 시행 (A4,) (법령위반)	▪ 충분한 입찰공고 기간이 부여되어야 입찰참가준비 등 실효성 있는 입찰참가기회가 보장되나 과도하게 단축된 공고는 사전 입찰정보를 알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입찰 대응역량이 뛰어난 대형 업체에게 유리한 입찰환경 조성 가능성 높음 ▪ 현행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모두 최소 5일 이상의 입찰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입찰공고일 준수 여부 확인하고 5일 미만 입찰공고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무효의 입찰로 처리하는 단서 조항을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추가하는 방안 검토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E8. 특정 규격 요구	▪ 외산 장비 공급 에이전트 로비로 적정 규격 대비 10 또는 100배 이상의 과도한 규격 기준치 요구한 입찰	▪ 사전규격공개 강화를 통하여 해당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증 필요함	▪ 기준설정/적용 오류
F2. 사전 규격 공개의 실효성 (제도개선)	▪ 사전규격 공개 시 이의제가 있을 경우 답변 의무화 여부 및 답변 이후 본 공고 게시 가능한지 여부	▪ 1억 5천만 원 이상의 물품·용역에 대한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한 후에 입찰공고 게시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된 사항,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 가능 <u>구매규격 사전공개가 법적 절차 아닌 내부지침 수준으로 답변 이후 공고게시 의무화 아니므로 실효성 제구를 위해서는 사전규격 공개 의무화, 사전규격공개된 건에 대한 와치도그 적용으로 문제요소 식별 후 해당문제 완료된 후 본공고 게시를 규정화하는 것이 필요함</u>	
F4.사전규격공개 기준 (행태적 오류)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방법으로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 그들이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 필요	- 물품의 추정가격 산정 시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2.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 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 제1항(예외사유) 1. 긴급 수요물자나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 물품이나 용역 2.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물품이나 용역 3.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이나 용역 - 지방계약법 제9조의 2

		총액	
E7.지명경쟁입찰 요건 적정성	공공기관의 휴양시설 입찰시 특정 지역 명시하여 지명경쟁 시행으로 입찰참가 기회 제한	-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지명경쟁입찰 요건에 부합여부를 심사하고 사실상 특정지역 및 특정시설에 대한 의도는 사전규격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해소 가능함 - 현재 시행(기재부 계약예규) 및 시행예정(지방계약법)인 사전규격공개 관련 조항에 제한 및 지명경쟁 입찰에 대해서는 조달대상 및 금액 구분 없이 모두 사전규격공개 의무화 필요	-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F11.입찰참가 자격 제한 (행태적 오류)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른 제한경쟁 가능 여부	-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9호에 의한 ‘경쟁 참가자의 재무상태’로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으므로 ‘재무상태’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경쟁성립’이 가능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의 선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게 설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F12.제한요건 중복 적용	KS 표시품에 대한 제한경쟁	KS제품은 의거 제한경쟁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법령위반)	가능 여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과 중복제한 가능 여부	가능한 반면 고효율제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에 의한 인증제품으로서 제한경쟁대상이 아님 ▪ KS표시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에 의한 인증제품으로서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제한경쟁 가능함 ▪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에 의한 인증제품으로 제한은 가능하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제한은 할 수 없음	제1항 제4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

4) 입찰공고 시 산출내역서 공개 의무화 (입찰단계)

개선차원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규정
사업예산 산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	시설공사 등에서 최초 예산 책정 및 기초금액 확정과 관련된 서류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증감소요가 있어도 계약금액 조정 불가	- 계약첨부 서류가 아니나 실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원인 자료의 오류로 인한 사업예산 편성이 잘못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내역서 등이 작성되었다면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포함 필요 - 계약이후 쟁점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예산 및 기초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단계를 사전규격공개와 같이 시행하는 것을 검토 필요함	계약예규 예정가격산정 기준 및 대가산정기준
동일 용역, 동일 추정가격 규모에서 상이한 낙찰하한율 적용 사례 (LS9) (제도개선)	- 지자체간 동일한 일반용역의 낙찰하한율이 상이하고 동시에 낙찰하한율 적용 기준인 추정가격 수준도 편차가 발생하여 통일성과 체계성이 낮음 - 각 지자체별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하여 낙찰하한율을 낮게 설정할 필요성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용역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대가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계약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수적임	동일한 용역 및 추정가격 규모별 낙찰하한율 편차 조정 검토	적격심사 세부기준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투찰 (A2,) (단순행태)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최저가낙찰제 시행 대상 입찰 건에서 예정가격 대비 과도하게 낮은 낙찰율로 인한 계약이행 부실 및 미이행 문제 발생 가능성 높음	물품구매에 대해 예정가격 대비 25%를 초과하는 저가투찰에 대해서는 최저가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 가격 적정성 검토 강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항 - 별도의 낙찰하한율이 제시되지 않은 고시금액미만 물품구매에서의 순수 최저가낙찰제(시행령 제42조 제2항) 또

			는 2단계경쟁입찰(시행령 제 42조제3항)에서 적용
E13.사업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 기준의 적정성	수요기관에서 통보한 기초금액의 90% 수준 등 일률적 사업예산 감액 제한, 공고문에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율 등 명시	- 최초 책정된 사업예산을 입찰과정에서 예정가격 산정기준 금액인 기초금액 결정 단계에서 특별한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일률 감액하는 사례 통제 필요 - 최초 “예산배정 → 사업예산 → 기초금액 → 예정가격” 결정 과정까지 증감이 될 경우 계약예규 원가계산작성기준에 따라 비목별 상세 증감 변동내역을 첨부하여 공개 검증토록 해야 함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E14.대가산정 체계의 실효성 확보	예정가격산정체계가 적합성이 낮음, 복수예비가격을 통한 예정가격 결정은 제비뺐기 식으로 문제 있음.	최초 “예산배정 → 사업예산 → 기초금액 → 예정가격” 결정 과정까지 증감이 될 경우 계약예규 원가계산작성기준에 따라 비목별 상세 증감 변동내역을 첨부하여 공개 검증토록 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통일 (입찰단계)

개선차원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규정
예정가격 편차율 - 2%, -3% 초과하는 입찰 발생 (A1,) (행정규칙 위반)	- 최저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하회하는 예정가격 설정(계약담당자 고의가 아닌 경우 그대로 인정, 사전 인지 시 다 시 산정) - 지방계약법령 적용대상 지방 공공기관과 달리 중앙 공공기관은 사실상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공통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수요기관별 임의 자율 설정 가능토록 하여 기준 설정의 자의성 높음	- 예정가격의 기밀성 확보를 위한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예정가격 산정기준 통일 필요 -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모두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대적으로 편차가 더욱 큰 중앙 공공기관에 대한 단일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에 대한 단일 범위구간 설정 제시 필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5조 - 행자부예규 제35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중앙 공공기관별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계약규정총칙 포함)”
E13.사업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기준의 적정성	수요기관에서 통보한 기초금액의 90% 수준 등 일률적 사업예산 감액제한, 공고문에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율 등 명시	- 최초 책정된 사업예산을 입찰과정에서 예정가격 산정기준 금액인 기초금액 결정 단계에서 특별한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일률 감액하는 사례 통제 필요 - 최초 “예산배정 → 사업예산 → 기초금액 → 예정가격” 결정 과정까지 증감이 될 경우 계약예규 원가계산작성기준에 따라 비목별 상세 증감 변동내역서를 첨부하여 공개검증토록 해야 함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E14.대 가 산 정 체계의 실 효성 확보	▪ 예정가격산정체계가 적 합성이 낮음, 복수예비 가격을 통한 예정가격 결정은 제비뽑기식으로 문제 있음.	▪ 최초 “예산배정 → 사업 예산 → 기초금액 → 예 정가격” 결정 과정까지 증감이 될 경우 계약예 규 원가계산작성기준에 따라 비목별 상세 증감 변동내역을 첨부하여 공개검증토록 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6) 낙찰자 선정방법별 동일 및 유사 평가항목에 대한 공통 평가기준 마련 (평가 및 낙찰단계)

개선차원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2015년 자체 조달 계약 건 중 중앙 공공 기관 2.56%, 지방공공기관 0.74% 수준의 1배 이상 실적 요구 (A6,) (법령위반)	■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모두 별도 규정 또는 행자부(지방공공기관) 기준 준용하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 ■ 전체적으로 실적 관점에서 사실상 진입장벽을 높이는 규제적 요인으로 판단됨	■ 실적제한 및 실적평가 시 1배 이상 요구하는 경우 1배 이내로 간주하고 평점 역시 만점으로 간주한다는 단서 조항을 입찰공고문 및 세부 평가기준 등에 반영 검토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중앙 공공기관 약 8.66%, 지 방 공공기관 약 10.44%에 서만 사전 실 적평가 방법 등 낙찰자 선 정기준 명확히 제시함 (A9, (단순행태)	■ 입찰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상 19개 조항 중 낙찰자선정(세부 평가방법 등) 기준 중 실적 평가방법 등 사전 업체의 평가자료 확보 및 입찰참가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일부 기준 제시 미흡	■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기준에서 실적평가 시 인정되는 동등 또는 유사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의무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제6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제6호
시설공사 등에 서 거리, 무게, 면적 등에 따 른 상세 실적 평가기준 부재	■ 거리, 무게를 중심으로 한 실적평가 기준 설정 시 실적 인정기준이 사전에 명확하지 않아 평가과정에서 분쟁 발생 가능성 있음(원도급사 전체 거리 및 무게의 70%를 수행하고 하도급사가 30%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경우 100% 인정 여부 등)	■ 무게, 거리 양 등에 따라 실적 평가 만점기준 제시할 경우 1/3배 이내 우선 적용 ■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특례로서 1/3배 이상시 만점제도 운영 ■ 실적평가와 관련한 실적인정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계약예규 등)	■ 개별 적격심사 세부기준

납품실적 인정 기간의 축소운 영 및 유사실 적 미인정 (H-b4, LS4,) (제도개선)	▪ 조달청기준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 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의 실적까지 인정함 ▪ 그러나 대한석탄공사, 한국 전력거래소의 경우 납품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 임 ▪ <u>최근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실적평가는 최대 5년까지 인정하므로 중소기업체의 실적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실적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 필요 성 있음</u> ▪ 일반광역 적격심사기준 운영 13개 광역지자체 중 7개 기관 이상이 실적인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최근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5년간 실적 인정 추세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음 ▪ 동등 및 유사실적 평가방법 중 3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등실적만 평가함으로써 신생 및 중소기업체들의 실적평가 제약 가능성 높음	▪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실적평가 인정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조달청 및 행자부 계약예규 제35호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동등 및 유사실적 인정이 일반적 추세임 ▪ <u>따라서 실적평가의 기준이 되는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u>	▪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H-b5. 낙찰자 결정시 종합평점의 하향 조정(제도개선)	▪ 조달청 포함 대부분의 기관에서 최저가 입찰자 중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음 ▪ 그러나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어, 납품이행능력의 평가 변별력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낙찰하	▪ 적격통과점수 수준에 대한 별도의 설정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최저 85점에서 최대 95점 사이에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적격통과점수가 높아지면 납품이행능력평가에서 고득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

	한올에 근접한 과도한 가격 경쟁 발생 가능성 높음 - 또한, 대한석탄공사는 예정 가격을 불비치 할 때 낙찰자결정은 입찰가격(배점한도 50점)을 제외한 여타 심사항목과 신인도(±10점)점수를 감안한 심사종합평점이 배점한도 50점의 100분의 80이상인 40.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음 - 조달청의 기준과 같이 예정 가격을 불비치할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가격투찰 시 낙찰하한올에 근접한 최저가 투찰이 어려워 낙찰자 선정이 어려워짐 - 따라서 적격통과점수가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신생 및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고 반대로 낮아지는 경우는 가격을 제외한 납품이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이 감소하여 가격 중심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 따라서 조달청 및 행자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같이 10억 이상, 10억 미만 ~ 고시금액 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3개 구간에 대하여 각각 85점, 90점, 95점으로 공통된 통과기준 설정 권고	
적격심사 자료 제출기간의 차이 (H-b2, LS2,) (제도개선)	- 조달청의 경우 심사 자료의 제출기간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엔 5일,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엔 3일로 차등을 두고 있음 -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은 7일로 적용하고 있음 -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는 5일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업체에게 충분한 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게 심사서류제출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최대기간과 최소기간을 통일하여 적용 검토 필요 - 과도한 서류제출 기간 부여는 전체 입찰 일정 지연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재 운용실태를 고려하여 최대 7일 최소 5일 정도 수준에서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H-b3.적격심사 분야별 심사 기준일의 차등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심	서류제출 기준일의 동일은 계약업무처리의 수월성 관점에서 효과적이나 업체 입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적용(제도개선)	사 기준일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있음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경영상태의 심사기준일은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로,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낙찰자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어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에 따라 제출 기준일이 다름	장에서는 최대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로 할 필요성도 있음 - 대표적으로 경영상태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로 할 경우 입찰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입찰서류 제출일에는 필수 제출로 누락 없이 제출가능하고 신용평가등급이 낮게 산정될 경우에도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이 효과적인 기준일이 될 수 있음 - 반면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당시 문제가 없더라도 낙찰자 결정 당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낙찰자 결정 당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임 - 입찰 및 평가 진행의 수월성 확보 관점에서 채택한 입찰 공고일 기준보다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서류제출일, 적격심사서류제출일, 낙찰자 선정일 등으로 세분화하여 공통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고	
10억 이하 물품구매 입찰에서 실적평가(H-b7,) (제도개선)	10억원 미만 물품구매(제조는 예외) 입찰에서 납품실적평가를 제외하고 경영상태 및 가격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시행 중임 - 신생 및 중소기업체의 실적평가 부담완화를 위해서 10억원 미만 입찰에서 제외	10억원 미만 물품구매 입찰에서 실적평가 미시행 권고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고시금액 미만 물품구매 입찰 에 대한 별도 적격심사 세부 기준 미운용 사례	-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거 고시금액 미만 물품구매(제조 예외) 시 최적 낙찰 시행 가능함 - 현실적으로 물품구매의 대부분이 고시금액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별도 적격심사 세부기준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신생, 중소기업체에 대한 대가보장 수준 저하	고시금액 미만 물품구매 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권고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H-b8..기술능력 평가 시 기술등급 평가의 미 실시 [추정 가격 이 10억원 이상] (제도개선)	- 조달청의 경우 기술능력평가 시 ‘기술인력보유 및 생산기술축적정도’와 ‘기술등급’ 2개의 평가를 진행함 (2016년 7월 이후 “기술평가 등급”으로만 운영 예정) -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기술인력보유 및 생산기술축적정도’ 평가만 실시하고 있음 - 기술인력 및 생산기술축적정도(공장설립 연수 등)는 상대적으로 신생 및 중소기업체에 불리한 평가항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자의적 기준 상향 설정 가능성도 있음 - 제3자를 통해 객관적인 기술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과 동일한 개념)을 발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임	- 업체들에게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기술평가등급을 중심으로 기술능력 평가 시행 검토 필요 - 신용평가등급을 발급하는 신용평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기술평가기관에서 공인하는 기술평가등급(최고 T1등급에서 최저 T8등급으로 평가)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소기업/소상공 인 및 창업초 기기업 등에 대한 차등적 실적평가 미시 행 및 기본배 점 및 가점 차	조달청 및 행자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실적평가 시 배점한도의 2~3점 수준의 가점을 부여하나 일부 기관에서는 가점부여하지 않거나	- 실적평가의 배점비중을 달리하더라도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기본과점을 일정 비율 또는 점수 이상 부여토록 기준 개정 권고 - 소기업/소상공인, 창업초기	물품구매, 일반응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화 해소 (A12, H-b6, H-b15.) (단순행태)	동일 기본점수 부여로 차등 평가를 미시행하고 있음 조달청 및 다수 공공기관에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인정은 창업이후 5년 이내 이나 2년으로 단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가점 부여효과를 저감시키는 것임	기업에 대한 실적평가 시 동일 배점 및 가점 부여 규정 제·개정 권고 창업초기기업 인정기간에 대하여 실제 창업 이후 공입찰에 참여하기까지의 준비기간과 이후 초기 안정 단계까지 지원기간 보장을 위해 5년으로 기준을 통일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	
신용평가등급 평점급간의 과도한 차등화 해소(H-b13, H-a4, H-a5, H-a6, LS5, LS6,) (제도개선)	-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신용평가등급의 평점등급별 인정기준이 기관별로 -BBB까지 만점 배점하거나 등급별 0.2점~1점까지 차등평점하고 있음 - 중기간경쟁제품인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 배점한도 부여(만점) - 조달청 및 대다수 공공기관이 신용평가등급의 등급 간 평점 차는 0.2점 내외 설정이 일반적(신생 및 중소기업체의 평가 불이익 완화)	- 경영상태 평가 시 배점한도, 만점 부여하는 평가등급을 하향조정 검토 - 신생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제 우량한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 BBB0 수준 등으로 만점 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중기업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 평점등급에 따라 차등화 검토 - 동일 신인도 평가항목에 대한 가·감점은 통일하고 최대 인정하는 가·감점 수준을 조정(예: 신인도 평가결과 5점 획득하더라도 최대 3점만 인증 등)	- 중앙공공기관별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H-b14.경영상태 평가 시 창업초기기업 신용평가 우대 여부(H-a8,) (제도개선)	- 조달청 기준으로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제조 또는 구매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함 - 그러나,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의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만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 납품실적 평가와 마찬가지로 경영상태 평가에 대해서도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창업초기기업 인정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거나 별도의 평가 시 인센티브 제공하지 않고 있음 <u>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여</u>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평가하고 있음 대한석탄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에는 창업초기기업에 신용 평가 점수에 대한 우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 초기기업의 공공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규모가 큰 업체 위주의 입찰로 이어질 수 있음	실제 충분한 수준의 사전 준비기간 보장 차원에서 창업초기기업 인정 기준을 5년 이내로 확대할 필요성 있음	
적격통과점수 수준의 과도함	- 추정가격 규모가 클수록 적격통과점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기술능력평가 비중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신생, 소규모업체들의 점수획득이 어려운 점을 보정하는 효과가 있음 - 일반적으로 최고 95점에서 최저 85점 사이에서 배점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든 구간에서 95점을 요구하고 있어 신생, 중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 가능성 있음	추정가격 규모별 차등배점으로 일원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광역 지방자치단체)
신인도가점 인정 범위 (최대가감점 수준), 평가항목 점수 편차 해소 필요 (H-b9, H-b9, H-d2, LS7) (제도개선)	- 동일한 가점 및 감점 평가항목에 대하여 지자체별 배점비중이 2~3배 이상 차이 발생 - 동일한 가감점 평가항목이 가지는 정부정책 및 사회경제적 가치가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평점 수준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평가체계의 안정성, 신뢰성 및 타당성 향상 제고 가능 - 신인도 평가 시 같은 내용의 항목이지만 배점이 다른	- 동일 신인도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취득의 난이도, 해당 인증의 가치의 동등성을 고려하여 동일 신인도 가점 평가항목(인증 등)에 대해 동일 배점비중 부여토록 권고 - 단순히 인증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감소된 인증에 대해서 충분한 수준의 동등가치를 부여하여 배점함으로써 신인도 가점 획득을 위한 불필요한 추가 인증 획득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광역 지방자치단체)

	경우가 많으며, 배점의 차이가 많게는 2배 이상 차이남 이 는 입찰참가 업체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소요 차단 가능 동일 신인도 평가항목에 대한 가·감점은 통일하고 최대 인정하는 가·감점 수준을 조정(예: 신인도 평가결과 5점 획득하더라도 최대 3점만 인정 등)	
신인도 평가 시 과도한 계약이행 성실도 요구 [추정 가격 이 10억원 이상 (H-b11, H-c6.) (제도개선)]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3개 항목[납품지연(-2.0), 불공정 거래(-2.0), 부당업자제제(-2.0)] 이외에 하자발생(-2.0), 검수불합격(-2.0), 입찰담합 및 부정당업자제제(-5.0) 등 3개 항목이 추가되어 있으며, 특히 입찰담합 및 부정당업자제제 경우 패널티가 (-5)점으로 가장 큰 배점항목임 - 발주기관 담당자의 주관성 개입여지가 큰 결격사유 항목의 평가 왜곡 현상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 계약이행 성실도 항목은 발주기관의 주관성과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큰 평가항목임 - 특히, 하자발생 검수불합격 등 수요기관의 적극적 개입과 판단에 따라서 결격사유가 결정될 수 있는 경우는 최소화하여 적용할 필요성 있음 - 따라서 계약이행 성실도의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항목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정 및 증빙 가능한 항목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H-b12.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신인도평가(제도개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일 때 신인도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조달청,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뿐이었으며, 다른 기관은 신인도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규정의 통일이 필요함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구간에서 입찰 시 적격통과점수가 적정할 경우 신인도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인증취득 수요를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됨 <u>다만 상대적으로 신인도 이외 기본평가항목만으로 적격통과점수 획득이 어려운 신생 및 중소기업에게는 신인도 가점 평가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최소 항목으로 도입하여 평가할 것을 권고</u>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협상	중앙 공공기관에 대한 협상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 집행 시 세부평가기준 중 특정 평가항목의 배점과 다 배점 사례 (A10,) (행정규칙 위반/단순 행태)	에 의한 계약 진행 시 계약예규의 표준 평가체계를 조정하여 입찰 건 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평가항목을 30점 이상 배점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 특정 평가항목의 과도한 배점 여부와 별개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선정, 외부위원 선정방법 및 비율 등에 대해 별도의 협상계약 기준을 보유한 중앙 공공기관별 상이점 많음	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와 관련한 단일기준 마련 검토	체결 기준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기준(행자부 예규 제34호) 제5장
A11.협상에 의한 계약 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중 설정 자의성 (행정규칙 위반/단순행태)	협상에 의한 계약 시 표준 평가 비율은 기술 80%와 가격 20% 비중이며 각각 10% 포인트 범위 내 조정 가능하나 특정 입찰 건에서 해당 비율을 초과한 입찰 건 집행	중앙 공공기관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와 관련한 단일기준 마련 검토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기준(행자부 예규 제34호) 제5장
낙찰자결정을 위한 추정가격 기준 적격통과점수 수준의 상이함 (LS10,) (제도개선)	- 적격통과점수가 추정가격 규모별로 10억 미만 95점, 10억 이상 ~ 30억 미만 90점, 30억 이상 95점으로 차등화 되어 있음 - 대전시, 광주시 등의 경우는 모든 추정가격 구간에서 95점을 적격통과점수로 설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생 및 중소기업체들의 낙찰기회 제약 가능성 있음	<u>추정가격 규모가 커질수록 실적평가 점수 획득의 난이도 등이 높아져 신생 및 중소기업체의 적격통과점수 획득이 어려워지므로 추정가격 구간별 차등적 적격통과점수 설정 검토</u>	지방자치단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E16.적격심사 평가기준 완화	발전소 연료물질 운송 및 운송주선 용역 입찰참가 확대를 위한 평가기준 개선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반적으로 수행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 공공기관 일반용역 입찰에서 수행실적, 기술(장비보유 등)능력 평점 기준에 따라 사실상 사전자격심사화된 평가요소가 존재할 수 있음.

			해당 항목의 평가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다수 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가항목 및 기준 개선 권고
F20.청소용역 경영상태 평가 방법 (단순질의)	청소용역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청소용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발주금액이 추정가격 2.1억원 미만이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제1호에 의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가능함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의 “[주]5”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고 규정
F21.납품실적 인정 요건 (제도개선)	납품실적 평가기준 입찰공고시 연간 발주물량 44Km를 기준수량으로 하지 않고 10km를 평가기준 수량으로 해도 되는지 여부	-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에서 제한가능 - 계약예규에 따라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규모(양)로 하되,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해야 함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

		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음 ■ <u>현재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에서 실적평가 만점기준은 당해 입찰 추정가격의 100% 이내로 만점 설정하고 있으나 1/3로 조정 검토 필요</u>	
F22.단순용역에 대한 협상 계약 적용 가능 여부 (제도개선)	■ 단순노무용역 성격이 강한 청소, 경비용역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지?	■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의 방법으로 단순(청소, 경비 등)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대상이 아님 ■ <u>용역 특성에 부적합한 낙찰방법 적용을 통한 낙찰자 선정의 자의성 및 불공정성 초래 가능 차단, 용역 특성에 따라 적합한 입찰방법 분류방안 검토(용역 종합심사제를 통한 3대 재분류기준 활용)</u>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F23.MAS 2단계 경쟁 대상 및 회피 예방 (행태적 오류)	■ MAS 2단계 경쟁 시 1회 납품요구액이 5천만원(일반물품) 또는 1억원(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이상이 되어야 하난 이를 회피하고자 수요기관이 분할납품하는 것의 적정성	■ 조합놀이대 구매 사례로서 2.9억원의 예산으로 5개의 놀이대를 각각 구매 가능하나 동일사업 및 동일목적인 경우 2.9억을 단일건으로 하여 통합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함 ■ MAS2단계 경쟁 회피를 위해 30일 이내 세부품명기준 분할납품요구 금지 조항을 조금 더 보강할 필요성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 제1항
F24.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특허의 인정여부	■ 특허는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만 신인도 평가대상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계약담	■ 당해 목적물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특허(이전 평가된 특허 등을 검토)에 대하여 사전 인정기준을 제시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 입찰

(제도개선)	당공무원이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음	- 하하여 분쟁소지 차단 ▪ <u>사전규격 공개를 통하여 이러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다면 사후 평가과정에서 분쟁소지 감소 가능함</u>	“III. 신인도” 세부 평가방법
F26.하도급 또는 외주가공 제조실적을 원도급자의 제조실적을 인정 가능여부 (제도개선)	▪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이란 원도급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한 것으로 하도급을 통한 타 제조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다만 일부 구성품을 하도급 및 외주가공에 의하여 확보한 경우에는 직접생산인정 가능하고 실적인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물품별 직접생산확인기준과 실적 인정기준 요건 명확화 ▪ 기술개발업체와 제조업체간 직접생산확인증명 주체와(현행은 기술개발업체에게 있음) 제조업체의 실적에 대한 인정 부분과 함께 검토(기술개발 전문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나 실 제조업체는 상응한 권리 누리지 못함) ▪ <u>직접생산확인인 기술개발 업체에게 부여하더라도 납품실적 등은 제조업체도 인정하는 것을 검토 필요 (특히 사용권에 대한 협의 등은 별도로 해당 제조업체가 특허보유업체와 협의하여 확보 전제)</u>	▪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2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F27.적격심사에서 차순위 입찰자 적격심사 가능 여부 (제도개선)	▪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자가 적격심사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낙찰자 선정 가능	▪ ‘조달청장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가능함 ▪ <u>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u>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조 제2항
F28.실적인정	▪ 15km이상 설치 실적 인정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범위 (제도개선)	준에서 특정 업체가 12km 직접시공, 3km 하도급 한 실적에 대한 실적인정 여부	제23조에 따라 원도급사의 실적에 포함 가능함 ■ <u>전체 실적 인정기준 일정 부분 하도급 시 원도급사의 전체 실적 인정 검토(기준 수립 등)</u>	제23조
J2. 평가위원 선정의 적절성 및 공정성 (제도개선)	■ 조달청 포함 모든 기관에서 평가위원 중 추첨을 통해 위원장을 선발하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있어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시 일반적을 평가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발토록 하고 있으며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외부평가위원 중 한명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임 ■ <u>내부평가위원 특히 사업주관부서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므로 수요기관 사업주관부서 장의 평가위원장 선임 규정은 개선 권고</u>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3조 ■ 「기술 평가위원 규정」 제 11조
J3. 평가위원 구성인원 수의 상이성(제도개선)	■ 조달청의 경우 평가위원수를 사업규모별로 최소 8명에서 최대 9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전력공사가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경우 최소 4명에서 최대 7명,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최소 5명에서 최대 7명,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최소 6명에서 최대 8명으로 정해져있어 해당 규정의 통일이 필요해 보임 ■ 조달청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외부	■ 당해 입찰(사업)의 규모, 과업의 복잡성, 전문성 등 난이도를 고려하여 <u>단일한 평가위원 수 선정 기준 마련 필요</u> ■ 특히 극단적 평가결과 예방을 위하여 <u>최저 및 최고 평가결과 제외시 최소한 4개 이상의 유효한 평가점수가 산술평균 산출 값의 확보 등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위원</u>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공공기관별 공통된 평가위원 수 선정 기준 마련 필요 ■ 또한 <u>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외부평가위원</u>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3조 ■ 「기술 평가위원 규정」 제 11조

	위원의 포함기준이 없음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등은 외부인원을 1인 이상 혹은 50%이상 포함해야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u>의 참여가 필수적</u>이므로 최소 50% 이상 의무화 조항 등의 기준도 도입 권고	
J4. 평가위원 자격의 부재 (제도개선)	- 조달청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기술 평가위원 규정」[별표]의 대분류 “구매(우수제품 심사 제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보유하고 있음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응역에 한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6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다만, 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등급을 준용한 재직자) 나. 해당 심사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다. 2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이상인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외부평가위원 및 전체 평가위원의 수를 결정한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향상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임 <u>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제안서의 평가분야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나 모든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자격기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자격기준 마련 권고</u>	「기술 평가위원 규정」[별표]의 대분류 “구매(우수제품 심사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관련 조교수 이상 경력 이 2년 이상인 자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는 해당 근거기준이 없어 규정의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J5. 제안서평가 대상사업의 유무 (제 도 개 선)	-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타 기관에서는 따로 대상사업별 평가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범용적인 평가항목만 명시하고 있음(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관련) - 조달청 : 1. SW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 2. 단순구매(H/W, S/W등) 사업 3. 전산감리사업, 4. 행사용역 - 한국전력공사: 1. 학술·연구용역, 2. 기술용역, 3. 일반용역, 4. 정보화사업용역	-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및 안정성 등을 요하는 경우에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낙찰자 선정을 위해서는 계약방법 적용 사유인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및 안정성 등을 당해 입찰(사업)의 과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중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적용한 입찰공고에서 제안서 평가기준은 매 입찰공고별로 계약담당 또는 사업부서의 담당자에 따라 편의적으로 설정되거나 또는 관행적으로 이전 유사 입찰에서 적용된 기준을 차용하고 있어 평가체계로서의 타당성이 낮고 동시에 체계적 오류 발생 가능성도 높음 <u>따라서 공공기관별 평가분야를 고려한 일반적인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설정하여 사전 공개하여 평가체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공개검증하고 동시에 업체들의 평가정보 접근성 향상토록 기준 개선 권고</u>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9조

J8. 평가점수 산출방법의 차이(제도개선)	- 조달청의 경우 평가점수 산출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절사평균'을 사용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함 - 타 공공기관에서는 평가점수의 단순합산에 따른 최종 점수를 부여 하고 있어, 이상치에 대한 평가점수의 왜곡이 생길 우려가 있음	- 극단적인 평가결과의 배제를 통해 균형잡힌 기술평가 결과 산출을 위해서는 평가 점수 중 최저 및 최대 평가 값을 제외하는 절사평균 방식이 합리적임 <u>단순히 산술합산평균을 채택하는 경우 극단적인 1~2 명의 평가위원에 의한 전체 평가결과 왜곡 현상을 초래하여 불공정한 평가 가능성 존재하므로 절사평균(최대 및 최저가 값 제외) 방식 채택 권고</u>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12조
J9. 평가 결과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 부재(제도개선)	- 조달청을 제외한 기관들은 평가결과 통보 기준일, 재협상 가능 일수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 - 특히 조달청의 경우 온라인 평가를 통해 기술제안서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위원별로 상세하게 밝히고 있어 피평가자인 조달업체에게 완전하게 공개하여 평가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기술 및 가격평가의 비중이 8:2로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결과가 8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피평가자인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공정성 및 전문성에 대한 시비와 함께 평가결과 공개 요구가 빈번함 - 그러나 대부분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고(입찰공고문 등에 관련 안내) 필요할 경우 이의를 제기한 업체의 평가점수만 공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u>이로 인해 다수의 업체들이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평가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평가결과를 평가위원별(익명처리), 평가항목별로 총점과 함께 공개하는 기준 개선 권고</u>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13조

J10. 평가수당 지급 기준의 차이 (제 도 개 선)	▪ 조달청을 제외한 타기관에서는 온라인평가 시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 또한 전문평가 영역에 대한 수당도 명시되어있지 않아 관련기준의 통일이 필요함 ▪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조달청 기준과는 다르게 평가시간에 따른 수당지급이 아닌 사업 예산가격(추정가격)에 따라 수당지급에 차이를 두고 있어 사업 내용적 측면에서 내실있는 평가진행에 한계점 발생 예상됨	▪ 기술제안서의 평가내용에 대한 전문성과 자격을 보유한 적정 평가위원 위촉을 위해서는 합당한 현실적으로 합당한 평가수당 지급이 필수적임 ▪ 동시에 평가과정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수당지급 기준을 사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함 ▪ <u>따라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평가시간 등에 따라 합리적인 평가수당 지급 기준 마련 권고</u>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2]
J12. 입찰자 수에 따른 평가등급 마련 (제도개선)	▪ 입찰자 수의 평가등급은 조달청과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고 타기관에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조달청은 입찰자 수에 따라 3개 등급(상·중·하)로 구분하여 평가하지만,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5개 등급(수·우·미·양·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어 참여업체에 따라 배점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됨	▪ 기술제안서 평가대상인 입찰참가업체의 수에 따라 평가의 차등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평점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5개 이상 업체에 대한 상,중,하의 3등급 평가시 업체간 역량편차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왜곡되어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 <u>입찰참가업체 수에 따라 적정한 기술제안 수준별 역량편차가 반영될 수 있는 표준적인 평점등급구간 설정 기준 마련 권고</u>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18]

7) 선금지급의 의무화(강행규정) (계약이행 단계)

개선차원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규정
낮은 선금 지급 실태 개선 및 선금 지급율 임의 설정 (A7, G9)	- 공공기관의 2015년 자체조달 집행 계약 건 중 중앙 공공기관 약 14.7%, 지방 공공기관 약 9.1% 낮은 선금 지급율(A7) - 선금지급의 지급 범위가 70/100 이내에서 지급 가능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50/100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선금지급이 선택적 적용이나 선금지급을 의무화하고 예외 신청 시 미지급으로 규정 조정	- 예산운영상 등의 문제로 선금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선금보증증권 비용 발생 등으로 업체들이 신청 주저하는 경우 해소 필요 - 선금에 대한 보증증권은 각서로 대체하여 업체들이 비용부담 없이 선금신청 가능하도록 전환 검토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33조, 제34조 -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35호) 제6장
F31.관급자재의 선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제도개선)	관급자재 계약 시 선금 신청 가능 여부	-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함 - 선금의 지급은 관급자재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체결 후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선금을 지급하여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계약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완화하여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임 <u>상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u>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3항 및 제4항

		<u>는 현행 선금지급과 의무</u> <u>지급에 관한 선택적 규정</u> <u>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하여</u> <u>지급을 원칙으로하고 의무</u> <u>지급율은 업체가 별도의</u> <u>지급유예 신청을 하지 않</u> <u>는 경우 지급을 의무화해</u> <u>야 함.</u>	

8) 과업(설계)변경 및 대가조정 가이드라인 제정 (계약이행 단계)

개선차원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규정
발주자에 의한 빈번한 과업변경 요구(A8,) (단순행태)	- 과업변경 요구가 수주자인 조달업체 대비 발주자인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사례가 3배 이상 많음(중앙 공공기관: 약 3배, 지방 공공기관: 약 3.6배) - 사전 정확한 과업설계를 통한 변경 최소화로 사업기간 및 예산의 확정 및 준수를 항상 필요 - 과업변경 요구가 빈번하고 대가조정 시 감액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달업체의 안정적 용역수행 환경 확보 곤란(사전 용역수행을 위해 투자한 인력, 장비 대비 대가의 감액으로 손해 발생 가능성 높음)	지속적/반복적 문제 발생하는 과업변경 요구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 제작하여 운영(발주자의 자의적 판단 개입 여지 최소화)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조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과업변경 요구 시 계약금액 조정은 감액비율이 많고 특히 발주자에 의한 과업변경 요구 시 감액비율이 2배 이상 높음 (A3,) (단순행태)	최초 계약금액에 맞추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갖추어 참여하였으므로 과업변경 등을 통해 계약대금이 감액될 경우 수주업체의 안정적 용역수행 환경이 저하되고 동시에 계약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 발생함	원칙적으로 과업변경이 되더라도 계약금액의 감액 조정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조항 추가 필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물가변동, 제65조(설계변경), 제66조(기타내용)) - 조달청 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물품, 용역, 공사 등에 따라 조항 상이)
법령에 없는 사업대가 감액 조건 설정 예	사후정산 대상이 아닌 비목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통해 지출된 사업대가를 감액	MICE 용역 등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후정산의 문제는 사업의 성격상	입찰공고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물가변동, 제65조(설계변경), 제66조(기타내용))

방	하여 지급하는 문제점 해소 필요함	이행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단계에서 명확한 계획 수립이 곤란한 경우 사후적으로 비용정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총액확정계약 방식이 아닌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등의 계약법령에 따라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입찰 방식 적용해야 함	- 조달청 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물품, 용역, 공사 등에 따라 조항 상이)후정산,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계약법령에 근거 없는 사후정산 조치 금지규정 신설 - 사후원가검토를 통한 정산이 필요한 경우 현행과 같은 무분별한 총액확정계약 방식이 아닌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또는 개산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권고 필요
발주자에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사업대가 감액 조건 설정 예방	- 계약체결 후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주자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일정 등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계약 특수조건 설정 - 조달업체는 용역이행을 완료하고도 대가를 부담하게 감액당하는 문제점 발생	- 예산운영상 등의 문제로 선금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선금보증증권 비용 발생 등으로 업체들이 신청 주저하는 경우 해소 필요 - 선금에 대한 보증증권은 각 서로 대체하여 업체들이 비용부담 없이 선금신청 가능하도록 전환 검토	입찰공고문, 사후정산,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계약법령에 근거 없는 사후정산 조치 금지규정 신설
l-a2.과업내용의 변경 시 대가지급 및 계약금액 청구기한 (제도개선)	-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을 준용함을 명시하고 있음. -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생략함(시행령에 해당 내용은 없음) '계약금액조정 청구' 완료 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할 수	- 과업(설계)변경과 관련한 계약금액 조정은 가장 빈번한 지르이사례 등이 있을 만큼 이와 관련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반영 필요성 높음. <u>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와 다르지 않더라도 해당 조항을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별도 반영 필요성 있음.</u> - 조달청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각항과 동일하게 일반조건 변경 권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 -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7항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해당 내용이 생략		
l-a3.계약 연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 (제 도 개 선)	-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과 달리, 제 19조 7항의 내용이 생략됨 -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계약 연장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기간 종료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후 계약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없음 - 우체국물류지원단에는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고만 명시)	- 계약기간 연장이 계약완료 후 종료된 경우에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당해 조항의 취지로 판단됨 <u>조달청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각항과 동일하게 일반조건 개정 권 고</u>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제 19조 계약기간의 연장 1항과 7항
l-b2.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이 가능한 조정가능 일 수입의적 변경 (제 도 개 선)	-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일 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음 -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 예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조달청 및 시행령 기준) - 우체국물류지원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을 국가 계약법 시행령상 90일 이상 되어야 가능함 - 그러나 이를 60일 등으로 단축한 것으로 계약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경우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u>물가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조달업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상위 계약법령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상치되므로 조정 권 고</u>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 -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칙 제74조를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을 60일이라고 명시		
Id-6.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제도개선)	- 조달청 및 타 기관에서는 발주자에 의해 설계변경이 일어났을 때 이로 인한 공사 중지에 대한 재착수 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 발전 공공기관(서부발전, 전력거래소, 전력공사)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했을 때 “중지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착수하게 할 때에는 발주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착수 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있음 - 계약상대자인 조달업체가 자재수급 및 공사착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일방적 어려움 감수 가능성 있음	- 설계변경에 다른 협의가 필요할 것이나 설계변경이 발생했을 때 중지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착수할 경우 3일 이내 재착수는 과도하게 짧은 기간으로 볼 수 있음 - 설계변경 이전 사전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3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할 필요성 있음 <u>일반적으로 용역, 공사 등에서 착수는 7일 내외이며 단축하더라도 5일 내외를 적용하는 사례를 참조하여 추가기간 설정 권고</u>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 제 19조의 5
Id-7. 계약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불이행(제도개선)	- 조달청과 발전공공기관(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함 -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	- 계약일반조건을 통해 분쟁 및 민원 발생 소요가 많은 조항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계약일반조건에 반영하여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등의 추가적인 행정소요 감축 필요 - 계약금액조정 신청과 관련한 계약일반조건 조항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동일 조항에 따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 제 26조

	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 있음		
I-d11..설계 변경시 부당한 계약금액의 조정(제도개선)	-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신기술 및 공법을 적용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원용한 것으로 표면상 특별한 문제점 없으나 실제 조달업체 입장에서 기술 및 공법 개발 노력을 통해 공사품질을 향상시킨 결과가 최종적으로 감액의 형태로 보상된다면 동기저하 유발 가능성 높음	-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원용한 것으로 표면상 문제는 없음 <u>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공법을 적용하여 전반적인 시공품질 및 공기 단축의 결과가 대가의 감액으로 귀결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u> <u>해당 사안과 관련한 상위 규정의 적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정 검토 권고</u>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 제 20조
F35.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 사유(제도개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u>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에 속한 문서간 상이점, 모순점 등이 있으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설계서에 속하지 않으나 공사 대가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예정가격, 산출내역서의 오류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치 않는 것은 문제점 있음</u>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 건 제19조 제1항
F36.공사현장과 설계서의 상태가 다른 경우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	공사현장과 설계서가 다를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현장설명회 등에서 이러한 상이함을 먼저 확인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 제19조의3

(단순질의)		가능하므로 계약체결 이전 현장과 설계서가 일치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F37.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일 기준 (단순질의)	계약체결 90일후에 입찰일 기준 등록요건 3% 동시 충족되어야 계약금액 조정신청 가능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요건 준수여부 확인(특수조건 등에 다른 기준 적용 여부 확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1호내지 제2호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F38.재시공에 따른 기시공분의 철거 비용과 재시공 관련 설계비용 부담 (단순질의)	발주기관의 설계서에 따라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변경하여 재시공할 경우 철거 및 재시공 설계비용을 공사업체에 부담 요구	실제 규정상 계약상대자인 시공업체의 책임이 없으나 발주기관이 묵시적으로 재시공에 따른 철거 및 재시공 설계비용 부담 사례 확인(특수조건 등에 반영 여부 확인)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F39.시설공사 설계변경 시 세부공종별 분류되지 않은 비목별 금액 조정 방법 (제도개선)	총계방식으로 1식 등의 형태로 계약금액 산정된 경우 1식에 포함된 단가의 내용을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 대가표의 구성비목을 비교하여 확인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조정 소요 비목이 1식에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가능	<u>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공종별 단가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에 세분화하여 분리 제시토록 하는 것을 의무화</u> - 총계방식으로 1식 등으로 계상하고 사후 검토방식으로 하는 것은 검토 과정에서 수행업체에게 분리하게 해석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 높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7항
F40.하차장상차도의 관급자재인 경우 인수장소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제도개선)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아닌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조정이므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을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됨	<u>기타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추가하여 반영 검토</u>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F41.물가변동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

산정 기준 (단순질의)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	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나,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 할 수 있음	건 제22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F42. 터키입찰에 이한 공사계약에서 예측하기 힘든 추가비용 부담 책임 (단순질의)	▪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물량을 초과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3에 따라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인 업체가 부담	▪ 건설폐기물 처리가 분리발주되는 경우 터키계약 상대방이 해당 물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물량 발생 시 그 부담을 업체가 부담하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터키 공사의 특성상 모든 위험부담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한 높은 수준의 낙찰율이 보장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3
F43.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대가 조정 근거 (단순질의)	▪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결정함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라 조정 가능함
F44. 현장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의 주	▪ 현장사무소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설계내역서(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추가비용 요청 및 비용 부담 주	▪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8호

체 (단순질의)	체가 누구인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 현장사무소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설계내역서(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가능	
l-d5. 휴일 및 야간작업에 대한 허용 여부 (제도개선)	- 조달청 포함 타 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추가 조항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발주기관 담당자가 승인하더라도 대가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도 함께 포함하고 있음 - 조달업체가 발주기관의 담당자의 승인에 따라 휴일 및 야간작업을 실시하였을 때 대가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승인을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휴일 및 야간작업 시 승인 및 추가비용 청구 조항 통일 필요함.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8조

	따라서, 야간 및 휴일 근로를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9) 부당한 특약조건 설정 사전검증 강화 (계약이행 단계)

개선차원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규정
입찰건별 사전 검증 또는 공개되지 않는 계약특수조건 운영	- 기재부 계약예규 및 행자부 예규(제34호)에 따라 조달대상별 계약일반조건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로 제정 또는 준용하고 있음 - 그러나 계약특수조건의 경우 기재부 계약예규에는 조달대상별 특수조건이 사전 제정하여 공개되어 있으나 행자부 예규에서는 별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계약특수조건을 개별 입찰 건에서 임의대로 작성하여 공고 및 계약문서로 활용하고 있음 - 계약특수조건에는 계약금액 조정, 검사검수 조건, 대금지급 기일 등에 있어 계약 법령 등과 다른 기준 또는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추가하더라도 최종적 계약 단계에서 조달업체가 적극적인 이의제가 어려워 불이익 감수하는 경우 발생	-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는 승강장유지보수 용역입찰에서 계약특수조건에 용역이행 지연 등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 기준 1%씩 감액 조건 등을 설정하여 법령상 근거도 없이 대가를 임의적으로 감액하는 조항 설정 - 해당 조항은 사전 계약조건으로서 적정성과 상위 규정 합치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 없이 개별 입찰 건에서 사실상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조달업체가 부당하게 수용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감수 상황에 처하게 됨 - 따라서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에서 사전 기재부 및 행자부 등의 승인을 받지 않는 입찰건별 계약특수조건 운영을 금지하고 계약특수조건 운영하더라도 과업변경, 계약금액 조정,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과 관련해서는 별도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권고 필요(계약예규 금지 규정 신설)	- 기재부 계약예규 조달대상별 계약일반조건 - 기재부 계약예규 조달대상별 계약특수조건 - 행자부 예규(제34호) 조달대상별 계약일반조건
1-d2.채권 양도시 추가조건 요구(제도개선)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조달청 및 이외 공공기관의 일반조건에 없는 내용인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	- 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금액의 20%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납부한 경우에는 채권 양도시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따라서 상기 조항을 단서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52조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음 ■ 관련 상위 계약법령 유관 조항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제 52조에서 삭제된 내용이므로 상하위 규정상 상치 문제 해소 필요	항으로 추가하여 일반조건 개정 권고	
부당한 계약이행 조건을 특약 형태로 반영(법령위반)	■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는 2015~2016년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용역의 계약특수 조건에 상위 계약법령에 없는 감액조건을 추가하였음 ■ *서울메트로 계약특수조건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 제8조(청소품질) ■ 제10조(용역비 감액) ■ *서울메트로 계약특수조건 (구내운전업무 위탁용역) ■ 제9조(감액조치) ■ *부산교통공사 계약특수조건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 제5조(용역대가의 정산 및 감액조정) ■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00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통하여 실제 지급금액 수준에 따른 감액이 가능한 사항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수요기관 담당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계약금액 대비 일정 비율 감액 조항을 추가한 것은 사실상 부당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계약의 안정성 저해 및 중소기업체의 경영상 부담 가중 예상	■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중앙 공공기관과 달리 행자예규 제 34호에서 별도의 계약특수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대부분 지방 공공기관은 개별 입찰건별로 별도의 계약특수조건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음 ■ 계약특수조건을 사전 규정화하여 공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낙찰업체는 낙찰 이후 부당한 내용이 특약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계약체결 불이행 등의 쟁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수용하고 계약을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u>따라서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특히 지방 공공기관의 계약특수조건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감액조항, 특정 인력 채용 및 임금보장 조항 등을 삭제토록 하고 이후 해당 내용은 특약 조항으로 추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화하여 함</u> ■ <u>이러한 측면에서 행자부 예규 제34호에 계약특수조건을 제정하여 원칙적으로</u>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6조 ■ 기재부 계약예규 제91조 ■ 조달청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행자부 용역계약일반조건 ■ 공공기관의 입찰건별 계약특수조건

	부당한 감액 및 사후정산 조정 이외에도 특정 기관 퇴직자 채용, 특정 채용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상의 임금지급과 임금상올 보장 등의 부당 특약 추가	<u>지방 공공기관이 표준적인 특수조건에 반영된 조항 이외의 사항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별도의 특약 추가시 행자부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함</u>	

10) 불공정 조달센터의 운영 강화 (계약이행 단계)

개선차원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규정
상위법령 근거 없는 부정당업 자제재 사유 운영 (G12, 법령위반)	■ <u>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계약사무규칙의 범위를 뛰어넘은 조항을 만들어 제한을 두고 있어 제한의 대상이 계약사무규칙과 상이함</u> ■ 계약사무규칙 이상의 조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u>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각항의 각호에 따른 사유 중 계약사무규칙에서는 6가지 사유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및 업체의 상대적 불이익 가능성 존재함</u>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각호 중 6개 조항에 대해서만 부정당제재 가능 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 <u>현실적으로 이외 제재 사유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계약사무규칙 반영을 요구하더라도 현행 국가계약법령 체계하에서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범위를 초과하는 제재사유 추가는 상위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조정 필요</u>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각호 ■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I-d1.공사 계약 시 계약문서의 과다요구 (제도개선)	■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발전 공공기관(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5부 작성 및 시공부서로 제출하는 조항이 추가되어있음 ■ 계약이후 착수계 등 제출서류 및 행정절차가 복잡한 상황에서 산출내역서 5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최소 부수 제출 필요함	■ 기본 계약서류로 첨부되는 자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산출내역서 등)인 경우 별도의 문서로 추가자료 제출보다 기재출 자료 활용 필요함 ■ 기본적으로 동일한 서류를 다량으로 요구하는 행위 금지 필요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3조

11)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체계개선 (사후관리 단계)

개선차원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규정
물품구매에 대한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기간 명시	▪ 시설공사와 달리 물품구매에 대한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기간 미제시로 특수조건 등에 따라 기간설정 시 업체에 부담(장기간 요구 등) 전가 가능	▪ 공통적인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기간 설정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G11.검사 및 검수의 기준이 일원화 되지 않음 (G11,) (단순차이)	▪ 검사검수기간 14일, 추가 7일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만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검사검수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지체상금부과 또는 부정당제재 없이 검사검수 기간만 연장되어 계약업체가 대금청구 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계약실무 과정에서 조달업체들은 당해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추가적인 물품 및 용역의 제공 요구 또는 관련성 없는 추가요구 수용 여부에 따라 검사검수기간이 지연된다는 문제점 제기 사례도 있음	▪ 검사검수는 계약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면서 동시에 대금지급을 위한 필수 요건임 ▪ 실제 조달업체의 애로사항 및 질의회신 사례 중 검사검수의 지연과 관련한 사안이 빈번한 만큼 모든 기관이 검사검수 기간, 절차 등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와 같이 제정 필요 ▪ <u>특히 검사검수는 간주조항으로 정해진 검사검수기간이 종료되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에 대해 발주기관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검사검수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u> ▪ <u>검사검수 이후 계약업체의 대금청구 단계도 제거하여 검사검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5일 이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절차 개선 필요</u>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 각 기관 총칙의 검사 및 검수 관련 조항
대금지급 기한 연장하거나 상위법령보다 긴	▪ 대금지급은 검사검수 후 업체 신청 시 5일 이내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기관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따라 계약완료일 전후 검사검수가 완료되면 5일 이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지급기한 설정 (A13, G10) (법령위반/단 순행태)	경우 14일 이내로 과도한 기간 부여 ▪ 계약완료 후 신속한 대가지 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공공 기관별 대가지급 기한 임의 설정으로 업체 경영상 부담 가중 가능성	지급(협의시 5일 이내 범위 연장 가능)이 원칙임 ▪ 대금지급 기한 5일은 계약 완료 후 계약이행에 소요된 비용을 조달업체가 신속히 회수하여 안정적 경영을 지 원하기 위한 목적임 ▪ 특히, 계약상대방인 조달업 체가 다른 업체에게 원부자 재 구매 및 장비 등의 임대 를 한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여러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지급이 필요함 ▪ <u>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와 같이 검사검수 후 계약상대방인 조달업체 의 요청 후 5일 이내 지급 으로 기준 통일 필요함</u> ▪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과 다른 대가지급 기준 통 일 ▪ 대가지급의 핵심은 검사검 수 후 계약업체의 대금지급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이 므로 선행 업무단계인 검사 검수와 업체 신청일이 사실 상 대금지급 기한의 연장수 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통 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검사검수를 계약완료일과 연동하여 14일 이전부터 시 행토록 하고 검사검수 완료 되면 자동적으로 대금청구 여부와 상관없이(5일 이내) 이루어지도록 강행규정화 필요 ▪ 검사검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지체상금 부과	

		등을 통해 문제 있는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 가능함	
l-a4. 대가의 지급기간을 5 일을 초과하여 지정 운영(법 령위반)	- 조달청 및 타 기관들은 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고 명시 -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해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급연장 특약정함 -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의 대가 지급, 14일 이내에 대가 지급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의를 통해 14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 - 지연지급을 통해 업체에 적기 대금지급 지연을 초래함과 동시에 업체에 경영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대금지급은 검사검수 완료 후 조달업체 청구 시 5일 이내 지급이 원칙임. - 실제적으로 검사검수 지연 등으로 5일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지연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발생함. <u>따라서 14일로 대금지급 기한을 설정한 것은 시행령과 상치되는 기준설정으로 5일 이내로 수정 권고</u>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 제27조(대가의 지급) 제 2항
l-a5.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대한 조항이 없는 기관이 있음 (제 도 개 선)	-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과 달리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음 - 이와 관련 하여 시행령 및 상위 법령을 따른다는 내용도 명시되지 않음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은 영세한 중소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것으로 시행령 준용 조항이 없는 경우 조달청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와 동일 내용으로 기준 개정 권고	일반조건 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l-b3. 계약이행 완료 후 검사를 해야 하는 기한이 서로 다름 (조달청 기준보다 짧은 경우도 있음)	- 조달청 및 대부분의 기간에서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아래 검사를 시행 -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검사기간을 외관 및 수량검사 : 3일 시험검사 : 7일 총 10일로 설정	- 검사검수는 14일 이내가 원칙이나 다수 공공기관에서 14일보다 단축된 기간 부여 - 신속하 검수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계약을 완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 보유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단순차이)	- 명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 통보 후 1일 이내 필요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연장가능	■ <u>검사검수 기간의 단축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현행 14일 이내보다 빠른 검사검수 가능 여부 검토 필요</u>	
l-b4. 대가의 지급기한이 상위 법령 보다 긴 경우(법령 위반)	■ 조달청 및 공공기관과 달리, 우체국물류지원단 대가지급 기한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조달청 및 타 기관에 비해 김) ■ 기성부분에 대한 지급일도 7일로 조달청보다 2일 김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서부발전은 기성부분에 대한 지급일 설명이 없음 ■ 조달청 기준과 달리 타 기관들은 지급기한에서 공휴일을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음(시행령에서는 제외함을 명시)	■ 대가지급 기한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달리 지나치게 길고 기성대금 지급일 역시 조달청 대비 3.5배 수준으로 오래 걸림 ■ 따라서 검사검수 기간을 14일보다는 짧게하여 신속한 검수가 이루어지도록 상위 계약규정 개정 검토 ■ <u>신속한 검사검수가 이후 대금지급 문제까지 연계하여 단축하는 방향으로 기준 개선 권고</u>	■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22조(대가의 지급)
l-d12. 기성대가의 지급 기간의 차이(조달청 5일, 우체국물류지원단 7일(법령 위반))	■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기관에서는 기성대가와 관련하여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만 유일하게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음 ■ 전반적으로 공공조달 대가지급에 있어 신속성을 저하시키는 대가지급 기한 연장은 조달업체에게 부담 가중 가능성 높음	■ 기성대가 지급은 해당 기성 부분까지는 사실상 계약완료된 것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의 대가지급 기한을 준용하는 것임 ■ <u>따라서 대가지급기한이 5일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상위 법령과 상치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이 계약일반조건 개정 권고</u>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39조
l-d13. 계약의 해제 또는 해	■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은 모두 “계약을 해제 또는 해	■ 발주기관에 의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경우로서 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6조

지하는 경우 잔금 지급 기일의 차이(조달청14일, 한 국가스공사20일)(제도개선)	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상기 지급 기한의 연장은 조달청 및 타공공기관에 비해 6일 이상 연장한 것으로 조달업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사안임 ▪ *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 *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	성부분과 기 투입된 인력 및 장비의 철수비용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14일 이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상황에서 기성부분으로 완료한 대가를 20일 이상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의 대금지급 기한 5일 등을 감안할 경우 과도하게 긴 것으로 판단됨 ▪ <u>따라서 20일로 연장된 기성대금 및 철수비용 등을 14일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u> ▪ <u>필요시 조달청 및 타 공공기관의 14일도 10일 또는 7일 이내 등으로 단축 검토 필요함</u>	
F45.인수거부 사유 및 지체상금 부과 기준 (제도개선)	▪ 검사검수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인수거부 및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체일 수 산정기준은?	▪ 검사검수 일정에 대한 기준 14일과 이후 7일간 연장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자의성 개입 여지가 있음 ▪ 검사검수기간이 지연되면 대금지급까지 지연되므로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까지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부과 등 별도의 계약이행을 위한 제재 없이 검사검수 일정과 대가지급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4항

F46.검사검수 기간 및 완료 일 기준 (제도개선)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성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검사검수 완료해야 하나 계약 기간 이내 검사검수 요청된 경우 계약기간 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검사검수는 용역 완성 후 검사검수 요청 서면 접수후 14일 이내 완료하면 되나(검사검수 지연과정에서 업체의 부담 가중) 실제 계약완료에 따른 신속한 대금 지급 등을 위해서는 용역계약 완료일에 검사검수가 종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계약일 기준 계약상대자 요청이 없더라도 5일 이내 용역대가를 입금하는 형태로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검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F51.지체상금 부과 대상판단 (단순질의)	계약상대자(공급자)가 외국 제작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납품함에 있어, 외국제작사의 사정(부품 부족과 주문이 많아 제작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 예외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	국가기관이 해외 제작사와 직접 체결하는 경우 예외사유 인정 가능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지체상금률)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F52.물품의 검 사검수 (단순질의)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품질, 수량, 포장, 표기 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 기호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 14일(원칙)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산업표준화법 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 제조물품,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면제사유 명확화 필요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 제1항 「산업표준화법」 제15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F53.관급자재 대금 지급일	①조달 계약된 관급자재 중 관급자재의 현장도착도자	국가계약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기준 (단순질의)	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대금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급자재가 현장에 도착하여 자재가 설치 완료해야 대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②기성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 ▪ *검사완료전에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검사완료 전 청구를 허용한 때) :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 *검사완료 후에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 대가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계약상대자가 납품을 완료하고 발주기관에서 이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다면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자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발주기관에서는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 관급자재 납품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은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정하게 지급해야 하며,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다음의 기납대가지급 기한까지 지급	55조 제1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12) 통합적 공공기관 계약규정 관리 체계 확보 (사후관리 단계)

개선차원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규정
I-a1,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처리 받을 시의 상계처리 여부 (제도개선)	- 조달청 및 다른 기관들에서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데 있어서,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미지급액으로 상계처리가 가능 -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음(시행령을 따름을 명시한 내용도 없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음 - 당해 조항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조달업체 입장에서는 미지급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 가능성 있음 <u>계약보증금 및 미지급 기성액과 상계처리 조항 추가 권고</u>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 일반용역 계약일반조건 제 9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I-d3. 계약보증금 납부의 차별 (법령위반)	- 계약 보증금과 관련해서 조달청과 타 기관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보증금 납부에 관한 제제가 없음 -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부터 총 제재기간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실제 납부하게 하는 조항을 추가(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자를 대상)하고 있음.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2항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7조(계약보증금) 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지급 각서로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차등적으로 실제 계약보증금 납부토록 하고 있음 <u>부정당제재를 통해 입찰제한 등 제재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중처벌적 요소로 판단될 수 있고 상위 법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도 별도의 관련 조항 없음</u> <u>동일한 자격을 보유한 조달업체에게 다른 업체가</u>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7조

		<u>가지는 편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조항에 대한 명확 한 법률적 근거가 충분치 않으므로 해당 조항 삭제 검토 권고</u>	
l-d8. 하도급 대가의 직접지 급(제도개선)	- 조달청 및 타 기관에서는 발주자가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직접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어 표면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한국서부발전의 하도급대금직접 지급 관련 조항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협의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발주자의 역할과 합의 조건으로 “명백하게 합의”하여라는 조항을 통해 실제 하도급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서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의사표시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토록 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하도급법령에서는 발주자의 주도로 하도급대금 지급 결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일반조건에서는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u>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제2호 및 하도급시행령 제9조 제1항과 동일한 형태로 관련 조항 제·개정 권고</u>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2항 제2호

	보다 강화된 조항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운영 과정에서 하도급 법령을 준용하겠으나 계약 일반조건에 포함할 경우 하도급법령의 조항호와 동일한 형태로 수정 검토 필요		
I-d9. 하도급 대가지급에 대한 투명성(제도개선)	▪ 조달청 계약일반조건과 달리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전력거래소에서는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대한 대금지급확인과 통보’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되어 있지 않음 ▪ 하도급 대가지급과 관련한 나머지 조항은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대한 대금지급확인과 통보’ 조항만 제외되어 있음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와 자재·장비업자, 수급사업자와 자재·장비업자 간 대금지급 관련 민원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조항 추가 필요	▪ 조달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2의 내용과 같이 모든 공공기관의 계약일반조건 제·개정 권고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2
I-d10..계약금액조정 시 관련 용어의 통일(제도개선)	▪ 조달청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만, 이외의 모든 기관에서는 ‘실적공사비’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2015년 9월 기재부 계약예규 원가계산 작성기준 개정을 통해 기존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대체하였으므로 상위 계약법령과 다른 용어 통일 필요	▪ 상위계약 법령의 용어의 정의 및 개념 개정 사항이 하위 계약기준인 계약일반조건에 반영이 지연된 사례임 ▪ <u>“실적공사비”로 기재된 일반조건의 각조의 각항의 각호를 “표준시장단가”로 변경 필요</u>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
E.4공장 임대 관련 직접생산	▪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직생기준상 공장등록을 위한 공장	▪ 소규모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생산확인기준 제도	▪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2조(직접

확인기준	임대 비용 부담, 기준 완화 요청	의 운영목적에 고려할 때 특정 업체가 다수 업체가 최소 생산 및 품질 요건으로 공장등록 요건 충족 시 해당기준은 예외 없이 모든 업체에게 적용되어야 함 특히 해당 품목과 관련하여 타부처의 법령, 행정규칙, 기술기준 등에서 공장을 요구하는 경우 단순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서 제외 곤란함	생산 여부의 판정)
E10.MAS 계약 체결 기준	동일업체 3개사 이상이어야 하나 투명카누, 투명보트 등은 3개사 미만으로 계약불가	-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은 종합쇼핑몰 등록되면 대부분의 수요기관이 구매를 하게 되고 3개 미만, 즉 2개 이하 업체만 등록할 경우 사실상 수의계약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해당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1개밖에 없다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 공급 가능할 것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MAS) 업무처리규정 제17조 (계약체결)
E11.MAS 계약 체결 기준	신재생에너지 사용 도로안 내사인 시스템의 MAS등록 어려움, 개별제품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있으나 시스템장비는 경쟁업체 3개사 미만으로 등록 불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MAS) 업무처리규정 제17조 (계약체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MAS) 업무처리규정 제17조 (계약체결)
F9.공동수급체 구성업체의 입찰보증금 납부 (단순질의)	- 대표사가 공동수급 구성업체의 부정당제재이력 확인해야 하며 제재기간에 따라 보증금 납부비율 증가하므로 확인하여 현금지급(각서 대체 불가함) - 공동수급 방식이 공동이행 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 중 1인이 일괄 납부 가능		특별한 쟁점 및 현안 없음

F10.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조정 문제 (제도개선)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계약 체결 후 자의적으로 공동수급체구성원 비율 조정 할 수 없으나 당초 협정대로 계약이행 곤란한 구성원이 있을 경우 연명으로 출자(공동이행)비율 또는 분담내용(분담이행)의 변경 요청 시 가능함	<u>출자 및 분담비율 조정 사유 발생시 최소 출자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동수급체구성원과 발주기관의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 최소비율 설정 검토하여 과업의 양과 내용에 합당한 수준에서 최소한의 적정(공동수급체 구성 의의에 맞도록) 참여비율 확보 가능도록 유도</u>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의 사유
F14.대표자 변경 입찰참가자격 유효성 (단순질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가 변경(7.24) 되었으나 조달청에 변경 신고전(7.28, 13:30)에 입찰서를 제출(7.28, 09:50)하였으므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되는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7.24 변경되었다면 7.24 이후의 입찰참가는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입찰참가신청을 하고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할 것인 바, 변경전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변경된 대표자의 명의로 입찰참가신청을 변경등록 하기 전에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유효한 입찰로 보기 곤란함	-
F15.지역제한 경쟁입찰에서 지역제한 참여 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단순질의)	1. 공사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원 2.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 : 2.1억원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다음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지역 제한)가능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를 말함 -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6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 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지정한 한곳의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봄(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4항과 제6항) ▪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F16.본점 소재지 변경 (단순질의)	▪ 본점 소재지 변경후 조달청 이용자등록변경 등록완료전 입찰 가능 여부	▪ 등록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등록사항을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 ■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 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함)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 6의3 가목과 나목인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가 아닌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않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F17.조달대상 구분 (제도개선)	■ CCTV설치(또는 교체)는 물품의 제조 인가요 공사인가요? ■ 엘리베이터(승강기)의 설치(또는 교체)는 물품의 제조 인가요 공사인가요?	■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 <u>CCTV는 물품의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므로 CCTV만을 설치하는</u>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의2(설비공사의 공동계약) 제1항

		<u>경우에는 물품의 제조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임</u> ▪ <u>다만, 다른 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로도 발주 가능</u>	
F32.지체상금 부과 기준 및 일정지연 책임 유무 (단순질의)	▪ 공사와 분리발주한 창호 물품구매계약에서 창호설치를 위한 선행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창호설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함 ▪ 창호설치 이전 선행공사 지연에 따른 기간만큼 창호설치 공사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만큼 지체상금은 미부과되어야 함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F47.물품구매계약 계약첨부서류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준수여부 (제도개선)	▪ 물품구매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제도는 국가계약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70조 등에서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첨부서류인 특수조건에 따라야 함	▪ 국가 및 지방계법령에서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구매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특수조건)되어야 함 ▪ <u>계약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물품구매 품질관리 측면에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개략적인 하자보수 보증기간 설정 원칙 제시 검토(단순 납품일 기준, 시운전 기준 등에 따른 평균적 요구 기능 기간 명시)</u>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F48.실적증명서 발급 기준 (제도개선)	▪ 현재 계약번호를 기준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물품과 공사가 혼재되	▪ <u>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이 혼재된 계약건에 대해서는 실적증명 발급기준을 입찰</u>	▪ -

	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계약담당자가 분석하여 실적증명서 발급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u>공고 시점에서 사전 명시하여 개별 비율만큼 인정 또는 주된 조달대상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u> ▪ <u>특히 계약번호 이외에 해당 물품, 용역, 시설공사에 대한 일반 품명이 아닌 세부품명분류(10자리) 기준 정보까지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 할 필요성 있음(사후 동등 및 유사 실적 인정과 관련하여 분쟁 가능성 높음)</u>	
F49.하자보수 보증금 채권 확보 방법 (단순질의)	▪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을 유보하고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채권 확보를 위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설정하고 하자 발생시 이를 하자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은 협의하여 검토 필요	▪ 계약특수조건에 하자보수보증금 미납 시 잔여 계약대금이 해당 보수보증금 이상일 경우 이를 유보금으로 설정하고 하자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 검토함. ▪ 그러나 이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요구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 대비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통제할 필요성도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71조
F50.물품구매 품질보증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관계 (제도개선)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서 특기사항으로서 품질보증기간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 그러나 시설공사와 달리 조달청 물품제조계약에서는 별도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품질보증기간은 이 기준에 따라 1년으로 설정 ▪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령」에서 공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바가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없음. ▪ 다만,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 내지 19조의2에 따라 물품구매에 대해서도 적용 ▪ 시설공사와 유사한 형태로 물품별 하자보수보증 기관의 설정 검토	
F34.계약서와 주문서의 우선 적용 납기 (단순질의)	▪ 계약서와 주문서의 납품기한이 상이한 경우 어느쪽을 기준으로 납기를 적용해 하는지?	▪ 입찰공고에 계약과 관련된 납품기한 등을 확정하여 공고한 후 입찰을 실시하였다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납기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인 바, 만일 착오 등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한 납기를 계약서에서 잘못 정하였다면 당초 납기로 바로잡을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음 ▪ 계약서를 기준으로 검사나 지체상금 등을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납기는 당연히 계약서에 명시한 납기를 적용해야 함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2조 및 제24조

13) (사후관리 단계) 정량적인 공공조달 평가 및 관리체계 확보

개선차원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규정
	■	■	■
	■	■	■
	■	■	■

별첨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신인도평가항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 점
가. 고도인증	고도기술에 대한 인증	+3 ~ -2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전력신기술지정,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1.5
나. 녹색·일반인증	일반기술 및 친환경,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A.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보유자, GD인증보유자, GS(국산우수 S/W)마크보유자,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건”자 마크, K마크, Q마크,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 조달청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 품질보증물품 E. 싱글PPM인증보유자 F. 성과공유과제확인제품 G.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인증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J.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보유자	0.75
다. 여성기업	여성기업지 원 및 고용촉진		A.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10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0.75 0.5 0.25 1.25 0.75 1.0
라.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A.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27% 이상인 기업	1.5 2.0 1.0
마. 고용창출	신규고용촉 진		A.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3.0 6%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3.0 7%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3.0 9% 이상인 기업 2.0 5% 이상인 기업 1.0	
바. 공동 수급체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평가		A. 공동수급체 구성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 창업초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 창업초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사. 중소(제조) 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0 · 혁신형기업 1.5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1.5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아.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1.7 C.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1.7 D.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0.5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F.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0.2 G.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0.5 H.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하는 알뜰주유소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 - 5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1.0 - 3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0.8 - 1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0.5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0.5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K.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L.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2017.3.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3	

자. 납품지연	지체상금부 과율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 8%이상~10%미만 - 6%이상~8%미만 - 4%이상~6%미만 - 2%이상~4%미만 - 2%미만 <삭제>	-2.0 -1.75 -1.5 -1.0 -0.5 -0.25
차. 불공정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에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카.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별첨 2.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1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별첨 3.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세부기준 제24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1.1.>
 -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별첨 4. 2015년 공공(자체)조달 전수조사 13개 유형 개선관련 법·규정

1) 1-1 입찰시 예정가격 편차율(±2%) 범위지정

관련 법·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자부)
제2장 3절 4항(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관련 법·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청)
제15조(복수예비가격의 입력)	①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총 예비가격 개수 및 추첨 예비가격 개수, 기초금액 기준 상·하위 분포 등은 각 기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은 기초금액으로 본다. 이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때 입찰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다시 추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용자는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관련 법·규정	한국가스공사 계약업무관리지침('16.4.12)
제32조(예정가격의 결정절차)	① 예정가격 결정권자가 <u>기초금액의 -5%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u>하여 입찰시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개정 '09.3.31> ②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기초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5개를 작성</u>하여 입찰참여자가 추첨한 2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개정 '09.3.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원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2) 1-2 계약이행 후 검사·검수 완료 간주제 도입

관련 법·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55조(검사)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8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 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9.6.29.>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에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8조

제64조(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7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

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1.15.>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3) 1-3 수의계약도 3일 이상 안내공고 의무화(근무일 기준)

관련 법 ·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35조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의 제출과 관련한 기준 및 세부절차,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의 시기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6.5.25.>

②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2006.5.25., 2010.7.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관련 법 · 규정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기재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 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 · 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35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관련 법 ·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35호)

제5장 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함 ○ 예외: 제4절 참조

나. 수의계약 요령

-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 계약 중에서 “제4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 기간(3~5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4) 1-4 제한경쟁 시 실적요구 금지, 고시금액 이상도 1/3이상 금지

관련 법·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

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관련 법·규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 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관련 법·규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5조(제한기준)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관련 법·규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이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또는 양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시공능력의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관련 법·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35호)

제1절 통칙

1. 목 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에 따라 제한입찰의 집행기준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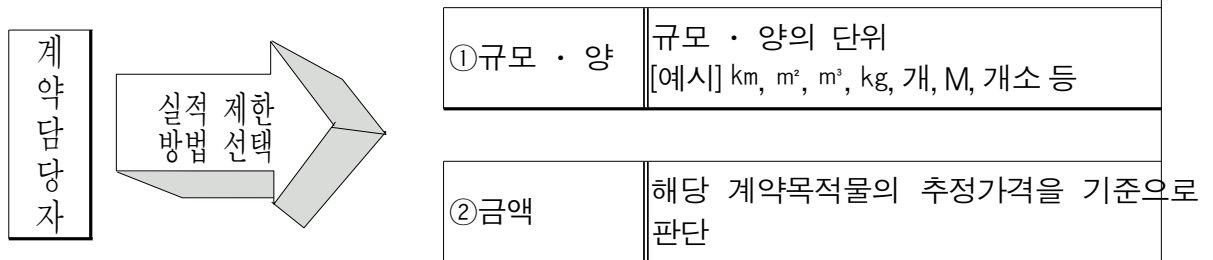
가. **고시금액** : 법 제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나. **실적** : 1건의 공사·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에 있어서는 총공사·총제조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을 말한다.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 1) 시설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5) 1-5 협상에 의한 계약시 기술:가격 평가비중 의무화

관련 법·규정 기재부 계약예규 제7조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개정 2012.4.2, 2014.1.10.>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 기술·지식능력 · 인력·조직·관리기술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수행실적 · 재무구조·경영상태 · 상호협력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신설 2012.4.2>	80	·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관련 법·규정 행자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3절

4.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나. 계약담당자는 디자인사업·설계 등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1>·<별표 2>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신인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가 분야	용역 · 물품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 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 평가위원이 평가
		공사	▪ 정책 이해도 ▪ 마스터플랜 반영도 ▪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 설계의 우수성 · 창의성 ▪ 그밖에 필요한 사항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평점산식 : 아래	

6) 1-6 협상에 의한 계약시 특정평가 항목의 과다배점 금지

관련 법 · 규정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제7조 관련) <개정 2012.4.2, 2014.1.10.> <table> <tr> <th>구 분</th><th>평가항목</th><th>배점 한도</th><th>비 고</th></tr> <tr> <td>계</td><td></td><td>100</td><td></td></tr> <tr> <td>기술능력 평가</td><td> · 기술 · 지식능력 · 인력 · 조직 · 관리기술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 · 사후관리 · 수행실적 · 재무구조 · 경영상태 · 상호협력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신설 2012.4.2.> </td><td>80</td><td>·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 함</td></tr> <tr> <td>입찰가격 평가</td><td></td><td>20</td><td></td></tr> </table>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 기술 · 지식능력 · 인력 · 조직 · 관리기술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 · 사후관리 · 수행실적 · 재무구조 · 경영상태 · 상호협력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신설 2012.4.2.>	80	·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 함	입찰가격 평가		20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 기술 · 지식능력 · 인력 · 조직 · 관리기술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 · 사후관리 · 수행실적 · 재무구조 · 경영상태 · 상호협력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신설 2012.4.2.>	80	·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 함																
입찰가격 평가		20																	
관련 법 · 규정 행자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 기술인력 보유상태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가 분야	- 기술·지식능력 - 지원기술·사후관리 -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 사업수행계획 - 상호협력 관계		
	공사	- 정책 이해도 -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 그밖에 필요한 사항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7) 2-1 선금 30%미만 지급 시 사용내역서 간소화

관련 법 · 규정	기재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4.1.10.>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개정 2014.8.6.>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단서삭제 2011.5.13.>	

제6장 2절(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2) 지급범위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선금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나) 물품과 용역 계약에 있어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사용방법

-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3) 계약담당자는 선금전액 사용 시 등에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가”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별첨]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다. 선금지급조건

-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 2) 계약목적물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8) 2-2 입찰 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대상 확대 (1억 → 5천만 원 이상)

관련 법·규정 기재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용역
2.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3.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

②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구매규격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법·규정 지방계약법 9조의 2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16.11.30. 시행)

9) 2-3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 기업에 우대 가점 부여

관련 법·규정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가점	등급	평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외)/추정가격]	5.0	2.0	A.100% 이상	3.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B.60%이상~100% 미만	2.0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외)/추정가격]			C.30%이상~60%미만	1.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D.5% 이상~30%미만	0.5
창업초기기 업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외)/추정가격]	5.0	3.0	A.100% 이상	2.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B.60%이상~100% 미만	1.5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외)/추정가격]			C.30%이상~60%미만	1.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D.5% 이상~30%미만	0.5
					A.100% 이상	1.0
					B.60%이상~100%미만	0.75
					C.30% 이상~60%미만	0.5
					D.5%이상~30%미만	0.25

관련 법·규정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
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	합산적용
	나.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제조입 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3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품질보증 (+1점) 2) 기술개발 노력 (+1점) 3) 환경관리 (+1점) 4) 사후관리 (+0.5점) 5) 중소(제조)기업 (+2점) 6)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 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4. 결격사유	가.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가 진행 중인 자	-20	
		2) 부도 등의 상태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0	

10) 2-4 물품공급 입찰시 순수최저가 제도폐지(제한적 최저가 도입)

관련 법 ·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3.12.11., 2006.5.25.>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2015.6.22.>	
관련 법 · 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로서 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11) 3-1 적격심사 납품실적 평가 기준의 동등 또는 유사 실적 기준제시 의무화

관련 법·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36조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의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12.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 12의2. 제39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7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15.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등에 관한 사항
1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관련 법 · 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36조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8.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 제한사항 및 제88조제6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한다)
15. 제9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

- 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17.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1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관련 법 · 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

-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 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1-1 납품실적[주]'에 따른다.
 -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3-2 사업대가 감액기준을 관련 규정에 명시

관련 법 ·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

-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

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③「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9.9.9., 2002.12.30., 2005.9.8., 2008.2.29.>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9.9.>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4.6., 2005.9.8.>

⑥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6.12.29., 2010.7.21.>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8.12.31.>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7.10.10., 2010.7.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6.12.31., 2005.9.8.>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2008.12.31.>
-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4.5.22.>
- ⑥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8.2.29.>
-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6.12.31.>

13) 3-3 과업변경의 범위, 유형, 절차 등 명시하여 규정개정

관련 법 · 규정 기재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 · 규정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10.10.>

③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관련 법 · 규정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 원(시·군·구는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2)”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 사업부서 → 심사부서(총괄담당)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심사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내역화일 확인 ▫ 제출서류 누락시 사업부서에 보완지시, 담당별 서류배분
↓	
③ 심 사	▫ 설계변경 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등 검토
↓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정 등)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별첨 5. 공공기관대상 정부조달 규제개선 제도개선과제(15개 과제)

연번	과제명	소관기관	세부내용 (현황, - 문제점, → 개선방향)	부처의견 및 조정내용
1	중기간 경쟁제품 2단계 입찰시 사전통보 및 검토의무화	중기청	중기간 경쟁제품은 적정가 보장을 위해 계약 이행능력심사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나, 2단계 경쟁으로 진행시 최저가로 결정 - 중기간 경쟁제품도 2단계 경쟁 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으로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 곤란 ⇒ 중기간 경쟁제품 2단계 경쟁시 낙찰하한율(88%) 적용	2단계 입찰을 활용하여 중기간 경쟁품목 구매 시 입찰일 이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 토록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적정성을 검토 *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2	예정가격 편차율 범위(- 2%) 지정	기재부	지방규정은 예정가격 편차율 -3%(지방) 지정하고 있으나, 중앙기관은 자율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사업대가 감액이 될 소지 ⇒ 기재부 계약예규에 복수예가 범위율(±2) 명시	예규 개정
		행자부		교육
3	사전실적평가 시 동등 또는 유사실적 평가기준 제시 의무화	기재부	사전실적평가 시 동등 또는 유사실적 평가기준 미제시 ⇒ 개별 입찰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 상에서 물품명, 용역명, 물품목록번호 등으로 유사·동일 실적의 명확한 판단기준을 사전 제시	예규 개정
		행자부		예규 개정
		조달청		지침 마련
4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 기업에 우대 가점부여	기재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기업규모를 고려한 차등적 가점 미시행 ⇒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예규개정	예규 개정
		행자부		예규 개정
5	공공조달 시 수요기관의 제안서평가 점수 공개	기재부 (계약제도과) 행자부 (회계제도과) 조달청 (기술서비스과)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시, 조달청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평가위원별·평가부문별로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발주기관 직접 제안서 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사례 빈번 ⇒ 평가위원별 점수 의무공개, 평가부분별 점수 임의공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정('15.9.21. 개정, 시행) 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정 시 평가위원의 평가부문별 점수공개('16.12.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제안서평가 후 3일 이내 나라장터에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 공개, 수요기관에서 기술평가를 하는 건은 직접 공개하도록 공문으로 안내
6	수의계약도 3일 이상 안내 공고 의무화 (근무일 기준)	기재부	입찰공고 시 최소기한 위반 ⇒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3일 이상 안내공고(근무일 기준)” 의무화 추가	예규 개정
		행자부		예규 개정
7	계약이행 후	기재부	계약이행 후 대금지급 기한의 과도한 지연	시행령 개정

	검사·검수 기한 간주제로 대금 지급 지연 방지	행자부	⇒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최대 21일 경과 시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검수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	시행령 개정
8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 대상 확대 (1억 → 5천만 원 이상)	기재부	입찰 공고 전 사전규격공개 기간 미준수 관행 ⇒ 사전규격 공개대상 금액확대(1억 → 5천 만 원)	예규 개정
		행자부		법률 개정
9	개산계약 시 정산기준	행자부	개산계약 시 정산 상이(국가계약법 시행령- 계 약이행 완료 후 정산, 지방계약법 시행령- 사 업물량 확정시 정산)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지방계약법 개정
10	선금지급 채권확보	행자부	선금지급 채권 확보 시 국가는 한국은행 대출 금리 기준으로 약정이자율을 정하고, 지방은 지자체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행자부 예규 개정
11	물품구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기재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낙찰하한율 - 국가 : 일괄 80.495% 적용 - 지방 : 고시금액 이상 80.495%, 미만 84.245% ⇒ 지방기준으로 단일화	예규
		조달청		조달청 지침 개정
12	물품구매 적격심사 (납품이행능력 평가)	조달청	물품구매 시 납품이행 능력평가 - 국가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제조입찰 시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 평가 - 지방 : 금액에 관계없이 납품실적, 기술능력 평가 ⇒ 10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기술만 평가	지침 개정
		행자부		예규 개정
13	물품구매 적격심사 (실적인정기준)	행자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실적인정 기준 - 국가 : 최근 5년 이내 실적 인정 - 지방 : 최근 3년 이내 실적 인정 ⇒ 국가기준으로 단일화	예규 개정
14	입찰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기재부	입찰비리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국가 : 필요 시 계약 간을 임명하여 계약사 무 위임 - 공공기관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업무 발생시 조달청에 계약업무위탁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업무 발생 시 조달청 통보 의무화 하도록 공공기관 규 정 개정	시행규칙
1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 : 계약 부실이행 등 22개 사유에 대해 제한 - 공공기관 : 입찰담합 등 5개 사유에 대해 제한 가능 ⇒ 국가기준을 준용하도록 명문화	시행규칙

별첨 6. 기업대상 간담회 결과 제도개선 방안(20개 과제)

연번	과제명	소관기관	문제점	개선 방향
1	제한경쟁시 실적요구 금지, 고시금액 이상도 1/3이상 금지	행자부 기재부	제한경쟁입찰 시 실적규모(또는 양)에 있어, · 행자부 ‘실적’은 계약목적물의 1/3배 이내 원칙이며, 1배 내에서 계약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 기재부 ‘실적’은 과거 1건을 의미하고,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1/3 이내이며, 계약특성·난이도 등을 감안 최대 1배까지 요구가능 → 창업 초기기업 및 소기업에게 조달 진입장벽으로 작용	제한경쟁 입찰 시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을 1/3배 이내 원칙으로 완화하고,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 입찰에 대해 실적제한 폐지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실적제한 관련) 및 시행규칙(1/3배 관련)에 실적제한 최대 1/3원칙 기재(예외사항은 예규에 규정)
2	지자체 공사용역 회생절차개시기업의 참여제한 개선	행자부 (회계제도과)	조달청은 부도업체에 대해서도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공사수행능력 결격사유에서 제외토록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14.1.) 한 바 있으나, 지자체는 시설공사에 입찰한 기업이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인정 → 국가계약에 비해 지자체의 경우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재기기업에 대한 희망사다리 마련이라는 정부정책과 배치	회생절차개시 결정 기업에 대해 판로 지원 및 재기 기회 부여를 위해 수행능력 결격사유에서 제외기로 함 * 지방계약예규 개정 추진
3	지역제한경쟁입찰 소재지 제한기준 일치화	기재부 (계약제도과)	공공조달 시 일정 금액 미만 계약의 경우 지역제한경쟁입찰 가능함. 다만, · 지방계약법은 해당 시·도에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 시에는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까지 포함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국가계약법령은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의 관할지역(시·도) 내의 자로만 제한 →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중앙정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해당 시·도 내 자격자 부족으로 지역제한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으로 대상지역 확대가 불가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지방계약법령처럼 충분한 경쟁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접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 예정임. 또,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정방안 도출 추진 * ‘17년 상반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지역 건설업체의 판로확보 애
로발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

	폐활성탄 직접생산 공장등록증 요구기준 폐지	중기청 (공공구매과)	활성탄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MAS 물품으로 업체가 조달에 참여하 기 위해 공장등록증, 직접생산 확인 및 폐기물재활용허가증이 필요하나,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경우 건물용도는 “공장”이 아니라 “자원순환시설”로 공장등록증 발급 불가	재생활성탄 리제 제조 등록증으로
4	석재 직접생산 확인기준 관련 부담경감	중기청 (공공구매과)	→ 건축물 용도가 “공장”임을 전제로 발급하는 공장등록증을 직접생산 확인 필수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 자연석판석의 직접생산*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 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수억 원의 고가장비*가 필요함에도 생산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 불가 * 절삭기(3대 이상), 재단기, 연마기, 버너기 등 → 생산시설 임차보유를 불인정함에 따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	* 중소기업 관련 업체 등을 거쳐 진 * 중소기업
5	시공실적 신고 누락분 재신고 실적인정제 도입 또는 인정기간 확대	미래부 산업부의	건설공사 관련협회에서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과거 1년 치에 한해 누락 신고분 재접수를 받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누락 신고분 재 신고제가 없어 신고기한 경과 시 실적신고 수리 불가 → 최소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있어 건설 누락신고 분 인정기간을 과거 1년치로 함은 부당하며, → 건설공사 외 소방시설 전기 정보통신공사는 누락신고분을 전혀 인 정하지 않아 실수로 누락한 업체의 권익보호 미흡	(미래부) 사 * ‘17년 1 정 (국토부) ‘ 적용기간을 (산업부,인 는 방안으
6	일반물품 입찰 적격심사 시	조달청 (구매총괄과)	중기간 경쟁제품 외 일반물품은 적격심사 기준 및 낙찰하한율에 따라 일 반경쟁형식으로 낙찰자 결정하고 있음	추정가격 하한율 상

* 국가 : 일괄 80.495% 적용
 * 지방 : 고시금액 이상 80.495%, 미만 84.245%

* 적격심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기재부 (계약제도과)	→ 일반물품에 대한 적격심사 시 현행 낙찰하한율은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 등으로 업계 불만	
7	중기간 경쟁제품 2단계 입찰시 사전통보 및 검토의무화	중기청	중기간 경쟁제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낙찰 하한율 88%), 희망수량 입찰, 다수공급자계약 및 2단계 경쟁입찰(최저가 낙찰) 등을 통해 낙찰자 선정 -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규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선택하는 입찰방식이나 일부 기관에서는 규격이 정해져있는 교복, 배추김치 등의 품목을 2단계로 진행하여 최저가로 낙찰자를 선택하는 사례 발생	중기간 경쟁공공기관 계로 추진을 보고함에 의견
8	MAS 2단계경쟁 시 중기간 경쟁제품의 적정이윤 보장	조달청	중기간 경쟁제품의 MAS 계약가격은 최초 등록가격을 기준으로 15% 인하된 가격으로 수정등록이 가능하고, 2단계 경쟁 당시 인하된 계약가격(최초 등록가격의 85%)이 등록된 경우, 추가 10%까지 가격을 인하하여 가격제한 가능함. 따라서, 이 경우 가격하한선을 계약가격의 90%로 보장하더라도 제안가격은 최초 등록가격의 76.5% 수준에 불과 → 중소기업 간 출혈경쟁 불가피	중기간 경쟁공공기관 계로 추진을 보고함에 의견
9	물품공급 입찰시 순수최저가 제도 폐지(제한적 최저가 도입)	기재부	(21억 미만 물품구매) 예정가격 대비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투찰방지	- 불필요 차단
10	우대 인증 기준 합리화	행자부	→ 물품공급 입찰의 최저가 제도 개선 조달청은 조달인증평가체계를 5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였으나, 지자체 입찰의 경우 여전히 5단계 인증평가체계 적용 중 → 다수 인증취득 유발로 업계부담 가중	재검토 시행령 개 지자체 인 * 지자체

조달청은 고도인증과 일반 녹색인증 2단계 분류체계로 간소화하고 단계별 우수인증 1개로 평가(‘15.12.)하고 있으나,

현재 중기
방안에 대
정부 인증
이행능력성
할 계획

11	공공조달 입찰시 제출서류 간소화	중기간 경쟁제품 계약이행 능력심사	중기청	중기청은 인증관련 심사항목을 4개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평점을 차등적용하여 다수인증 취득 유발	* 중소기 약이행
		방위사업 청 물품적격 심사	방사청	조달청은 고도인증과 일반 녹색인증 2단계 분류체계로 간소화하고 단계별 우수 인증 1개만 평가하고 있으나, 방사청은 기술관련인증(3등급)과 품질관련인증(4단계)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평점을 차등 적용하여 다수 인증취득 유발	
			기재부 행자부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대금지급 신청 시 필요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입찰 참가 시 요구하거나 자체서식을 통해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계약대금 신청 시 필요서류(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납부증명서 등) 및 불필요한 자체서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입찰유의서 이행서 등) 제출 간소화 필요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는 공기연장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공기연장 추가비용이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자율조정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발주기관들이 기재부와 사전협의* 부담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미조정 -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변경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을 위해 운영하는 부담 특약 등 각종 편법적 불공정관행 폐지 필요	
12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개선		기재부		→ 용역 * 총사업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초기 기업에 우대 가점부여	기재부	조달청 기준 적격심사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 가점을 부여하고 있 으나,	지방, 공 인 및 창
13			행자부	- 지방, 공기업 등에서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기업규모를 고려한 차등 적 가점 미시행	
14		MAS 입찰자격에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요구 폐지	조달청 (쇼핑몰과)	판매업체의 경우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MAS계약 참 여 가능 → 다수 판매업체는 공공조달 진입 불가	제조사가 지역별 독 시스템 개선 * 다수공
15		납품실적이 없는 MAS 물품의 차기계약 체결 배제 규정 폐지	조달청 (쇼핑몰과)	통상 가구류는 규격별, 부품별 여러 품목을 MAS 계약품목으로 등록하고 있어 2년간 거래가 없는 경우 발생 이 경우 최근 2년간 MAS계약 체결실적이 없어져 향후 계약대상에서 제외 됨 국가·지방계약법령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지체 상금(지연배상금) 부과	2년 간 거 * 다수공
16		지체상금률(지연배상 금률)개선	행자부 기재부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연이자율로 계산할 때 36.5%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1/2 수준으로 조정하더라도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에 손해배상적 가산율 및 위약벌적 가산율(3~10% 정도)을 포함한 수준에 해 당	* 지방계 (기재부) : 해 높아사 란도 제기 리적 범위 의하여 감
17		공공조달 시 수요기관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시,	* 국가계 (조달청) 기 가결과(위

- 조달청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로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부분별 점수는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발주기관이 직접 제안서를 평가하여 입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사례 빈번

또한, 수요
은 직접 공

(행자부)
시 평가위
진

* '16.12.

			빈번	
	제안서평가 점수 공개	행자부	- 행자부는 평가위원별 점수공개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부분별 점수 공개가 임의로 되어 있어 의무화 필요	
			<제안서평가점수 공개여부 현황>	
			구분	기재부
			위원별점수	○(의무)
			부문별 점수	○(의무)
			행자부	○(의무)
			조달청	○(임의)
				○(임의)
				×
				○(임의)
18	계약이행 후 검사 검수 완료 간주제 도입	기재부	계약이행 후 검수·검사* 지연 등으로 대금지급이 과도하게 지연	
		행자부	* 계약완료 후 최초 14일 이내 완료, 필요시 7일 연장	
		기재부	계약 이후 선금 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금 미지급	
19	선금 30%미만 지급시는 정산 요구서 간소화		→ 선금사용 후 제출하는 선금정산서에 임금비, 물품구매 원가 등 기업이 노출을 꺼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선금지급 기피 또는 50%이상의 선금지급신청 시 제출하는 보증보험료 부담 등이 선금지급 기피 원인	
		행자부	임	
20	과업변경 범위, 유형, 절차 등 명시한 과업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기재부	발주자에 의한 빈번한 과업변경 요구로 안정적 기업운영 저해	
		행자부		

고시금액(최대 21일
완료되지

고시금액
급 시 사
출을 예방

과업변경
로 명시하
- 필요